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203-10

수탁보고 2022-06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이재희·이정림·권미경·조미라·김자연·최은경·김지연·윤소정·엄지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203-10

수탁보고 2022-06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연구책임자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정 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 미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 미 라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최 은 경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김 지 연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윤 소 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203-10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주 소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 B 오피스 1동)
전 화 044-202-3398
팩 스 044-202-3966
인 쇄 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보건복지부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Ⅰ. 서론 1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내용 ····· 5
3.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추진 방법 ····· 6
4. 본 사업의 추진체계 ····· 15

Ⅱ. 산후조리원 평가와 컨설팅 배경 17

1.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제도 도입 추진 연혁 ····· 19
2.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의 변화 경과 ····· 23

Ⅲ. 산후조리원 정책 최신 동향 45

1.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및 추이 ····· 47
2. 최근 산후조리원 관련 기사 현황 ····· 53
3. 최근 산후조리원 관련 입법 동향 ····· 58

Ⅳ.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67

1. 컨설팅 사업 준비 ····· 69
2. 컨설팅 사업 수행 ····· 74
3. 컨설팅 사업 수행 결과 ····· 89
4. 부모교육 수행 내용 및 결과 ····· 119
5. 요약 및 시사점 ····· 127

Ⅴ. 2022년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사후 관리 131

1.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 133
2.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사후간담회 ····· 141
3.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수기공모 ····· 147
4. 요약 및 시사점 ····· 153

Ⅵ.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 개선 방안 157
1.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변경(평가지표 수 개선) 159
2. 향후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 방안 164
3. 기타 산후조리원 관련 정책제언 167

참고문헌 169

부록 177

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179
2. 산후조리원 컨설팅 안내문 및 컨설팅 신청서(기관용 신청서) 278
3.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조사표(기관용) 282
4. 자체평가지(기관용) 285
5.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컨설턴트용) 287
6.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329
7. 산후조리원 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347
8. 설문지(컨설팅 참여기관 만족도조사) 351
9. 2021~2022년 평가기준집 비교 355

표 목차

〈표 Ⅰ-3- 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회의/간담회, 연구진 협의 개최 일정 및 내용 ····· 8
〈표 Ⅰ-3- 2〉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사항 ····· 13
〈표 Ⅰ-4- 1〉 컨설팅 사업 추진체계, 협력기관 및 협력내용 ····· 15
〈표 Ⅱ-2- 1〉 2016~2018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비교 ····· 24
〈표 Ⅱ-2- 2〉 2016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최종안) ····· 26
〈표 Ⅱ-2- 3〉 2017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2017년 최종안) ····· 29
〈표 Ⅱ-2- 4〉 2018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2018년 최종안) ····· 32
〈표 Ⅱ-2- 5〉 2019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 평가기준 변경사항 ····· 36
〈표 Ⅱ-2- 6〉 2020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 평가기준 변경사항 ····· 39
〈표 Ⅱ-2- 7〉 2021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 평가기준 변경사항 ····· 41
〈표 Ⅱ-2- 8〉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 평가기준 변경사항 ····· 43
〈표 Ⅲ-1- 1〉 전국산후조리원 현황표 ····· 47
〈표 Ⅲ-1- 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 ····· 48
〈표 Ⅲ-3- 1〉 산후조리원 관련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개요 ····· 58
〈표 Ⅲ-3-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의 확대 관련 법안: 남인순 의원 안(2020.9.11.발의) ····· 60
〈표 Ⅲ-3- 3〉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 관련 법안: 허종식 의원안(2021.3.11.발의), 이종성 의원안 (2021.3.12.발의), 정일영 의원안(2022.6.29.발의) ····· 61
〈표 Ⅲ-3- 4〉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관련 법안: 김학용 의원안(2022.6.30.), 전용기 의원안 (2022.7.19.), 김영주 의원안(2022.9.14.), 정점식 의원안(2022.9.30.) ····· 64
〈표 Ⅲ-3- 5〉 산후조리원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의무화 관련 법안: 정점식 의원안 (2020.9.11.발의) ····· 65
〈표 Ⅳ-1- 1〉 온라인 사업 설명회 신청기관 수 ····· 70
〈표 Ⅳ-1- 2〉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진행 일정 ····· 70
〈표 Ⅳ-1- 3〉 온라인 사업 설명회 주제 및 내용 ····· 70
〈표 Ⅳ-1- 4〉 컨설턴트 자격 기준 ····· 72
〈표 Ⅳ-1- 5〉 컨설턴트 교육 일정 및 참석자 수 ····· 73
〈표 Ⅳ-1- 6〉 컨설팅 수행 관련 방역지침 ····· 73
〈표 Ⅳ-2- 1〉 1~3차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 및 취소 기관 수 ····· 75
〈표 Ⅳ-2- 2〉 1~3차 컨설팅 취소 사유 ····· 75
〈표 Ⅳ-2- 3〉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수 ····· 75
〈표 Ⅳ-2- 4〉 1~3차 컨설팅 월별 진행 기관 수 ····· 76
〈표 Ⅳ-2- 5〉 1~3차 컨설팅 컨설턴트 참여 현황 ····· 76
〈표 Ⅳ-2- 6〉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이용요금 ····· 78
〈표 Ⅳ-2- 7〉 1일 방문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 및 취소/변경 기관 수 ····· 81

〈표 Ⅳ-2- 8〉 1일 방문 컨설팅 취소/변경 사유 ····· 82
〈표 Ⅳ-2- 9〉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수 ····· 82
〈표 Ⅳ-2-10〉 1일 방문 컨설팅 월별 진행 기관 수 ····· 82
〈표 Ⅳ-2-11〉 1일 방문 컨설팅 컨설턴트 참여 현황 ····· 83
〈표 Ⅳ-2-12〉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이용요금 ····· 86
〈표 Ⅳ-3- 1〉 1차, 3차 시범평가 점수 상위 3순위 및 하위 3순위 지표 ····· 93
〈표 Ⅳ-3- 2〉 1차, 3차 시범평가 결과 요약 ····· 94
〈표 Ⅳ-3- 3〉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 97
〈표 Ⅳ-3- 4〉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 100
〈표 Ⅳ-3- 5〉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 101
〈표 Ⅳ-3- 6〉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 103
〈표 Ⅳ-3- 7〉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 104
〈표 Ⅳ-3- 8〉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 106
〈표 Ⅳ-3- 9〉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고충사항 언급 키워드 ····· 107
〈표 Ⅳ-3-10〉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점수 상위 3순위 및 하위 3순위 지표 ····· 113
〈표 Ⅳ-3-11〉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결과 요약 ····· 114
〈표 Ⅳ-3-12〉 1일 방문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 117
〈표 Ⅳ-3-13〉 1일 방문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 118
〈표 Ⅳ-4- 1〉 부모교육 참여 산후조리원명과 강의 일정 ····· 120
〈표 Ⅳ-4- 2〉 부모교육 미참여 산후조리원명과 거부 및 취소 사유 ····· 121
〈표 Ⅳ-4- 3〉 부모교육 참여 산후조리원별 참석 인원 및 제안 사항 ····· 125
〈표 Ⅴ-1- 1〉 2022년 1~3차 컨설팅 전·후 차이 검증 결과 ····· 134
〈표 Ⅴ-1- 2〉 2019~2022년 1~3차 컨설팅 사전·사후 차이 검증 결과 ····· 137
〈표 Ⅴ-1- 3〉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점수 ····· 139
〈표 Ⅴ-1- 4〉 차수 별 평균 평가점수(가중치 적용) ····· 140
〈표 Ⅴ-1- 5〉 컨설팅 통합 평가 점수 등급별 분포 ····· 141
〈표 Ⅴ-2- 1〉 2019~2022년도 1~3차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 142
〈표 Ⅴ-2- 2〉 2022년도 1~3차 컨설팅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 ····· 142
〈표 Ⅴ-2- 3〉 2022년도 1일 방문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 143
〈표 Ⅴ-2- 4〉 2022년도 1일 방문 컨설팅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 ····· 144
〈표 Ⅴ-2- 5〉 컨설팅 참여 기관 사후간담회 ····· 145
〈표 Ⅴ-2- 6〉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사후간담회 ····· 146
〈표 Ⅴ-3- 1〉 2019년~2021년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 148
〈표 Ⅴ-3- 2〉 컨설팅 대상 기관 수기공모 ····· 152
〈표 Ⅵ-1- 1〉 2022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산후조리원 현장 의견 ····· 161
〈표 Ⅵ-1- 2〉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일부 삭제 안 ····· 163
〈표 Ⅵ-1- 3〉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변경이 필요한 지표 ····· 164

〈표 Ⅵ-1- 4〉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수정 및 통합이 필요한 지표 ····· 164
〈표 Ⅵ-2- 1〉 산후조리원 준평가제도 안 ····· 165
〈표 Ⅵ-2- 2〉 산후조리원 본평가제도 안 ····· 166
〈표 Ⅵ-2- 3〉 산후조리원 지표점수 산출방법 및 등급별 점수 표 ····· 167

그림 목차

[그림 Ⅰ-3- 1]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 ····· 10
[그림 Ⅰ-3- 2] 2022년도 1~3차 컨설팅 및 부모교육 운영 절차 ····· 11
[그림 Ⅰ-3- 3] 2022년도 1일 방문 산후조리원 컨설팅 운영 절차 ····· 12
[그림 Ⅱ-1- 1] 산후조리원 평가 및 컨설팅 추진 경과 ····· 22
[그림 Ⅳ-1- 1] 온라인 사업 설명회 사이트 ····· 70
[그림 Ⅳ-1- 2] 2022년 컨설턴트 위촉식 및 컨설턴트 교육 ····· 73
[그림 Ⅳ-2- 1]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근무 인력, 법정 인력 비교(간호사, 간호조무사) ····· 77
[그림 Ⅳ-2- 2]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모자동실 이용시간 ····· 79
[그림 Ⅳ-2- 3]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모유수율 비율 ····· 80
[그림 Ⅳ-2- 4]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자체평가지 분석 ····· 81
[그림 Ⅳ-2- 5]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근무 인력, 법정 인력 비교(간호사, 간호조무사) ····· 84
[그림 Ⅳ-2- 6]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모자동실 이용시간 ····· 87
[그림 Ⅳ-2- 7]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모유수유 비율 ····· 88
[그림 Ⅳ-2- 8]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자체평가지 분석 ····· 89
[그림 Ⅳ-3- 1] 1차 시범평가 소영역 평균 점수 ····· 90
[그림 Ⅳ-3- 2] 1차 시범평가 중영역 평균 점수 ····· 90
[그림 Ⅳ-3- 3] 1차 시범평가 대영역 평균 점수 ····· 91
[그림 Ⅳ-3- 4] 3차 시범평가 소영역 평균 점수 ····· 92
[그림 Ⅳ-3- 5] 3차 시범평가 중영역 평균 점수 ····· 92
[그림 Ⅳ-3- 6] 3차 시범평가 대영역 평균 점수 ····· 93
[그림 Ⅳ-3- 7]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변화 -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영역 ····· 110
[그림 Ⅳ-3- 8]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변화 - ‘12.1 부모교육’ 영역 ····· 110
[그림 Ⅳ-3- 9]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변화 - ‘8.1 손 위생’ 영역 ····· 111
[그림 Ⅳ-3-10]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소영역 평균 점수 ····· 112
[그림 Ⅳ-3-11]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중영역 평균 점수 ····· 112
[그림 Ⅳ-3-12]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대영역 평균 점수 ····· 113
[그림 Ⅳ-4- 1] 2022년도 1~3차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 대상 부모교육 진행 절차 ····· 119
[그림 Ⅳ-4- 2] 부모교육 강의 자료 (PPT, pdf 파일) ····· 122
[그림 Ⅳ-4- 3] 부모교육 활동 자료(부모 서명 활동지와 신생아 발도장 스템프) ····· 123
[그림 Ⅳ-4- 4] 부모교육 강의 구성 ····· 124
[그림 Ⅴ-1- 1] 2019~2022년 1~3차 컨설팅 시범평가 대영역별 점수 추이 ····· 136
[그림 Ⅴ-3- 1] 낙상예방 포스터(산모용, 신생아용) ····· 150
[그림 Ⅴ-3- 2] 부모교육 소책자 표지 및 목차 ····· 151

I

서 론

0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02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내용

03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추진 방법

04 본 사업의 추진체계

Ⅰ. 서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사업의 필요성

산모는 산욕기간 동안 임신으로 비롯된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가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정신적으로 적응을 하게 된다(배경미·조혜숙·이인선, 2009: 231). 이러한 시기를 산후기간(postnatal period; postpartum period)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한다(이소영·이상림·조성호·최인선, 2015). 전통적으로 한국의 산모는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라는 특수한 돌봄 형태를 통해 관리되어져 왔다(송주은, 2007: 300). 삼칠일(3주)로 명명된 이 시기에 산모는 일상적인 가사, 가족 돌봄 등의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고, 정서적 개입과 공감을 바탕으로 신생아 양육을 돕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신생아 양육과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에 전념하는 형태였다(송주은, 2007: 300).

하지만 가족단위의 핵가족화와 더불어 부모세대의 자녀 양육의 개입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산후조리 방식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에 대한 친인척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맞춰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에 산후조리원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 후반 대에 탄생한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기관인 산후조리원은 이용의 편리성을 담보로 급격하게 민간시장에 확산되었으며 빠르게 산후조리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에 달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1.25.).

산후조리원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산모와 신생아가 집단 시설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감염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산후조리원은 민간 시장에서 산모들의 수요에 의해 탄생된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탄생 초기에는 국가의 관리지침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부터 소방 및 시설안전지침, 감염안전관리지침 등을 배포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모자보건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감염, 화재, 시설 관리 등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후조리원은 대부분의 산모가 출산 이후에 이용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모아애착을 비롯한 신생아 돌봄, 모유수유, 산모 건강관리, 부모교육 등 부모준비 활동이 이뤄지는 곳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탄생 초기에 비해 양질에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산모들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산모의 수요로 탄생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서비스는 산모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산후조리 시기에 이뤄져야할 모아애착 활동이나 모유수유가 산후조리원에서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 탄생 초기에는 모자동실이 기본이었으나 급격하게 산후조리원이 증가한 이후에는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의 감염·소방·시설 안전문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 향상과 서비스의 방향성 문제 등이 복잡하게 대두되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소방·시설 안전과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 규정을 입법하게 되었으며, 2015년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규정(모자보건법 제15조의 19)이 모자보건법에 신설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에 걸쳐 산후조리원 평가지표를 개발·개선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도에 2차례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2년에 걸친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 현장이 평가에 대한 인식과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평가를 조기에 도입하기 보다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2019년도에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여 올해로 4년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은 컨설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수준에 따라 1~3차 컨설팅, 1일 방문 컨설팅으로 구분된다. 4년간 1~3차 컨설팅은 총 94개소의 산후조리원에 제공하였으며 1일 방문 컨설팅은 155개 산후조리원에 제공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1~3차 컨설팅 시범평가 점수 분석 결과 98개의 지표 중 88개의 지표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21). 또한, 매년 컨설팅 후 실시된 산후조리원 컨설팅 만족도 조사에서도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산후조리원 컨설팅은 민간 수요에 맞춰 자발적으로 탄생한 산후조리원의 특성으로 인해 초기에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개입과 관리에 따른 반발과 저항이 있었다. 하지만 앞서 전술한 것과 같이 컨설팅을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되었고 현장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집단 거주 시설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지침과 컨설팅을 실시한 덕분에 다른 집단 거주 시설보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따라서 올해 실시된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도 산후조리원 감염·소방·시설 안전 확보와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나. 사업의 목적

앞서 전술한 본 사업의 필요성을 토대로 2022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모와 신생아 돌봄, 모아애착, 부모교육 및 감염예방 영역에서의 적정성 확보 및 건강관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산후조리원 대상 컨설팅을 시행한다.

둘째, 산후조리원에서의 집단 돌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소방·시설 안전 분야의 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셋째,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조장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내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넷째,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과 더불어 건강한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한다.

다섯째,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가족 대상의 부모교육 등을 통한 부모됨의 준비 및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의 토대를 마련한다.

여섯째, 산후조리원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실시될 본 평가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내용

2022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 관련 지표 등을 포함한 산후조리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지표에 관한 평가기준집, 평가 지표의 달성 여부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서식사례집을 수정·보완하여 발간한다.

둘째, 표준화된 방식과 내용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컨설턴트 교육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발간한다.

셋째, 산후조리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준비 단계로서의 컨설팅 사업 대상 산후조리원 모집 및 선정, 사업설명회 개최, 컨설턴트 모집 및 교육을 시행한다.

넷째,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1~3차에 걸친 개별 산후조리원 방문과 1일 방문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섯째, 1~3차 컨설팅 수료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여섯째, 컨설팅 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후 관리를 한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원

컨설팅 이전과 이후의 평가 지표 점수 변화를 분석한다.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및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유형별로 컨설팅 사업에 관한 사후만족도 조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였던 컨설팅 대상 기관과 컨설턴트 사후간담회 등을 통하여 컨설팅 사업에 관한 현장의 의견과 반응, 요구 등을 분석한다.

일곱째, 2022년도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을 수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낙상예방 포스터를 배포한다. 또한, 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산후조리원에 파견하여 양질의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2019년도부터 매년 배포되었던 부모교육 소책자(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추진 방법

가.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준비를 위한 관련 자료 발간

1) 2022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규정 및 서식사례집 발간

2018년도 확정된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매년 컨설턴트 및 현장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정하였다. 올해도 컨설팅 제공 과정 및 사후간담회를 통한 컨설턴트 및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한국산후조리원협회, 학계와 현장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평가지표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과 규정 및 서식사례집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책자와 파일형태로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과 컨설턴트에게 제공하였다.

2) 2022년 컨설턴트 매뉴얼 발간

2019년도에 개발한 산후조리원 컨설턴트 매뉴얼을 매년 평가기준 변경과 함께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있다. 올해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과 규정 및 서식사례집 변경사항과 컨설턴트 의견을 반영하여 컨설턴트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였다. 컨설턴트 매뉴얼을 기초로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컨설팅 참여 기관 모집 및 선정

2022년도에는 1~3차 컨설팅 기관 15개소와 1일 방문 컨설팅 기관 45개소를 목표로 하여 컨설팅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하였다. 컨설팅 참여 기관 모집을 위해 2022년 5월에 전국 492개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원 컨설팅 안내 자료 및 수요조사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받아 산후조리원 컨설팅 기관 모집 공문과 함께 컨설팅 수요조사지를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발송하였다. 또한, 한국산후조리원협회의 협조를 받아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실어 홍보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 컨설팅 참여 기관 비율이 낮았던 지역 보건소에 연구진이 직접 전화하여 컨설팅 기관 모집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독려하였다.

다. 산후조리원 대상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이전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수행 방식과 마찬가지로, 컨설팅에 참여하는 산후조리원은 반드시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듣도록 하였다. 또한,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산후조리원 컨설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참가 희망하는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022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설명회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설명회로 개최하였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온라인 사업 설명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보다 내용을 간소하게 구성하였다. 총 3차시로 구성하였으며 1차시에는 사업 책임자가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2차시는 산후조리원 지표전문가가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3차시는 이전년도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관련 문의가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을 강의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산후조리원은 중대 시민 재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후조리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컨설팅 사업 설명회는 총 1시간 30분이 되지 않게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온라인 설명회에 접속한 산후조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컨설팅에 관한 질문을 올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온라인 컨설팅 사업 설명회에 대한 참여 기관 수 등은 4장에 제시하였다.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자문회의/간담회 개최

산후조리원 컨설팅 방법을 개선하고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규정 및 서식사례집, 컨설턴트 매뉴얼, 사후 관리 방안, 산후조리원 평가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학계 전문가(예: 산부인과 및 신생아 전공 의사), 산후조리원 컨설턴트와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도에 개최되었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회의/간담회 일정 및 내용은 다음 〈표 Ⅰ-3-1〉 와 같았다.

〈표 Ⅰ-3-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자문회의/간담회, 연구진 협의 개최 일정 및 내용

구분	일자	참석자	회의 내용
컨설팅 준비	4.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1인, 주무관 1인	•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착수보고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4.7	전문가 1인, 컨설턴트 2인	•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및 컨설턴트 매뉴얼 수정 방안 논의
	4.13	전문가 2인	• 산후조리원 컨설팅 온라인 설명회 제작 논의 및 산후조리원 중대재해법 강의 내용 구성회의
	4.18	전문가 1인	• 산후조리원 컨설팅 수요조사 방법에 대한 논의
	4.29	컨설턴트 3인	•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교육 강사진 사전 교육 및 협의회
컨설팅 운영	7.1	연구진 회의	•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연구진 회의 • 컨설팅 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 사업 논의
	7.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1인, 주무관 1인	•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중간보고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7.26	한국산후조리업협회	• 산후조리원 컨설팅 평가지표 수정 방향 논의
	7.28	연구진 회의	•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중간보고 자료 공유, 부모교육 진행 방안 논의
	9.29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1인, 사무관 1인, 주무관 1인	• 컨설팅 사업 운영현황 보고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9.14	컨설턴트 2인 산후조리원 원장 1인	•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니터링 및 현장 의견 수렴
	10.7	전문가 1인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자문
사후간담회 관련	11.12	컨설턴트 16명	• 2022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컨설턴트 의견 청취 및 경험 공유
	11.1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1인, 사무관 1인, 주무관 1인 산후조리원 5개 기관	• 2022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에 대한 참여 기관 의견 청취

마. 컨설턴트 교육 및 관리

1) 컨설턴트 모집

컨설턴트 모집은 2018년도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2019년~2021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참여했던 산후조리원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1차 모집을 하고, 모자보건학회, 병원신생아간호사회, 병원여성간호사회를 통해 컨설턴트를 추천받았다. 2022년도에는 총 31명의 컨설턴트를 모집하였다.

2) 컨설턴트 교육 및 관리

산후조리원 컨설팅 신뢰성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간 편차 감소,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컨설턴트 교육을 진행하였다. 컨설턴트 교육 강사는 산후조리원 컨설팅 팀장 경험이 많았던 컨설턴트가 수행하였다. 산후조리원 컨설턴트 교육은 6월 3일, 4일, 10일에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였다. 컨설턴트 교육은 컨설턴트 매뉴얼을 중심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와 컨설턴트 역할에 대한 교육내용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그룹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2022년도 신규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기본 교육 이외에 추가적으로 8시간의 교육과 컨설팅 시 참관 교육까지 실시하였다. 또한, 컨설팅 시 코로나 감염 방역지침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였다.

본 사업의 컨설턴트가 수행하였던 컨설팅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컨설팅 참여 기관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컨설팅 중에 발생하는 민원과 지표와 관련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컨설팅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연구진은 컨설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처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 컨설턴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턴트 전용 온라인 모임 밴드를 개설하였다. 밴드를 통해 주요 공지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관련 현장의 주요 문의사항 공유, 산모·신생아 감염·돌봄 관련 이슈, 산후조리원 정책 기사 등을 공유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밴드에 공유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였다.

컨설턴트에게 코로나 감염지침을 공지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현장 방문 전 1주간에 걸친 하루 2회의 발열 체크 기록을 포함한 문진표 작성, 현장 방문 후 문진표 작성, 현장 방문 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에 관한 준수 여부를 컨설턴트별로 관리하였다. 보건 분야의 컨설턴트로 구성된 특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방역수칙 등을 엄격하게 잘 지켰고,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표시해서 제출하는 일정도 잘 지켰으며 백신 예방접종도 일반인들에 비해 빠르게 완료한 상태였다.

바. 산후조리원 대상 컨설팅 제공

2019년도에 개발되었던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을 토대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산후조리원 컨설팅은 크게 1~3차 컨설팅과 1일 방문 컨설팅으로 구분된다(이정림·이재희·구자연·엄지원·손인숙·최병민·서보림·송채원, 2019b). 1~3차 컨설팅은 평가지표에 대한 심층 컨설팅으로 컨설턴트가 3회 방문에 걸쳐 수행한다. 1일 방문 컨설팅은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관심은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려운 산후조리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림 Ⅰ-3-1]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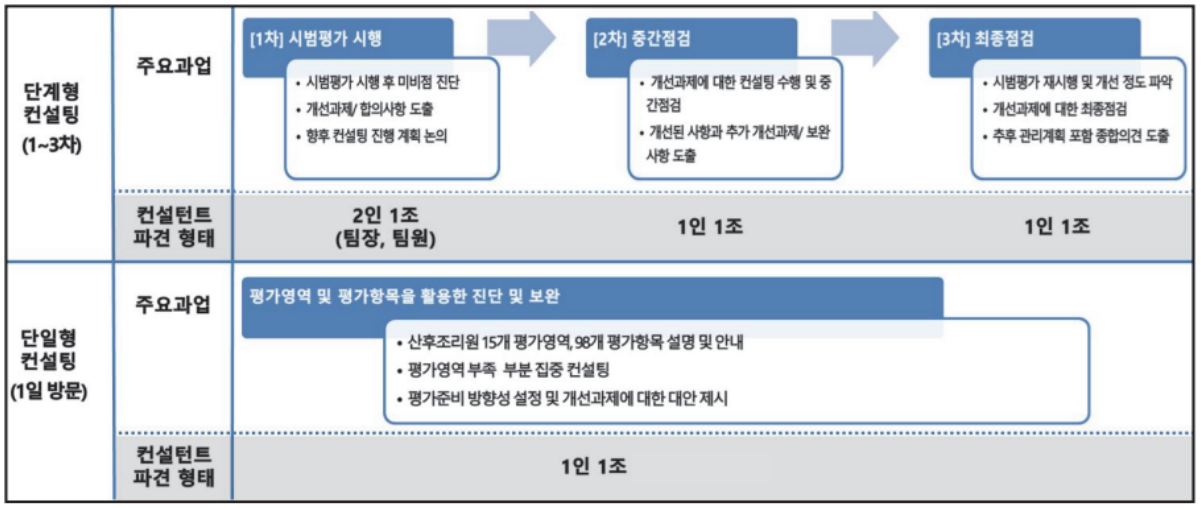

1) 2022년도 1~3차 산후조리원 컨설팅 제공

가) 1~3차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 및 운영 절차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은 1차 컨설팅 시작 전에 컨설팅 사무국에 간편형 자체평가지와 운영현황조사표를 작성한 후 제출하도록 했다. 자체평가지는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중 주요 지표에 해당하는 시설 적정성, 손 위생, 신생아 확인,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부모교육 지표를 평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산후조리원 담당자는 자체평가지를 기준으로 현재 산후조리원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운영현황 조사표와 자체평가지는 〈부록 3〉과 〈부록 4〉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1차 컨설팅은 2명(팀장-팀원)의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진행한다. 팀장과 팀원 컨설턴트는 산후조리원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기본적인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와 컨설팅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후 1차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 점수가 낮은 영역에 대한 컨설팅 계획을 세우고 산후조리원에 개선해야할 사항을 전달하였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서 목표로 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실시하였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방문했던 2명의 컨설턴트 중 팀장이 수행하였다. 팀장은 1차 컨설팅에서의 개선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이 어려울 시 보완책 등을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3차 컨설팅까지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3차 컨설팅도 팀장 1명이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컨설팅 개선 달성 사항을 점검하고, 1차 컨설팅 시에 비해 3차 컨설팅 시 산후조리원 평가 점수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평가를 다시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산후조리원 원장 또는 건강관리 책임자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유지 방안을 계획하고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마무리하였다. 컨설팅 이후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1~3차 산후조리원 컨설팅 대상 기관 부모교육

부모교육은 1~3차 컨설팅 수료한 기관 중 희망하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만 실시하였다. 부모교육은 산후조리원 방문 교육으로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60분 1회기로 구성하였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신생아기 부모됨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부모됨에 대한 이해는 2020년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를 기초로 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긍정 양육 129원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022년도 1~3차 컨설팅 운영 및 부모교육 절차는 아래 〈그림 Ⅰ-3-2〉와 같다.

[그림 Ⅰ-3-2] 2022년도 1~3차 컨설팅 및 부모교육 운영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계획 및 홍보	•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 컨설턴트 위촉 및 교육 • 컨설팅 사업/설명회 홍보(수요조사)	보건복지부 공문 발송 보건소/지자체 협조
⇩		
온라인 사업 설명회	• 산후조리원 평가 지침 교육 • 컨설팅 진행 방법 안내	원하는 산후조리원 모두 참여 가능
⇩		
컨설팅 대상 기관 선정	• 컨설팅 운영체계 안내 • 컨설팅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산후조리원 중 1~3차 컨설팅 대상 기관 15개소 선정
⇩		
1차 컨설팅	• 시범평가 시행과 컨설팅 병행 • 현장에서 원하는 부분과 전문가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파악한 부분 점검	컨설턴트 2명이 시범평가 수행
⇩		
2차 컨설팅	• 중간점검 및 피드백	컨설턴트 1명이 컨설팅 수행
⇩		
3차 컨설팅	• 본 평가에 준하여 시범평가 진행	컨설턴트 1명이 시범평가 수행
⇩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 컨설팅 완료 기관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 위주) 실시	부모교육 강사 1명이 1~2시간 분량의 강의 진행
⇩		
결과보고	• 컨설팅 만족도 조사(정성평가) • 컨설팅 진행 및 결과보고	향후 사업에 활용

자료: 이정림 외(2021).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12~13, 그림 Ⅰ-3-2를 토대로 2022년도 운영 절차를 재구성하였음.

2) 1일 방문 산후조리원 컨설팅 제공

2022년도에 1일 방문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다. 산후조리원 운영상 장시간 소요되는 1~3차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참여하기 어려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하루 1회 방문으로 완료되

는 컨설팅 모형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1일 방문 컨설팅을 통하여 산후조리원 평가 준비 내용과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또한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사전 질의를 받아 산후조리원에서 평가영역 중 부족한 영역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2021년도와 마찬가지로 1일 방문 컨설팅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산후조리원 평가영역과 개선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1~3차 컨설팅에서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1일 방문 컨설팅은 하루 동안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및 산후조리원에서 개선해야하는 사항을 도출하고 시범평가까지 진행해야하는 관계로 숙련도가 높은 컨설턴트를 투입하였다.

1일 방문 컨설팅 기관 모집도 1~3차 컨설팅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공문과 전화 수요조사를 통해 모집하였다.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관심이 있었던 산후조리원은 이미 이전년도에 대다수 참여하였기 때문에 한 번도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산후조리원을 모집하려고 노력하였다.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도 1~3차 컨설팅에 참여했던 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산후조리원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참여해야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1일 방문 컨설팅을 받기 전에 산후조리원에서는 운영현황과 자체평가지 등을 육아정책연구소 컨설팅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했다. 담당자는 해당 운영현황 자료와 자체평가지를 컨설팅이 실시되기 전 컨설턴트에게 전달하여 컨설팅 시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1일 방문 컨설팅을 종료한 이후에는 참여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후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1일 방문 컨설팅 운영 절차는 아래 그림에 제시하였다.

[그림 Ⅰ-3-3] 2022년도 1일 방문 산후조리원 컨설팅 운영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계획 및 홍보 제반 준비	•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 컨설턴트 위촉 및 교육 • 컨설팅 사업/설명회 홍보(수요조사)	보건복지부 공문 발송 보건소/지자체 협조 한국산후조리업협회 협조
⇩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신청 및 접수 •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 선정 및 통보	신청 기관 중 선정
⇩		
온라인 사업 설명회	• 산후조리원 평가 지침 교육 • 컨설팅 진행 방법 안내	원하는 산후조리원 모두 참여 가능
⇩		
1일 방문 컨설팅	•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 준비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안내	컨설턴트 1명이 시범평가 수행
⇩		
결과보고	• 컨설팅 진행 및 결과보고	향후 사업에 활용

자료: 이정림 외(2021).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15~16, 그림 Ⅰ-3-4를 토대로 2022년도 운영 절차를 재구성하였음.

3) 컨설팅 시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2022년에도 코로나 전염 예방을 위해 컨설팅 시 방역지침을 제정하여 배포하였다. 주요 지침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3차 컨설팅 시 현장 관찰은 팀장만 신생아실 등 주요 관찰 장소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둘째, 컨설팅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역물품을 컨설턴트에게 제공하였다. 제공한 물품은 수술실용 가운, 장갑, KF94 마스크, 체온계 등이었다.

셋째, 컨설턴트가 산후조리원 방문 전, 방문 시, 방문 후의 준수해야할 방역지침을 제공하였다. 컨설팅을 위해 산후조리원 방문 시 분리된 장소(원장실, 인근 카페 등)에서만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해당 장소에서 종사자 면접 등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산모 면접과 신생아실 방문은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산후조리원 내의 점검은 일회용 검진복을 착용 후 일정 시간(오후 시간 1~2시간)에만 관찰하도록 하였다.

2022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당일에 컨설턴트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 방역지침과 산후조리원에서 협조해주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다음 〈표 Ⅰ-3-2〉에서 제시하였다.

〈표 Ⅰ-3-2〉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사항

장소	내용	컨설턴트 준수사항	산후조리원 협조사항
산후조리원 방문 전	•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준비	• 산후조리원 입장 전·후 마스크 반드시 착용	• 컨설턴트가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외부인과 접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동선 고려
산후조리원 입구 및 방문객실	•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준비	• 입장 명부, 문진표 작성 및 체온 측정 • 방문객실에서 손 씻기 • 원장실 혹은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 사회적 거리 유지(1m 이상)	• 문진표 작성 및 체온 측정 • 사전에 컨설턴트 방문을 산후조리원 내 공지하여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종사자와의 접촉 최소화 (※ 산모 및 신생아의 경우 전면 접촉 금지) • 산후조리원 내에서 사람 간 사회적 거리 유지(1m 이상) • 컨설턴트의 입·퇴장시간 확인
원장실 (혹은 독립된 공간)	• 컨설턴트 및 평가계획 소개 • 산후조리원 소개 • 규정/문서 검토	• 사람들 간 사회적 거리 유지(1m 이상) • 불필요한 접촉 자제	• 컨설턴트와의 사회적 거리 유지 (1m 이상) • 불필요한 접촉 자제
	• 현장 방문 및 규정 및 문서 검토	• 컨설턴트 2인 중 1인만 세탁실 및 조리실 등 현장 방문 일정시간만 점검 (예: 1~2시간 이내) ※ 현장 방문하는 컨설턴트는 방역키트(수술용 가운 및 장갑, 마스크) 착용 후 점검 ※ 현장 방문 시 산후조리업자와의 접촉 최소화 ※ 산모 및 신생아실은 방문하지 않음	• 현장점검은 원 운영상황에 맞게 오전 혹은 오후에 진행 • 현장검토 컨설턴트 동선에 산후조리업자와 접촉 최소화 • 산모 및 신생아와는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협조 • 신생아실 컨설팅은 신생아실 밖에서 외부관찰로 진행 (내부 사진촬영 요구할 수 있음)

장소	내용	컨설턴트 준수사항	산후조리원 협조사항
		• 나머지 1인은 원장실(독립된 공간)에서 서류 검토	• 종사자 면담 시에는 해당 종사자가 일정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로 와서 면담 진행
점심시간	•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가 이루어질 예정	• 동행 컨설턴트와 식사 시 마주보지 않고 식사를 하며, 1m 이상 간격을 유지	• 컨설턴트 간 마주보지 않고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식사
산후조리원 퇴장	• 감염예방을 위한 추후활동	•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컨설턴트가 다녀간 장소에 대해 소독 및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자료: 이정림 외(2021).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16~17, 표 Ⅰ-3-2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사항.

사. 컨설팅 효과 분석

컨설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3차 컨설팅 기관을 대상으로 1차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점수와 3차에 실시한 시범평가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시범평가는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에 소개되어 있는 15개의 영역과 98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체 지표 점수에 대한 1~3차 컨설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컨설팅 수료 기관을 대상으로 사후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컨설팅 사후만족도 조사 내용은 컨설팅 횟수, 컨설팅 주기, 컨설팅 소요 시간, 규정 및 서식사례집,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 컨설팅 내용에 관하여 4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와 1~3차 컨설팅을 수료한 산후조리원 원장을 대상으로 사후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사후간담회를 통해 컨설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개선사항, 지표에 대한 의견, 컨설팅 절차, 최근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컨설팅 사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아. 컨설팅 사후 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컨설팅에 참여했던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우선 2020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 개발하였던 부모교육 소책자를 산후조리원 컨설팅 수료 기관에 배포하였다. 또한 1~3차 컨설팅 수료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전술하였듯이 해당 부모교육 소책자를 근거로 하여 부모교육도 별도로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낙상예방 포스터 등 이전 산후조리원 컨설팅에서 인센티브로 활용하였던 포스터도 인센티브로 배포하였다.

추가적으로 1~3차 컨설팅 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컨설팅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산후조리업자, 건강관리책임자 또는 건강관리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컨설팅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1~2페이지 정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수기공모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장에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4. 본 사업의 추진체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시도·보건소의 협력 및 연계로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총괄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사업성과 평가를 받고 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2019년도부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산후조리원 컨설팅 모형을 토대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모자보건학회에서는 컨설턴트 교육, 지표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신생아간호사회와 병원여성간호사회 소속 간호사가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엄격한 기준에 맞춰 컨설턴트를 추천하고 있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에서는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대한 현장의견을 전달해주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있다.

〈표 Ⅰ-4-1〉 컨설팅 사업 추진체계, 협력기관 및 협력내용

구분	협력기관	협력내용
컨설팅 총괄 및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방향 설정, 컨설팅 과정 점검 및 사후 평가
	시도보건소	컨설팅 수요조사, 컨설팅 사업 진행 협조
	육아정책연구소	컨설팅 총괄 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 홍보, 컨설팅 참여 기관 모집 및 선정, 컨설턴트 모집 및 선정, 컨설턴트 교육 및 관리,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규정 및 서식사례집 제작, 컨설턴트 매뉴얼 제작, 컨설팅 사업 관리
협력기관	한국모자보건학회	컨설팅 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협의
	병원신생아간호사회	컨설턴트 교육 참여 및 교육 수행,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매뉴얼 검토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컨설턴트 교육 참여,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매뉴얼 검토

자료: 이정림 외(2021).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19, 표 Ⅰ-4-1의 표를 일부 수정하여 제시함.

Ⅱ

산후조리원 평가와 컨설팅 배경

01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제도 도입 추진 연혁

02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의 변화 경과

Ⅱ. 산후조리원 평가와 컨설팅 배경

1.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제도 도입 추진 연혁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녀를 출산한 산모가 노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받던 전통적 방식의 산후조리를 받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이정림 외, 2018). 최근에 수행되었던 2018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2017년 출산한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것(보건복지부, 2018)으로 나타났던 바 있고,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020년에 출산한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에 달하는(이소영·최인선, 2021) 것으로 나타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가 집단 돌봄을 받는 산후조리원의 특성 상 집단 감염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염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정림 외, 2019b).

이에 국가에서는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을 만들었고(보건복지부, 2013), 해당 지침에는 종사자 위생관리, 시설·환경관리,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이정림 외, 2020; 25). 그러나 이후에도 산후조리원 감염 사례가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10. 28.)을 발표하여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및 감염관리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도에 모자보건법 시행령(2012. 12. 공포, 2016. 6. 시행)을 개정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만들고 산후조리원의 감염과 안전사고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하여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산후조리원 평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 걸쳐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기준 및 평가 방식 등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에 대한 현장 수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포함한 일련의 용역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이정림 외, 2019b). 2016년도에는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지표가 개발(정인숙 외, 2016)되어 서울, 경기와 부산 지역의 산후조리원 5개소를 대상으로 1차 시범평가 사업이 수행되었고,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개발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전국의 9개소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12개소 산후조리원 대상의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2차 시범사업이 수행되었다(정연이·이운규·이경림, 2017).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시범사업 이후의 평가 지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공공산후조리원

3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의 산후조리원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3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이정림 외, 2018). 또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는 감염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의료 및 안전 분야 전문가를 통하여 개발하여 2019년도에 산후조리원에 배포하고자 하였다.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내용에 관한 매뉴얼 개정은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근거 의학 관점에서 재평가하여 기존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을 개정(보건복지부, 2019)하여, 산후조리원 입실 전후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안내 및 교육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며 감염병 발생 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파 예방 조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이정림 외, 2020: 26). 산후조리원 안전과 관련한 매뉴얼 내용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였던 가장 최근의 3차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 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현장의 상황은 많이 열악하였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평가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본 평가를 수행할 시 현장의 반발과 협조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이정림 외, 2018). 무엇보다도 표준화된 규정 및 서식 제공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장에서는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의 산후조리업자나 건강관리책임자가 많음으로 인하여 평가 영역별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규정 및 서식 등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은 조사위원의 어려움과도 연계되어 현장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평가에 필요한 규정이나 서식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곳곳에 흩어져서 관련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조사위원이 서류를 점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실제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도 어렵게 하는 등과 같은 문제로 연계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장과 조사위원 모두가 이를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이정림 외, 2018: 109).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현장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과 본 평가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규정 및 서식사례집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다음의 2가지 사업을 수행하기로 산후조리원 평가사업의 방향이 재정립되었다. 첫째, 본 평가 전에 평가에 관한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현장에서 평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상담 제공을 통하여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산후조리원 평가와 서비스 질 제고에 필요한 규정 및 서식사례집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본 사업을 통해 마련된 규정 및 서식사례집을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도에 규정 및 서식사례집 마련을 위한 과제와

컨설팅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를 각각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더불어서 2019년도에는 모자보건법 일부가 개정(2019. 1.15. 공포, 2020. 1.16, 시행)됨으로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등에 관한 의무교육 대상자가 산후조리업자였던 것에서 확대되어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포함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이정림 외, 2019a)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위탁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컨설팅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로써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컨설팅 모형이 개발(이정림 외, 2019b)되었고, 컨설턴트 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컨설턴트용 교육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졌다(이정림 외, 2019c). 또한, 2019년도에는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규정 및 서식사례집 마련을 위한 과제와 더불어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의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이 수행되었다.

이후 2019년도에 개발되었던 컨설팅 사업 모형을 토대로 2020년도에 2차년도 컨설팅, 2021년도에 3차년도 컨설팅, 2022년도에 4차년도 컨설팅이 제공되었다. 1차년도 컨설팅 사업을 시작으로 2차년도 컨설팅 사업 이후부터는 평가의 목적이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임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에 산후조리원에서의 산모와 신생아 돌봄, 모아애착, 부모교육 및 감염예방 영역에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건강관리책임자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포함한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산후조리원의 제반 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목표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2024년도에는 본 평가가 기획되어 있어 2023년까지는 컨설팅 사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1차년도 컨설팅 사업에 이어 2차년도에서 4차년도로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평가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컨설팅 시작단계의 시범평가 점수와 컨설팅 종결단계에서의 시범평가 지표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져서 현장에서의 서비스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여전히 컨설팅 시작단계의 시범평가 점수로는 본 평가의 기준 점수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남지만 그동안 컨설팅을 받았던 기관의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하여 개선된 효과가 남아 있으리라 기대한다.

컨설팅 사업을 지속하면서 컨설턴트용 교육 매뉴얼과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 규정 및 서식사례집이 더욱 정교화 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여겨진다. 이후 본 평가 수행 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로써 현장에서 수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나 평가를 하는 사람 모두에게 명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서식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서식에 대해서는 앱 개발 등을 통하여 접근성과 활용성, 자료 저장 등을 용이하게 해 줄 필요도 있다. 향후 서식 준비를 줄여주거나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감염관리지침 제작 등을 포함하여 2019년 이후부터 컨설팅 사업이 추진되어온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 Ⅱ-1-1]에서 제시하였다.

[그림 Ⅱ-1-1] 산후조리원 평가 및 컨설팅 추진 경과

년도	주요내용	세부내용
2013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제작	•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제작 - 종사자 위생관리, 시설·환경관리,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예방과 관리방법 제시
2015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 발표	•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 발표(2015. 10. 28) -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 - 모자보건법령 및 지침 개정 *감염관리 지침 법적 근거 마련 *모자동실 노력 의무 명시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감염병 의심자 업무종사 제한 근거 마련 *감염예방교육 대상 확대 *의무불이행 처벌 강화 *법 위반사실 공표 도입 *채용 전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감염예방교육 주기 단축(2년→1년) *영유아 사전관찰실 설치 규정 구체화 *인력기준 강화 *보건소 점검주기 단축(반기별→분기별) 등
2015 ~ 2016	모자보건법 개정 (평가 법적기반 마련)	• (제15조의19 신설, 산후조리원 평가) - 산후조리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음. - 산후조리원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음. [2015. 12. 22 본조신설] [2016. 6. 23 시행] [법률 제13597호, 2015. 12. 22. 일부개정][1]
2016	평가기준 마련 1차 시범평가	• 보건복지부·부산대 산학협력단, 산후조리원 평가 및 산후조리 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2] -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개발 - 산후조리원 1차 시범평가 시행
2017	2차 시범평가	•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3] -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수정·보완 - 산후조리원 2차 시범평가 시행
2018	3차 시범평가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4] -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수정·보완 - 산후조리원 3차 시범평가 시행
	감염·안전 관리 매뉴얼 개발	•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관리 매뉴얼' 개발
2019	컨설팅 도입·실행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모형 개발 - 산후조리원 컨설팅 1차년도 시행 *1~3차 컨설팅 *1일 방문 컨설팅
	평가가이드라인 마련 종사자 교육자료 개발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 평가기준별 규정 및 서식사례집 개발 - 평가가이드라인 현장 수용성 검증 -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자료 개발(2019.1.15.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 근거)
	감염·안전 관리 매뉴얼 배포	•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관리 매뉴얼' 현장 배포

1) 법률쟁점서비스. 모자보건법 제15차 개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97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법률 요약·입법경과. http://lawpro.nanet.go.kr/law/summary/lawSummary.do?summarySid=7755&proNum=13597&searchCon=&searchKey=&searchAscCode=&searchOrgCode=&searchGubun=pro&fromDate=&toDate=&keyGubun=standing&searchIn1=&printYn=&selSummary=7755%2C13597 (2022 9. 1. 인출)

년도	주요내용	세부내용
2020 2021 2022 2023	2차년도 컨설팅 3차년도 컨설팅 4차년도 컨설팅 5차년도 컨설팅	•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도 4차년도 컨설팅 사업 실행 • 산후조리원 평가의 현장수용성 제고, 현장의 평가 준비도 제고 • 산모와 신생아 돌봄, 모아애착, 부모교육 및 감염예방 영역에서의 적정성 확보 및 건강관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질 제고 •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 분야의 사고 예방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컨설팅 제공
2024 평가 시행 예정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산후조리원 평가) 의거,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

자료: 이정림 외(2019b).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19~20, 그림 Ⅱ-1-1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2.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의 변화 경과[5)]

산후조리원 컨설팅의 근거는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이다.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은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 평가 조항이 입법된 이후에 3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 및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뒤 2018년에 확정되었다. 2018년도에 최종 6개 대영역, 15개 중영역, 30개 소영역, 98개 지표로 최종 확정되었다. 최초의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이 개발된 2016년에는 6개 대영역, 14개 중영역, 24개 소영역, 12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6~2018년도의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비교표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2017년은 2016년 대비 질 관리 영역에서 자체점검이 빠지고 질 관리와 만족도 평가로 부분 변경되었으며, 신생아 관리에서 영아돌연사 예방관리 영역이 빠지고 안전관리로 포괄적으로 부분 변경되었다(이정림 외, 2019b: 20). 2018년은 2017년 대비 경영관리(리더쉽 및 조직문화)가 추가되었으며, 산모교육이 부모교육으로 포괄적으로 부분 변경되었다(이정림 외, 2019b: 20).

2) 정인숙·조동숙·이주현·김지윤·송영호·이종호·이은주(2016). 산후조리원 평가 및 산후조리 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3) 정연이·이운규·이경림(2017).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4) 이정림·손인숙·최병민·엄지원·조미라·김희선(2018).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5) 본 절은 이정림·이재희·구자연·엄지원·손인숙·최병민·서보림·송채원(2019b)이 수행한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pp. 20 ~ 31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최근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변화 내역을 반영한 내용임.

〈표 Ⅱ-2-1〉 2016~2018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비교

2016년			2017년			2018년		
평가항목		평가지표	대/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	대/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
대/중영역	소영역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Ⅰ.1 인력 적정성		1	1. 인력적정성	1.1 인력적정성	1	1. 인력적정성	1.1 인력적정성	1
Ⅰ.2 인력 전문성	Ⅰ.2.1. 종사자 채용/유지	6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4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4
	Ⅰ.2.2. 종사자 교육/계발	5		2.2 종사자 교육·계발	3		2.2 종사자 교육·계발	3
	Ⅰ.2.3. 종사자간 의사소통	1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2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2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Ⅱ.1 시설 적정성		7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4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4
Ⅱ.2 시설 안전성	Ⅱ.2.1. 설비관리	1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5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5
	Ⅱ.2.2. 소방안전관리	6		4.2 소방안전관리	5		4.2 소방안전관리	4
	Ⅱ.2.3. 낙상관리	4		4.3 낙상예방관리	2		4.3 낙상예방관리	2
Ⅲ. 운영과 질 관리								
Ⅲ.1 운영관리	Ⅲ.1.1 입퇴원관리	7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5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5
	Ⅲ.1.2 의료기관 연계/이송	3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3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2
	Ⅲ.1.3 문서관리	3		5.3 문서관리	4		5.3 문서관리	3
	Ⅲ.1.4 방문객관리	4		5.4 방문객관리	3		5.4 방문객관리	3
Ⅲ.2 질 관리	Ⅲ.2.1 만족도 평가	1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4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5
	Ⅲ.2.2 자체점검	6				7. 경영관리	7.1 리더쉽 및 조직문화	3
Ⅳ. 감염예방관리								
Ⅳ.1 감염예방	Ⅳ.1.1. 손 위생	7	7. 감염예방	7.1 손 위생	5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5
	Ⅳ.1.2. 개인보호구 착용	2		7.2 개인보호구 착용	2		8.2 개인보호구 착용	2
	Ⅳ.1.3.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	7		7.3 세탁물 관리	2		8.3 세탁물 관리	2
	Ⅳ.1.4. 물품소독/관리	6		7.4 물품 소독·관리	4		8.4 물품 소독·관리	3
	Ⅳ.1.5. 환경관리	3		7.5 환경관리	2		8.5 환경관리	2
	Ⅳ.1.6. 급식관리	7		7.6 급식관리	6		8.6 급식관리	6
	Ⅳ.1.6 종사자 관리	3		7.7 종사자 관리	3		8.7 종사자 관리	3
Ⅳ.2 감염관리		2	8. 감염관리	8.1 감염관리	2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2
Ⅴ. 산모 돌봄 서비스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Ⅴ.1. 산모 건강평가		3	9. 산모 건강평가	9.1 산모 건강평가	3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2
Ⅴ.2. 모아애착	Ⅴ.3.1. 모자동실	4	10. 모아애착	10.1 모자동실, 모유수유	3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3
	Ⅴ.3.2. 모유수유	4						
Ⅴ.3. 산모교육		5	11. 산모교육	11.1 산모교육	5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6
Ⅵ. 신생아 돌봄 서비스								
Ⅵ.1 신생아 확인		2	12. 신생아 확인	12.1 신생아 확인	3	13. 신생아확인	13.1 신생아 확인	3
Ⅵ.2 신생아 건강평가		3	13. 신생아 건강평가	13.1 신생아 건강평가	3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3
Ⅵ.3 신생아관리	Ⅵ.3.1. 위생 관리	5	14. 신생아관리	14.1 위생관리	2	15. 신생아관리	15.1 위생관리	2
	Ⅵ.3.2. 신생아 수유	5		14.2 신생아 수유	5		15.2 신생아 수유	5
	Ⅵ.3.3. 영아돌연사예방관리	4		14.3 안전관리	3		15.3 안전관리	3
14	24	128	14	29	98	15	30	98

주: 주황색 셀은 약소한 변화, 파란색 셀은 질적인 변화가 있는 평가항목임.

자료: 1) 정인숙 외(2016). 산후조리원 평가 및 산후조리 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pp. 105-111, 115.
2) 정연이 외(2017).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pp.68-70.
3) 이정림 외(2018).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127-130.

가. 2016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2016년도 평가기준 개발 목표는 “산후조리원 평가는 모든 산후조리원이 법적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고 올바른 산후조리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며, 지속적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정인숙 외, 2016: 42). 평가원칙은 포괄적 평가(산후조리원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 객관적 평가(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 전문적 평가(일정 자격을 갖추고 평가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은 외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절대 평가(일정 수준의 질 보장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보편적 평가(모든 산후조리원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 선순환적 평가(평가결과에 따른 자발적 개선방안을 유도하는 평가)의 6가지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기조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유사평가사업인 의료기관 인증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의 방향과 초안을 마련하였다(정인숙 외, 2016: 15). 앞서 진술한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에 따라 감염관리나 안전을 위한 기준은 모든 산후조리원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산모에게 도움은 되나 필수적 요소는 아닌 마사지나 관리프로그램 등은 그와 대별하여 접근하였다(정인숙 외, 2016: 15).

또한 전통적 산후조리와 달리 특정 장소에서, 종사자에 의해, 다수의 산모와 신생아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므로 ‘산모와 신생아의 집단 거주, 종사자에 의한 신생아 돌봄’을 문제점으로 도출하고,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모아애착과 산모역량강화, 감염예방관리, 양질의 돌봄서비스, 지속적 질 관리’를 개선전략으로 삼아 ‘전문적, 안전한, 모아친화적, 건강한 산후조리’를 목표로 하는 평가기준 초안을 마련하였다(정인숙 외, 2016: 15). 평가기준 초안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문가 검토, 이해당사자 검토, 시범평가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평가항목은 6개 대분류, 12개 중분류, 24개 소분류로 구성되었고, 평가지표는 128개가 개발되었으며 이 중 필수지표[6]는 22개, 선택지표는 106개로 구성되었다(정인숙 외, 2016: 42). 최종 6개 대분류는 1)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운영과 질 관리, 4) 감염예방관리, 5) 산모 돌봄서비스, 6) 신생아 돌봄서비스이다. 평가지표는 통상적인 인력, 시설, 운영, 질 관리, 감염예방뿐만 아니라 산모 돌봄서비스로 산모 건강평가, 모아애착(모자동실, 모유수유), 산모교육을 포함하였고, 신생아 돌봄서비스는 신생아 확인, 신생아 건강평가, 신생아관리(위생, 수유, 돌연사예방) 등을 포함함으로써 기본적인 감염 및 안전관리, 모성보호와 모아애착의 강조 등을 포괄한 것이 골자이다(정인숙 외, 2016: 42-43). 평가기준 개발과 더불어 실시된 첫 번째 시범평가는 산후조리원 평가지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평가소요시간 등을 추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정인숙 외, 2016: 27).

시범평가를 통해 이는 2016년 최종 평가기준에 반영되었다(정인숙 외, 2016: 27). 또한 평가수행기관으로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육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후보로

6) 법적기준과 전문가 검토에서 높은 중요성 점수를 보인 평가지표를 필수지표로 설정함(정인숙 외, 2016: 42).

서 비교하여 산후조리원의 특성에 부합하면서 평가·인증경험을 겸비하고 충분한 평가위원을 보유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평가수행기관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정인숙 외, 2016: 49).

〈표 Ⅱ-2-2〉 2016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최종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영역
대/중영역	소영역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Ⅰ.1 인력 적정성		1. [필수]법정 인력기준을 충족한다.	(S)
Ⅰ.2 인력 전문성	Ⅰ.2.1. 종사자 채용/유지	1. [선택]산후조리업자는 업무 개시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S)
		2. [선택]건강관리책임자는 업무 시작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S)
		3. [선택]간호사의 30% 이상이 업무 시작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P)
		4. [선택]간호조무사의 30% 이상이 업무 시작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P)
		5. [선택]종사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P)
		6. [선택]종사자 인사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종사자별로 보관한다.	(P)
	Ⅰ.2.2. 종사자 교육/계발	1. [필수]산후조리업자는 법정 교육기준을 충족한다.	(S)
		2. [선택]종사자를 위한 업무관련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외부 교육의 참여를 지원한다.	(P)
		3. [선택]종사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감염관리교육을	(P)
		4. [선택]신규 종사자에게 업무시작 1주 이내 업무오리엔테이션이 제공된다.	(P)
		5. [선택]종사자 교육이수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종사자별로 보관한다.	(P)
	Ⅰ.2.3. 종사자간 의사소통	6. [선택]종사자간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도록 서면 또는 전산기록지를 이용한다.	(P)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Ⅱ.1 시설 적정성		1. [선택]산모실과 신생아실은 2층 이하에 위치한다.	(S)
		2. [선택]신생아실에는 신생아 요람 8개당 1개의 손 위생용 세면대가 있다.	(S)
		3. [선택]신생아실별로 16명 이하의 신생아로 제한한다.	(S)
		4. [필수]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는 60cm 이상 떨어져 있다.	(P)
		5. [선택]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는 90cm 이상 떨어져 있다.	(P)
		6. [선택]신규 입원 신생아의 건강상태 관찰 공간은 다른 신생아와 90cm이상 떨어져 있고 칸막이가 있다.	(P)
		7. [선택]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P)
Ⅱ.2 시설 안전성	Ⅱ.2.1. 설비관리	1. [선택]가스, 전기, 수도 설비에 대해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문서화한다.	(P)
	Ⅱ.2.2. 소방안전관리	1. [필수]소방안전에 대한 문서화된 규정(소방계획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다.	(S)
		2. [필수]산후조리원내의 안전시설 및 피난시설・방화구획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한다.	(P)
		3. [선택]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의 임무가 편성되어 있고, 연 1회 이상 운영된다.	(P)
		4. [선택]산모에게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세부 대응절차(피난절차, 피난경로 등)와 신생아 피난계획을 설명한다.	(P)
		5. [선택]응급상황시 종사자와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call bell 등)가 있다.	(P)
		6. [필수]산후조리원 내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한다.	(P)
	Ⅱ.2.3. 낙상관리	1. [선택]산모실과 신생아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물기 등이 없다.	(S)
		2. [선택]산모실과 신생아실 문에는 턱이 없다.	(S)
		3. [선택]산모와 종사자의 신발은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다.	(S)
		4. [선택]산모실과 신생아실에 낙상예방 안내문이나 스티커 등이 부착되어 있다.	(P)
Ⅲ. 운영과 질 관리			
Ⅲ.1 운영관리	Ⅲ.1.1 입퇴원관리	1. [필수]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S)
		2. [필수]산후조리업자는 입원시점에 약관, 이용요금표, 환불규정 등을 산모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있다.	(P)
		3. [선택]산후조리업자는 입원시점에 산모에게 보안계획에 대해 교육한다.	(P)
		4. [선택]산후조리업자는 입원시점에 산모에게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에 대해 교육한다.	(P)
		5. [선택]산후조리업자는 입원시점에 산모에게 방문객 관리계획에 대해 교육한다.	(P)
		6. [선택]산후조리업자는 입원시점에 산모에게 감염예방관리계획에 대해 교육한다.	(P)
		7. [선택]산후조리업자는 입원시점에 산모에게 질환이나 감염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송계획에 대해 교육한다.	(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영역
대/중영역	소영역		
	Ⅲ.1.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필수]산모/신생아의 의료기관 이송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으며, 이를 준수한다.	(S)
		2. [선택]산모/신생아의 의료기관 이송 시 이송절차가 있으며, 이를 준수한다.	(P)
		3. [선택]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는 지침이 있으며, 이를 준수한다.	(P)
	Ⅲ.1.3 문서관리	1. [선택]문서의 기록이나 수정 원칙이 있으며, 이를 준수한다.	(S)
		2. [선택]문서의 대출, 열람 및 반납 원칙이 있으며, 이를 준수한다.	(P)
		3. [선택]작성이 완료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에 보관한다.	(P)
	Ⅲ.1.4 방문객관리	1. [필수]방문객의 방문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	(S)
		2. [선택]방문객의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을 입구에 게시한다.	(P)
		3. [필수]방문객은 산모가 지정한 보호자 1인으로 제한하며, 이를 준수한다.	(P)
		4. [선택]방문객은 산후조리원 출입시 손 위생을 실시한다.	(P)
Ⅲ.2 질 관리	Ⅲ.2.1 만족도 평가	1. [선택]산모를 대상으로 1회 이상 만족도를 평가하고 업무개선에 활용한다.	(S)
	Ⅲ.2.2 자체점검	1. [선택]1년에 1회 이상 신생아실 이용시간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P)
		2. [선택]1년에 1회 이상 모유수유율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P)
		3. [필수]1년에 1회 이상 종사자의 손 위생 실천율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P)
		4. [선택]1년에 1회 이상 감염발생양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P)
		5. [선택]1년에 1회 이상 안전사고발생양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P)
		6. [선택]1년에 1회 이상 산모 만족도 평가결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P)
Ⅳ. 감염예방관리			
Ⅳ.1 감염예방	Ⅳ.1.1. 손 위생	1. [선택]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손 위생 지침에 따라 손 위생이 필요한 상황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S)
		2. [선택]종사자의 손 위생 수행률이 100%를 유지한다.	(O)
		3. [필수]종사자의 손 위생 수행률이 80%를 유지한다.	(O)
		4. [선택]산모의 손 위생 수행률이 100%를 유지한다.	(O)
		5. [선택]산모의 손 위생 수행률이 80%를 유지한다.	(O)
		6. [선택]손 위생에 적절한 물품이 충분히 공급된다.	(P)
		7. [선택]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P)
	Ⅳ.1.2. 개인보호구 착용	1. [선택]종사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S)
		2. [선택]충분한 양의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구비하고 있다.	(S)
	Ⅳ.1.3.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	1. [선택]사용한 세탁물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수집한다.(P)	
		2. [선택]혈액/분비물이 묻은 세탁물은 비닐봉지에 봉한 후 "오염세탁물"용기에 수집한다.	(P)
		3. [선택]세탁물 수집 장소는 매일 청소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P)
		4. [선택]적절한 세탁방법을 유지한다.	(P)
		5. [선택]세척된 세탁물은 전용 보관실내의 노출되지 않는 장에 보관한다.	(P)
		6. [선택]혈액/분비물이 묻은 폐기물은 비닐봉지에 봉한 후 폐기물 용기에 폐기한다.	(P)
		7. [선택]사용한 세탁물과 폐기물 햄퍼나 용기를 운반하는 전용 카트가 있다.	(P)
	Ⅳ.1.4. 물품소독/관리	1. [선택]가습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S)
		2. [필수]신생아용품(기저귀, 물티슈, 비누, 로숀, 목욕대야)은 신생아마다 개별 보관·사용한다.	(P)
		3. [선택]신생아가 사용 중인 요람은 매일 적절하게 닦는다.	(P)
		4. [선택]신생아 요람과 목욕대야를 다른 신생아에게 재활용하는 경우 적절한 소독지침이 있으며, 이를 준수한다.	(P)
		5. [선택]수유물품(젖병, 젖꼭지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고 건조 후 전용 보관함에 보관한다.	(P)
		5. [선택]유축깔때기와 좌욕대야는 산모마다 개별 보관·사용한다.	(P)
		6. [선택]물품소독제는 국내외 인증기관의 등록 제품을 사용한다.	(P)
	Ⅳ.1.5. 환경관리	1. [선택]실내 환경과 청소용품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S)
		2. [선택]환경소독제는 안전성이 확인된 인증기관 승인제품을 사용한다.	(P)
		3. [선택]환경소독제는 권장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한다.	(P)
	Ⅳ.1.5. 급식관리	1. [필수]조리장 위생 및 감염관리는 식품위생 관련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S)
		2. [선택]각 식품은 유통기한을 준수한다.	(P)
		3. [선택]정수기, 생수 공급 장치는 일상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업체의 점검을 받는다.	(P)
		4. [선택]사용한 조리도구(도마, 칼, 소도구류)와 행주는 자불소독 또는 인증기관 승인제품이나 기구를 이용하여 소독하고 건조 후 전용 보관함에 보관한다.	(P)
		5. [선택]냉장고와 냉동고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지 1일 3회 이상 확인한다.	(P)
		6. [선택]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 당일 처리한다.	(P)
		7. [선택]취사자는 정해진 복장(위생모자,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을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P)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 영역
대/중영역	소영역		
	Ⅳ.1.6. 종사자 관리	1. [필수]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법정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다.	(P)
		2. [필수]산후조리업자, 간호(조무)사는 법정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다.	(P)
		3. [선택]종사자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조치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다.	(P)
Ⅳ.2 감염관리		1. [선택]산모나 신생아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조치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이 있다.	(S)
		2. [선택]감염이 의심되는 신생아는 의료기관 이송 전까지 산모실 또는 별도의 격리실에 격리한다.	(P)
Ⅴ. 산모 돌봄서비스			
Ⅴ.1. 산모 건강평가		1. [선택]산모 입원 시에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평가내용에는 bubble C와 산후우울을 포함한다.	(P)
		2. [선택]산모 재원 중 적어도 1회 이상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평가내용에는 bubble C와 산후우울을 포함한다.	(P)
		3. [선택]산모 퇴원 시에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한다. 평가내용에는 bubble C와 산후우울을 포함한다.	(P)
Ⅴ.2. 모아애착	Ⅴ.3.1. 모자동실	1. [필수]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다.	(P)
		2. [선택]신생아실 이용시간이 하루 8시간 이하인 신생아의 비율이 90% 이상이다.	(O)
		3. [선택]신생아실 이용시간이 하루 8시간 이하인 신생아의 비율이 80% 이상이다.	(O)
		4. [선택]신생아실 이용시간이 하루 8시간 이하인 신생아의 비율이 60% 이상이다.	(O)
	Ⅴ.3.2. 모유수유	1. [필수]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다.	(P)
		2. [선택]산모의 90% 이상에서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한다.	(O)
		3. [선택]산모의 80% 이상에서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한다.	(O)
		4. [선택]산모의 60% 이상에서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한다.	(O)
Ⅴ.3. 산모교육		1. [선택]산모의 교육이력을 관리하며, 교육 참여를 촉진한다.	(P)
		2. [선택]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P)
		3. [선택]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P)
		4. [선택]모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P)
		5. [선택]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S)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Ⅵ.1 신생아 확인		1. [필수]신생아는 2가지 이상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인식표(팔찌 또는 발찌 등)를 항상 착용한다.	(P)
		2. [선택]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산모로부터 전달받는 경우 간호(조무)사 1인과 산모가 동시에 확인하고 서명한다.	(P)
Ⅵ.2 신생아 건강평가		1. [선택]신생아 입원 시 신생아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신생아 건강기록부에 기록한다.	(P)
		2. [선택] 신생아 재원 중 신생아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신생아 건강기록부에 기록한다.	(P)
		3. [선택]신생아 퇴원 시 신생아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신생아 건강기록부에 기록한다.	(P)
Ⅵ.3 신생아관리	Ⅵ.3.1. 위생 관리	1. [선택]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고, 이를 준수한다.	(S)
		2. [선택]기저귀는 오염이 되었을 때 즉시 교환한다.	(P)
		3. [선택]기저귀 발진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다.	(O)
		4. [선택]배꼽은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며, 기저귀가 닿지 않는다.	(O)
		5. [선택]눈은 적절한 관리로 분비물이나 감염증상 없이 깨끗하다.	(O)
	Ⅵ.3.2. 신생아 수유	1. [선택]모유는 산모별로 분리하여 섞이지 않도록 보관한다.	(P)
		2. [선택]냉장 보관한 모유는 72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P)
		3. [선택]모유를 데울 때는 중탕하며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P)
		4. [선택]분유를 탈 물은 100℃이상 완전히 끓이며, 정수기의 뜨거운 물도 끓여서 사용한다.	(P)
		5. [필수]젖병을 물린 채로 신생아를 혼자 두지 않는다.	(P)
	Ⅵ.3.3. 영아돌연사예방관리	1. [선택]간호(조무)사는 영아돌연사예방방안을 교육받고, 숙지한다.	(S)
		2. [필수]신생아는 엎어서 재우지 않는다.	(P)
		3. [선택]신생아 요람의 시트는 단단하며, 푹신한 베개나 인형이 없다.	(P)
		4. [선택]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	(P)
14	24	128(필수 22)	

주: S (System): 구조(규정, 절차, 체계 등), P (Process): 과정(교육, 숙지, 인지, 수행 등), O (Outcome): 결과(성과지표에 따른 결과관리)

자료: 정인숙 외(2016). 산후조리원 평가 및 산후조리 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pp. 105-111, 115.

나. 2017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2017년도에는 국내 유사평가 사례로서 의료기관 인증, 정신의료기관 평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를 검토하고 인증제도의 조사기준, 조사방법의 틀, 조사결과 공표 및 추후관리에 대해 살펴본 후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범평가까지 실시하였다(정연이 외, 2017: 9-11). 또한, 2016년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 구성의 틀(대/중/소영역)을 유지하기로 하고, 평가항목 구성은 2016년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여 안을 마련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포괄적(상/중/하)방법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결과판정에 대해 항목별로 객관적인 판정기준안을 명시하기로 하였다(정연이 외, 2017: 14). 2017년 평가항목의 기본 틀은 1) 안전체계(안전보장활동, 감염관리, 지속적 질 관리), 2) 지원체계(경영 및 조직운영, 입·퇴실관리, 인력 및 시설관리, 시설환경 안전관리), 3) 돌봄서비스 체계로 하여 82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정연이 외, 2017: 17). 평가영역은 구조(규정, 절차, 계획의 수립), 과정(계획 수립 및 시행, 개별교육, 숙지, 수행정도 확인), 결과(성과, 지표를 선정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정연이 외, 2017: 17). 평가기준개발 실무팀 회의를 통해 초안에 2016년 평가지표 안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재배치하거나 추가하여 1)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운영과 질관리, 4) 감염예방관리, 5) 산모 돌봄서비스, 6) 신생아 돌봄서비스로 변경하고 14개 중영역, 29개 소영역, 103개 평가항목으로 평가기준 구성을 변경하였다(정연이 외, 2017: 17-21). 시범평가 실시를 통해 평가기준안을 수정·보완 하였는데, 시범평가 신청기관은 총 62개소(현장평가 29개소, 서면평가 33개소)였으며, 예산 및 연구기간 제약을 사유로 현장평가 기관은 지역, 설립주체, 규모를 고려하여 9개소가 선정되었고, 12개소는 서면평가로 전환하여 최종 시범평가 대상은 총 54개소(현장 9개소, 서면 45개소)였다(정연이 외, 2017: 23). 시범평가 후 평가기준안 수정·보완을 한 결과, 최종 6개 대영역, 14개 중영역, 29개 소영역은 그대로 유지하고, 평가항목은 전체 98개(필수 26개, 시범 2개 포함)로 확정하였다. 또한, 평가절차 및 평가관련 서식을 마련하였고, 시범평가의 현장평가와 서면평가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평가 초기시행 단계라는 점, 운영실태, 수행도 및 근거서류를 직접 관찰하고 객관적 평가를 이루기 위해 현장평가를 권장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정연이 외, 2017: 45).

〈표 Ⅱ-2-3〉 2017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2017년 최종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분류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적정성	1.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3.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4.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정규

평가영역			평가항목	분류
	2.2	종사자 교육·계발	1.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2.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3.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1.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2.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시범
			3.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4.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3.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4.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5.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4.2	소방안전관리	1.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3.소방훈련을 실시한다.	필수
			4.직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	필수
			5.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정규
	4.3	낙상예방관리	1.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Ⅲ.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1.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3.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4.입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5.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2.연계의료기관이 있다.	정규
			3.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5.3	문서관리	1.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3.문서의 대출, 열람 및 반납을 관리한다.	정규
			4.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정규
	5.4	방문객관리	1.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3.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정규
			2.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3.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규
			4.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Ⅳ. 감염예방관리				
7. 감염예방	7.1	손 위생	1.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3.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정규
			4.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정규
			5.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정규
	7.2	개인보호구 착용	1.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2.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7.3	세탁물 관리	1.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7.4	물품 소독·관리	1.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규
			3.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4.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평가영역			평가항목	분류
	7.5	환경관리	1.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7.6	급식관리	1.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2.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4.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5.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6.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7.7	종사자 관리	1.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8. 감염관리	8.1	감염관리	1.감염성 질환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정규
			2.감염성 질환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정규
Ⅴ. 산모 돌봄서비스				
9. 산모 건강평가	9.1	산모 건강평가	1.입실 시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재원 중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3.퇴실 시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0. 모아애착	10.1	모자동실, 모유수유	1.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정규
			2.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3.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11. 산모교육	11.1	산모교육	1.산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2.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정규
			3.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정규
			4.모아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정규
			5.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정규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2. 신생아 확인	12.1	신생아 확인	1.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3.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13. 신생아 건강평가	13.1	신생아 건강평가	1.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3.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4. 신생아관리	14.1	위생관리	1.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2.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14.2	신생아 수유	1.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3.분유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4.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5.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14.3	안전관리	1.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14	29		98 (필수 26, 시범 2)	

자료: 정연이 외(2017).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pp.68-70.

다. 2018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지표를 개선한 뒤 최종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항목 마련을 위해 2017년 최종안을 바탕으로 2016년 연구를 참조하여 평가기준 개발 회의와 현장검토,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감염관리, 모아애착, 산모건강관리, 부모교육을 강조함과 더불어 산후조리업자의 경영관리를 추가하고 산후우울증 평가를 추가하여 6개 대영역, 15개 중영역, 30개 소영역, 99개 평가항목(시범 1개 포함)으로 초안을 마련하였다(이정림 외, 2018: 52). 경영지표를 포함하는

것과 산모교육에 아버지교육을 포함하여 부모교육으로 확대하는 것, 산후우울증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이정림 외, 2018: 53). 또한, 2018년 산후조리원 시범평가에서는 평가시행 전 관련 규정 및 서식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요구에 따라 시간 제약상 일부 지표항목과 관련하여 규정과 서식을 개발, 평가 참여기관에 제공하고 시범평가를 시행하였다(이정림 외, 2018: 61). 시범평가는 평가기준안의 현장적용 가능성과 적절성,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3개, 민간산후조리원 10개의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참여기관과 조사위원의 사후평가회를 통해 수정·보완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평가기준을 수정 하였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평가기준으로의 조정, 질 관리 항목을 시범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수정을 거쳐 6개 대영역, 15개 중영역, 30개 소영역, 98개 평가항목(시범 3개 포함)으로 최종 평가기준을 확정하였다(이정림 외, 2021: 29).

〈표 Ⅱ-2-4〉 2018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2018년 최종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정규
	2.2	종사자 교육·계발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1.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정규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4.2	소방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3.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정규
	4.3	낙상예방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Ⅲ.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4. 입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5.3	문서관리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3.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정규
	5.4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시범
			2.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범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정규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7. 경영관리	7.1	리더쉽 및 조직문화	1. 원장의 리더쉽과 조직 문화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정규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3. 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8.2	개인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8.4	물품 소독·관리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8.5	환경관리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8.6	급식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 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8.7	종사자 관리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필수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필수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확인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14. 신생아 건강 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5. 신생아관리	15.1	위생관리	1.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15.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15.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15	30		98(필수 40, 시범 3)	

자료: 이정림 외(2018).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p.127-130.

본 컨설팅 사업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의 원활한 현장안착을 위해 실시되며, 개별 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에 맞게 서비스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활동 즉,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은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의 핵심 틀이 되며, 산후조리원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도달할 '일정수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산후조리원 컨설팅 도입 후 평가기준 변화

산후조리원 컨설팅이 도입된 이후에는 평가기준에 대한 커다란 변동 내역은 없었다. 다만 컨설팅을 통해 산후조리원 현장상황을 고려하고 원장, 컨설턴트에 의견을 참고하여 세부평가항목과 판정기준을 매년 수정하였다. 연도별 수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 2019년

'2.2 인력의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중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시행 여부 확인 판정기준에 대해서 변경사항 있었다. 기존에 기타직무교육에 대한 판정기준은 없었으나 2022년도에는 기타 직무교육 시행(50% 이상)이 '상' 기준에 추가되었고 필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였다. 산후조리업자 교육이수 여부 확인에서 소방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은 기존에 1년 1회에서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2년에 1회로 수정하였으며, 관계법령에 필수교육을 확인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1 시설 적정성'의 평가항목 손 씻기 시설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기존에

는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로 평가항목이 기술되어 있었으나 2019년도에는 산후조리원 입구에 손 씻기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로 변경하였고 판정기준에 이에 맞춰 변경하였다.

'4.1 시설 안정성: 설비관리', '4.2 시설 안정성: 소방 안전관리' 규정은 해당 점검표를 대폭 수정하여 이에 따른 판정기준을 변경하였다. 각각 '유', '무', '상', '중', '하'에 해당하는 판정기준을 기존에 일부 비율로 기술된 것을 구체적인 개수로 변경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여부 확인의 내용도 2018년도보다 구체화하였다.

'5.1 운영관리: 입·퇴실관리'의 평가항목 중 입실시 시 산모교육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기존에는 입실 시 산모 교육 시행만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9년 컨설팅에서는 퇴실까지 포함하여 '입·퇴실 시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로 변경하였으며 판정기준도 수정하였다.

'8.7 감염예방: 종사자 관리' 영역에서는 직원 건강 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확인,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의 판정기준이 변경되었다. 직원 건강 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여부 확인은 기존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실시여부만 판정기준에 포함되었지만 2019년도에는 감염병 확인 이후 점검표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종사자 위생관리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없던 근무제한 내용까지 숙지하는 것을 판정기준에 포함하였다.

'11.1 모아애착: 모자동실, 모유수유' 영역에서는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확인에 모아애착 증진 서식 확인을 추가하였으며 모자동실 '상' 기준을 기존에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낮췄다.

'12.1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시행 확인 판정기준에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 교육자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신생아 울음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의 이해 등).

마지막으로 '15.3 신생아관리: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판정기준에 신생아 이동시 신생아 요람이나 신생아 침대를 이용할 것을 추가하여 낙상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하였다.

〈표 Ⅱ-2-5〉 2019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 평가기준 변경사항

<table>
<tr><th>평가영역</th><th>변경사항</th><th>수정내용</th></tr>
<tr><td rowspan="2">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td><td rowspan="2">판정기준</td><td>2)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매년 자체 또는 외부교육을 실시(지원)하고, 종사자 모두 계획에 따라 교육을 이수함
- <u>기타 직무교육 시행 (50% 이상)</u>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교육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직원별로 보관되어 있음</td><td>- <u>필수 교육의 일부만 시행함</u>
※ <u>필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u>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
- <u>교육 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음</u></td><td>- 자체 또는 외부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음
- <u>필수교육을 시행하지 않음</u></td></tr>
</table></td></tr>
<tr><td>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필수</td><td>-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회 8시간 이상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u>2년에</u>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u>관계 법령에 필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함</u>
- 교육이수 수료증 있음</td><td>-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음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u>2년에</u>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u>관계 법령에 필수교육 이수하지 않음</u></td></tr>
</table></td></tr>
<tr><td rowspan="2">3.1 시설 적정성</td><td>평가항목</td><td>○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u>산후조리원 입구 및</u>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td></tr>
<tr><td>판정기준</td><td>1) <u>산후조리원 입구 및</u> 신생아실 손 씻기 시설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산후조리원 입구에 손 씻기 시설<u>(세면대 또는 손소독제)</u>을 갖추고 있음
-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u>(세면대)</u>를 갖추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td><td>- <u>신생아실에만 손 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추고 있음</u></td><td>- 2개 모두 없음</td></tr>
</table></td></tr>
<tr><td rowspan="2">4.1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td><td rowspan="2">판정기준</td><td>3) 가스설비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정규</td><td>- 주기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함
- <u>점검표 3개 모두 충족</u></td><td>- 주기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u>점검표 2개 이하 충족</u></td></tr>
</table>
4) 급수설비 및 수질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점검표 <u>2개</u> 항목 모두 충족</td><td>- 점검표 <u>1개</u> 항목 충족</td><td>- 미충족</td></tr>
</table>
5)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정규</td><td>- <u>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관리 기준을 준수</u>
- <u>에어컨, 환기시설 오염상태 확인 및 조치</u></td><td>- <u>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에어컨, 환기시설 오염상태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음</u></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영역</th><th>변경사항</th><th>수정내용</th></tr>
<tr><td>4.2 시설 안전성:
소방 안전관리</td><td>판정기준</td><td>2)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확인
(※ 최소 6항목 이상은 점검. 미해당은 수행 항목에서 제외한다.)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u>1년에 4회 이상 최소 6개 항목에 대해 점검 수행 및 조치</u></td><td>- <u>1년에 1회~3회 최소 6개 이상 항목에 대해 점검 수행 및 조치</u></td><td>- <u>1년에 1회 미만 점검하거나 6개 미만 항목에 대해 점검 수행 및 조치</u></td></tr>
</table></td></tr>
<tr><td rowspan="2">5.1 운영관리:
입·퇴실관리</td><td>평가항목</td><td>○ 입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 <u>입·퇴실</u>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td></tr>
<tr><td>판정기준</td><td>4) 입·퇴실 시 산모교육 시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계획
- 감염예방 관리계획
- 의료기관 이송계획
- 낙상예방 계획
: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위의 내용을 모두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u>퇴실 시 산모 교육</u>
<u>: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확인</u></td><td>- 입실, <u>퇴실</u> 시점에 산모에게 일부내용(3개 이상)에 대해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td><td>- 입실, <u>퇴실</u> 시점에 산모에게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td></tr>
</table></td></tr>
<tr><td rowspan="2">8.7 감염예방:
종사자 관리</td><td rowspan="2">판정기준</td><td>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필수</td><td>-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있고 교육을 실시함
- <u>감염병 확인 이후 점검표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종사자 위생관리가 되었는지 확인함</u></td><td>-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없음
- <u>감염병 확인 이후 점검표를 확인하였으나 종사자 위생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u></td></tr>
</table></td></tr>
<tr><td>3)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필수</td><td>- 대처방안, <u>근무 제한</u>에 대해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100%)</td><td>- 대처방안, <u>근무 제한</u>에 대한 직원의 숙지가 미흡함</td></tr>
</table></td></tr>
<tr><td rowspan="2">11.1 모아애착:
모자동실,
모유수유</td><td rowspan="2">판정기준</td><td>1) 모아 애착을 위한 계획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모아 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 모두 포함되어야 함
- <u>모아애착 증진 서식 확인함</u></td><td>-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td><td>- 계획이 없음</td></tr>
</table></td></tr>
<tr><td>2) 모자동실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u>6시간</u>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80%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u>3인</u> 선정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자동실이 어려운 대상자는 제외)</td><td>-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u>6시간</u>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60% ~ 80% 미만</td><td>-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u>6시간</u>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60% 미만</td></tr>
</table>
※ 모자동실 이용 시간이 <u>8시간</u> 이상인 경우 <u>5점</u> 가산</td></tr>
</table>

<table>
<tr><th>평가영역</th><th>변경사항</th><th>수정내용</th></tr>
<tr><td>12.1 부모교육</td><td>판정기준</td><td>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시행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u>(교육자료: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u>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 (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td><td>-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td><td>- 교육 일정이 없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td></tr>
</table></td></tr>
<tr><td>15.3 신생아관리: 안전관리</td><td>판정기준</td><td>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u>신생아의 이동시 신생아 요람이나 신생아 침대를 이용하여 이동, 신생아의 출생 정보(산모이름, 성별, 출생 시 몸무게, 출생 날짜)를 확인 후 산모에게 인계함</u>
- 재원 중인 모든 신생아가 앙와위 또는 측위 자세임
- 모든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며, 푹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없음
- 모든 산모가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재원 중인 산모 3인 선정)</td><td>-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u>~ 80% 미만</u>
- <u>신생아의 이동시 안전관리가 일부만 시행됨</u>
- 신생아 중 일부(20%)가 엎드린 자세임(고개를 옆으로 돌려도 엎드린 자세인 경우는 모두 해당됨)
-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지 않거나, 폭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있음(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3인 중 2인)</td><td>-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 <u>신생아의 이동시 안전관리가 시행되지 않음</u>
- 대다수의 신생아가 엎드려져 있음(80% 이상)
-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지 않거나, 폭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있음(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3인중 1인 이상)</td></tr>
</table></td></tr>
</table>

2) 2020년

2020년도에는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의 평가항목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었다. 주로 평가항목에 대한 판정기준 위주로 변경되었다. 주요 판정기준 변경사항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2.1 인력의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의 직원 채용 절차에 따른 적정인력 모집/배치여부 확인 판정기준에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확인과 개인정보 보안각서 확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인사정보 관리 여부 확인에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 확인을 이전년도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하였다.

‘3.1 시설 적정성’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 손 씻기 시설 확인에서는 손 씻기 시설 설치를 강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입구에만 손소독제가 있는 경우는 ‘하’ 판정이 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다.

‘4.2 시설안정성: 소방안전관리’의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확인에서는 점검뿐만 아니라 이상을 발견하고 조치까지 완료한 것까지 확인하도록 강화하였다.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 여부 확인에

서는 화재 발생 시 긴급한 연락체계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단축키 지정을 판정기준에 추가하였다.

‘ 5.1 운영관리: 입·퇴실관리’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퇴실 시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는 것을 판정기준에 추가하였다.

‘6.1 질 관리: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의 질’ 관리 활동 수행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지표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현장요구에 맞춰 상대적으로 질 관리가 쉬운 손 위생 수행률을 반드시 포함하고 그 이외에 지표를 추가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9.1 감염관리’의 감염병 발생 시 조치여부 확인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판정 기준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점검서류 확인을 추가하였다.

‘10.1 산모 건강평가’에서는 산후우울증 평가 결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정 기준을 수정하였다. ‘상’ 기준에 우울증 고위험군이 발생하였을 때 상담을 통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 및 이송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정기준에 추가하였다.

‘13.1의 신생아 확인’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기준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평가항목이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판정기준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수정하였다. 신생아 인식표 사용 여부 ‘상’ 기준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찌 혹은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를 사용하고, 추가로 1개 이상의 인식표를 사용하도록 판정기준을 상세하게 수정하였다.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의 경우에는 신생아 전달 오류를 줄이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신생아 식별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판정기준에 추가하였다.

〈표 Ⅱ-2-6〉 2020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 평가기준 변경사항

<table>
<tr><th>평가영역</th><th>변경사항</th><th>수정내용</th></tr>
<tr><td rowspan="2">2.1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td><td rowspan="2">판정기준</td><td>2) 직원 채용 절차에 따른 적정인력 모집/배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필수</td><td>- 법정 건강검진(잠복결핵검사 포함) 및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일해)을 받은 근거서류가 있음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채용함
- <u>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확인</u>
- <u>개인정보 보안각서 확인</u>
※ <u>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u></td><td>-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중 1개라도 실시하지 않음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함</td></tr>
</table></td></tr>
<tr><td>3) 인사정보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모든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사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직원별로 인사정보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음
- <u>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u>
- <u>종사자 관리대장이 누락 없이 작성되고 연도별로 관리함</u></td><td>- 일부 직원의 인사정보 관리가 미흡함
- <u>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대부분 있음</u>
- <u>종사자 관리대장이 일부 누락되고 연도별로 관리하지 않음</u></td><td>- 다수의 직원의 인사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
- 면허 갱신, 교육, 훈련 등 근거서류가 대부분 없음</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영역</th><th>변경사항</th><th>수정내용</th></tr>
<tr><td>3.1 시설 적정성</td><td>판정기준</td><td>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 손 씻기 시설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산후조리원 입구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 또는 손소독제)을 갖추고 있음
-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추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td><td>- 신생아실에만 손 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추고 있음</td><td>- 2개 모두 없음
-<u>산후조리원 입구에만 손소독제가 있음</u></td></tr>
</table></td></tr>
<tr><td>4.2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td><td>판정기준</td><td>2)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1년에 4회 이상 최소 6개 항목에 대해 <u>점검을 수행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 완료</u></td><td>- 1년에 1회~3회 최소 6개 이상 항목에 대해 <u>점검을 수행하고 이상 별견 시 조치 완료</u></td><td>- 1년에 1회 미만 점검하거나 6개 미만 항목에 대해 점검 수행 및 조치</td></tr>
</table>
4)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정규</td><td>-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응급벨, 인터폰, <u>유선전화기(단축키 지정) 등)</u>가 있음
(※ 연락체계로 핸드폰은 제외)</td><td>-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없거나, 연락체계로 핸드폰을 사용함</td></tr>
</table></td></tr>
<tr><td>5.1 운영관리: 입·퇴실관리</td><td>판정기준</td><td>5)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80% 이상
-<u>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음</u></td><td>-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이상
-<u>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음</u></td><td>-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미만</td></tr>
</table></td></tr>
<tr><td>6.1 질 관리: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td><td>판정기준</td><td>2)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시범</td><td>○ <u>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 이상(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이상)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u>
<u>〈핵심자표〉</u>
<u>- 모자동실시간</u>
<u>- 신생아실 이용시간</u>
<u>- 모유수유율</u>
<u>- 감염발생 양상</u>
<u>- 안전사고발생 양상</u></td><td>○ <u>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u>
<u>- 모니터링은 시행했으나 개선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u></td><td>- 계획은 있으나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 질 관리 활동 계획이 없음</td></tr>
</table></td></tr>
<tr><td>9.1 감염관리</td><td>판정기준</td><td>2)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8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함
- <u>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점검 서류가 있음</u></td><td>-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6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하지 않음
- <u>임산부·영유아 건강 관리 결과 작성하지 않음</u></td><td>-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60% 미만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하지 않음
- <u>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작성하지 않음</u></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영역</th><th>변경사항</th><th>수정내용</th></tr>
<tr><td>10.1 산모 건강평가</td><td>판정기준</td><td>2) 재원 중 산모의 산후우울증 평가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를 시행함(설문지 작성)
- <u>우울증 고위험군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 및 이송에 대한 근거 있음</u></td><td>-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하지 않거나 일부 산모에 대해 시행함. (설문지 작성)</td><td>-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하지 않았음</td></tr>
</table></td></tr>
<tr><td>13.1 신생아 확인</td><td>판정기준</td><td>2) 신생아 인식표 사용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u>반드시 발찌 혹은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를 사용하고, 추가로 1개 이상의 인식표를 사용해야 함</u></td><td>- <u>발찌 또는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만 사용</u>
- <u>발찌, 팔찌 이외의 인식표만 2개 사용</u></td><td>- <u>발찌, 팔찌 이외의 인식표 1개 사용</u></td></tr>
</table>
3)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전달 시 간호(조무)사와 산모가 확인함(관찰건수 100% 충족)
- <u>2가지 이상의 신생아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확인함</u></td><td>- 관찰건수 60% 이상
- <u>신생아 식별 시 산모 이름만 확인함</u></td><td>- 관찰건수 60% 미만</td></tr>
</table></td></tr>
</table>

3) 2021년

2021년도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변화가 없었으며 일부 판정기준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우선 '4.2 시설 안정성: 소방안전관리'의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판정기준에 서류 확인뿐만 아니라 컨설턴트의 현장 점검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 점검 시 이상 없음을 추가하였다.

'8.4 감염예방: 물품소독·관리'의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확인에서 소독일지에 신생아요람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8.6 감염예방: 급식관리'의 식재료 관리상태 확인의 경우에는 식재료 검수를 강조하기 위해 검수일지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을 판정기준에 추가하였다.

〈표 Ⅱ-2-7〉 2021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 평가기준 변경사항

<table>
<tr><th>평가영역</th><th>변경사항</th><th>수정내용</th></tr>
<tr><td>4.2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td><td>판정기준</td><td>2)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u>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u>
- <u>현장 점검 시 이상 없음</u></td><td>- <u>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u>
- <u>현장 점검 시 3개 항목 이하 미흡</u></td><td>- <u>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u>
- <u>현장 점검 시 4개 항목 이상 미흡</u></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영역</th><th>변경사항</th><th>수정내용</th></tr>
<tr><td>8.4 감염예방: 물품 소독·관리</td><td>판정기준</td><td>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r>
<tr><td>정규</td><td>- 수유물품(젖병, 젖꼭지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는 경우(자불: 열탕) 소독 또는 국내외 승인된 전용 소독제 사용)
- <u>소독일지(신생아요람 관련사항 포함)를 작성하고 신생아요람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경우</u>
- 목욕대야 소독은 중간수준 이상이며, 제품설명서에서 제시한 소독시간, 농도 등 준수함(직원 1인 이상 관찰)
- 세척 시 필요한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있고, 세척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세척하여야 함
⇒ 4개 모두 충족</td></tr>
</table></td></tr>
<tr><td>8.6 감염예방: 급식관리</td><td>판정기준</td><td>3) 식재료 관리상태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r>
<tr><td>정규</td><td>-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우
- <u>보관식품(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u>
- <u>식재료 개봉일자를 라벨링하여 관리하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u></td></tr>
</table></td></tr>
</table>

4) 2022년

2022년도에는 일부 평가항목의 내용과 판정기준,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배정방안을 수정하였다.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기타직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가점영역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인 필수교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변경하였다.

‘3.1 시설 적정성’의 사전관찰실 여부 확인에서는 기존에 ‘유’, ‘무’로 평가하던 것을 ‘상’, ‘중’, ‘하’로 세분화 하였다. 특히 ‘중’ 기준(사전관찰실이 있으나 칸막이로 일부만 막혀 있어 공간이 분리되지 않음)을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중’에 해당하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4.1 시설 안정성: 설비관리’의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도 ‘유’, ‘무’로 평가하던 것을 ‘상’, ‘중’, ‘하’로 세분화 하였다. 실내공기질 측정뿐만 아니라 점검표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8.1 감염예방: 손 위생’의 평가항목 중 손 위생 물품 구비 여부 확인에서는 손 소독제가 개봉 후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손소독제가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지 여부를 인증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8.3 감염예방: 세탁물 관리’의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변경하였다. 산후조리원의 폐기물의 경우에 의료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환경관련 평가 항목 점검표로 이동하는 형태로 수정하여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판정 기준에 폐기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표 Ⅱ-2-8〉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 평가기준 변경사항

<table>
<tr><th>평가영역</th><th>변경사항</th><th>수정내용</th></tr>
<tr><td>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td><td>판정기준</td><td>2)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산후조리원 종사자 필수교육을 시행함
- 산후조리원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중 80% 이상 수행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신규 직원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종사자 교육관리대장의 교육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관되어 있음</td><td>- 필수 교육을 시행하고 추가로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td><td>- 필수 교육을 시행하지 않음
-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중 50% 미만 수행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td></tr>
</table>
※ 기타 직무교육 또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신규자 교육 제외)을 계획하고 실제 실시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5점 가산</td></tr>
<tr><td>3.1 시설 적정성</td><td>판정기준</td><td>3) 사전관찰실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사전관찰실이 있으며, 출입문과 투명한 벽체 등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음</td><td>- 사전관찰실이 있으나 칸막이로 일부만 막혀있어 공간이 분리되지 않음</td><td>- 사전관찰실이 없음
- 투명한 벽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td></tr>
</table></td></tr>
<tr><td>4.1 시설 안정성:
설비관리</td><td>판정기준</td><td>5)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공기질 측정 근거서류가 있음
- 에어컨 청소 필터교체, 환기시설 관리 점검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
- 점검표 3개 항목 모두 충족</td><td>- 실내공기질 측정은 했으나 점검표 3개중 2개 이상 충족(근거서류 포함)</td><td>-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점검표 3개 중 1개 이하만 충족</td></tr>
</table>
※ 연면적 500㎡미만 산후조리원은 실내공기질 측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표 내의 항목 충족 여부와 점검 근거서류만 확인하고 판정함</td></tr>
<tr><td>8.1 감염예방:
손 위생</td><td>판정기준</td><td>4) 손 위생 물품 구비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손 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이 모두 표기 되어 있으며 개봉 후 6개월 이내 일 것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이용함(인증서 확인)
- 신생아실 손 위생 건조는 종이타월(1회용 타월)을 이용함
-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 근거서류 있음</td><td>- '상'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함</td><td>- '상' 기준 중 2개 이하 충족</td></tr>
</table></td></tr>
<tr><td rowspan="2">8.3 감염예방:
세탁물 관리</td><td>평가항목</td><td>○ 세탁물 및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 세탁물 및 폐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td></tr>
<tr><td>판정기준</td><td>1) 세탁물에 대한 규정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폐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오염된 폐거물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td><td>-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td><td>- 규정이 없음</td></tr>
</table></td></tr>
</table>

Ⅲ

산후조리원 정책 최신 동향

01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및 추이

02 최근 산후조리원 관련 기사 현황

03 최근 산후조리원 관련 입법 동향

Ⅲ. 산후조리원 정책 최신 동향

1.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및 추이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610개소, 2016년 612개소였다가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 492개소로 2015년도 대비 118개소가 감소하였다(이재희·김동훈·김종근·엄지원·윤소정, 2022: 56). 2021년도 기준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54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121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외 다른 지역은 28개소 이하로 나타났다(이재희 외, 2022: 56). 산후조리원 수가 적은 순위로 살펴보면 광주시, 제주도가 각 6개소로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으로 세종시 7개소, 울산시 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이재희 외, 2022: 56).

〈표 Ⅲ-1-1〉 전국산후조리원 현황표

시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2015
전국	610	612	598	548	518	501	492	-118
서울시	159	157	150	143	132	124	121	-38
부산시	29	29	29	27	28	25	24	-5
대구시	32	30	32	26	24	24	22	-10
인천시	32	33	32	30	30	27	26	-6
광주시	8	9	9	8	8	7	6	-2
대전시	20	19	19	14	12	11	11	-9
울산시	8	8	9	8	7	7	8	0
세종시	1	1	2	6	5	6	7	6
경기도	181	185	179	163	154	153	154	-27
강원도	16	17	16	16	16	17	17	1
충청북도	14	13	13	11	11	11	10	-4
충청남도	17	17	18	16	16	14	14	-3
전라북도	20	18	17	16	15	14	13	-7
전라남도	10	10	10	11	11	12	12	2
경상북도	20	23	21	16	13	12	13	-7
경상남도	33	33	33	29	27	29	28	-5
제주도	9	10	9	8	9	8	6	-3

자료: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산후조리원 명단을 근거로 연구진이 분석한 자료임.

2021년말 기준으로 전국 산후조리원은 492개소(휴업·폐업 제외)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공공산후조리원은 11개였다(보건복지부, 2021; 이재희 외, 2022: 85에서 재인용). 그러나 2022년 상반기에 4개소가 추가 개소하여 6월 기준 16개이며, 2022년 하반기 중 개소예정인 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19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이재희 외, 2022: 85). 2023년 이후로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도 6개소로, 2020년 이후 최근 들어 급속도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재희 외, 2022: 85). 관내 산부인과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

체에서 지자체장의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도내 5호점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 전남의 경우 2021년 출산 산모(8,567명)의 약 11%(904명)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향신문, 2022. 3. 16; 이재희 외, 2022, 2022: 85에서 재인용).

〈표 Ⅲ-1-2〉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 공공의료원이나 공모 선정된 지역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이재희 외, 2022: 85). 임산부실 규모는 대체로 읍면지역은 10실 이하, 중소도시는 10~20실 가량, 대도시는 27~28실 가량으로 지역규모 즉, 예측되는 수요에 따라 다양한 편이다(이재희 외, 2022: 85). 이용요금은 전반적으로 200만원 미만으로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대부분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7]의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이재희 외, 2022: 85).

앞서 살펴보았듯이 저출생의 심화 등으로 분만취약지가 광범위하게 늘어나 지역 내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고, 산후조리원 개소수도 2016년에 612개소(이정림 외, 2018: 26)가 정점이었고 현재 500개 미만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이재희 외, 2022: 86). 저출생의 심화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8]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1.2%로, 증가추세로 파악되고 있어 지자체에 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추후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이재희 외, 2022: 86).

〈표 Ⅲ-1-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현황

연번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시설		이용요금(만원)		비고
						시설	임산부실	지역주민	타지역주민	
1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13.3	위탁	서귀포 의료원	1층 단독 건물	14	154		- 7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둘째 자녀부터,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둘째 자녀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둘째 자녀부터,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 자녀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다태아 출산 산모,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둘째 자녀부터,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둘째 자녀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가진 산모 - 60% 감면: 위 할인 대상 중 첫째 자녀
2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 건강증진	′14.3	위탁	송파구시설관리공	센터 내 지상	27실	190	209	- 3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출산자

7) 가)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1.25.).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연번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시설		이용요금(만원)		비고
						시설	임산부실	지역주민	타지역주민	
		센터산후조리원			단	3~5층				- 20% 감면: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다문화가족의 산모,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등
3	전남 해남군	전남공공산후조리원	′15.9	위탁	해남종합병원	해남종합병원 4층	10	154		- 7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다문화가정의 산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귀농인·귀촌인, 희귀난치성 질환 가진 산모 - 30% 감면: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4	강원 삼척시	강원도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16.2	위탁	삼척의료원	병원별관	17	본원출산: 162만원 타병원출산: 180만원		- 2017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상 삼척시 거주 1년 이상 산모 공공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 전액(180만원) 지원
5	전남 강진군	전남공공산후조리원 2호점	′18.5	위탁	강진의료원	지상 1층 단독건물	10	154		- 7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다문화가정의 산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귀농인·귀촌인, 희귀난치성 질환 가진 산모 - 30% 감면: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6	경기 여주시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19.5	위탁	경기도의료원	지상 2층 단독건물	13	168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		- 5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다문화가정의 산모, 한부모 가족,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희귀난치성 질환 가진 산모
7	전남 완도군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19.6	위탁	완도대성병원	지상 2층 단독건물	10	154		- 7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귀농어·귀촌인 - 50% 감면: 신청일 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아 출산산모
8	강원 철원군	강원철원공공산후조리원	′20.3	위탁	철원병원	지상 3층 단독건물	10	89.6 또는 161.28 주2)	179.2	- 70% 감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및 배우자, 다문화가족 산모, 한부모,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유)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이상 출산한 산모,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60% 감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가정 - 50% 감면: 철원군에 1년 이상 거주 산모 - 10% 감면: 철원군에 1년 미만 거주 산모
9	강원 양구군	양구공공산후조리원	′20.7	위탁	성심의료재단	지상 2층 단독건물	8	180		- 100% 감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및 배우자, 다문화가족 산모, 한부모,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 (유)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이상 출산한 산모, 북한

연번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시설		이용요금(만원)		비고
						시설	임산부실	지역주민	타지역주민	
										이탈주민 및 배우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1년 이상 관내 거주 산모 또는 배우자 - 50% 감면: 1년 미만 관내 거주 산모 또는 배우자 - 30% 감면: 인접 지역(인제군, 화천군) 거주 산모
10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 11	위탁	울진 의료원		8	182		- 50% 감면: 취약계층(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태아, 셋째 이상 - 30% 감면: 조부모 또는 부모 관내 군민 - 10% 감면: 경북도민
11	전남 나주시	전남공공산후조리원4호점	′20. 12	위탁	빛가람종합병원	병원내 지상 2층 단독 건물	10	154		- 7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급~3급)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다문화가족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5·18유공자 및 (유)가족, 귀농어·귀촌인
12	울산 북구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21.7	위탁	세나 요양 병원	지상 3층 단독 건물	28	189		- 50% 감면: 5·18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및 배우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및 배우자, 한부모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 - 20% 가산금: 북구 외 지역주민 - 장애인실 2실, 쌍둥이 3실
13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2.1	위탁	화천군보건의료원	의료원 별관 2~3층	5	180		- 1년 이상 관내 거주주민 전액지원, 1년 미만 50% 감면 - 10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미혼모, 5·18유공자 등
14	충남 홍성군	홍성 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22.2	위탁	홍성의료원	병원내 별관 지상 1층	8	182		- 50%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자, 다문화, 희귀 난치성 질환, 셋째 이상 - 30% 감면: 관내 거주 산모 - 10% 감면: 본원출산한 군 외지역 산모
15	전남 순천시	전남공공산후조리원5호점	′22.3	위탁	순천 현대 여성 아동 병원	병원내 4층	5	154		- 임시개원 - (′24. 3.) 산모실 10실 추가하여 15실 규모로 정식개원 - 감면혜택 도내 다른 공공산후조리원과 동일
16	경남 밀양시	밀양공공산후조리원	′22.5	위탁	제일 병원	지상 2층	8	160		- 1년 이상 관내 거주주민 전액지원 - 70%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다문화가족의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한부모가족의 산모, 5·18유공자 및 (유)가족 등
17	경기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22. 연말 (예정)	위탁	미정	지상 2층	20	168		- 50% 감면: 국가유공자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등
18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공공산후조리원	′22. 10 (예정)	미정	서대문구청	지하 1층, 지상 4층	12	250		- 50% 감면, 우선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10% 감면: 1년 이상 관내 거주 산모

연번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시설		이용요금(만원)		비고
						시설	임산부실	지역주민	타 지역주민	
19	경북 김천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2. 10 (예정)	위탁	김천 의료원	지상 2층	12	168		- 10% 감면: 김천시민 - 50% 감면: 국가유공자, 다문화, 장애인, 셋째아 이상
-	경북 상주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3.5 (예정)	미확정	미확정	지상 2층	13	미확정		
-	강원 속초시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23. (예정)		속초 의료원	지상 2층	10	미확정		- 50% 감면: 속초시민 - 70% 감면: 다문화, 장애인 등 취약계층
-	강원 영월군	영월군공공산후조리원	‘24 (예정)	위탁	영월 의료원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	경기 용인시	용인시공공산후조리원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 조례제정까지 진행됨(2021. 11. 3)
-	충남 논산시	충남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25.8 (예정)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12	미확정		-
-	강원 태백시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24 (예정)	위탁	미확정	지상 3층	10	미확정		-

주: 1) 이용요금은 2주 일반실 기준
2) 강원 철원군: 기본요금: 179.2만원, 철원군 1년 이상 거주: 89.6만원, 철원군 1년 미만 거주: 161.28만원

자료: 1) 이재희·이정림·엄지원·김희선(2020).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pp.102-103의 〈표 Ⅳ-2-3〉를 중심으로 연구진이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최신 현황 기준으로 업데이트함.
2) 보건복지부(2021).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1. 12. 기준).
3) 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 http://www.jjsmc.or.kr/board/gcontent/contentview.php?content_id=gonggongsanhu (2022. 4. 28. 인출)
4)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http://mom.songpa.go.kr/careCenter/guide.asp (2022. 4. 28. 인출)
5) 전라남도 사회복지포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welfare0705000000 (2022. 3. 16. 인출)
5) 강원도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https://www.ksmc.or.kr/page/guide/page_06.php (2022. 4. 28. 인출)
6)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삼척시조례안 제2890, 2016. 12. 23. 공포)
7) 강진군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gangjin.go.kr/hospital/health_service/mother_child/expenses_support/jn_postpartum (2022. 4. 28. 인출)
8)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http://www.gypc.or.kr/?WS=420 (2022. 4. 28. 인출)
9) 완도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https://www.wando.go.kr/health/support/childbirth/carecenter (2022. 4. 28. 인출)
10)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www.chw-mom.org/sub10.html (2022. 4. 28. 인출)
11)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468호, 2021. 6. 2. 일부개정]
12) 양주군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yg-ppc.org/theme/yanggu/sub/info2.php (2022. 4. 28. 인출)
13) 동아일보(2020. 7. 15).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첫 손님 맞았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14/101970055/1 (2022. 4. 28. 인출)
14) 프레시안(2020. 10. 26). 경상북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울진의료원에서 11월 2일 개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25170414644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22. 4. 28. 인출)
15) 빛가람종합병원 홈페이지. http://bitgaramhospital.co.kr/bbs/board.php?bo_table=table65&wr_id=8 (2022. 4. 28. 인출)
16) 뉴스핌(2020. 11. 25).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개원…나주혁신도시 빛가람종합병원 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125000739 (2022. 4. 28. 인출)
17)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http://www.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com (2022. 4. 28. 인출)

18) 경상일보(2021. 7. 22). 울산 북구에 영남권 첫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739 (2022. 4. 28. 인출)
19) 울산신문(2021. 10. 5).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이 호응 얻는 이유.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665 (2022. 4. 28. 인출)
2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https://www.bukgu.ulsan.kr/lay2/S1T1372C1384/contents.do (2022. 3. 16. 인출).
21) 울산 MBC(2021. 9. 28).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https://www.usmbc.co.kr/article/fmyRFnlVlsx_ZlKj (2022. 3. 16. 인출).
22) 강원일보(2021. 10. 5). 화천 산모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100400079 (2022. 4. 7. 인출)
23)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572호, 2021. 5. 31 제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2022. 4. 7. 인출)
24) 경향신문(2022. 3. 16). 공공산후조리원 시대…서울 특실 수천만원, 이곳에선 2주에 46만원.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3161548001#c2b (2022. 4. 28. 인출)
25)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0 제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2022. 4. 7. 인출)
26) 오마이뉴스(2022. 1. 27).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결에 도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580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2. 4. 7. 인출)
27) 오마이뉴스(2020. 8. 27). 충남도 첫 공공산후조리원, 홍성군민 차등지원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0533 (2022. 4. 27. 인출)
28) 중앙일보(2022. 1. 24). "원정 산후조리 그만"…2주 18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문 열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078#home (2022. 4. 28. 인출)
29) 연합뉴스(2022. 3. 15).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순천서 임시 개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5137300054?input=1195m (2022. 4. 28. 인출)
30) 연합뉴스(2022. 3. 14). 밀양시에 공공산후조리원 5월 개원…시-제일병원 위탁운영 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4135500052?input=1195m (2022. 4. 7. 인출)
31) 밀양시청 블로그(2022. 3. 15). 밀양공공산후조리원 5월 개원 예정. https://blog.naver.com/miryangsi/222673279784 (2022. 4. 7. 인출)
32) 매일경제(2021. 5. 19). 경기도 2호 공공산후조리원 2022년 포천에 개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82134/ (2022. 4. 27. 인출)
33) 포천소식(2022. 1. 12). 포천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http://news.pocheon.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earchlist&mkey2=35&aid=25474&bpage=1&stext=조리원 (2022. 4. 27. 인출)
34)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466호, 2021. 12. 29. 제정]
35) 연합뉴스(2022. 4. 1). 서대문구,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연내 개원 목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3086465 (2022. 4. 7. 인출)
36)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03호, 2021. 11. 3. 제정]
37) 뉴시스(2022. 7. 18). 속초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짓는다...2023년 완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11918?sid=102 (2022. 8. 3. 인출)
38) 서울경제(2022. 7. 25).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 김천의료원에서 위탁운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79837?sid=102 (2022. 8. 3. 인출)
39) 한국일보(2022. 7. 4).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10월에 개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4229?sid=102 (2022. 8. 3. 인출)
40) 프레시안(2022. 4. 18).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사업 공모 선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815422033241 (2022. 8. 11. 인출)
41) 경북도민일보(2022. 2. 6).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순항'.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649 (2022. 8. 11. 인출)
42) 공감언론뉴시스(2022. 9. 16). 논산시, 지방소멸대응기금 190억원 확보...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탄력.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16_0002015660 (2022. 10. 5. 인출)
43) 굿모닝충청(2022. 9. 13). "원정출산 해소"…충남도, 논산에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민간에 비해 저렴하고 취약계층 할인 혜택 제공…"희망 시·군 대상 추가 검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000 (2022. 10. 5. 인출)
44) 경향신문(2022. 9. 2). "도시로 원정출산 안 가도 돼요"···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세운다.
https://m.khan.co.kr/local/Gangwon/article/202209021055001#c2b (2022. 10. 5. 인출)

2. 최근 산후조리원 관련 기사 현황

많은 산모들이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는데,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관련 보도기사들은 대부분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건 사고 기사의 보도는 일반 대중에게 그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최근 기사를 발췌하여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과 특성을 유목화 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후조리원 사건 사고와 관련된 보도자료 기간은 2019년 이후부터 최근 시점까지로 기한을 설정하였으며, 총 23개 기사가 수집되었다. 이후 23개의 기사는 사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감염성 질환(코로나19 포함) 사고, 낙상 관련 안전사고, 화재 및 소방안전 사고, 학대 관련사고, 질환 오진 관련사고와 이외 기타 사고로 분류하였으며 개별 항목에 대한 피해자와 사건개요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감염성 질환 사고

전체 23개 보도기사 중에 코로나19를 포함한 산후조리원 감염성 질환 사고는 모두 8개였다. 수집된 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성 질환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집단 감염, 로타바이러스, 결핵, 그리고 코로나19로 산모와 신생아 뿐만 아니라 일부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RSV 감염은 거의 모든 소아가 4세까지 걸릴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신생아 감염은 특히 주의를 요한다. RSV 감염은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생아와 산모, 종사자 등 총 7명이 감염되는 사건이 있었으며[9] 경기도 소재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10]

소화관의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중증의 탈수를 야기할 수 있는 로타바이러스도 산후조리원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성 질환으로 파악된다. 서울 송파구의 공공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8명이 집단 감염된 사례[11]와 세종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7명이 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9) 보도자료, YTN (보도일자: 2022.3.14), 대정 유성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등 7명 RSV 감염, https://www.ytn.co.kr/_ln/0115_202203141034413247 (2022. 12. 8. 인출)

10) 보도자료, 매일경제 (보도일자: 2022.11.15.), 산후조리원에 맡긴 아기에 바이러스가...신생아 11명 집단 감염, https://www.mk.co.kr/news/society/10531950 (2022. 12. 8. 인출)

11) 보도자료, YTN (보도일자: 2021. 5.11), 송파구 산후조리원 신생아 18명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부모들 "분통",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111806045401 (2022. 12. 8. 인출)

불구하고 해당 산후조리원 측은 감염 사실을 부모와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성 질환 중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고 나흘 뒤 신생아 22명에게서 잠복결핵 양성반응이 확인된 경우도 있어 크게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13)]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산후조리원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경우도 보도된 바가 있다. 성남시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 1명과 신생아 4명을 합쳐 모두 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으며[14)] 대전 서구의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 2명, 산모 1명, 종사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해당 집단 감염은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해 확산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한 것으로 알려진다.[15)]

산후조리원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특히 신생아의 경우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에서 집단 돌봄을 받는 환경이 대부분이므로 감염성 질환의 발생은 곧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종사자의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신생아실 보다는 모자동실을 이용하여 개별 산모실에서 신생아를 주로 돌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나. 낙상 관련 안전사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낙상사고는 매우 중요한 안전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및 장치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해왔다. 비록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의료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예방활동과 교육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관련 보도 자료 3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종사자가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도중 바닥에 떨어뜨리는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산후조리원은 관련 낙상사고를 은폐하고 있다가 추후에 문제가 더 확대된 것으로 파악된다.[16)] 신생아 낙상사고는 주로 두부 손상으로 이어지는데 머리뼈 골절이나 뇌출혈 등이 대표적이다. 천안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간호팀장이 생후 15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해당 신생아는 골절상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17)],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생후 13일

12) 보도자료, 국민일보 (보도일자: 2020. 1.8), 세종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은폐한 산후조리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06202&code=61121111&cp=nv (2022. 12. 8. 인출)

13) 보도자료, MBC 뉴스(보도일자: 2020. 11.17), 산후조리원 집단 잠복결핵…신생아 잇단 '양성',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77022_32531.html (2022. 12. 8. 인출)

14) 보도자료, 한겨레(보도일자: 2021. 12. 8), 분당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9명 중 4명 집단감염,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22533.html (2022. 12. 8. 인출)

15) 보도자료, 한강타임즈(보도일자: 2021.11.26.), 대전 산후조리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신생아 2명 확진',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497 (2022. 12. 8. 인출)

16) 보도자료, 메디컬투데이 (보도일자: 2019. 10.1), 분당 A산후조리원서 생후7일 된 신생아 낙상 사고로 두개골 골절…사고 발생 후 은폐 정황,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174 (2022. 12. 8. 인출)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해당 신생아는 뇌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18] 산후조리원에서의 낙상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혹여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곧바로 보호자에게 사건을 전달하고 의료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처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생아 낙상사고의 당사자는 사고의 결과가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한 점과 의사전달이 어려운 신생아라는 점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고의성이 짙어 더 심각한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낙상사고 대처방법에 대한 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다. 화재 및 소방안전 사고

산후조리원은 다중이용업소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화재 예방점검 활동은 계획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와 더불어 피난경로(대피로) 점검, 비상구 점검(개방여부, 장애물 비치 여부)과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신고체계, 종사자의 역할분담, 유형별 대피 계획 및 후송 계획 등)을 포괄한다. 실제 산후조리원에서 종종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집한 보도 자료도 모두 6개로 화재 및 소방안전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수집된 6개의 기사 중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모두 5개이며, 나머지 1개 보도 자료는 산후조리원의 소방안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한 기사이다. 화재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 3개소, 인천 1개소, 부산 1개소였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들이 머무는 공간에 설치된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산모, 신생아, 직원 등 7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19]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도 화재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 18명이 대피하는 소통이 있기도 했다.[20] 이러한 화재사고에 서울 종로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산모와 신생아 등 42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다.[21] 한편 부산의 경우 산후조리원 마사지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100명이 넘는 신생아와 산모가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22] 화재의 원인은 마사지실 반식욕기가 과열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

17) 보도자료, 굿모닝 충청(보도일자: 2019. 11. 7), 천안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낙상 사고...머리뼈 골절,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228 (2022. 12. 8. 인출)

18) 보도자료, 중앙일보(보도일자: 2022. 12.1), 낙상사고로 신생아 뇌에 출혈…조리원은 부모에 곧장 안알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2199 (2022. 12. 8. 인출)

19) 보도자료, 한국경제tv (보도일자: 2021.11.15.), 강동구 상일동 산후조리원 화재…산모 등 70명 대피,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1150249&t=NN (2022. 12. 8. 인출)

20)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일자: 2021. 2. 11), [사건사고] 한밤중 산후조리원 건물서 불…산모들 긴급 대피, https://www.yna.co.kr/view/MYH20160221003800038 (2022. 12. 8. 인출)

21) 보도자료, TV조선 (보도자료: 2021. 6. 29), 산후조리원 화재에 40여명 대피…스프링클러 '무용지물',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29/2021062990135.html (2022. 12. 8. 인출)

22) 보도자료, 아시아경제 (보도자료: 2022. 8. 27), 부산 산후조리원 화재, 신생아·산모 110명 긴급대피 … 반신욕기 전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2712030155434 (2022. 12. 8. 인출)

되었다.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도 산후조리원 화재에서 산모와 신생아 등 30여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였다.[23)]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경기소방은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하였다. 단속 결과 23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에 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화재경보시설에 해당하는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있음을 적발하였다.[24)]

앞서 산후조리원이 다중이용업소 분류에 따른 안전관리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는데, 실제 산후조리원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일반 시민들보다 취약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도시 밀집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단독시설보다는 복합시설 중 일부 층을 사용하여 운영이 되고 있어 화재에 대해 매우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컨설팅 활동을 통해 개별 산후조리원의 시설 안정성을 적절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라. 학대 관련사고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면 산후조리원도 예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기사는 3건으로 골절 혹은 뇌출혈 증세 등을 사후에 확인하고 학대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진 경우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학대 의심 사례는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가 발열증세와 더불어 뇌출혈 증세 및 오른 팔목에 골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으며[25)] 생후 16일 된 영아가 산후조리원에서 컨디션 하락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뇌출혈 증상과 망막 내 출혈 증상을 확인한 경우도 있다.[26)] 이 외에도 경기도 수원 소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간호사가 신생아 얼굴을 꼬집어 흉터를 남기는 사건이 발생하여 학대 신고 사례가 있기도 하였다.[27)] 앞에서 소개한 보도 자료를 통해 신생아 학대에 대한 부분은 단순한 신체적 위해도 경우도 있지만 뇌출혈 및 골절 등이 포괄되는 결과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뇌출혈과 골절은 낙상 등의 사고와 연관성이 높기에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종사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3)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보도일자: 2022. 8. 5), 인천 산후조리원 화재…산모·신생아 등 30여명 대피, https://www.fnnews.com/news/202208050631405508 (2022. 12. 8. 인출)

24) 보도자료, 중부일보 (보도일자: 2022. 8. 15), 경기소방,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4081 (2022. 12. 8. 인출)

25) 보도자료, 중앙일보 (보도일자: 2022. 6. 3), 생후 50일 아기에 뇌출혈과 골절이…의사가 학대 의심 신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606#home (2022. 12. 8. 인출)

26)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일자: 2022.1.28), 산후조리원 생후 16일 신생아 뇌출혈…학대 의심 신고,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8021300004 (2022. 12. 8. 인출)

27) 보도자료, 인천일보 (보도일자: 2020.11.17), '신생아 학대 논란' 수원 산후조리원 간호사 검찰행,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487 (2022. 12. 8. 인출)

마. 질환 오진 관련사고

앞서 소개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건 사고는 주로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였다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한지 6일 만에 숨진 산모에 대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산모는 사망 사흘 전부터 가슴 통증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의사는 산모에게 타이레놀만 처방하였다.[28] 그리고 사망 이후에 부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산모는 대동맥 박리로 밝혀져 담당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산모가 제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바. 기타 사고

산후조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 자료도 2개 있었다. 관련 내용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도한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2,045명의 산후조리원 내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 및 신생아, 종사자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코로나19의 방역을 비롯한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29]

감염 현황 이외에 산후조리원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기사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7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결과를 밝혔다. 산후조리원 관련 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소비자 분쟁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현재 복지부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평가체계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후조리원이 다중이용시설로 산모와 신생아가 일정기간 집단 돌봄을 받는 상황이라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다. 이와 별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용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소비자 보호제도가 미흡한 부분은 관련 사건의 빈도가 높지 않을지라도 평가지표 내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8) 보도자료, 아시아경제 (보도자료: 2021.9. 17), 산후조리원 들어간 지 6일 만에 숨져…"가슴 통증 호소에 타이레놀만", https://cm.asiae.co.kr/article/society-all/2021091716103255067 (2022. 12. 8. 인출)

29) 보도자료, 내외경제tv (보도일자: 2022 .9. 15),[국정감사] 2022년 상반기에만 산후조리원 내 감염 780명.. 전년 比 3배,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805 (2022. 12. 8. 인출)

3. 최근 산후조리원 관련 입법 동향

여기서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후조리원 관련 법안의 내용과 2022년 12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6월 이후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으로는 아래와 같이 총 15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표 Ⅲ-3-1〉 산후조리원 관련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개요

연번	제안일 (의안번호)	제안자	키워드	주요내용	처리상태
1	20.7.7 (2101593)	정춘숙 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제재 규정 정비	- 산후조리원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업무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해 산정하게 되어 있어 매출액이 높은 경우에도 그 정도가 미미하고 과징금 상한금액도 3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제재효과가 낮음.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에 따라 증가하도록 매출액의 3/100으로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조의11제1항).	위원회 심사
2	20.9.11 (2103808)	남인순 의원 등 27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	- 현행법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주체를 특별시도 및 시군구청장으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대안반영 폐기
3	20.9.23 (2104152)	박상혁 의원 등 15인	모자보건전문가의 금지행위 규정 및 처벌 부과	- 영유아의 건강 · 위생관리와 위해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전문가의 영유아 · 미숙아등의 치료 · 돌봄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이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 제2호의2 및 제27조제1항 제1호).	위원회 심사
4	20,12,4 (2106142)	정청래 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업의 안전관리 사항 규정 및 폐쇄 등의 조치사항 추가	-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 · 관리하도록 하며 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조치내역을 24시간 내에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설폐쇄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5, 제15조의4 및 제15조의8).	위원회 심사
5	21.2.25 (2108305)	노웅래 의원등 12인	산후조리원의 CCTV 설치 의무화	- 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의22 및 제15조의23 신설 등).	위원회 심사
6	21.3.11 (2108700)	허종식 의원 등 14인	산후조리원과 이용자에 대한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18제2항 · 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 제2항 신설).	위원회 심사
7	21.3.12 (2108737)	이종성 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과 이용자에 대한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8).	위원회 심사
8	21.11.12 (2113278)	최혜영 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분유류 또는 조제유류를 공급하는 자 등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후조리업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으며, 위반 시의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2 및 제26조 제1항 제4호 신설).	위원회 심사

연번	제안일 (의안번호)	제안자	키워드	주요내용	처리상태
9	21.12.1 (2113638)	보건복지위원장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	-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안가결
10	22.6.29 (2116204)	정일영 의원 등 15인	산후조리원과 이용자에 대한 지원	- 현행 모자보건법상 지원되는 산후조리 정책은 산후조리 도우미에 국한되어 있고 출산가구 다수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3 신설).	위원회 심사
11	22.6.30 (2116217)	김학용 의원 등 10인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소수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제2항 신설).	위원회 심사
12	22.7.19 (2116513)	전용기 의원 등 18인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위원회 심사
13	22.9.14 (2117341)	김영주 의원 등 14인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취약계층 이용자의 감면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3항 신설).	위원회 심사
14	22.9.30 (2117652)	정점식 의원 등 11인	지자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하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5조17제2항, 제15조의20,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위원회 심사
15	22.12.9 (2118864)	백혜련 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제재 규정 정비	-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 ·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해당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 한정해 규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입법예고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의 정보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022. 12. 15. 인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나 국가의 산후조리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주체 확대에 대한 안들이 중복되어 발의되었고, 이외 산후조리원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 안전관리 및 CCTV 설치의무 등의 사항 및 산후조리원 평가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들의 처리 상태를 보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설치·운영 주체로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가결되어 공포되었으며(의안번호 136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보건복지위원장 제안, 공포번호 18612의 2021.12.21 공포), 나머지 법안들은 2022년 12월 현재 위원회 심사 중으로 계류 상태에 있다. 이중 국가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이용자의 비용지원, 산후조리원 평가와 관련된 법안들을 주제별로 묶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의 확대

기존 모자보건법 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및 도시자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설치·운영주체를 광역 지자체 및 국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이 2020년 9월 남인순 의원안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가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자는 대안 법률안으로 대체되어 제안되었으며 가결되어 2021년 12월 공포되었다(공포번호 18612).

애초 남인순 의원 안은 기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주체를 특별시도 및 기초지자체로 한정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열된 것으로 광역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정부 역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안이었다(보건복지위원회, 2020: 53).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산후조리원이 집단시설로 안전 및 감염관리에 취약하기에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무로 보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었다(보건복지위원회, 2020: 55).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의 확대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미 지역의 조례를 통해 광역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의 확대로 인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고(보건복지위원회, 2020: 57)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가결되어 2021년 12월 공포되었다.

〈표 Ⅲ-3-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의 확대 관련 법안: 남인순 의원 안(2020.9.11.발의)

현행	남인순 의원 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7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O0E0N9D0Z8S0Z9K2J3L2I1A3C0E4 (2022. 12. 15. 인출)

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산후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산후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1년 3월 허종식 의원안, 2021년 3월 이종성 의원안, 2022년 6월 정일영 의원안의 3개의 모자보건법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특히, 이종성 의원안은 이용자의 비용지원에

더해 산후조리원에 대한 시설 및 장비 경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할 것도 제시되어 있다. 이들 법안은 출산 장려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관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삼으며, 산후조리와 관련해 산후조리도우미 사업의 국가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정작 출산모들이 가장 선호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2022: 22~23).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출산 시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지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첫만남이용권의 바우처방식 지원을 통해 개별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보건복지위원, 2022: 25), 산후조리업협회는 국가와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이용지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회, 2021: 28).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산후조리 방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출산가정의 비용부담이 경감되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의 재정 부담이 크므로 재정당국 및 지자체와의 재정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미이용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의 이용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2022: 23). 또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및 가격의 범위가 넓어 지원범위와 기준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2022: 24). 2022년 12월 현재 이 법안들은 이상과 같은 위원회 검토를 거쳐 계류 중에 있다.

〈표 Ⅲ-3-3〉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 관련 법안: 허종식 의원안(2021.3.11.발의), 이종성 의원안(2021.3.12.발의), 정일영 의원안(2022.6.29.발의)

현행	허종식의원안	이종성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생 략) 〈신 설〉	제15조의18(산후조리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18(산후조리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18(산후조리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의----------및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의 지원 기준·방법 등에----------.	③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 등에----------.	③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 등에----------.

현행	허종식의원안	이종성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 설〉			제15조의23(산후관리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산후관리비용"이라 한다)을 임산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관리비용 지원 금액 · 기준 · 방법 및 신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 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② ----------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		

자료: 1)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4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W1U0W3L1V1M1P1U3X6X4X4D2Y1Y1 (2022. 12. 15. 인출)
2)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D1B0D3Y1T2T1E1V0H1B4V7P6F4G9 (2022. 12. 15. 인출)
3)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5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K2S0O6P2Y2S1G3M0J5E0V8K7A8V6 (2022. 12. 15. 인출)

다.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자는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은 2022년 6월 김학용 의원안, 2022년 7월 전용기 의원안, 2022년 9월 김영주 의원안, 2022년 9월 정점식 의원안으로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세부사항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김학용 의원안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제2항의 신설을 통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고, 전용기 의원안은 제21조 제1항 10호의 신설을 통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부대비용의 2/3범위 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안 제15조의 17제1항의 개정을 통해 광역지자체 및 인구 50만이상의 기초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하였다. 김영주 의원안은 제15조의 17 제2, 3항의 신설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정점식 의원안은 제15조의 17 제2항 및 21조 제1항, 10호의 신설을 통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부대비용을 1/2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되, 의료취약지의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김학용, 전용기, 김영주, 정점식 의원안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여건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사무이며 국가의 재정 부담이 크므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1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기존의 특별시도 및 기초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주체가 확대되었기에 보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전에 비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보건복지위원회, 2022: 43~44). 한편, 광역 지자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전용기 의원안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기준 13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 외에 광역 17개소, 기초지자체 20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공공산후조리원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되나 획일적 설치·운영으로 지자체의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이 있을 수 있기에 인프라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보건복지위원회, 2022: 45~47).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김영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의 목적 중 하나이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현재도 다수의 지자체가 모자보건법 및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2022: 51).

관련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밀착형 특성이 강하므로 지역사무로 보는 것이 나으며, 국가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 등 사회서비스 확대와 첫만남이용권 등을 통해 보편 제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2022: 52~53). 서울특별시 역시 지역특성에 따른 지자체 판단 하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기존 민간산후조리원이 공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괄 설치보다는 산후조리원 미설치 지역 등에 설치되도록 수정·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 가동율이 높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성 강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세종시의 경우도 민간의 입소율 부족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시의 갈등을 우려하였다. 반면, 울산광역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지자체 운영 부담을 호소하며 국비지원에 긍정적인 의견을 입장을 취했다(보건복지위원회,

2022: 53~56).

〈표 Ⅲ-3-4〉 국가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관련 법안: 김학용 의원안(2022.6.30.), 전용기 의원안(2022.7.19.), 김영주 의원안(2022.9.14.), 정점식 의원안(2022.9.30.)

현행	김학용의원안	전용기의원안	김영주의원안	정점식의원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외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와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10.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2분의 1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자료: 1)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G2E0S6Z2R7N1H4N5R3O4U6T8X2N2 (2022.12. 15. 인출)

2)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8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E2W0F6U2O8L1I6U4A0D3C5W9I8E6 (2022.12. 15. 인출)
3)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S2O0A8H2T6T0K9J1Y9E4S2Y9L0O3 (2022.12. 15. 인출)
4)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X2W0T9E2Y1N1E4A2U1H3N4D4E8W4 (2022.12. 15. 인출)

라. 산후조리원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의무화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정점식 의원안으로 발의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질 제고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산후조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현장수용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 2022: 89~90).

〈표 Ⅲ-3-5〉 산후조리원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의무화 관련 법안: 정점식 의원안(2020.9.11.발의)

현행	정점식 의원안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 ·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①----------3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X2W0T9E2Y1N1E4A2U1H3N4D4E8W4 (2022. 12. 15. 인출)

Ⅳ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01 컨설팅 사업 준비

02 컨설팅 사업 수행

03 컨설팅 사업 수행 결과

04 부모교육 수행 내용 및 결과

05 요약 및 시사점

Ⅳ.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1. 컨설팅 사업 준비

2022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컨설팅 사업 홍보, 컨설팅 대상 기관 모집, 컨설턴트 모집 및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산후조리원 대상으로는 컨설팅 사업 홍보를 위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컨설팅 참여 기관을 모집하였으며, 컨설턴트 대상으로는 컨설턴트 모집 및 선정, 컨설턴트 교육 등을 수행하였다.

가. 컨설팅 사업 홍보

산후조리원 컨설팅 시행에 앞서 컨설팅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설명회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설명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

2022년도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컨설팅 대상 기관을 모집하고 컨설팅 사업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제공하였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1시간 30분 분량의 강의를 녹화한 후, 온라인 설명회 사이트를 열어 지정된 기간에 전국 산후조리원의 종사자들이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 내용은 총 3차시로 구성하였으며 1차시에는 사업 책임자가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2차시는 산후조리원 지표전문가가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3차시는 현장에서 관련 문의가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강의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산후조리원은 중대 시민 재해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후조리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온라인 설명회에 접속한 산후조리업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컨설팅에 관한 질문을 올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컨설팅 참여 기관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안내하였고, 컨설팅 참여와 무관하게 컨설팅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산후조리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 영상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설명회 자료집을 제작하여 설명회 참여

를 신청한 산후조리원에 배포하였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 영상 수강 기간은 6월 7일~10월 31일까지였으며, 이 기간에 온라인 사업 설명회 영상을 수강한 기관 중에서 1~3차 컨설팅과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였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는 최종적으로 70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참여하였으며(표 Ⅳ-1-1),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진행 일정은 〈표 Ⅳ-1-2〉와 같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 주제 및 내용은 〈표 Ⅳ-1-3〉과 같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Ⅳ-1-1〉 온라인 사업 설명회 신청기관 수

구분		온라인 설명회 신청기관 수	
수도권	서울	14	33
	경기	16	
	인천	3	
지방	강원권	2	37
	충청권	6	
	경상권	20	
	전라권	7	
	제주권	2	
총계		70	

〈표 Ⅳ-1-2〉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진행 일정

일정	진행사항
5/13(금)	- 온라인 설명회 영상 촬영 (강사 3명)
5/23(월)	- 온라인 설명회 자료 이클래스 업로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설명
6/20(월)	- 사업 설명회 참여 신청한 산후조리원에 설명회 자료집 발송(신청 건 발생 시 책자 수시 발송)
6/7(화)~10/31(월)	- 설명회 참여를 신청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 영상 공개 - 온라인 설명회 사이트,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질의응답

〈표 Ⅳ-1-3〉 온라인 사업 설명회 주제 및 내용

구분	주제	내용
1강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소개	컨설팅 운영방식 안내
2강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의 이해	평가기준 개괄 및 안내
3강	중대재해처벌법	산후조리원과 중대재해처벌법

[그림 Ⅳ-1-1] 온라인 사업 설명회 사이트

나. 컨설팅 대상 기관 모집

2022년도에는 1~3차 컨설팅 기관 15개소와 1일 방문 컨설팅 기관 45개소 모집을 목표로 컨설팅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하였다. 컨설팅 대상 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2022년 5월 전국 산후조리원에 컨설팅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협조 요청 공문과 함께 전국 산후조리원 대상 컨설팅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컨설팅 참여 기관 및 온라인 사업 설명회 참여 기관을 모집하였다. 또한, 한국산후조리원협회의 협조를 받아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에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실어 홍보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 컨설팅 참여 기관 비율이 낮았던 지역 보건소에 연구진이 직접 전화하여 컨설팅 기관 모집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독려하였다.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희망하는 개별 산후조리원은 보건소 또는 육아정책연구소에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컨설팅 수요조사에서 1~3차 컨설팅 및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산후조리원들 중 온라인 사업 설명회 영상을 모두 수강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1~3차 컨설팅 및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신청을 받았다. 또한, 컨설팅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사업 설명회 영상을 모두 수강한 산후조리원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컨설팅 참여 기관을 모집하였다. 컨설팅 수요조사에서 1~3차 컨설팅 신청기관 중 2021년도 1~3차 컨설팅 참여 이력이 있는 기관은 1일 방문 컨설팅으로 컨설팅 유형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며, 2021년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 중 2022년도 1~3차 컨설팅 참여 의사를 밝힌 산후조리원에도 연락을 취해 컨설팅 대상기관을 모집하였다.

2022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대상 기관 모집의 경우, 다수의 산후조리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외부인이 산후조리원 내부로 들어와 진행되는 컨설팅의 참여 신청을 주저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컨설팅 관련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방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컨설턴트 교육에 포함하였으며, 산후조리원에도 컨설팅 관련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이를 주의하며 컨설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였다.

다. 컨설턴트 모집 및 교육

본 사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 및 유지이다. 컨설턴트가 산후조리원 평가 체계와 영역별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질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기존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영역별 지표 및 산후조리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2022년도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하여 컨설턴트를 모집하고, 집체 교

육 및 소그룹 교육을 실시하였다.

1) 컨설턴트 모집

컨설턴트 모집은 2018년도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2019년~2021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참여했던 산후조리원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모집하고 모자보건학회, 병원신생아간호사회, 병원여성간호사회를 통해 컨설턴트를 추천받았다.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컨설턴트는 31명으로 보건 분야 경력자로만 구성하였다. 컨설턴트 자격 기준은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 컨설턴트 자격 기준

분야	자격 기준
보건 (간호사)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수간호사나 팀장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 2회 이상 경험자 -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간호사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 2회 이상 경험자

2) 컨설턴트 교육 및 관리

본 사업에서는 컨설턴트가 산후조리원 평가 체계와 영역별 지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산후조리원에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 및 유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컨설턴트 교육을 6월 3일, 4일, 10일에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였다. 교육 강사는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수간호사나 팀장을 경험한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서 2019~2021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서 우수한 수행 능력을 보여준 컨설턴트 중 2명을 선정하였다. 컨설턴트 교육 내용은 평가기준, 항목, 평가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강사의 설명과 질의응답 및 수강 컨설턴트들의 실제 컨설팅 경험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컨설턴트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는 2021년에 수행된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의 연구 결과물로 만들어진 「컨설턴트용 교육 매뉴얼」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산후조리원의 컨설팅 품질 향상을 위해 컨설팅 중에 발생하는 민원과 지표와 관련된 문의 대응을 위한 산후조리원 컨설팅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또한, 연구진이 컨설팅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의 어려움 청취는 물론, 컨설팅 과정에 대한 현장과 컨설턴트의 수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컨설팅 과정에 반영하였다.

〈표 Ⅳ-1-5〉 컨설턴트 교육 일정 및 참석자 수

구분	일자	교육 시간	구분	참석자수	참석자수		비고
					현직	퇴직	
컨설턴트 교육	6.3(금)	9:00~16:30	집체 교육	12	4	8	- 교육강사 2명 포함
			소그룹 교육	6	-	6	- 교육강사 1명 포함
				6	4	2	- 교육강사 1명 포함
	6.4(토)	9:00~16:30	집체 교육	17	11	6	- 교육강사 2명 포함 - 신규컨설턴트 3명 포함
			소그룹 교육	8	6	2	- 교육강사 1명 포함 - 신규컨설턴트 3명 포함
				9	5	4	- 교육강사 1명 포함 - 교육강사 2명 포함
신규 컨설턴트 교육	6.25(토)	9:00~13:00	소그룹 교육	8	6	2	- 교육강사 1명 포함 - 2021년도 컨설턴트 교육 미수료자 2명 포함

[그림 Ⅳ-1-2] 2022년 컨설턴트 위촉식 및 컨설턴트 교육

3) 코로나19 관련 준비 및 대처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서도 2021년에 수립한 컨설팅 수행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였다. 컨설턴트 교육에서 방역지침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사무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방역과 관련된 모든 물품을 컨설턴트에게 발송하였다. 특히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무국에서는 컨설팅 방문 일주일 전부터 컨설턴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지참할 물품 및 방역지침을 반복해서 안내하였다.

〈표 Ⅳ-1-6〉 컨설팅 수행 관련 방역지침

구분	내용	컨설턴트 준수사항	산후조리원 협조사항
컨설팅 방문 전	방역지침 준수	- 기관 방문 전 일주일 동안 발열체크 기록 후 기관 방문 전날 제출 - 기관 방문 전날 문진표 작성 후 제출	- 컨설팅을 위한 독립된 공간 마련(컨설팅 당일)

구분		내용	컨설턴트 준수사항	산후조리원 협조사항
컨설팅 방문 당일	산후조리원 입장 전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준비	- 산후조리원 입장 전·후 마스크 반드시 착용	- 컨설턴트가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외부인과 접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선 고려
	산후조리원 입구 및 방문객실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준비	- 입장 명부, 문진표 작성 및 체온 측정 - 방문객실에서 손 씻기 - 원장실 혹은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 사회적 거리 유지(1m 이상)	- 문진표 작성 및 체온 측정 - 사전에 컨설턴트 방문을 산후조리원 내 공지하여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종사자와의 접촉 최소화(※ 산모 및 신생아의 경우 전면 접촉 금지) - 산후조리원 내에서 사람 간 사회적 거리 유지(1m 이상) - 컨설턴트의 입·퇴장 시간 확인
	원장실 (혹은 독립된 공간)	현장 방문 및 규정 및 문서 검토	- 사회적 거리 유지(1m 이상) - 불필요한 접촉 자제	- 사회적 거리 유지(1m 이상) - 불필요한 접촉 자제
	점심시간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가 이루어질 예정	- 동행 컨설턴트와 식사 시 마주하지 않고 식사를 하며, 1m 이상 간격 유지	- 컨설턴트 간 마주하지 않고.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식사
	원장실 (혹은 독립된 공간)	현장 방문 및 규정 및 문서 검토	- 컨설턴트 2인 중 1인만 일정 시간 (예: 1~2시간 이내) 동안 현장 관찰 실시(세탁실 및 조리실 등) - 현장 방문 시 산후조리원 종사자와의 접촉 최소화 - 산모 및 신생아실은 방문하지 않음 - 나머지 1인은 원장실(독립된 공간)에서 서류 검토 (※ 현장 상황에 맞추어 진행함)	- 현장점검은 원 운영상황에 맞게 오전 혹은 오후에 진행 - 현장검토 컨설턴트 동선에 산후조리원 종사자와의 접촉 최소화 - 산모 및 신생아와는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협조
	산후조리원 퇴장	감염예방을 위한 추후활동	-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	- 컨설턴트가 다녀간 장소에 대해 소독 및 환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컨설팅 종료 후		방역지침 준수	- 방역지침 사후체크리스트 작성 후 제출	

자료: 이정림 외(2020).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pp. 66-67. 〈표 Ⅲ-1-7〉 컨설팅 수행 관련 방역지침을 2022년도에 맞게 수정함.

2. 컨설팅 사업 수행

가. 1~3차 컨설팅 사업 수행

1)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현황

1~3차 컨설팅에는 총 16개의 산후조리원이 모집되었으나, 실제 1차 컨설팅에는 16개소 중 1개 산후조리원이 취소하였다. 2차 컨설팅 시에는 15개소 중 1개 산후조리원이 중도 취소하여 14개 산후조리원이 참여하였고, 3차 컨설팅 시에는 취소 기관 없이 14개 산후조리원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1~3차 컨설팅을 모두 완료한 기관은 총 14개이다. 1차 컨설팅을 취소한 사유는 업무과중화 및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외부인(컨설턴트)의 방문 우려였고, 2차 컨설팅을 취소한 사유는

산후조리원 임대 계약 연장 문제였다.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수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월별 컨설팅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Ⅳ-2-1〉 1~3차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 및 취소 기관 수

지역	모집 기관수	1차 컨설팅 참여(취소) 기관 수	2차 컨설팅 참여(취소) 기관 수	3차 컨설팅 참여(취소) 기관 수
수도권	8	7(1)	6(1)	6(0)
지방	8	8(0)	8(0)	8(0)
총계	16	15	14	14

〈표 Ⅳ-2-2〉 1~3차 컨설팅 취소 사유

	취소 차수	산후조리원명	사유
1	1차 컨설팅 취소	수도권 A산후조리원	업무과중화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2	2차 컨설팅 취소	수도권 B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임대 계약 연장 문제

〈표 Ⅳ-2-3〉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수

구분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수
모집(수도권/지방)		14(6/8)
수도권	소계	6
	서울	2
	경기	3
	인천	1
지방	소계	8
	강원권	2
	충청권	-
	경상권	3
	전라권	2
	제주권	1
총계		14

〈표 Ⅳ-2-4〉 1~3차 컨설팅 월별 진행 기관 수

구분		1~3차 컨설팅 진행 완료 개소 수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서울	1(1차)	1(1차) 1(2차)	1(2차)	1(3차)	1(3차)		
	경기	1(1차)	2(1차)	3(2차)	2(3차)	1(3차)		
	인천		1(1차)	1(2차)	1(3차)			
지방	강원권	1(1차)		1(1차)	2(2차)	1(3차)	1(3차)	
	충청권							
	경상권	2(1차)	1(2차)	1(1차) 1(2차) 1(3차)	1(3차)		1(2차)	1(3차)
	전라권		1(1차)		1(1차) 1(2차)	1(2차) 1(3차)	1(3차)	
	제주권			1(1차)	1(2차)		1(3차)	
총계		5	7	10	10	5	4	1

2) 1~3차 컨설팅 컨설턴트 참여 현황

컨설턴트 교육 및 위촉식 당시 31명의 컨설턴트(신규 컨설턴트 5명 포함)를 위촉하였고, 이 중 14명의 컨설턴트가 1~3차 컨설팅에 참여하였다.

〈표 Ⅳ-2-5〉 1~3차 컨설팅 컨설턴트 참여 현황

구분		참여 인원 수	
		현직	퇴직
컨설턴트 교육 및 위촉식	2018~2021년 참여 컨설턴트	13	13
	신규	4	1
	소계	17	14
	총계	31	
1~3차 컨설팅	2018~2021년 참여 컨설턴트	5	8
	신규(참관)	1	-
	소계	6	8
	총계	14	

3)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의 운영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

1~3차 컨설팅을 신청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1차 컨설팅 시작 전 해당 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표(산후조리원의 기본정보, 시설 및 이용 현황, 인력 현황 등이 포함)와 산후조리원이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을 평가해보는 자체평가지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운영현황표와 자체평가지는 1차 컨설팅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기관에 배정된 컨설턴트에게 전달

하였으며, 이를 통해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나가기 전 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1~3차 컨설팅을 완료한 기관 14개소가 제출한 운영현황표 및 자체평가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근무 인력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중 운영현황 및 자체평가지를 제출한 기관은 14개소이나 이 중 인력 담당자 교체로 누락된 정보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2개소를 제외하고 총 12개소의 근무 인력과 법정 인력을 비교하였다.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의 근무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당 1일 간호사 수는 평균 3.3명이었으며, 1일 간호조무사 수는 평균 7.8명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인력이 부족했던 수도권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신생아 수 대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근무 인력이 법정 기준을 충족했고, 근무 인력이 법정 인력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상회하는 기관도 있었다.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의 근무 인력, 법정 인력 비교 결과는 다음 〈그림 Ⅳ-2-1〉과 같다.

[그림 Ⅳ-2-1]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근무 인력, 법정 인력 비교(간호사, 간호조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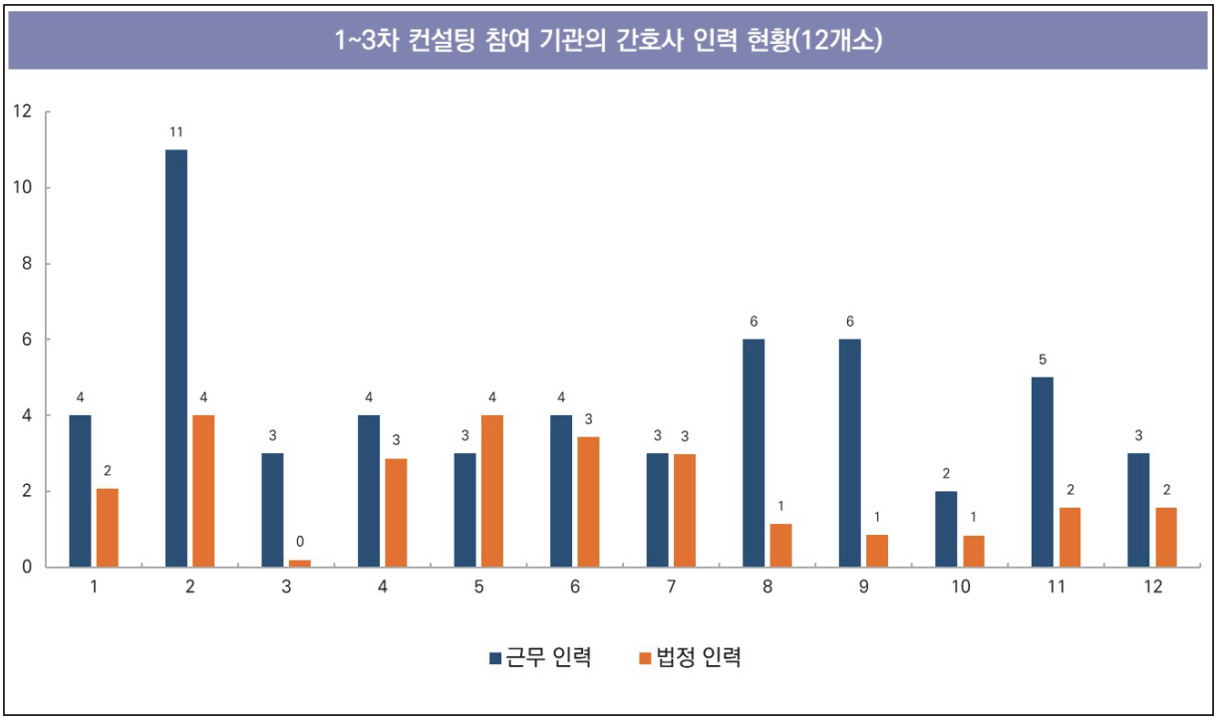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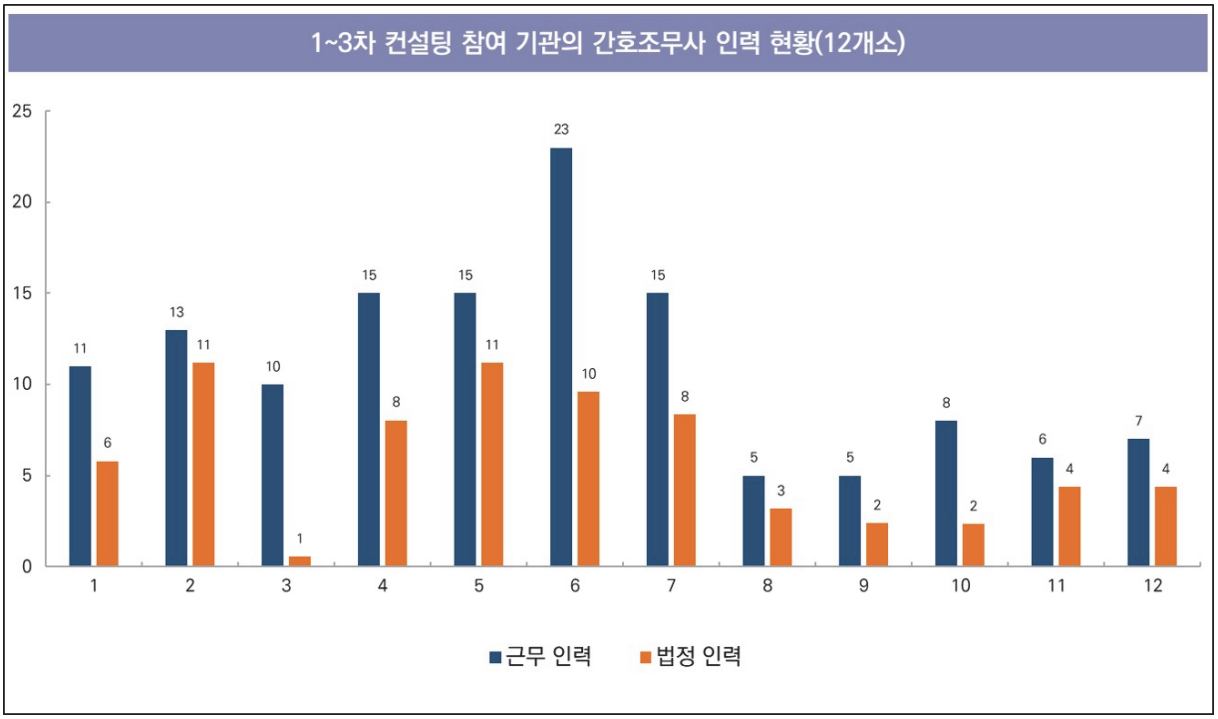

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간)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의 이용요금(2주간)을 분석한 결과, 법인/민간 산후조리원(8개소)의 경우 일반실 평균 금액은 2,472,000원, 중위 금액은 2,300,000원이었다. 특실의 경우, 평균 금액 3,348,333원, 중위 금액 3,120,000원으로 나타났다.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공공산후조리원 4개소의 경우, 일반실 이용요금은 1,668,000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실과 특실의 가격은 평균 금액 비교 시 876,333원, 중위 금액 비교 시 820,000원의 차이가 있었다.

〈표 Ⅳ-2-6〉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이용요금

구분	법인/민간 산후조리원(8개소)		공공산후조리원(4개소)	
	일반실	특실	일반실	특실
평균 금액	2,472,000원	3,348,333원	1,668,000원	-
중위 금액	2,300,000원	3,120,000원		

다) 모자동실 이용 현황 및 모유수유

모자동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들의 모자동실 이용시간을 살펴보았다. 모자동실의 이용시간을 비율 범위로 응답하도록 하여(예: 4시간 미만 3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70%)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시간 범위를 1순위로 선정해 응답한 비율을 분석한 결과, 1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모자동실 시간이 4시간 미만을 1순위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을 1순위로 응답한 산후조리원은 3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1순위는 아니었지만 모자동실 이용시간이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1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산후조리원도 1개소 있었으며, 16시간 이상, 모자동실 이용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없었다. 즉, 2022년도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자동실 운영 시 8시간 미만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그림 Ⅳ-2-2]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모자동실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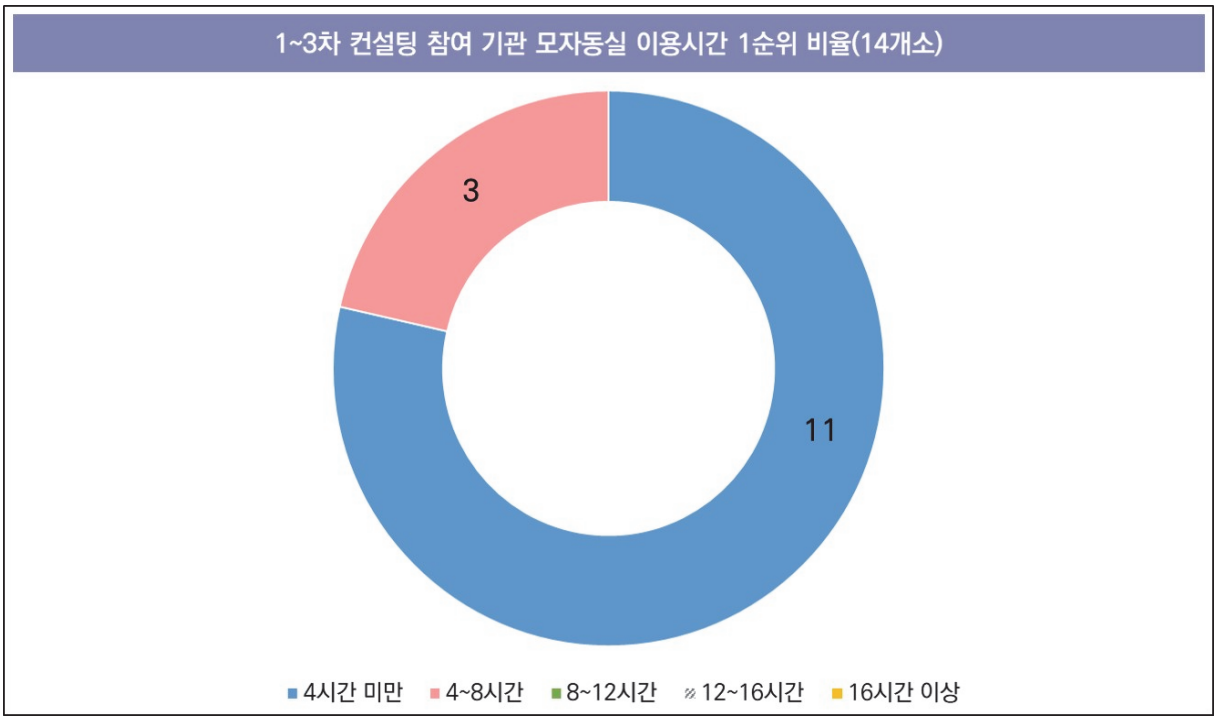

산후조리원의 수유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수유 방법(완전모유수유, 모유수유+인공수유, 인공수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을 비율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14개 산후조리원 중 대부분(13개소)의 산후조리원에서 모유수유와 인공수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수유하고 있었다. 1개소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완전 모유수유율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차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별 모유수유 비율은 다음의 〈그림 Ⅳ-2-3〉과 같다.

[그림 Ⅳ-2-3]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모유수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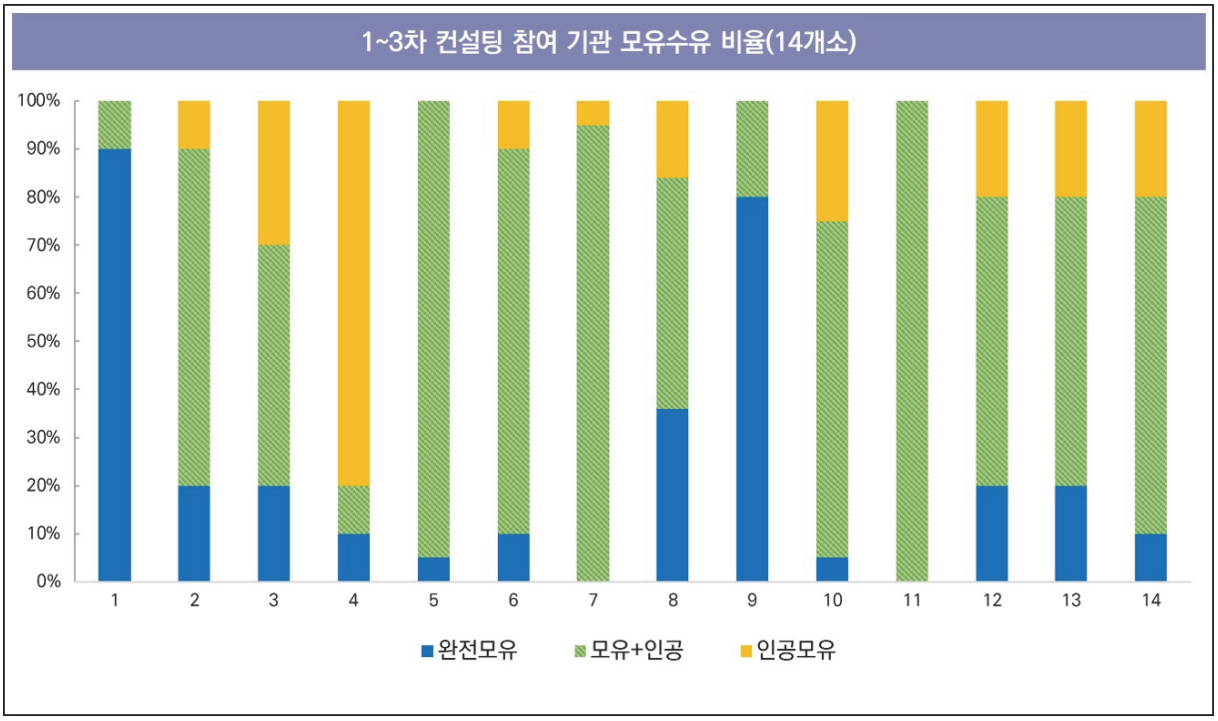

라) 자체평가 분석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들이 컨설팅 전 작성한 자체평가지의 분석 결과는 [그림 Ⅳ-2-4]와 같다. 참여 기관의 자체평가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1~3차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의 자체평가지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다섯 가지 대영역 중 3가지 영역(1. 시설 적정성, 2. 손 위생, 3. 신생아 확인)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을 '상' 또는 '유'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와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중' 또는 '하'로 평가한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다.

[그림 Ⅳ-2-4]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자체평가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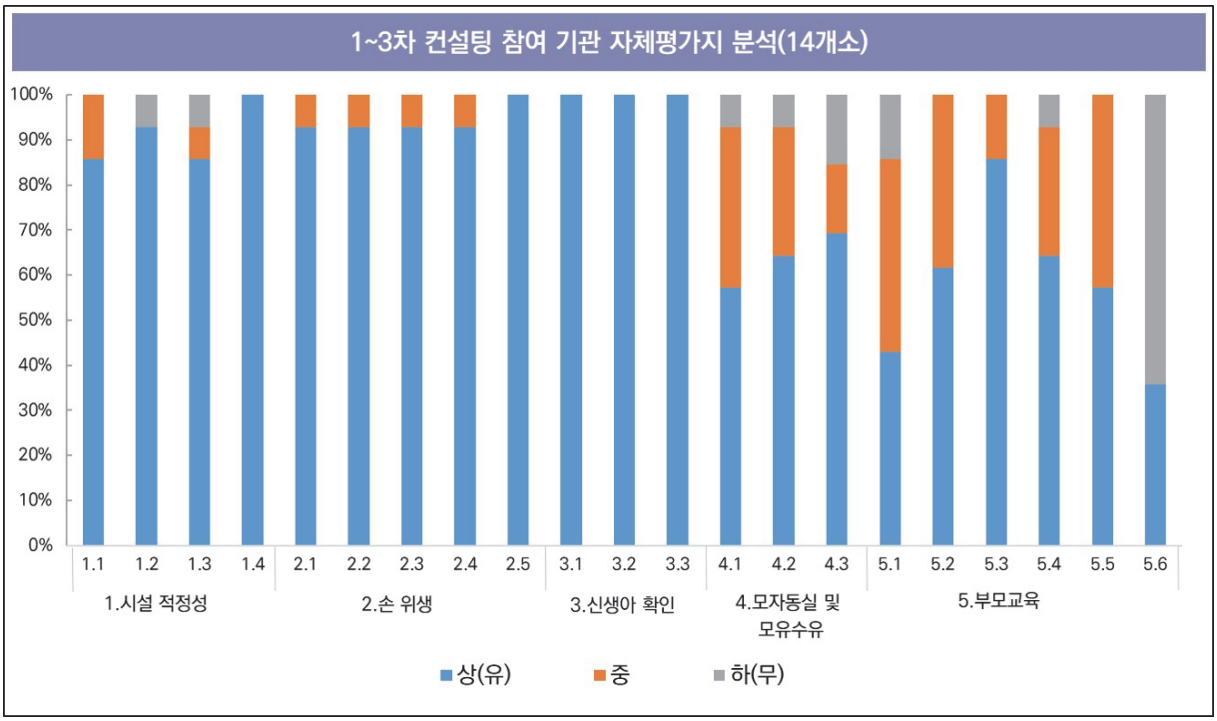

나. 1일 방문 컨설팅 사업 수행

1)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현황

2022년도 1일 방문 컨설팅 목표 기관수는 45개소였으나, 이보다 많은 52개소(수도권 24개소, 지방 28개소)가 모집되었다. 이 중 5개 기관은 내부사정, 담당자 건강문제, 병원 화재 복구 작업 등의 사유로 1일 방문 컨설팅을 철회하기도 했다. 1일 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던 산후조리원 1개소는 업무의 질적 향상과 구체적인 컨설팅을 희망하여 1~3차 컨설팅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수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월별 컨설팅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Ⅳ-2-7〉 1일 방문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 및 취소/변경 기관 수

지역	모집 기관 수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수(취소/변경)
수도권	24	21(3/0)
지방	28	25(2/1)
총계	52	46

〈표 Ⅳ-2-8〉 1일 방문 컨설팅 취소/변경 사유

	산후조리원명	취소/변경	사유
1	수도권 A산후조리원	취소	내부 사정
2	수도권 B산후조리원	취소	내부 사정
3	수도권 C산후조리원	취소	담당자 건강문제
4	지방 A산후조리원	취소	내년에 받기를 희망
5	지방 B산후조리원	취소	병원 화재 복구 작업
6	지방 C산후조리원	변경	1일 방문 컨설팅에서 1~3차 컨설팅으로 변경

〈표 Ⅳ-2-9〉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수

구분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수
모집(수도권/지방)		46(21/25)
수도권	소계	21
	서울	10
	경기	10
	인천	1
지방	소계	25
	강원권	-
	충청권	5
	경상권	15
	전라권	4
	제주권	1
총계		46

〈표 Ⅳ-2-10〉 1일 방문 컨설팅 월별 진행 기관 수

구분		1일 방문 컨설팅 진행 완료 개소 수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서울		2	1	1	5	1	
	경기		1	1	2	5	1	
	인천		1					
지방	강원권							
	충청권	1		1		3		
	경상권		3	3	2	6	1	
	전라권		1	2		1		
	제주권					1		
총계		1	8	8	5	21	3	-

2) 1일 방문 컨설팅 컨설턴트 참여 현황

1일 방문 컨설팅은 1~3차 컨설팅과 동일한 형태(컨설팅 시간, 운영현황 및 자체평가, 시범 및 결과보고)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1~3차 컨설팅에서 팀장과 팀원으로서 활동 경력이 많은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하였다.

〈표 Ⅳ-2-11〉 1일 방문 컨설팅 컨설턴트 참여 현황

구분		참여 인원수	
		현직	퇴직
컨설턴트 교육 및 위촉식	2018~2021년 참여 컨설턴트	13	13
	신규	4	1
	소계	17	14
	총계	31	
1일 방문 컨설팅	2018~2021년 참여 컨설턴트	9	8
	신규(참관)	2	-
	소계	11	8
	총계	19	

3)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의 운영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

1일 방문 컨설팅을 신청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시작 전 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표와 자체평가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기관 운영현황표 양식(산후조리원의 기본정보, 시설 및 이용 현황, 인력 현황 포함)은 1~3차 컨설팅과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컨설팅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사전에 컨설턴트들이 컨설팅을 나가기 전 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1일 방문 컨설팅을 완료한 기관은 46개소이나 자체평가지 및 운영현황표를 제출한 기관은 45개소이며, 제출하지 않은 1개소의 경우 담당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제출을 완료했으나 일부 항목 정보를 누락한 곳도 있었는데, 개소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이전 시기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없거나(2개소), 담당자가 변경되어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곳(1개소), 이외에도 기타 사유로 일부 항목 정보를 누락한 곳(1개소)이 있었다. 1일 방문 컨설팅 산후조리원 중 자체평가지 및 운영현황표를 제출한 45개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근무 인력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42개소의 근무 인력 현황을 수도권(19개소)과 지방(23개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관 당 하루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수도권 평균 3.3명, 지방 평균 3.4명이었다. 간호조무사 수는 수도권 평균 11.4명, 지방 평균 8.6명이었다. 간호조무사 인력은 모든 참여 기관에서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간호사 인력은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3개소 확인되어(수도권 1개소, 지방 2개소) 법정 인력 준수의 필요성과 인력 충원을 권고하였다.

[그림 Ⅳ-2-5]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근무 인력, 법정 인력 비교(간호사, 간호조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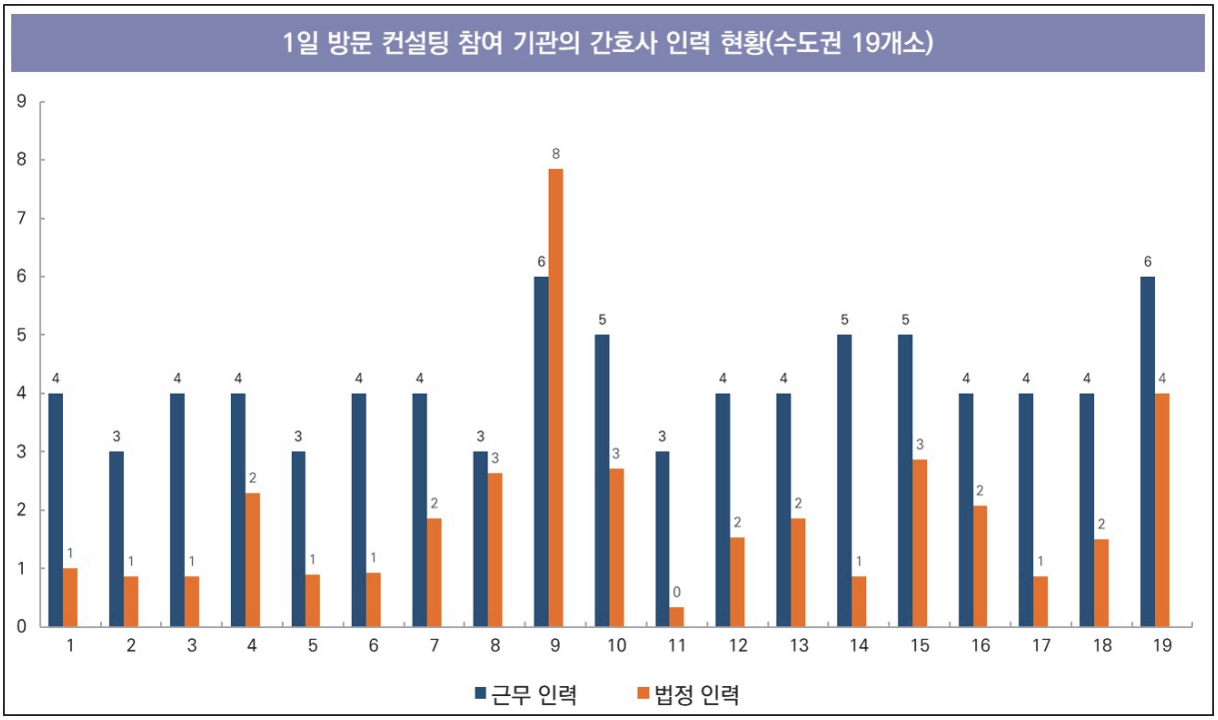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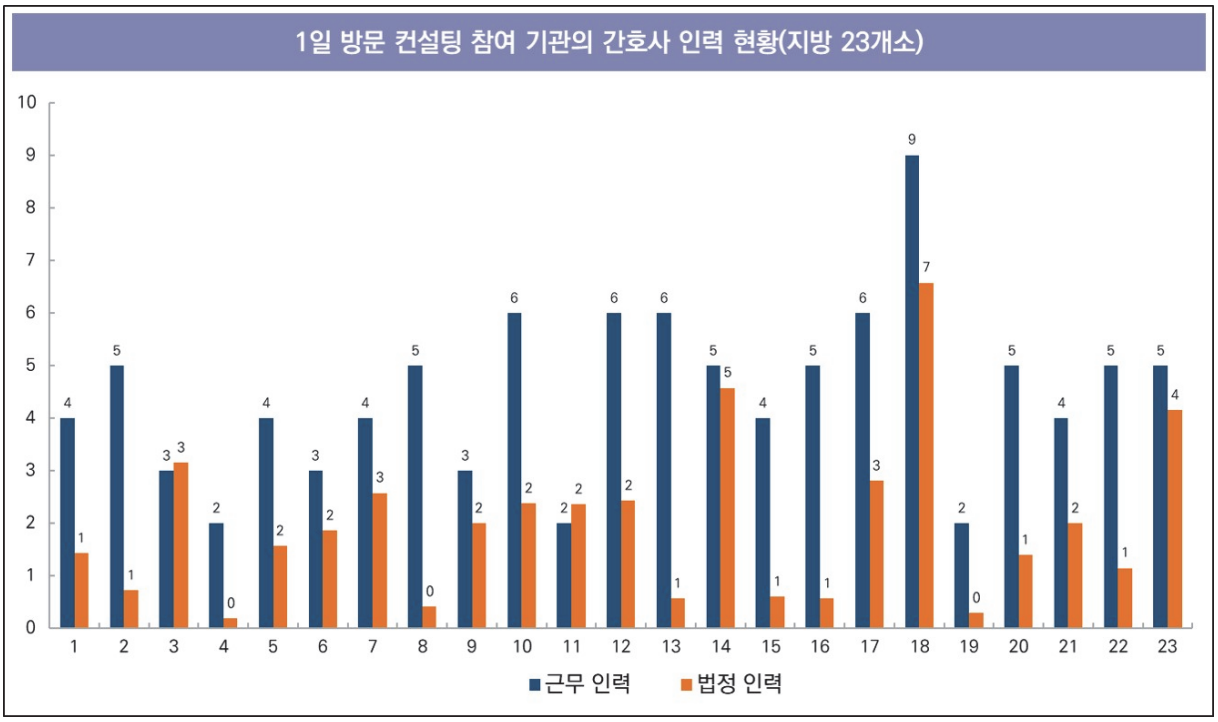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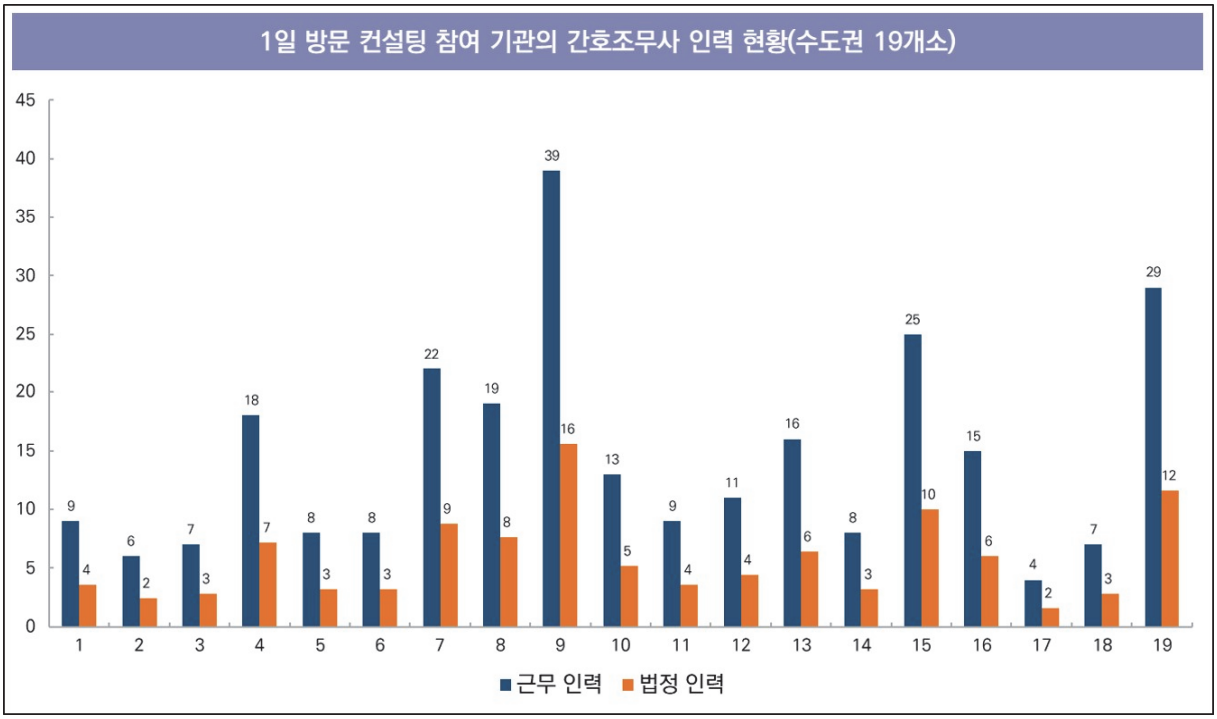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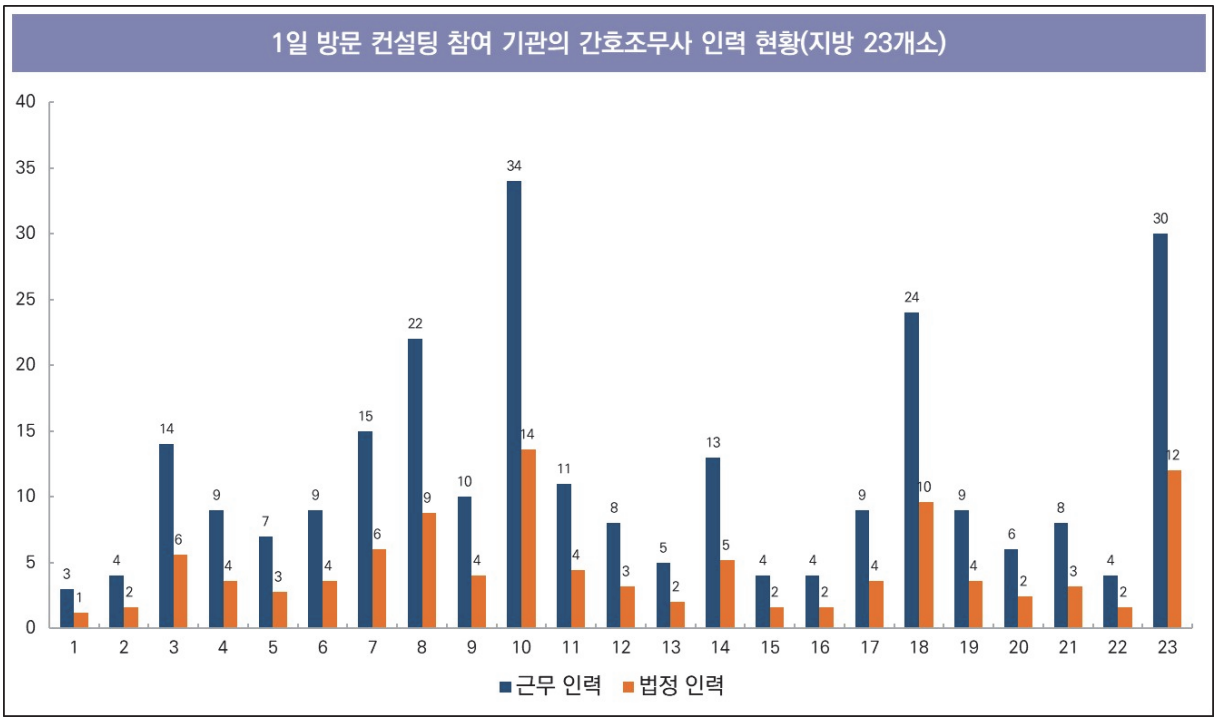

나)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2주간)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의 이용요금(2주간)을 분석한 결과, 법인/민간 산후조리원 40개소의 경우 일반실 평균 금액은 2,787,821원, 중위 금액은 2,500,000원이었다. 특실의 경우, 평균 금액 3,992,931원, 중위 금액 3,055,000원이었다.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한 공공산후조리원 5

개소의 경우, 일반실 이용 요금의 평균 금액은 1,708,000원이었으며, 중위 금액은 1,680,000원으로 나타났다. 특실의 경우, 이용 요금의 평균 금액과 중위 금액이 모두 1,540,000원이었다. 1일 방문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법인/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실과 특실의 가격은 평균 금액 비교 시 1,205,110원, 중위 금액 비교 시 555,000원의 차이가 있었다.

〈표 Ⅳ-2-12〉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이용요금

구분	법인/민간 산후조리원(40개소)		공공산후조리원(5개소)	
	일반실	특실	일반실	특실
평균 금액	2,787,821원	3,992,931원	1,708,000원	
중위 금액	2,500,000원	3,055,000원	1,680,000원	

다) 모자동실 이용 현황 및 모유수유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이용 현황과 모유수유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운영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은 1개소와 누락된 정보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1개소를 제외한 44개소 산후조리원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모자동실 이용 현황 분석을 위해 이용시간 범위를 비율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으며(예: 4시간 미만 30%,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70%), 이를 토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시간 범위를 1순위로 선정하여 응답 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자동실 이용시간이 4시간 미만을 1순위로 응답한 산후조리원이 25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을 1순위로 응답한 산후조리원이 14개소로 나타났다.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을 1순위로 응답한 산후조리원은 4개소, 16시간 이상을 1순위로 응답한 산후조리원은 1개소였다. 12시간 이상~1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산후조리원은 없었다. 2022년도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한 과반의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자동실 운영 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약 30%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이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으로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림 Ⅳ-2-6]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모자동실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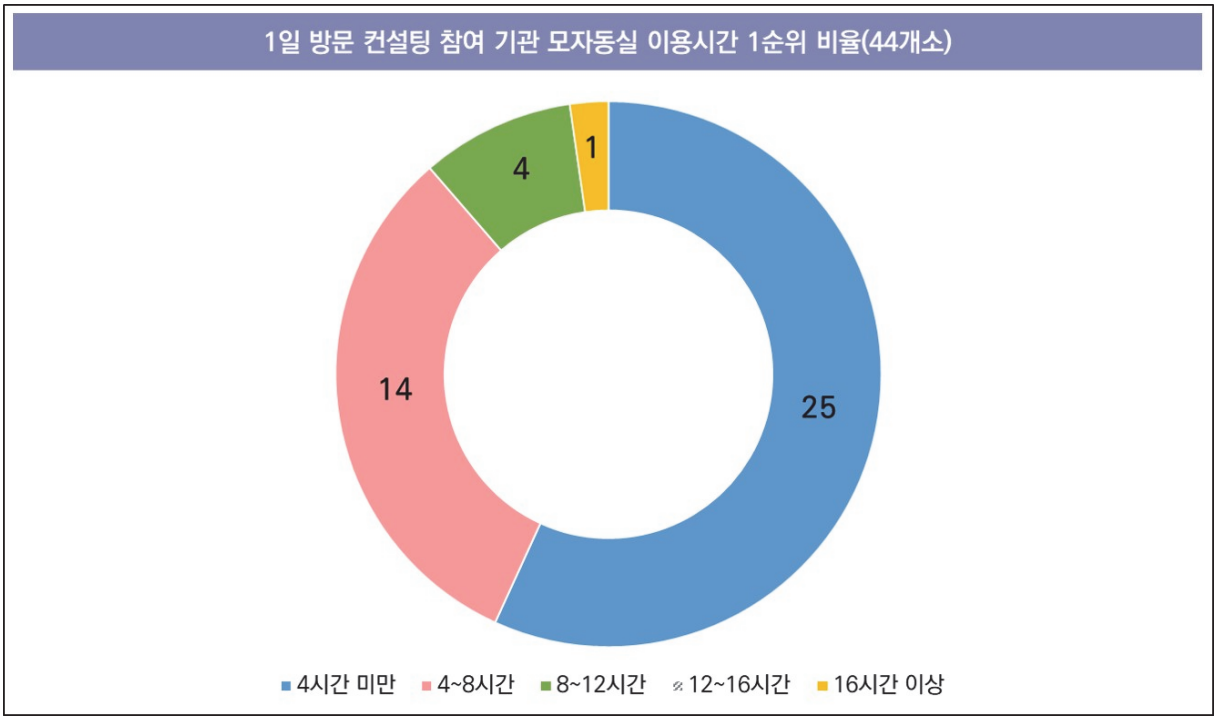

운영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은 1개소를 제외한 수도권 20개소, 지방 25개소 산후조리원의 모유수유 응답을 분석하였다. 먼저, 수도권의 산후조리원 20개소를 분석한 결과, 4개소 산후조리원에서는 완전모유수유율이 가장 높았으나 대다수(16개소)의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유수유와 인공수유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완전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은 2개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방의 산후조리원 25개소를 분석한 결과, 3개소 산후조리원에서는 완전모유 수유율이 가장 높았으나 21개 산후조리원에서는 모유수유와 인공수유 혼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전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는 산후조리원도 7개소 있었다. 전년도 결과와는 다르게 완전모유를 가장 많이 실시하는 산후조리원의 비율은 수도권(20%)이 지방(12%)보다 높았고, 완전모유수유를 실시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은 지방(33%)이 수도권(1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모유수유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Ⅳ-2-7〉과 같다.

[그림 Ⅳ-2-7]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모유수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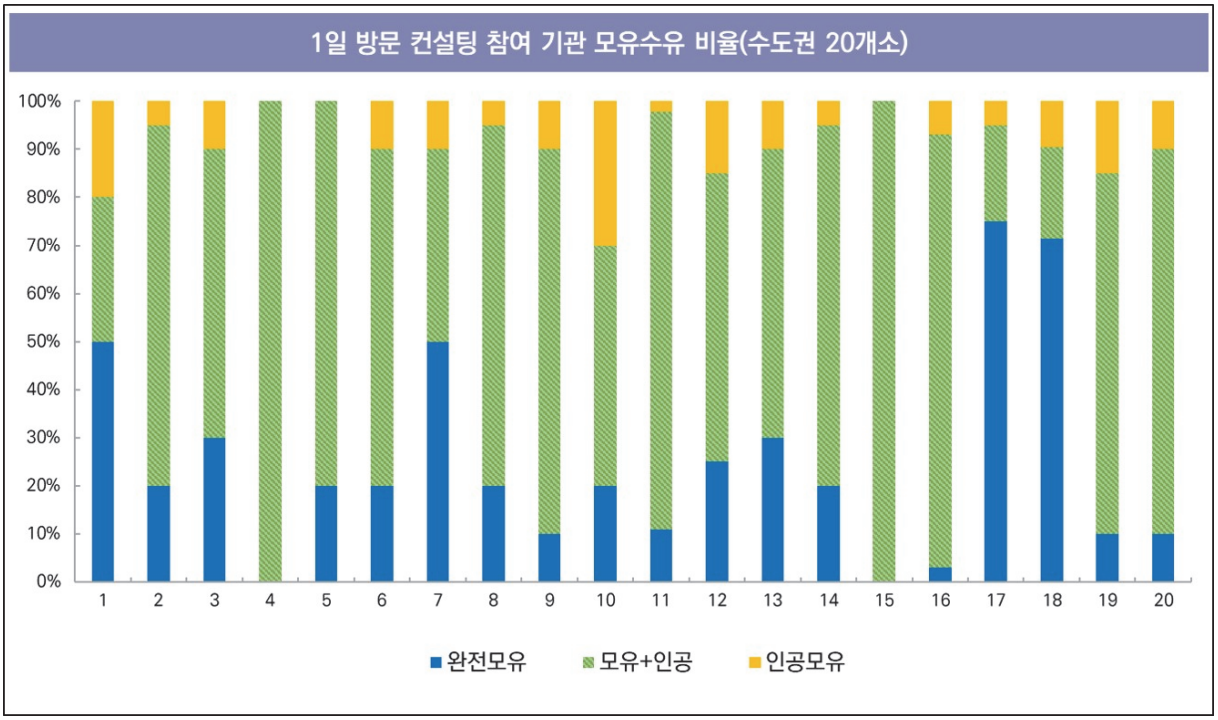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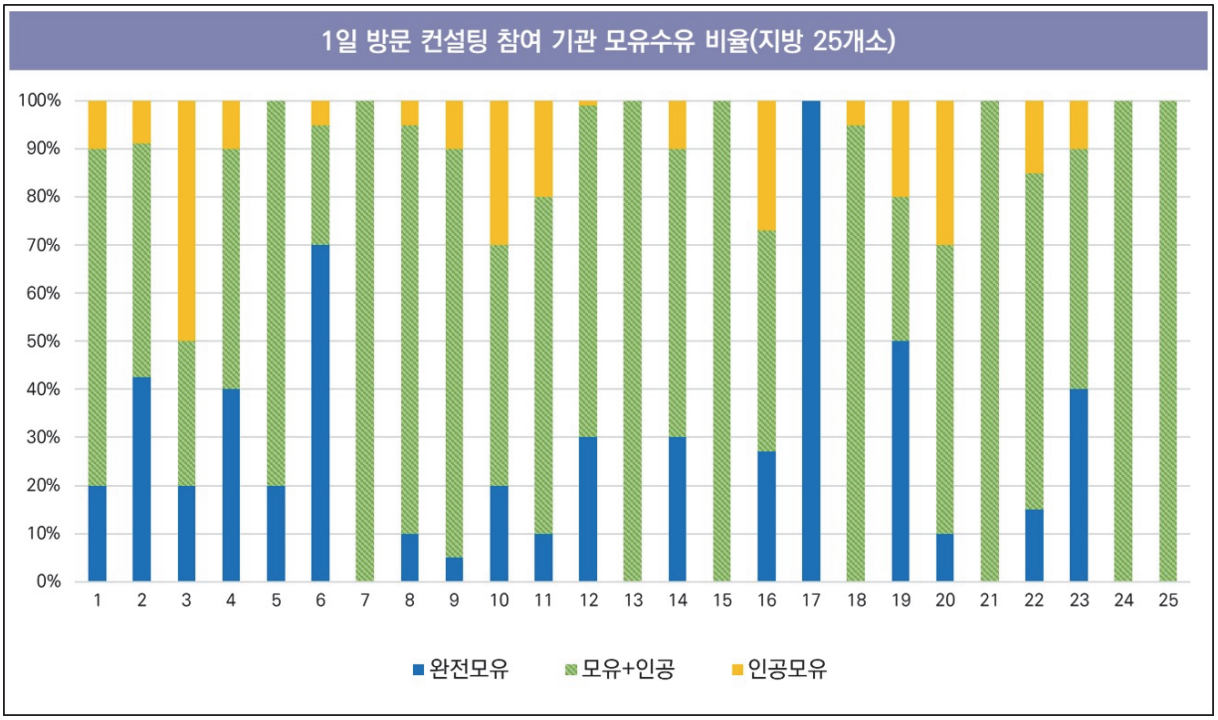

라) 자체평가 분석

1일 방문 컨설팅을 신청한 46개소 중 자체평가지를 제출한 45개소의 자체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 기관의 자체평가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

이 있었다.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의 자체평가 분석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대영역 중 세 가지 대영역(1. 시설 적정성, 2. 손 위생, 3. 신생아 확인)에서 대부분의 항목을 '상' 또는 '유'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와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중' 또는 '하'로 평가한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들이 컨설팅 전 실시한 자체평가의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Ⅳ-2-8〉과 같다.

[그림 Ⅳ-2-8]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 자체평가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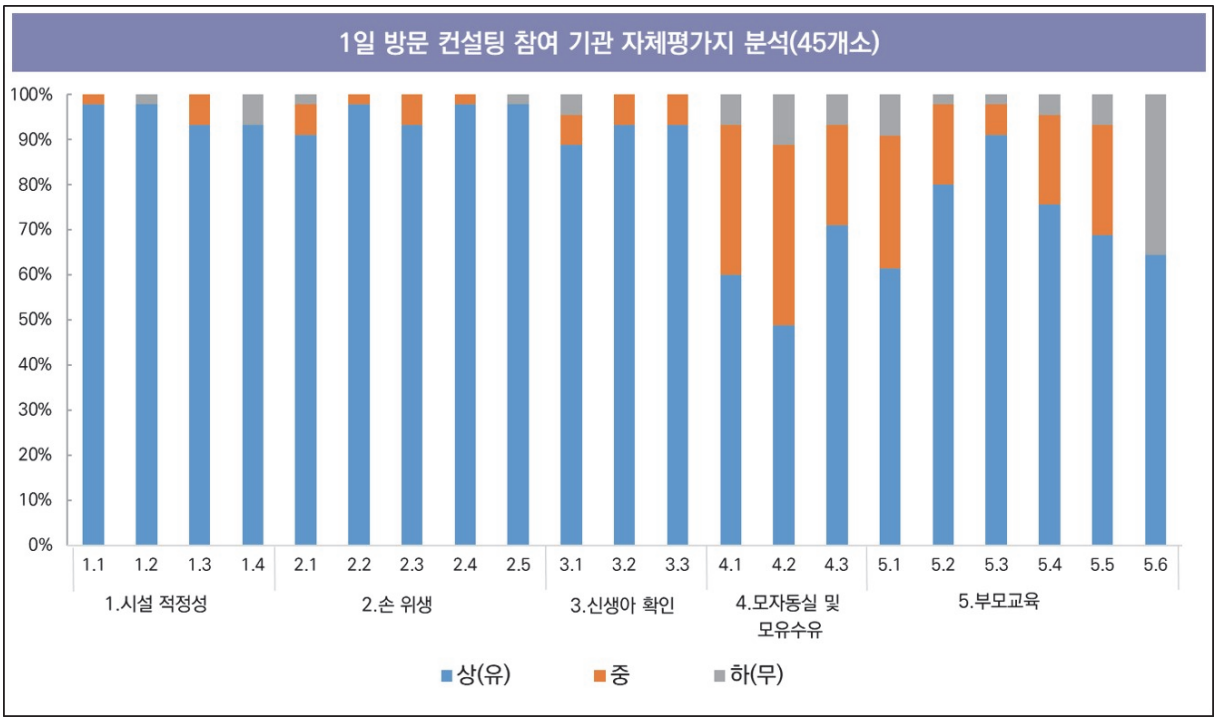

3. 컨설팅 사업 수행 결과

가. 1~3차 컨설팅 수행 결과

1)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컨설턴트는 1차와 3차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두 차례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1차 시범평가는 컨설팅의 필요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3차 시범평가는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추후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

가) 1차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우선, 1~3차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의 컨설팅 필요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1차 컨설팅 시 시범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범평가에 참여한 14개소를 대상으로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소영역별 평균 점수는 3.8점이었으며, 중영역별 평균 점수는 4.1점, 대영역별 평균 점수는 3.8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1] 1차 시범평가 소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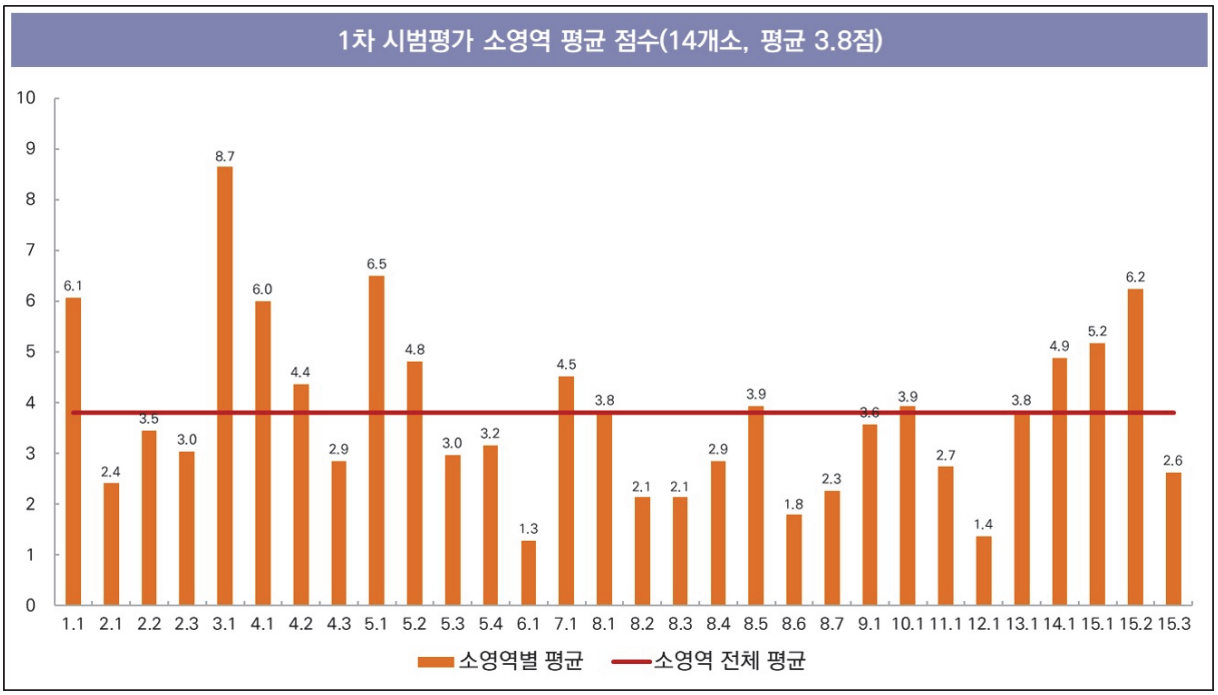

[그림 Ⅳ-3-2] 1차 시범평가 중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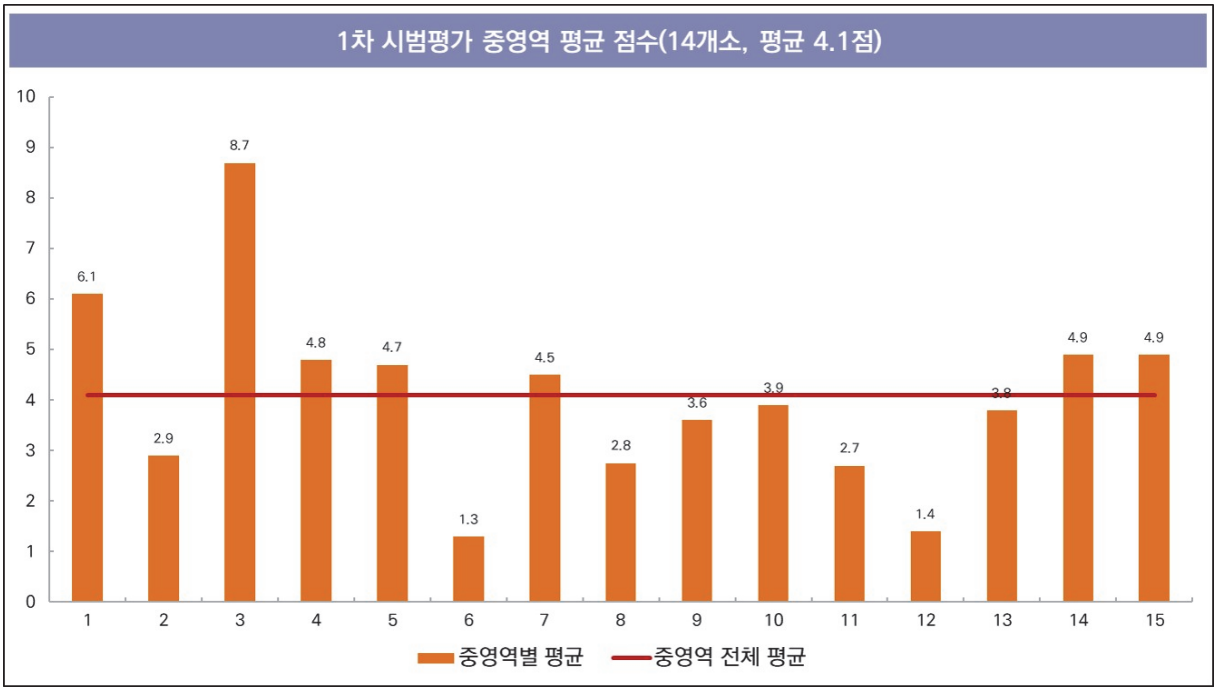

[그림 Ⅳ-3-3] 1차 시범평가 대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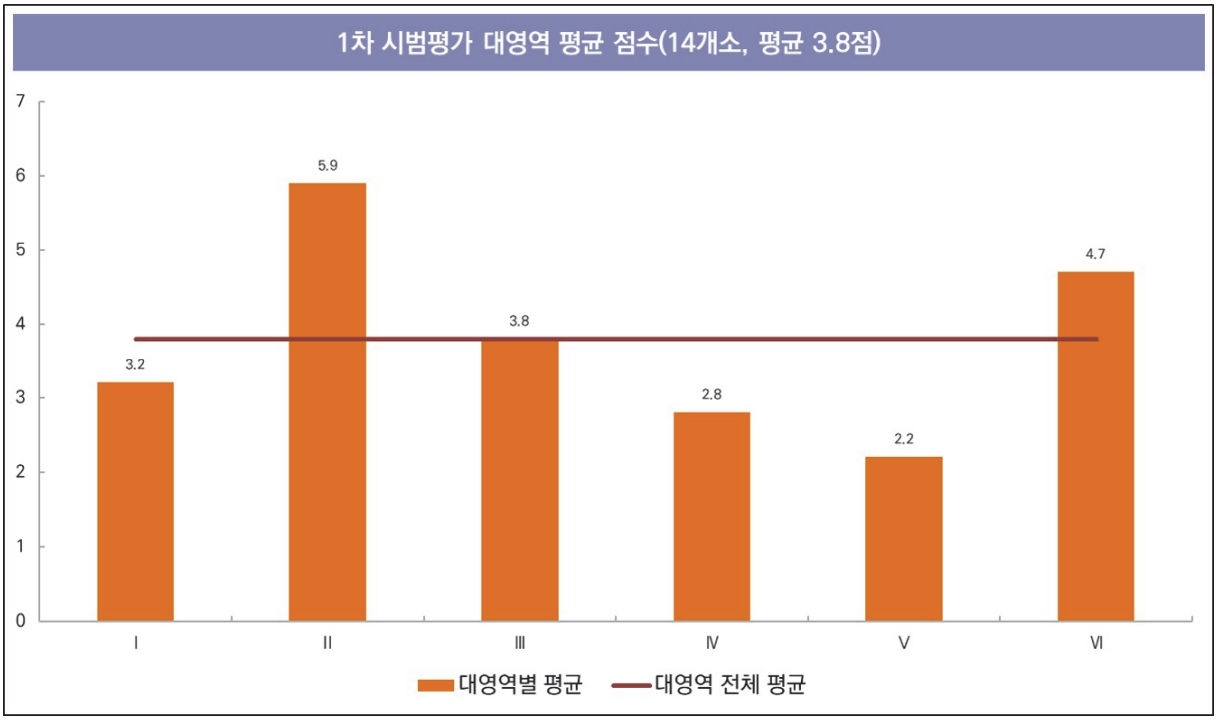

이어 1차 시범평가 결과 점수 중 상위 3순위와 하위 3순위에 속하는 평가 지표를 살펴보았다. 상위 3순위 지표로는 '3.1 시설 적정성(8.7점)', '5.1 입·퇴실 관리(6.5점)', '15.2 신생아 수유(6.2점)'으로 분석되었으며, 하위 3순위 지표로는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1.3점)', '12.1 부모교육(1.4점)', '8.6 급식 관리(1.8점)'로 분석되었다.

나) 3차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3차 컨설팅 후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추후 관리계획 및 종합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3차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3차 시범평가 소영역별 평균 점수는 7.6점이었으며, 중영역별 평균 점수는 7.1점, 대영역별 평균 점수는 7.3점으로 나타났다. 1~3차 컨설팅 후 시범평가 소영역별 평균 점수는 3.8점 상승하였으며 중영역별 점수는 3.0점, 대영역별 점수는 3.5점 상승하였다.

[그림 Ⅳ-3-4] 3차 시범평가 소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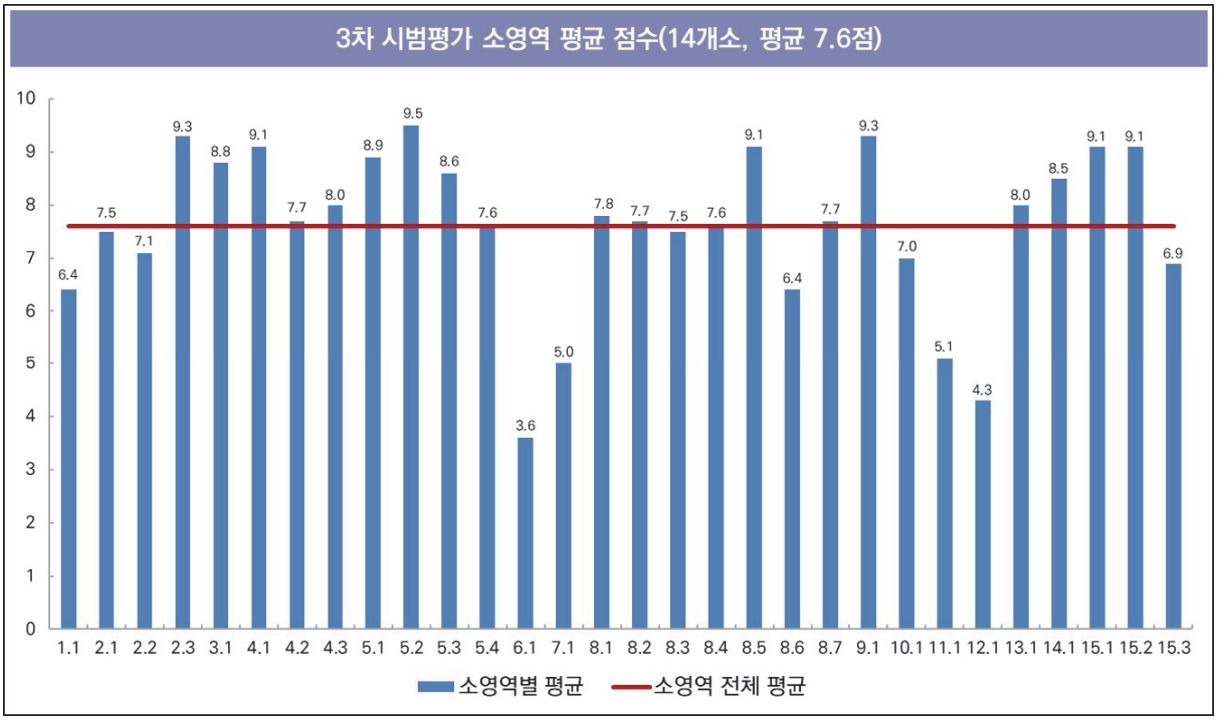

[그림 Ⅳ-3-5] 3차 시범평가 중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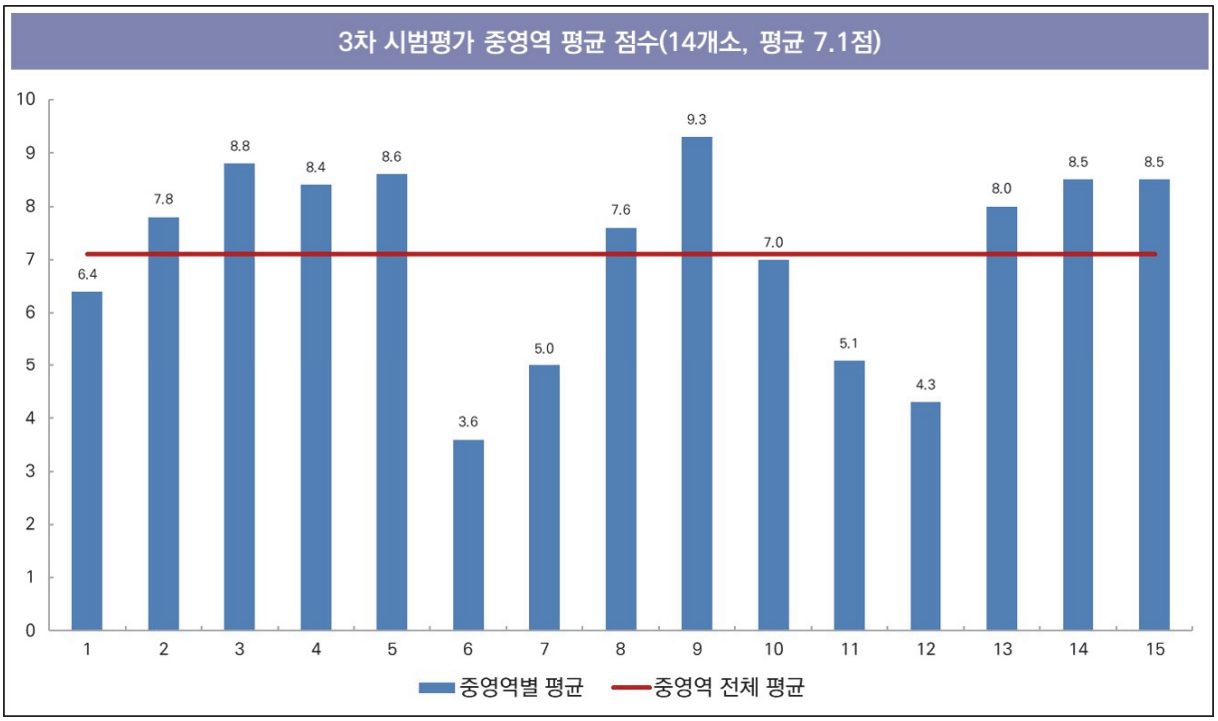

[그림 Ⅳ-3-6] 3차 시범평가 대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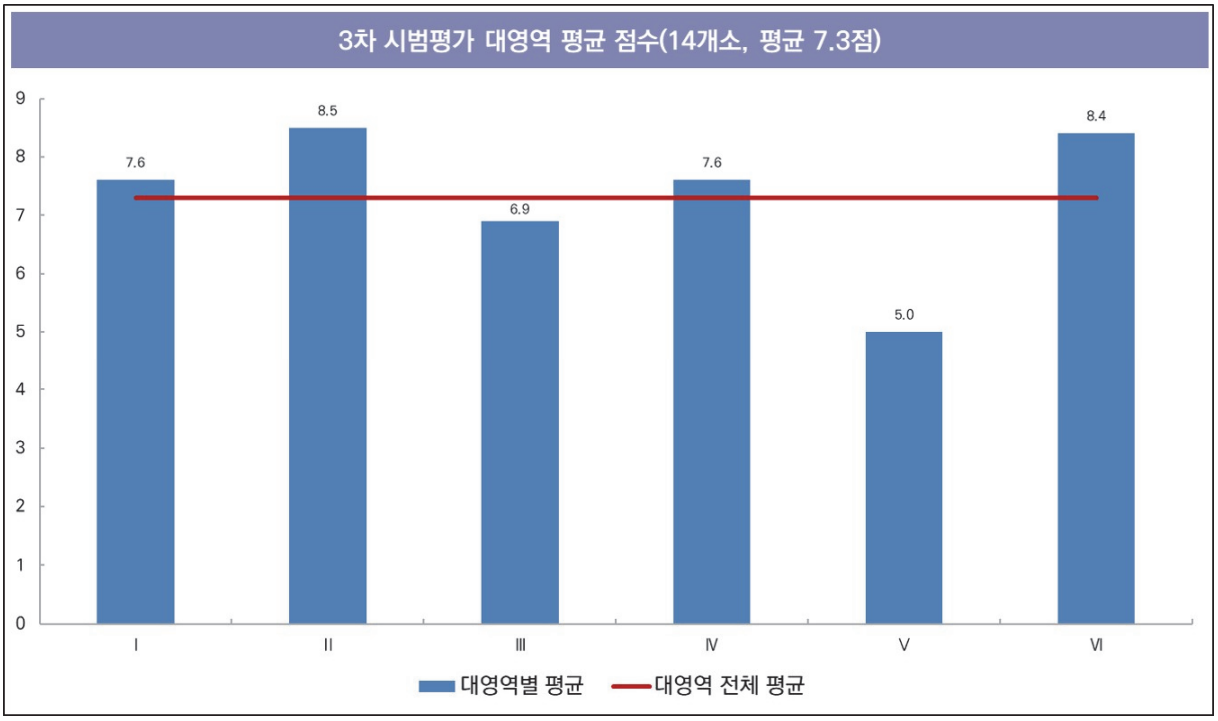

3차 시범평가 결과 점수 중 상위 3순위와 하위 3순위에 속하는 평가 지표를 살펴보았다. 상위 3순위 지표로는 '5.2 의료기관 연계·이송(9.5점)',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9.3점)', '9.1 감염 관리(9.3점)'로 분석되었으며, 하위 3순위 지표로는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3.6점)', 1'2.1 부모교육(4.3점)',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5.2점)'로 분석되었다. 1차, 3차 시범평가 결과 점수 중 상위 3순위 및 하위 3순위 지표는 〈표 Ⅳ-3-1〉과 같다.

〈표 Ⅳ-3-1〉 1차, 3차 시범평가 점수 상위 3순위 및 하위 3순위 지표

구분	상위 3순위 지표	하위 3순위 지표
1차 시범평가	3.1 시설 적정성(8.7점) 5.1 입·퇴실관리(6.5점) 15.2 신생아 수유(6.2점)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1.3점) 12.1 부모교육(1.4점) 8.6 급식관리(1.8점)
3차 시범평가	5.2 의료기관 연계·이송(9.5점)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9.3점) 9.1 감염관리(9.3점)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3.6점) 12.1 부모교육(4.3점)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5.2점)

1차 시범평가 당시 상위 3순위 평가지표 중 '3.1 시설 적정성'은 2020년 컨설팅을 시작한 뒤 4년째 연이어서 1차 시범평가 상위 3순위에 꾸준히 등극하는 영역으로 산후조리원의 컨설팅 영역 중 우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시범평가에서 상위 3순위 지표에 해당하는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9.1 감염 관리' 지표는 1차 시범평가에서

없었던 지표로 향상 수준이 높은 지표임을 알 수 있다. 1차 및 3차 시범평가 하위 3순위 중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와 '12.1 부모교육'은 4년 연속 컨설팅의 1차 및 3차 시범평가에서 하위 3순위에 포함되고 있어 앞으로 컨설팅 사업에서 이 영역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1차 및 3차 시범평가의 결과는 아래 〈표 Ⅳ-3-2〉에 요약하였다.

〈표 Ⅳ-3-2〉 1차, 3차 시범평가 결과 요약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분류	평균			
					대/소영역		항목별	
					1차	3차	1차	3차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3.2**	**7.6**		
1.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6.1	6.4	6.1	6.4
2.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4	7.5	3.2	9.3
			2.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2.1	6.4
			3.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3.6	6.4
			4.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정규			0.7	7.9
	2.2	종사자 교육·계발	1.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3.5	7.1	1.8	6.4
			2.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1.4	5.7
			3.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7.1	9.3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3.0	9.3	2.5	9.3
			2.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3.6	9.3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5.9**	**8.5**		
3.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8.7	8.8	9.3	10.0
			2.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정규			7.9	7.9
			3.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7.5	7.1
			4.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10.0	10.0
4.시설 안전성	4.1	설비 관리	1.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6.0	9.1	3.6	9.3
			2.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5.7	8.2
			3.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6.4	8.9
			4.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8.6	10.0
			5.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5.8	9.3
	4.2	소방 안전 관리	1.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4.4	7.7	3.9	9.3
			2.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5.7	7.3
			3.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3.6	8.6
			4.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정규			4.3	5.7
	4.3	낙상 예방관리	1.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9	8.0	2.9	9.3
			2.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2.9	6.8
Ⅲ. 운영과 질 관리					**3.8**	**6.9**		
5.운영 관리	5.1	입·퇴실 관리	1.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6.5	8.9	3.6	936
			2.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9.3	10.0
			3.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10.0	10.0
			4.입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3.2	7.1
			5.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6.4	8.2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4.8	9.5	3.6	8.9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분류	평균 대/소영역 1차	평균 대/소영역 3차	평균 항목별 1차	평균 항목별 3차
			2.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6.1	10.0
	5.3	문서 관리	1.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3.0	8.6	3.2	8.6
			2.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2.9	8.6
			3.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정규			2.9	8.6
	5.4	방문객 관리	1.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3.2	7.6	3.6	9.3
			2.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2.1	6.4
			3.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3.8	7.1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시범	1.3	3.6	1.4	3.6
			2.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0.0	0.4
			3.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범			4.3	7.5
			4.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정규			0.7	4.3
			5.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0.0	2.1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1.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4.5	5.0	7.1	7.9
			2.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시범			3.6	3.6
			3.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2.9	3.6
Ⅳ. 감염예방관리					**2.8**	**7.6**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3.8	7.8	3.2	9.3
			2.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1.7	6.2
			3.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4.2	10.0
			4.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2.1	4.3
			5.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7.9	9.3
	8.2	개인보호구 착용	1.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2.1	7.7	3.6	9.3
			2.지침에 따라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0.7	6.1
	8.3	세탁물 관리	1.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1	7.5	2.5	8.6
			2.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1.8	6.4
	8.4	물품 소독·관리	1.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9	7.6	2.9	8.2
			2.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1.1	6.1
			3.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4.6	8.6
	8.5	환경 관리	1.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3.9	9.1	3.2	8.9
			2.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4.6	9.3
	8.6	급식 관리	1.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1.8	6.4	2.1	9.6
			2.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0.8	4.3
			3.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0.0	4.3
			4.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0.8	5.0
			5.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0.8	6.4
			6.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6.3	8.9
	8.7	종사자 관리	1.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3	7.7	2.5	8.9
			2.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1.4	7.9
			3.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2.9	6.4
9. 감염관리	9.1	감염 관리	1.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필수	3.6	9.3	2.5	8.6
			2.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필수			4.6	10.0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2.2**	**5.0**		
10.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3.9	7.0	5.4	8.6
			2.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5	5.4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모아 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2.7	5.1	2.1	7.1
			2.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1.4	2.1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분류	평균			
					대/소영역		항목별	
					1차	3차	1차	3차
			3.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4.6	6.1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1.4	4.3	1.1	5.0
			2.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1.8	4.3
			3.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1.4	5.7
			4.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1.8	4.6
			5.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1.4	4.3
			6.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0.7	2.1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4.7**	**8.4**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3.8	8.0	2.5	8.6
			2.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6.1	8.6
			3.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2.9	6.8
14. 신생아 건강 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4.9	8.5	5.0	8.6
			2.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6.1	8.6
			3.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3.6	8.5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1.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5.2	9.1	2.5	9.3
			2.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7.9	8.9
	15.2	신생아 수유	1.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6.2	9.1	2.5	8.6
			2.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7.3	9.6
			3.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6.8	9.6
			4.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6.1	8.6
			5.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8.6	9.3
	15.3	안전관리	1.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6	6.9	2.1	8.6
			2.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2.5	5.0
			3.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3.2	7.1

2)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컨설턴트는 1~3차 컨설팅 후 차시별 컨설팅 내용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컨설턴트가 작성한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대해 영역별 언급 횟수와 키워드를 차시별로 분석하였다.

가)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1차 시범평가 시 '하'이거나 '무'로 나타난 영역 중 추후 컨설팅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할 영역과 과제에 대해 컨설턴트와 기관이 합의한 결과를 작성하였다.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영역별 언급 횟수 및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전체 영역별 및 대영역별 언급 횟수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소영역은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8.1 손위생', '8.2 개인보호구 착용' 그리고 '8.4 물품 소독·관리'(각 13회)였으며, 다음으로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0.1 산모 건강 평가', '12.1 부모교육', '13.1 신생아확인', 그리고 '14.1 신생아

건강 평가'(각 12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영역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소영역을 살펴보면,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에서는 '2.3종사자 간 의사소통'(12회),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영역에서는 '4.2 소방안전관리'(11회)가 있었다. 이어서 'Ⅲ. 운영과 질 관리' 중에서는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13회), 'Ⅳ.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서는 '8.1 손 위생', '8.2 개인보호구 착용', 그리고 '8.4 물품 소독·관리'(각 13회)로 파악되었다.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10.1 산모 건강평가'와 '12.1 부모교육'(각 12회), 'Ⅵ. 신생아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는 '13.1 신생아 확인'과 '14.1 신생아 건강평가'(각 12회)가 있었다. 해당 영역들은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도 대부분 소영역별 평균 점수(3.8점) 이하로 다른 영역보다 부진한 영역으로 파악되었다(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3.0점,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3점, 8.1 손 위생: 3.8점, 8.2 개인보호구 착용: 2.1점, 8.4 물품 소독·관리: 2.9점, 12.1 부모교육: 1.4점, 13.1 신생아확인: 3.8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측이 미흡한 영역의 원인을 분석하고 2차 컨설팅 전까지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다.

다른 영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영역이 아니었음에도,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많이 언급된 영역으로 나타난 '4.2 소방안전관리', '10.1 산모 건강평가' 그리고 '14.1 신생아 건강평가'의 경우(4.2 소방안전관리: 4.4점, 10.1 산모 건강평가: 3.9점, 14.1 신생아 건강평가: 4.9점)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더욱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한 영역으로 구별되었다.

〈표 Ⅳ-3-3〉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차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 (n=14)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0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0
		2.2 종사자 교육·계발	11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2**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9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8
		4.2 소방안전관리	**11**
		4.3 낙상예방관리	10
Ⅲ.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10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8
		5.3 문서관리	11
		5.4 방문객 관리	11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3**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11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3**
		8.2 개인보호구 착용	**13**
		8.3 세탁물 관리	11
		8.4 물품 소독·관리	**13**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차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 (*n*=14)
		8.5 환경관리	9
		8.6 급식관리	11
		8.7 종사자관리	9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1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2**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1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2**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2**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2**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10
		15.2 신생아 수유	10
		15.3 안전관리	10

(2) 최다 언급 영역별 키워드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인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8.1 손 위생’, ‘8.2 개인보호구 착용’ 그리고 ’8.4 물품 소독·관리‘(각 13회),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0.1 산모 건강 평가’, ‘12.1 부모교육’, ‘13.1 신생아확인’, 그리고 ‘14.1 신생아 건강 평가’(각 12회)의 영역별 키워드를 아래 표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영역에서는 1차 컨설팅에 참여한 대다수의 기관이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없거나 질 관리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질 관리 활동을 위한 핵심 지표를 선정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제공된 규정 및 서식사례집을 참고하여 만족도 조사 도구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고객 소리함이나 입실 시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불만 및 고충처리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8.1 손 위생’ 영역에서는 손소독제의 구매 내역 관리 및 유효 기간 관리가 미비하였고, 곽비누, 분무형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으며 직원들의 손 위생 수행 활동을 관찰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손 위생 물품을 사용하고 관련 물품의 구매 내역 및 유효 기관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손 위생이 필요한 시점과 방법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2차 컨설팅 전까지 직원 및 산모에서 손 위생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

‘8.2 개인보호구 착용’ 영역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지침이 없거나 지침이 있더라도 착용 시점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보호구 착용 시점에 직원이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았고, 보호 물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맞게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을 마련하고 물품을 구비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직원 교육을 하고

보호구 착용법 등을 안내물로 만들어 게시하도록 제안하였다.

'8.4 물품 소독·관리'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요람, 목욕대야, 젖병 보관 관리 방법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수유물품이나 목욕물품의 경우 개별 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소독할 때 미승인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소독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물품 세척 시 직원이 보호구를 미착용 하였고 소독일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별 산후조리원의 상황을 고려해 물품의 소독부터 건조까지 과정을 포함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각 용구의 소독 및 관리 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안내 하였다. 소독일지를 비치해두고 물품을 관리하는 내용도 함께 안내하였다.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근무 교대 시 일지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체계적인 방법으로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 이에 컨설턴트는 제공한 규정 및 서식 사례집을 기준으로 각 산후조리원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안내하였다. 근무 교대 시 신생아 기록지를 통해 종사자 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근무 일지 작성 시 산모와 신생아를 구분하여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입하고 인계자 및 인수자 서명도 포함시킬 것을 설명하였다.

'10.1 산모 건강평가'의 경우, 산모 건강기록부 작성이 미비하며 산후우울증 조사를 미실시하는 산후조리원이 많아 컨설턴트는 산모 건강기록부 작성의 필요성과 정확성에 대해 산후조리원 측에 설명하였다. 또한, 출혈 증상 정확도 및 정서 상태를 포함해 산모 건강기록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와 더불어 모든 산모에게 산후우울증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산모와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12.1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교육 근거자료의 부재, 실시되어야 할 교육 내용이 누락된 경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안내 미실시 등이 언급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산후조리원 출입 및 감염관리를 강화되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아버지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부모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모교육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배포한 부모교육 자료집을 활용하도록 추가적인 안내를 실시하였다.

'13.1 신생아 확인' 영역의 경우, 신생아 확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발찌와 팔찌를 포함한 신생아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신생아 전달 시 신생아를 확인하지 않거나 태명으로 식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발찌나 팔찌를 포함한 신생아 인식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태명 이외의 식별정보 2가지를 기재 후 항상 착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신생아 전달을 비롯해 신생아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선 2가지 식별정보를 통해 식별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14.1 신생아 건강평가' 영역의 경우, 신생아 건강 기록부에 대부분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신생아 퇴실시 건강 평가를 미실시하는 곳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서식을 활용해 신생아

가 입·퇴실할 때 건강 기록부를 모두 작성하도록 하고 신생아가 퇴실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신생아의 건강 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표 Ⅳ-3-4〉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차 보고서 언급 횟수 (n=14)	키워드	
					미비점	개선과제/합의사항
Ⅲ. 운영과 질 관리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3	- 질 관리, 지표 관리, 모니터링 규정과 활동 미실시 및 근거 서류 부재	- 질 관리, 지표 관리, 모니터링 규정 마련 및 활동 실시 후 근거 서류 마련하도록 권장
					- 만족도 조사 미실시 또는 만족도 조사 실시 후 업무 개선에 미반영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업무 개선에 활용하도록 권고
Ⅳ. 감염 예방 관리	8. 감염 예방	8.1	손 위생	13	- 직원과 산모의 손 위생 수행 미관찰	- 직원과 산모 대상으로 손 위생 수행 교육 실시할 것을 제안
					- 손소독제 유효기간, 구매 내역 관리 미비	- 손소독제 유효기간 및 구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권장
					- 손 위생 방법 포스터를 게시판에만 부착, 홍보활동 미비	- 산모실을 포함하여 모든 세면대에 손 위생 방법에 대한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활동 실시하도록 권유
		8.2	개인 보호구 착용	13	- 개인보호구 관련 지침 부재 및 각종 보호구 미비	- 개인보호구 관련 지침 마련 권고 및 구비 방법 안내
					- 직원의 개인보호구 착용 미실천	- 직원 대상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실시하도록 권고
		8.4	물품 소독·관리	13	- 물품 소독·관리 지침 누락 및 부재	- 물품 소독·관리 지침 마련 권유
					- 요람과 목욕대야 공동 사용, 미승인 소독제 사용, 소독 일지 미비 및 미작성	- 요람과 목욕대야 개별 사용 및 알코올 소독 및 소독 일지 작성 권장
					- 물품 세척 시 보호구 미비 및 미착용	- 물품 세척 시 보호구 구비 및 보호구 착용 실천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인력 전문성	2.3	종사자 간 의사 소통	12	- 근무교대일지 미비 및 일부 항목 미작성	- 제공한 근무 교대 서식을 사용해 산모 및 신생아 인계 사항을 포함한 근무교대일지 작성 권고, 인계자와 인수자 모두 서명할 수 있도록 개선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 교육	10. 산모 건강 평가	10.1	산모 건강 평가	12	- 산모 건강기록부에 일부 정보(대·소변, 출혈증상정확도, 정서상태 등)	- 산모 건강기록부 작성의 필요성과 정확성에 대한 교육
					- 산후우울증 조사 미실시	- 모든 산모에게 산후우울증 조사 실시
	12. 부모 교육	12.1	부모 교육	12	- 부모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이 없음	- 부모교육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 부모교육 표준 자료 및 교육 근거 없음, 아버지 교육 부재	- 부모교육 책자 안내 및 체크리스트를 통해 교육 기록 후 근거 자료 마련 권고
Ⅵ. 신생아 돌봄 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2	- 신생아 인식표 발찌 및 팔찌 착용 부족, 신생아 확인 시 태명 주로 사용	- 태명 이외의 신생아 확인 정보 2가지 이상을 사용해 반드시 발찌나 팔찌 포함한 인식표 사용하도록 권고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차 보고서 언급 횟수 (n=14)	키워드	
					미비점	개선과제/합의사항
	14. 신생아 건강 평가	14.1	신생아 건강 평가	12	- 신생아 건강 기록부 대부분의 정보 누락	- 법적 서식을 활용해 신생아 입실 및 퇴실 시 건강 기록부 작성하도록 안내
					- 신생아 퇴실시 건강평가 미실시	- 신생아 퇴실시 체크리스트 이용해 신생아 건강평가 실시하도록 권고

나)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컨설팅의 중간점검 차원에서 1차 컨설팅 이후 개선된 사항과 2차 컨설팅 시 확인된 추가 개선 과제 및 보완 사항과 관련하여 영역별 개선사항 및 추가 개선 과제/보완 사항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전체 영역별 및 대영역별 언급 횟수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소영역은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13회)였으며, 다음으로 '8.1 손 위생', '10.1 산모 건강평가', '12.1 부모교육'(각 12회) 순이었다. 한편, 대영역별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소영역을 살펴보면,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에서는 '1.1 인력 적정성'(11회),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영역에서는 '4.2 소방안전관리'(8회)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Ⅲ. 운영과 질 관리' 중에서는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13회), 'Ⅳ.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서는 '8.1 손 위생'(12회)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10.1 산모 건강평가'와 '12.1 부모교육'(각 12회), 'Ⅵ. 신생아 돌봄 서비스' 영역은 '14.1 신생아 건강평가'(10회)로 나타났다.

〈표 Ⅳ-3-5〉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2차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n=14)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1**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8
		2.2 종사자 교육·계발	10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7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4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5
		4.2 소방안전관리	**8**
		4.3 낙상예방관리	7
Ⅲ.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9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5
		5.3 문서관리	8
		5.4 방문객 관리	7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3**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6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2차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n*=14)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2**
		8.2 개인보호구 착용	7
		8.3 세탁물 관리	8
		8.4 물품 소독·관리	8
		8.5 환경관리	5
		8.6 급식관리	8
		8.7 종사자관리	6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6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2**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1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2**
Ⅵ. 신생아 돌봄 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7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0**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5
		15.2 신생아 수유	5
		15.3 안전관리	6

(2) 최다 언급 영역별 키워드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의 경우, 1차 컨설팅 시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활동을 하고 근거 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한 산후조리원은 많지 않았다.

만족도 조사의 경우 관련 서식을 참조하여 산후조리원 상황에 맞는 검사 도구를 구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고객 소리함이나 입실안내문을 활용한 불만 및 고충 처리를 안내하지는 않더라도 간단한 서식을 마련하거나 구두로 이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남겨놓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 관리 및 지표 관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손 위생 수행률 지표 관리 활동을 먼저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때 직원 손 위생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 직원별로 월별, 혹은 분기별로 수간호사가 모니터링을 하되 손 위생 수행률을 시점별, 직원별로 기입하고 통계 결과를 산출하여 가장 낮은 부분을 확인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법을 도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직원 교육을 통해 손 위생이 필요한 시점에 올바른 손 위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설명하였다. 더불어 추후 목표와 기간을 설정하여 지표 관리 및 만족도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고객 불만 및 고충 처리 안내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이를 명문화시켜 입실안내문에 포함시키고 산모가 입실시 설명하도록 교육하였다.

'8.1 손 위생' 영역에서는 일부 기관에서 직원들의 손 위생 활동 수행이 관찰되었지만 손 소독제에 유효기간 표기 없이 개봉일시만 기록하고 있거나 여전히 식약처 미허가 소독제를 사용하는 곳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손소독제 개봉 시 개봉일시와 6개월의 유효기간을 모두 작성하

고 직원뿐만 아니라 산모를 대상으로 손 위생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10.1 산모 건강평가’의 경우, 1차 컨설팅 때와 달리 법정 서식에 따른 산모 건강기록부를 누락 없이 작성하는 등 개선된 점이 눈에 띄었다. 개선 사항에 대하여 칭찬으로 독려하고 산후우울증 검사의 경우 산모가 입실하면 제공한 산후우울증 검사 설문지를 설명 후 배부하고 산후조리원 측에서 점수 산출 후 10점 이상 산모는 상담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위험 우울증 산모는 면담 후 기록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하였다.

‘12.1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부모교육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서명을 일부 받고 있으나 표준화된 부모교육 자료가 없고 보완 단계인 곳이 많았다. 이에 부모교육 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 소책자〈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부모교육에 해당하는 주제를 표시하여 산모들에게 교육하고 부모교육 체크리스트에 서명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표 Ⅳ-3-6〉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2차 보고서 언급 횟수 (n=14)	키워드	
					개선사항	추가 개선과제/보완사항
Ⅲ. 운영과 질 관리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3	-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에 규정과 서식 마련	- 마련한 규정과 서식을 이용해 산후조리원의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실천하도록 권고
					-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후 분석 및 개선활동 미비	-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 개선활동 권고
					- 고충처리상담실 표지판은 있으나 관련 근거서류 부재	- 고충처리과정 설명 및 관련 근거서류 마련하도록 교육
Ⅳ. 감염 예방 관리	8. 감염 예방	8.1	손 위생	12	- 손 소독제 개봉일시는 작성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표기 미실시	- 손 소독제에 6개월 유효기간 명시하도록 안내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 평가	10.1	산모 건강 평가	12	- 산모건강기록부 작성	- 누락된 항목 없이 산모건강기록부 작성하도록 권유
					- 산후우울증 검사지 배부	- 산후우울증 검사 후 점수 기재, 고위험 우울증 산모는 면담 후 지속적으로 상황 기록 및 관리하도록 설명
	12. 부모 교육	12.1	부모 교육	12	-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준비하고 서명 받는 중이나 부모교육 자료는 제시하지 못함	- 육아정책연구소의 부모교육책자를 이용해 부모교육 후 체크리스트에 서명 받도록 안내

다)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차, 2차 컨설팅에서 선정한 영역별 개선사항과 추후 관리계획을 포함한 종합의견을 최종적으로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였다. 컨설턴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3차 컨설팅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된 기관(1곳)을 제외한 총 13개 기관의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영역별 언급

횟수 및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영역별 및 대영역별 언급 횟수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소영역은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및 '12.1 부모교육'(각 12회)이었으며 다음 순으로 '5.3 문서관리', '8.1 손 위생', '8.3 세탁물 관리',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각 10회)로 확인되었다. 이중,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8.1 손 위생' 그리고 '12.1 부모교육'은 1, 2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소영역으로 나타났다.

대영역별로 많이 언급되었던 소영역을 살펴보면,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에서는 '2.1 종사자 채용·유지'와 '2.2 종사자 교육·계발'(각 9회)이었다.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영역에서는 '4.2 소방안전관리'(9회), 'Ⅲ. 운영과 질 관리' 중에서는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12회)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Ⅳ.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서는 '8.1 손 위생', '8.3 세탁물 관리'(각 10회)로 파악되었다.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12.1 부모교육'(12회),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영역에서는 '13.1 신생아 확인'과 '15.3 안전관리'(각 9회)로 확인되었다. 특히, '4.2 소방안전관리'와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8.1 손 위생'과 '12.1 부모교육' 그리고 '13.1 신생아 확인'은 1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전체 영역별 언급 횟수 분석에서도 대영역별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소영역이었다.

해당 영역들은 3차 시범평가에서도 대부분 평균(7.6점) 이하인 영역으로 분석되어(2.1 종사자 채용·유지: 7.5점, 2.2 종사자 교육·계발: 7.1점,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3.6점, 8.3 세탁물 관리: 7.5점,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5.1점, 12.1 부모교육: 4.3점)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산후조리원 측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영역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영역이 아니었음에도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많이 언급된 영역으로 나타난 '4.2 소방안전관리', '8.1 손 위생', '13.1 신생아 확인', '15.3 안전관리' 영역의 경우(4.2 소방안전관리: 7.7점, 8.1 손 위생: 7.8점, 13.1 신생아 확인: 8.0점, 15.3 안전관리: 6.9점)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더욱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난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표 Ⅳ-3-7〉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3차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n=13)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8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9**
		2.2 종사자 교육·계발	**9**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7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7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4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3차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n=13)
		4.2 소방안전관리	**9**
		4.3 낙상예방관리	7
Ⅲ.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9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5
		5.3 문서관리	**10**
		5.4 방문객 관리	7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2**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7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0**
		8.2 개인보호구 착용	8
		8.3 세탁물 관리	**10**
		8.4 물품 소독·관리	8
		8.5 환경관리	7
		8.6 급식관리	8
		8.7 종사자관리	6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2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9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0**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2**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9**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6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2
		15.2 신생아 수유	7
		15.3 안전관리	**9**

(2) 최다 언급 영역별 키워드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인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2.1 부모교육’의 영역별 키워드를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영역에서는 여전히 질 지표 선정 및 모니터링 근거 자료를 비롯한 규정이 없는 곳도 있었다. 만족도 조사의 경우 구두로만 시행하거나 시행 후 월별로 정리하고 개선 활동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였으나 통계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하지 않은 곳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객이 불만 및 고충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처리한 사례는 있었으나 처리 결과 및 피드백 관련 서류가 부재한 곳도 확인되었다. 이에 만족도 평가 실시 후 분석 결과를 파악하여 업무 개선에 활용할 것을 합의하였다. 더 나아가 불만 및 고충 처리 방법에 대하여 고객에게 안내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산모 및 보호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근거서류를 마련할 것을 합의하였다.

‘12.1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부모교육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서명을 일부 받고 있으나 표준화된 부모교육 자료가 없거나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신생아 수유 방법,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자료만 있는 곳도 있었다. 이에 추후 부모교육 내용에 산모의 건강관리방안, 신생아 돌봄 방법, 신생아와 상호작용 촉진방법, 영아돌연사 위험요인 및 예방법을 포함시키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의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추가적으로 표준화된 부모교육 자료로 육아정책연구소의 부모교육 소책자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표 Ⅳ-3-8〉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3차 보고서 언급 횟수 (*n*=13)	키워드	
					개선사항	종합의견(추후 관리계획 포함)
Ⅲ. 운영과 질 관리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2	-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에 규정과 서식 마련	- 질 관리 규정과 서식을 이용해 산후조리원의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에 실제로 활용하도록 권고
					- 만족도 조사 후 분석 및 개선 활동 미비	- 만족도 조사 통계 결과를 통해 추이 분석 및 문제점 분석을 하여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 개선 활동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교육
					- 고충처리상담실 표지판은 있으나 관련 근거 서류 부재	- 입실안내문에 불만 및 고충 처리에 대한 내용 추가하도록 합의 - 처리 결과에 따른 근거 서류 작성 방법 안내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2. 부모 교육	12.1	부모 교육	12	- 부모교육 계획 미흡	- 대상별, 주제별 구체적 계획 마련
					- 부모교육 내용 및 근거 자료 미흡	-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부모교육 내용 및 진행방법 보완 - 교육 이수자 근거자료 마련 - 부모교육 소책자를 표준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부모교육 실시하도록 안내 -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준비

라)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고충사항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 컨설팅 수행 시 산후조리원 측에서 호소하는 고충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1 인력적정성’ 영역에서 컨설턴트가 책임자의 근무 공백 시간이 없도록 건강관리책임자의 근무 번표 형태를 다양화(8시간 근무, 10시간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병원 측과 합의가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3.1 시설적정성’ 영역에서는 한 공간을 사전관찰실, 조유실, 세척실로 사용하고 있어 시정 요구를 하였지만 건물 구조상 당장 개선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신생아실이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신고 되어있기 때문에 신생아실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실제 신생아실에서는 요람을 배치하기 협소한 경우도 많았다.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영역에서는 질 관리 수행과 만족도 및 불만고충 처리 후 통계 처리 과정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영역에서는 기관장에 따라 운영 철학의 차이를 보이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기관장이 운영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곳도 있었고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간호 건강관리책

임자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호소하였다.

‘8.3 세탁물 관리’의 경우 세탁물 관리 시 병원 세탁물과 산후조리원 세탁물의 구분 및 분리를 위해 세탁실 위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병원 구조상 세탁실 공간 이동이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8.4 물품 소독·관리’의 경우 신생아 목욕 시 개별 목욕대야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8.6 급식 관리’ 영역에서는 식자재 관리 시 현행처럼 구매내역서를 통한 관리가 아닌 식자재 검수일지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12.1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개별 산후조리원에서 표준화된 부모교육 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산모 및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15.3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신생아 이동시 현행처럼 품에 안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요람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전반적으로 컨설팅 시 제안 받은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개선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 근거 자료 문서화 작업의 어려움과 업무과중화 사유를 들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Ⅳ-3-9〉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고충사항 언급 키워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고충사항 키워드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 건강관리책임자의 근무 번표 형태를 다양화(8시간 근무, 10시간 근무)해서 근무 공백 시간 없도록 제안하였으나 병원 측과 합의가 어렵다고 함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 한 공간을 사전관찰실, 조유실, 세척실로 사용하고 있어 시정 요구를 하였지만 건물 구조상 당장 개선하기 어렵다고 함 - 신생아실의 면적이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실제 공간이 협소하여 요람을 적절히 배치하기 어려움
Ⅲ. 운영과 질 관리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 질 관리 및 만족도 조사와 불만고충처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행 및 조사 후 통계 처리를 하는데 시간 할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7. 경영 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 기관장에 따라 운영 철학의 차이를 보이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기관장이 운영 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곳도 있음 - 건강관리책임자에게 주어지는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함
Ⅳ. 감염 예방관리	8. 감염예방	8.3	세탁물 관리	- 병원 세탁물과 산후조리원 세탁물의 구분 및 분리를 위해 세탁실 위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병원 구조상 세탁실 공간 이동이 어렵다고 함
		8.4	물품 소독, 관리	- 목욕대야의 개별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함
		8.6	급식 관리	- 식자재는 구매내역서로 관리하고 있으나 식자재 검수일지까지 추가로 쓰는 것은 어렵다고 호소함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 개별 산후조리원에서 표준화된 부모교육 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려움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산모 및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5. 신생아 관리	15.3	안전관리	- 산모실이 두 개층으로 되어있어 신생아 이동시 요람 이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함

마)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분석

1~3차 컨설팅이 진행됨에 따라 컨설팅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결과보고서의 추이 변화를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은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38회)', '12.1 부모교육(36회)', 그리고 '8.1 손 위생(35회)'이며, 해당 영역들의 시범평가 점수 및 컨설팅 내용의 추이 변화를 분석하였다.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영역을 살펴보면, 1차 점수가 1.3점, 3차 점수가 3.6점으로 소폭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평균점에 도달하지 못해 원인 파악을 위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이 영역은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시작 이후 4년째 매년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역으로 선정되고 있어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차 컨설팅 진행시 대다수 산후조리원이 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만족도 조사와 불만 및 고충처리 등 관련 준비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 지표를 선정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토대로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맞는 질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컨설팅 하였다. 만족도 조사를 위해 검사도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나 방문객의 불만이나 고충을 접수하기 위한 안내, 이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2차 컨설팅 시에도 여전히 핵심지표 선정, 질 관리 계획 수립, 만족도 조사 도구 준비 등의 합의점들이 개선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실감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며,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질 관리 및 만족도 조사까지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함', '잦은 직원 입퇴사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지 모르겠음', '만족도 조사 후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이 어려움'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컨설턴트는 질 관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컨설팅하고, 예시를 들어 만족도 조사 도구를 구성하고 산후조리원의 상황을 함께 모니터링 하였으며,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한 안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하였다. 그러나 3차 컨설팅 시에도 많은 산후조리원에서 질 관리 및 만족도 조사 실시로 인한 업무 과중화를 우려하였으며, 표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질 관리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미비점이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획 수립 시 모니터링 방법이나 분석주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 지표 활용 방안에 대해 컨설팅하였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개선활동에 대한 결과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문서화하도록 합의하였으며,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를 위해 입실안내문이나 고객의 소리함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1 부모교육'영역에서 시범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1차 점수가 1.4점, 3차 점수가 4.3점으로 나타났다. 1차 컨설팅 시 미비점으로 부모교육 계획의 미수립, 부모교육 자료 및 근거자료 부재 등이 나타났다. 이에 개선과제로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미실시 교육을 이행하여 근거자료를 취합하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2차 컨설팅 시 1차 컨설팅의 합의점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

해 본 결과,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부분은 교육 내용, 차시, 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3차 컨설팅 시에도 계획의 일부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였다. 부모교육 자료의 경우, 개별 산후조리원에서 자체적으로 표준화된 자료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한 부모교육용 소책자를 표준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부모교육 내용에서도 체크리스트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 및 이수자를 대상으로 서명 자료를 받아 근거자료를 취합하도록 안내하였다.

‘8.1 손 위생’ 영역의 경우, 1차 점수가 3.8점, 3차 점수가 7.8점으로 나타났다. 1차 및 3차 점수 모두 평균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여서 이 영역의 경우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측의 관심도와 개선 의지에 따라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으로 파악되었다. 1차 컨설팅 당시 해당 영역의 미비점으로 손 위생 관련 규정 부재, 손 소독제 제품 관리 미흡, 직원 및 산모 대상 손 위생 활동 수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제공된 서식을 참조하여 손 위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약처 인증 손 소독제를 구입한 뒤 개봉일시와 유효기간을 표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구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2차 컨설팅 시 1차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기로 합의된 부분이 잘 이행되었는지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손 소독제에 개봉일시와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으나, 손 위생 방법만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합의하였다. 3차 컨설팅에서는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에서 손 소독제 물품 관리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직원의 손 위생 활동 수행이 관찰되었다. 추후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산모를 대상으로 손 위생 홍보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림 Ⅳ-3-7]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변화 –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영역

차수	1차 컨설팅			2차 컨설팅			3차 컨설팅	
시범평가 점수	1.3		→			→	3.6	
컨설팅 내용	미비점	개선과제		개선사항	개선과제		개선사항	개선과제
	○ 계획 수립 및 핵심지표 선정			○ 계획 수립 및 핵심지표 선정			○ 계획 수립 및 핵심지표 선정	
	계획 미수립	질 관리 계획 수립 및 지표 선정 및 수행		계획 일부 수립 또는 미흡	계획 보완 및 핵심지표 선정 및 모니터링, 개선활동 수행		계획 일부 수립 또는 구체적인 계획 미흡	모니터링 방법 및 분석주기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 수립
							질 관리 활동 미실시	핵심지표 활용방안 이해
	○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실시	
	미실시	만족도 조사 도구 준비 및 실시		일부 미시행 또는 만족도 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활용한 개선활동 수행		만족도 조사 실시	개선활동 후 결과 작성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미안내 및 근거서류 부재	안내 및 처리결과 근거서류 준비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접수 안내	처리결과 및 피드백 관련 근거서류 준비		입실 안내문, 고객 소리함 등 활용	지속적 관리, 추후 내용 근거서류 준비

[그림 Ⅳ-3-8]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변화 – ‘12.1 부모교육’ 영역

차수	1차 컨설팅			2차 컨설팅			3차 컨설팅	
시범평가 점수	1.4		→			→	4.3	
컨설팅 내용	미비점	개선과제		개선사항	개선과제		개선사항	개선과제
	○ 부모교육 계획			○ 부모교육 계획			○ 부모교육 계획	
	부재	제공된 서식 참고하여 수립		부재 혹은 미비	산후조리원 상황에 맞는 계획 수립		부재 혹은 구체적인 계획 미흡	산후조리원 상황에 맞는 계획수립
	○ 부모교육 자료			○ 부모교육 자료			○ 부모교육 자료	
	부재	표준화된 교육 자료 준비		부재 혹은 미비	표준화된 교육 자료 마련 및 교육 내용 보완		부재 혹은 미비	부모교육 소책자를 표준화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
	○ 부모교육 실시			○ 부모교육 실시			○ 부모교육 실시	
	부재	체크리스트 및 근거서류 준비		일부 내용 교육 실시, 체크리스트 마련	교육 내용 보완 및 근거서류 마련		일부 내용 교육 실시	교육 내용 보완 및 교육자 및 이수자 대상 서명자료 마련

[그림 Ⅳ-3-9] 1~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 추이변화 - '8.1 손 위생' 영역

차수	1차 컨설팅			2차 컨설팅			3차 컨설팅	
시범평가 점수	3.8		→			→	7.8	
컨설팅 내용	미비점	개선과제		개선사항	개선과제		개선사항	개선과제
	○ 손 위생 관련 규정			○ 손 위생 관련 규정			○ 손 위생 관련 규정	
	부재	규정 마련		일부 규정 마련 혹은 미흡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맞게 규정 마련		규정 재정비	지속적인 관리
	○ 손 위생 물품 관리			○ 손 위생 물품 관리			○ 손 위생 물품 관리	
	미흡	식약처 인증제품 사용, 구매내역 준비, 개봉일시와 유효기간 기재		손 소독제 구매내역 관리, 개봉일시 표기	식약처 인증서, 구매내역서 준비, 손 소독제에 유효기간 표기		손 소독제 변경	손 소독제에 개봉일시 표기
	○ 직원 및 산모 대상 홍보 활동과 교육 실시			○ 직원 및 산모 대상 홍보 활동과 교육 실시			○ 직원 및 산모 대상 홍보 활동과 교육 실시	
	미흡	손 위생 홍보 활동 및 교육 실시		미흡	직원 및 산모 대상 홍보 활동과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포스터 부착을 통한 손 위생 방법 및 시점 등 홍보활동 실시	지속적인 관리

나. 1일 방문 컨설팅 수행 결과

1)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일 방문 컨설팅은 1~3차 컨설팅과 동일하게 하루 약 8시간 동안 진행된다.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분석결과, 1일 방문 컨설팅의 소영역별 시범평가 평균 점수는 4.4점이었으며, 중영역의 평균 점수는 4.6점, 대영역의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10]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소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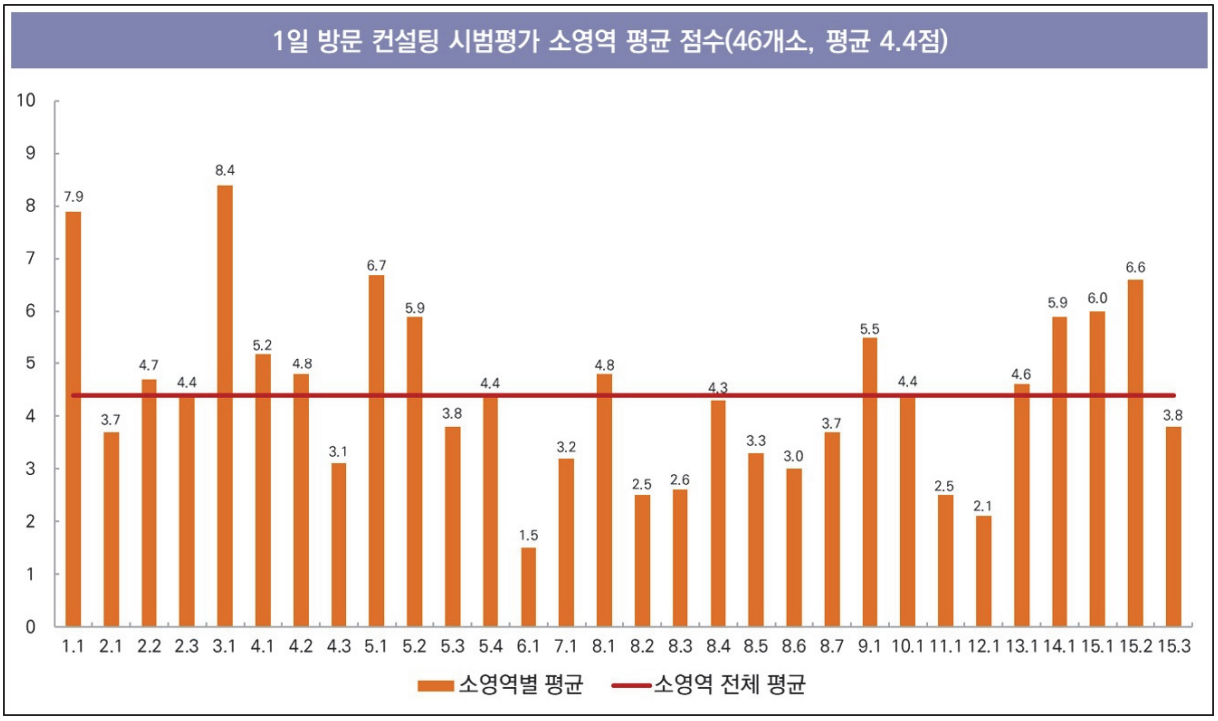

[그림 Ⅳ-3-11]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중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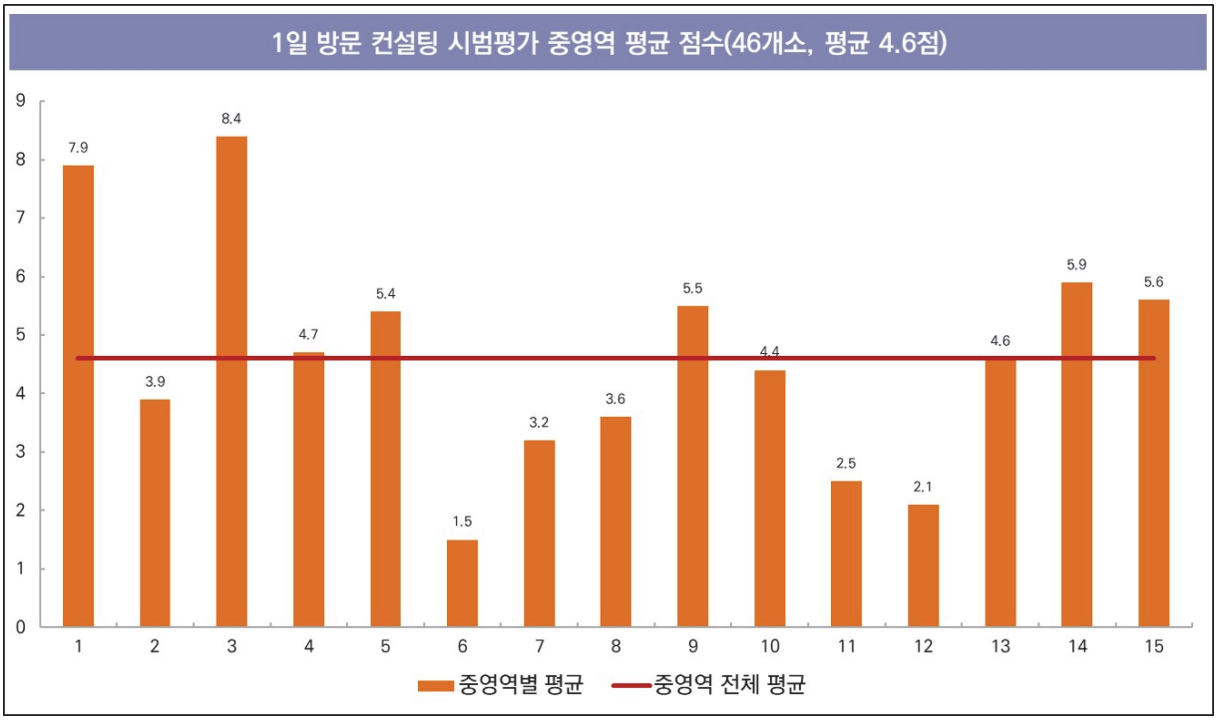

[그림 Ⅳ-3-12]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대영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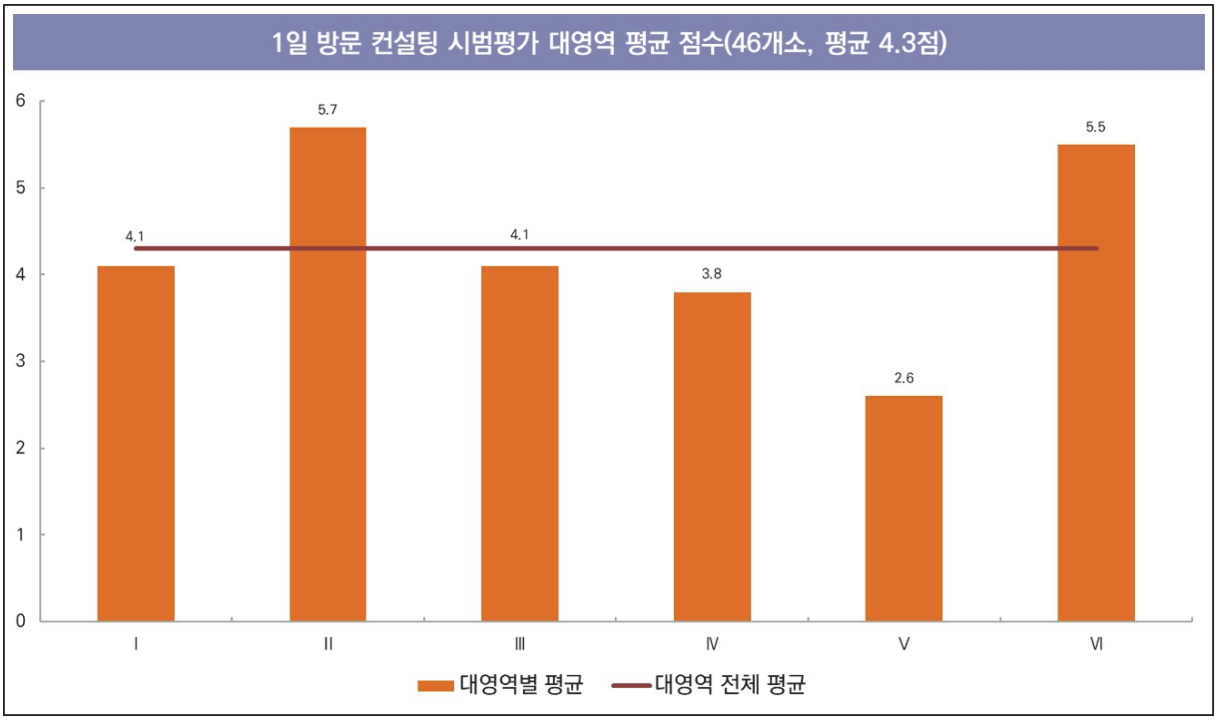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결과 점수 중 상위 3순위와 하위 3순위에 속하는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상위 3순위 지표로는 '3.1 시설 적정성(8.4점)', '1.1 인력 적정성(7.9점)', '5.1 입·퇴실관리(6.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순위 지표는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1.5점)', '12.1 부모교육(2.1점)', '8.2 개인보호구 착용(2.5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3-10〉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점수 상위 3순위 및 하위 3순위 지표

구분	상위 3순위 영역	하위 3순위 영역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3.1 시설 적정성(8.4점) 1.1 인력 적정성(7.9점) 5.1 입·퇴실 관리(6.7점)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1.5점) 12.1 부모교육(2.1점) 8.2 개인보호구 착용(2.5점)

1일 방문 시범평가의 상위 3순위 중 '3.1 시설 적정성'과 '5.1 입·퇴실 관리' 영역은 1차 시범평가의 상위 3순위 영역에도 선정되었다. 1일 방문 시범평가의 하위 3순위 중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와 '12.1 부모교육'은 1차 및 3차 시범평가뿐만 아니라 컨설팅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4년째 지속적으로 하위 3순위에 선정되는 영역이므로 추후 컨설팅 사업에서 이 영역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Ⅳ-3-11〉 1일 방문 컨설팅 시범평가 결과 요약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분류	평균 대/소영역 1일	평균 항목별 1일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4.1**	
1.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7.9	7.9
2.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3.7	3.3
			2.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3.7
			3.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2.9
			4.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정규		2.4
	2.2	종사자 교육·계발	1.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4.7	2.2
			2.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3.6
			3.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8.4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4.4	2.8
			2.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5.9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5.7**	
3.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8.4	9.1
			2.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정규		8.3
			3.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7.4
			4.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9.0
4.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5.2	2.7
			2.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4.9
			3.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5.1
			4.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7.2
			5.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6.3
	4.2	소방 안전관리	1.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4.8	3.4
			2.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6.9
			3.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3.0
			4.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정규		5.8
	4.3	낙상 예방관리	1.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3.1	2.7
			2.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3.5
Ⅲ. 운영과 질 관리					**4.1**	
5.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6.7	4.5
			2.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9.9
			3.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9.1
			4.입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3.3
			5.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6.8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5.9	3.9
			2.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7.8
	5.3	문서관리	1.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3.8	2.7
			2.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5.2
			3.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정규		3.4
	5.4	방문객 관리	1.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4.4	3.7
			2.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4.2
			3.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5.2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분류	평균 대/소영역 1일	평균 항목별 1일
6.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시범	1.5	0.4
			2.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0.3
			3.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범		3.5
			4.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정규		2.2
			5.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0.9
7.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1.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3.2	6.7
			2.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시범		1.7
			3.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1.3
Ⅳ. 감염예방관리					**3.8**	
8.감염예방	8.1	손 위생	1.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4.8	3.8
			2.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5.4
			3.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4.4
			4.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3.8
			5.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6.6
	8.2	개인보호구 착용	1.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2.5	3.0
			2.지침에 따라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2.0
	8.3	세탁물 관리	1.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6	3.0
			2.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2.2
	8.4	물품 소독·관리	1.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4.3	3.3
			2.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3.6
			3.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5.9
	8.5	환경관리	1.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3.3	3.1
			2.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3.5
	8.6	급식관리	1.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3.0	2.9
			2.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1
			3.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1.4
			4.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2.2
			5.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6
			6.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4.8
	8.7	종사자 관리	1.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3.7	3.4
			2.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9
			3.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3.9
9.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필수	5.5	4.0
			2.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필수		7.0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2.6**	
10.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4.4	6.2
			2.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7
11.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2.5	2.3
			2.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2.0
			3.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1
12.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2.1	1.7
			2.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2.3
			3.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2.5
			4.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3.2
			5.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2.7
			6.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0.2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5.5**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분류	평균	
					대/소영역	항목별
					1일	1일
13.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1.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4.6	3.0
			2.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6.2
			3.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4.6
14.신생아 건강 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5.9	6.1
			2.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6.9
			3.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4.8
15.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1.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6.0	3.0
			2.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8.9
	15.2	신생아 수유	1.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6.6	3.7
			2.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6.2
			3.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6.5
			4.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6.8
			5.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9.7
	15.3	안전관리	1.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3.8	2.7
			2.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4.1
			3.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4.7

2) 컨설팅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1) 전체 영역별 및 대영역별 언급 횟수

1일 방문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소영역을 나열하면 ‘12.1 부모교육(46회)’,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45회)’, ‘2.1 종사자 채용·유지(42회)’와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42회)’ 순으로 나타났다.

대영역별로 많이 언급되었던 소영역을 살펴보면,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에서는 ‘2.1 종사자 채용·유지(42회)’가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영역에서는 ‘4.3 낙상예방관리(40회)’ 영역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어서 ‘Ⅲ. 운영과 질 관리’ 중에서는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45회)’, ‘Ⅳ.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서는 ‘8.2 개인보호구 착용(41회)’으로 파악되었다.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12.1 부모교육(46회)’,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영역에서는 ‘15.3 안전관리(38회)’로 확인되었다. 특히,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와 ‘12.1 부모교육’은 1차 및 3차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전체 영역별 언급 횟수 분석에서도 대영역별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소영역에 해당한다.

해당 영역들은 1일 방문 컨설팅의 시범평가에서도 모두 평균(4.4점) 이하인 영역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별 영역 점수는 ‘2.1 종사자 채용·유지(3.7점)’, ‘4.3 낙상예방관리(3.1점)’,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1.5점)’, ‘8.2 개인보호구 착용(2.5점)’,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2.5점)’, ‘12.1 부모교육(2.1점)’, ‘15.3 안전관리(3.8점)’로 집계되었다.

〈표 Ⅳ-3-12〉 1일 방문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언급 횟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일 방문 컨설팅 보고서 언급 횟수(*n*=46)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22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42**
		2.2 종사자 교육·계발	41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34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2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39
		4.2 소방안전관리	23
		4.3 낙상예방관리	**40**
Ⅲ.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40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33
		5.3 문서관리	38
		5.4 방문객 관리	33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45**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41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36
		8.2 개인보호구 착용	**41**
		8.3 세탁물 관리	40
		8.4 물품 소독·관리	37
		8.5 환경관리	38
		8.6 급식관리	33
		8.7 종사자관리	35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32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36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42**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46**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35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27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33
		15.2 신생아 수유	29
		15.3 안전관리	**38**

(2) 최다 언급 영역별 키워드

1일 방문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인 '12.1 부모교육(46회)'의 경우, 부모교육의 계획, 지침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부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산모 및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교육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서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영역인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45회)' 영역에서는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한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이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계획이 부재했으며 질 관리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컨설턴트는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관 측에서 만족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고민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객 소리함 등을 통한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도 컨설팅하였다.

‘2.1 종사자 채용·유지(42회)’ 영역의 경우, 종사자 임용 규정 및 관련 서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종사자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근거 서류 등 각종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개선 과제로 종사자 관리대장을 통해 관련 서류를 개인별 및 연도별로 수집 후 직원의 면허 갱신 및 교육 근거자료를 주기적으로 추가하여 관련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42회)’ 영역에서는 기관 측에서 모자동실을 촉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이나 활동 근거 자료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모자동실 촉진 교육과 그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산모 비율을 높이기 위해 모유수유 촉진 교육과 활동을 실시하고 근거 서류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였다.

〈표 Ⅳ-3-13〉 1일 방문 컨설팅 결과보고서 영역별 최다 언급 키워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일 보고서 언급 횟수 (*n*=46)	키워드	
					개선사항	추가 개선과제/보완사항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2. 부모교육	12.1	부모 교육	46	- 부모교육 계획, 지침, 체크리스트 부재 및 미흡	- 대상별, 주제별 구체적 계획 마련, 지침과 체크리스트 준비
					- 부모교육 내용 및 근거자료 미흡	- 부모교육 내용(영아돌연사 및 예방교육) 및 진행 방법 보완 - 교육 이수자 근거자료 마련
					- 아버지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미실시 및 근거서류 부재	- 아버지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실시 및 근거서류 마련
Ⅲ. 운영과 질 관리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45	-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 없거나 미비	-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 수립
					- 질 관리 활동 미수행 및 이해 부족	- 핵심지표 선정 및 질 관리 활동 교육
					- 만족도 조사 미실시 - 만족도 조사 후 분석 미수행 - 만족도 분석 결과에 대한 업무 개선 활용 사례 부재	- 만족도 조사 도구 준비 및 실시 - 만족도 조사 후 분석 실시 -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 개선활동 권고
					- 불만 및 고충 처리 관련 절차 부재	- 불만 및 고충 처리에 대한 안내(고객 소리함, 입실 안내문 활용 등)
						- 불만 및 고충 사항 처리 결과 및 피드백 관련 근거서류 마련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42	-인사 관련 규정 부재 및 미흡, 관리 부족	-인사 관련 규정 마련 및 내용 보완 후 관리
					-종사자 임용 서류 및 보안 각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자격/면허 갱신/교육 근거 서류 미비 및 관리 부족	-종사자 관리대장을 작성 후 관련 사항 직원별, 연도별로 수합 및 주기적으로 관리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1일 보고서 언급 횟수 (*n*=46)	키워드	
					개선사항	추가 개선과제/보완사항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42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부재	-제공된 서식을 참조하여 계획 수립
					-모자동실 촉진활동 및 근거 서류 부재	-체계적·지속적인 촉진활동과 근거 서류 준비 -모아애착 증진 서식지를 활용
					-모유수유 촉진활동 및 근거 서류 부재	

4. 부모교육 수행 내용 및 결과

2022년도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교육 강사가 직접 산후조리원 현장을 방문해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장방문 부모교육은 2019년도에 1~3차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완료했던 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되었다가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잠정 중단되었던 것이다. 만족도 높은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위하여 2022년도 하반기 코로나 확산세 감소 상황을 반영해 2022년도 컨설팅 사업에서 현장방문 부모교육을 재도입하였다. 2022년도 1~3차 산후조리원 대상 부모교육 진행 절차는 [그림 Ⅳ-4-1]과 같다.

[그림 Ⅳ-4-1] 2022년도 1~3차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 대상 부모교육 진행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비고
계획 및 제반 준비 (9월~10월)	- 부모교육 계획 수립 - 부모교육 진행 방법 논의 및 자료 제작 - 산후조리원 대상 참여 의사 조사 - 부모교육 강사진 섭외 및 구성	1~3차 컨설팅 완료한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전화로 부모교육 수요 조사 실시
⇩	⇩	
부모교육 강사진 회의 (9월 말)	- 강사진 의견 수렴 및 공유를 위한 온라인 회의 실시	강사진과 함께 부모교육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
⇩	⇩	
일정 조율 및 자료 배포 (9월 말~10월 초)	- 부모교육 강사진과 산후조리원 일정 조율 - 산후조리원 대상 부모교육 자료(소책자, 활동지, 활동 물품) 배송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기관 대상으로 부모교육 책자와 부모교육 물품을 미리 발송함
⇩	⇩	
부모교육 실시 (10월 중순~11월 중순)	- 부모교육 강사 5인이 1~3차 컨설팅을 완료한 산후조리원 6곳에 방문하여 부모교육 실시	강사진이 일정 배정받은 산후조리원에 방문하여 부모교육 강의 실시

단계	주요 내용	비고
⇩	⇩	
결과 보고 (11월 말) →	- 각 산후조리원 담당자 대상으로 산모들의 부모교육 참석율 및 만족도, 건의사항 조사 - 부모교육 강사진 수당 및 여비 지급 〉	향후 부모교육에 활용

가. 부모교육 강사 섭외

전문적이고 만족도 높은 부모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부모교육 강사진을 섭외하였다. 부모교육 소책자 출간 작업에 참여한 집필진과 다년간의 부모교육 강의 경력을 갖춘 전국 각지의 부모교육 전문가 5명을 부모교육 강사진으로 선정하였다.

나. 부모교육 참여 기관 모집

2022년도 1~3차 산후조리원 컨설팅 참여 기관 14개소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참여 기관을 모집하였다. 1차 모집 결과, 산후조리원의 건강관리책임자는 승인하였으나 원장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른 집체 교육 거부와 외부 강사 출입 금지를 비롯한 산후조리원의 내부 방침과 더불어 산모의 참여율 부진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부모교육을 희망하지 않아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14개 기관 중 8기관이 부모교육을 신청하였다. 이후 산후조리원의 공사일정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외부 강사 출입 금지 사유로 2곳이 참여 취소 요청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현장 방문 부모교육에 참여한 6개 산후조리원명과 강의 일정은 〈표 Ⅳ-4-1〉와 같다. 부모교육을 거부하였거나 참여 취소를 요청한 8개 산후조리원의 사유는 〈표 Ⅳ-4-2〉에 제시하였다.

〈표 Ⅳ-4-1〉 부모교육 참여 산후조리원명과 강의 일정

번호	산후조리원명	강의 일정
1	수도권 A산후조리원	10.14.(금) 11:00~12:00
2	지방 B산후조리원	10.21.(금) 14:30~15:30
3	지방 C산후조리원	10.21.(금) 11:00~12:00
4	수도권 D산후조리원	10.21.(금) 14:00~15:00
5	지방 E공공산후조리원	11. 3.(목) 11:00~12:00
6	지방 F공공산후조리원	11.18.(금) 15:00~16:00

〈표 Ⅳ-4-2〉 부모교육 미참여 산후조리원명과 거부 및 취소 사유

번호	산후조리원명	거부/취소 여부	사유
1	수도권 A산후조리원	거부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외부 강사 출입 어려움
2	수도권 B산후조리원	거부	- 담당자 교체로 3차 컨설팅 이후 협조 어려움
3	지방 A공공산후조리원	거부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외부 강사 출입 어려움
4	지방 B공공산후조리원	거부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외부 강사 출입 어려움
5	수도권 C산후조리원	거부	- 업무과중화 및 코로나 19 재확산 방지
6	수도권 D산후조리원	거부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집체 교육 안함 -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를 위해 계획한 기존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부모교육 참여율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함
7	지방 C산후조리원	취소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산모 참여율 부진 예상으로 취소함
8	지방 D산후조리원	취소	- 기관 내부 리모델링 일정 및 산모 참여율 부진 예상으로 취소함

다. 부모교육 진행 방법 계획 및 자료 제작

2022년 8월과 9월 중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연구진 회의를 통해 2022년도 부모교육 진행방법과 활용 자료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부모교육 진행 방법 중 강의 시간에 대해서는 출산 직후인 산모의 컨디션과 질의응답 시간을 고려하여 1회 60분씩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준화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2022년 부모교육에 활용할 강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2020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출간한 부모교육 자료집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를 추가 인쇄하여, 부모교육 강사진과 1~3차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에 컨설팅 참여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배포하였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아기와 관계형성하기,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건강관리, 긍정양육 129원칙이다. 현장 방문 부모교육에서 시청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 Ⅳ-4-2]에 제시되어 있는 부모교육 강의 자료(PPT, pdf 파일)를 구성하여 부모교육 강사진과 1~3차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 중 현장 방문 부모교육에 참여한 기관에 제공하였다.

산후조리원 방문 부모교육은 산모와 아버지가 부모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신생아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며, 긍정 양육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산후조리원 퇴소 후에도 각 가정에서 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를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활용할 활동 자료로 부모 서명 문구가 들어간 신생아 발도장 스템프 활동지를 제작하였다([그림 Ⅳ-4-3] 참고). 산후조리원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이 긍정적인 양육 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활동지 뒷면에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 129원칙 안내문을 넣었다. 이렇게 제작한 부모 서명 활동지와 신생아 발도장 스템프 및 파일을 참여 산후조리원에 배포하여 부모교육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진이 계획한 부모교육 진행방법과 제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 9월 30일 부모교육 강사진과 온라인 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를 통해 부모교육의 방향을 전달하고 세

부적인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합의 및 부모교육 자료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Ⅳ-4-2] 부모교육 강의 자료 (PPT, pdf 파일)

[그림 Ⅳ-4-3] 부모교육 활동 자료(부모 서명 활동지와 신생아 발도장 스템프)

라. 부모교육 진행

부모교육은 1~3차 컨설팅이 종료된 이후인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6개소의 컨설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부모교육 강사 총 5인이 1인당 1~2개소의 산후조리원에서 1회 1시간의 부모교육 강의를 실시하였다. 현장 방문 부모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산모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교육 대상기관에 문의하였고, 담당 강사와 부모교육 진행 날짜 및 시간을 조율하여 부모교육 최종 일정을 확정하였다. 참여 산후조리원에 담당 강사명과 일정을 미리 전달하여 산모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또한, 부모교육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을 미리 발송하여 강의 당일에 담당 강사와 산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각 산후조리원의 담당자가 담당 강사와 미리 논의하여 별도의 부모교육 강의명을 정해 산모와 아버지,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참여 산후조리원 측은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장소를 제공하였다. 주요 강의 내용은 아기와 관계형성하기, 신생아 돌보기,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건강관리였다. 세부적인 교육 내용은 [그림 Ⅳ-4-4]와 같다.

[그림 Ⅳ-4-4] 부모교육 강의 구성

단계	주요 내용		자료
1. 도입	• 부모교육 및 강사 소개 •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	-	부모교육 소책자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
⇩	⇩		
2. 전개	• 아기와 관계형성하기 - 부모됨이란? - 내 아기 이해하기 - 아기 돌보기는 애착행위다 • 신생아 돌보기 - 아기 돌보기/수유하기 - 우리 아기 성장과 발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 유지 - 신생아 건강 문제 대처법 - 영아 심폐소생술 • 산모 건강관리 - 산욕기의 신체 변화/산후 운동 - 산욕기 이상/산후조리	-	부모교육 강의 자료 (PPT, pdf 파일)
⇩	⇩		
3. 정리	• 긍정양육 129원칙 소개 및 부모 서명 활동	-	부모교육 활동 자료 (부모 서명 활동지, 신생아 발도장 스템프)

마. 부모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장 방문 부모교육을 완료한 이후 해당 산후조리원의 건강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부모교육 참석 인원과 참석자 반응, 제안 사항을 조사하였다. 부모교육 만족도 조사 내용을 〈표 Ⅳ-4-3〉에 정리하였다.

대체로 부모교육 강의에는 평균 8여명의 산모가 참석하였다. 산모 이외에 신생아 아버지가 참석한 곳(1개소)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부모교육에 참석한 곳(1개소)도 있었다.

다음으로 부모교육 참석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수업 분위기도 좋았고 참석자들이 강사에게 질의응답도 많이 하는 등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는 곳(2개소)도 있었으나 절반 이상의 산후조리원 측에서 전반적인 만족도와 교육의 유익성 측면에서 아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후조리원 측의 건강관리책임자들은 향후 부모교육을 위한 제안 사항으로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모교육 진행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전반적인 부모교육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의 산모들의 요구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또 향후 산후조리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산모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안내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강의와 자료를 개발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표 Ⅳ-4-3〉 부모교육 참여 산후조리원별 참석 인원 및 제안 사항

번호	산후조리원명	참석 인원	전반적 만족도	제안 사항
1	수도권 A산후조리원	산모10	-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아 응급처치 교육보다는 산모들의 참석율과 호응도가 저조하였음. 교육 내용의 유익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산모들이 많았음	- 부모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아 응급 처치 교육'처럼 신생아 산모들의 요구에 맞춘 구체적인 부모교육 강의 내용 선정을 요청함
2	지방 B산후조리원	산모 6	- 기존 프로그램 시간을 대체하여 소중한 시간을 부모교육에 할애하는 것인데 아쉬운 점이 많았음	- 강의 내용이 이론적인 내용이 위주라서 아쉬웠음. 산모들이 요구도와 만족도 높고 실제로 산후조리원 측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후 아기 목욕시키기'처럼 산모들이 퇴소 후 가정에서 아기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면 좋겠음 - 미리 강의교안이나 수업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원 측에 전달해준다면 산후조리원 측에서 산모들에게 강의를 홍보할 때 용이할 것임
3	지방 C산후조리원	산모 8, 아버지 2	- 수업 분위기도 좋았고 참석자들이 질문도 많이 하였음	
4	수도권 D산후조리원	산모14	- 오후 2시에 강의를 진행하여 산모들의 피로도가 높았음	- 한 시간 동안 전반적인 내용을 훑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 좋겠다는 의견임 - 신생아용 발도장 스탬프 잉크가 신생아 피부에 닿으면 잘 지워지지 않아서 발도장 스탬프 활동은 개선이 필요함 - 부모교육을 오후 시간보다는 오전 11시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음
5	지방 E공공 산후조리원	산모 4, 직원10	- 산모들이 부모교육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산모들의 반응은 좋았으나 직원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었음 - 부모교육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이 아쉬움	- 부모교육 강의 자료(PPT) 맨 마지막 장이 긍정양육 129 소개 화면으로만 끝나는데 흐름상 매끄럽지 못함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자료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모들에게 어떻게 부모교육을 안내해야하는지에 대한 강의와 자료도 제공해주면 좋겠음
6	지방F 공공 산후조리원	산모10	- 산모들이 부모교육 수업이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었음 - 도입에 이미지 카드를 활용한 마음열기에 대한 반응이 좋았음	-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모들에게 어떻게 부모교육을 안내해야하는지에 대한 강의와 자료도 제공해주면 좋겠음

바. 부모교육을 위한 제언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부모교육 진행을 마치고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산후조리원 부모교육 추진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부모교육 참여와 진행과정에 협력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생아 부모와 산후조리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기간이 자녀와의 애착이 이루어지는, 부모됨을 현실로 체감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산후조리원 부모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후조리원 담

당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사전 공지를 통해 산모의 참여도를 높이고 빔 프로젝터 등 강의 환경을 구성하는 산후조리원 담당자의 협조는 강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신생아의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까지 부모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한다. 산후조리 기간 뿐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과정에서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와 협력은 어머니와 영유아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산후조리 시기는 첫 부모됨을 경험하는 특성으로 인해 부모 모두가 새로운 역할에 민감한 상황이다. 아버지의 아버지 됨을 포함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후조리원으로 강사진이 파견되어 시행하는 1회성의 부모교육보다 산후조리원에서 부모교육 가능한 자체인력을 통해 신생아 산모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자료를 제공함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본 사업은 산후조리원 컨설팅의 과정으로 3회기 컨설팅을 마친 곳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었기에 부모교육 강사들이 현장으로 1회 방문하여 수강인원이 최대 10명 내외로 제한적이었다. 또한, 현장에서도 이러한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더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 제공의 요구가 높았다.

넷째, 상시 가능한 산후조리원 부모교육의 시행을 위해 강의 자료를 보완하여 구성하고 현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교육은 짧은 시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유수유나 응급처치 등을 제외하고 부모됨과 발달지원자로서의 부모, 애착, 긍정적 양육의 의미, 아버지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부모교육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부모교육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강의 교재와 PPT, 영상자료 등을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 퇴소 후에 부모들이 다양한 부모교육의 기회에 스스로 접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기회와 접근 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다섯째, 산후조리원 부모교육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강의 자료가 보완되고, 자료가 구성되면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참여하는 산후조리원 부모교육 담당자(원장) 등이 모여 부모교육 시범 강의를 듣고, 상호 토의하는 워크숍의 기회를 마련하여 부모교육 강의자로서의 역량을 키운다.

여섯째, 교육대상인 부모들의 특성을 토대로 부모교육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전달식 강의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소규모 토의식 교육을 선호한다. 이미지 카드 등을 활용하여 도입하며 참여하는 토의식 수업의 방법으로 진행을 안내한다.

5. 요약 및 시사점

이상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준비와 수행내용 및 결과 부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컨설팅 사업 준비는 '컨설팅 사업 홍보', '컨설팅 대상 기관 모집', '컨설턴트 모집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컨설팅 사업의 홍보는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행되었다.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였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 설명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1시간 30분 분량의 강의를 녹화한 후, 온라인 설명회 사이트를 열어 지정된 기간에 전국 산후조리원의 종사자들이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 내용은 총 3차시로 컨설팅 운영 방식 안내, 평가기준 개괄 및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는 전국의 70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참여하였다. 컨설팅 수요조사에서 1~3차 컨설팅 및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산후조리원 중 온라인 사업 설명회 영상을 모두 수강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참여 기관을 모집 및 선정하였다. 2022년 컨설턴트는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수간호사나 팀장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 2회 이상 경험자' 또는 '신생아 또는 모성 관련 간호사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의료기관 인증 평가 2회 이상 경험자'로서, 기존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영역별 지표 및 산후조리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31명으로 모집되었다. 컨설턴트들은 교육을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항목, 평가 방법에 대해 강의를 듣고 실제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2022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컸기에 2020년부터 수립된 컨설팅 수행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였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사무국은 컨설팅 전 컨설턴트들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지참물품 및 수칙을 반복해서 안내하는 등 컨설팅시의 방역 지원을 철저히 하였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에도 '1~3차 컨설팅'과 '1일 방문 컨설팅'의 두 가지 형태로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이 수행되었다. 각각의 수행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3차 컨설팅은 총 16개의 산후조리원이 신청하였으나, 1차 컨설팅에는 15개소가 참여하고 2차에는 14개소, 3차에는 14개소가 참여하여, 1~3차 컨설팅을 모두 마친 산후조리원은 14개소였다.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컨설턴트의 산후조리원 방문에 대한 염려, 업무과중화, 산후조리원 임대 계약 연장 문제 등으로 컨설팅 참여를 취소한 기관이 있었으며, 애초 1일 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던 1개의 산후조리원은 1~3차 컨설팅으로의 변경을 요청해 참여하기도 하였다. 위촉된 31명의 컨설턴트 가운데 1~3차 컨설팅에는 총 14명의 컨설턴트가 참여하였다.

1~3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 시작 전 대상기관에 운영현황표(산후조리원의 기본정보, 시설 및 이용 현황, 인력 현황 등이 포함)와 자체평가지(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를 서면 제

공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턴트가 세 차례에 걸쳐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때 산후조리원이 운영현황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인력현황과 법정 인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의 경우 간호사 인력이 부족했던 수도권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법정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컨설턴트들이 1차, 3차 컨설팅 시 실시한 시범평가의 결과와 컨설턴트들이 매 차시 작성한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추이 분석을 통해 1~3차 컨설팅의 수행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시범평가 결과 점수 중 상위 3순위 지표는 '3.1 시설 적정성(8.7점)', '5.1 입·퇴실관리(6.5점)', '15.2 신생아 수유(6.2점)'이며, 하위 3순위 지표는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1.3점)', '12.1 부모교육(1.4점)', '8.6 급식관리(1.8점)'로 나타났다. 3차 시범평가의 경우 상위 3순위는 '5.2 의료기관 연계·이송(9.5점)', '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9.3점)', ' 9.1 감염관리(9.3점)', 하위 3순위는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3.6점)', '12.1 부모교육(4.3점)',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5.2점)'로 나타났다. 즉, 1차 시범평가의 하위 3순위 중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와 '12.1 부모교육' 지표는 3차 시범평가 시 점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3차 컨설팅 시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특성과 추이를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은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38회)', '12.1 부모교육(36회)', 그리고 '8.1 손 위생(35회)'였다.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영역을 살펴보면, 1차 점수가 1.3점, 3차 점수가 3.6점으로 소폭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평균점에 도달하지 못해 원인 파악을 위한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이 영역은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시작 이후 4년째 매년 컨설팅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역으로 선정되고 있어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차 컨설팅 진행시 대다수 산후조리원이 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만족도 조사와 불만 및 고충처리 등 관련 준비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 지표를 선정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토대로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맞는 질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컨설팅하였다. 만족도 조사를 위해 검사 도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나 방문객의 불만이나 고충을 접수하기 위한 안내, 이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2차 컨설팅 시에도 여전히 핵심지표 선정, 질 관리 계획 수립, 만족도 조사 도구 준비 등의 합의점들이 개선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컨설턴트는 질 관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컨설팅하고, 예시를 들어 만족도 조사 도구를 구성하고 산후조리원의 상황을 함께 모니터링 하였으며,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한 안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컨설팅하였다. '12.1 부모교육'은 1차 점수가 1.4점, 3차 점수가 4.3점으로 나타났다. 1차 컨설팅 시 미비점으로 부모교육 계획의 미수립, 부모교육 자료 및 근거자료 부재 등이 나타났다. 이에 개선과제로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미실시 교육을 이행하여 근거자료를 취합하도록 안내하였다. 이후 2차 컨설팅 시 1차 컨설팅의 합의점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부분은 교육 내용, 차시, 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3차 컨설팅 시에도 계획의 일부 내용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였다. '8.1 손 위생'은 1차 점수가 3.8점, 3차 점수가 7.8점으로 나타났다. 1차 및 3차 점수 모두 평균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점수여서 이 영역의 경우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측의 관심도와 개선 의지에 따라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으로 파악되었다. 1차 컨설팅 당시 해당 영역의 미비점으로 손 위생 관련 규정 부재, 손 소독제 제품 관리 미흡, 직원 및 산모 대상 손 위생 활동 수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제공된 서식을 참조하여 손 위생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약처 인증 손 소독제를 구입한 뒤 개봉일시와 유효기간을 표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구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2차 컨설팅 시 1차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기로 합의된 부분이 잘 이행되었는지 중간 점검이 실시하였는데 모든 손 소독제에 개봉일시와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으나, 손 위생 방법만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합의하였다. 3차 컨설팅에서는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에서 손 소독제 물품 관리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직원의 손 위생 활동 수행이 관찰되었다. 추후에는 직원뿐만 아니라 산모를 대상으로 손 위생 홍보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였다.

1~3차 컨설팅의 수행내용 및 결과 요약에 이어 1일 방문 컨설팅의 수행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일 방문 컨설팅의 경우 2022년도 컨설팅 목표 기관수는 45개소였으나, 이보다 많은 52개소가 모집되었다. 이 중 5개 기관은 내부사정, 담당자 건강문제, 병원 화재 복구 작업 등의 사유로 1일 방문 컨설팅을 취소하여 1일 방문 컨설팅을 완료한 산후조리원은 46개소였다. 2022년도 1일 방문 컨설팅은 1~3차 컨설팅과 동일한 형태(컨설팅 시간, 운영현황 및 자체평가, 시범 및 결과보고)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1~3차 컨설팅에서 활동 경력이 많은 컨설턴트 중심으로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하였다. 결과적으로 2022년 모집된 31명의 컨설턴트 중 19명의 컨설턴트가 1일 방문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1일 방문 컨설팅도 1~3차 컨설팅과 동일하게 컨설팅 시작 전 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표와 자체평가지를 참여 기관에 배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컨설턴트들은 산후조리원에 방문하여 1일 8시간 동안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이때 산후조리원이 운영현황표에 작성해 제출하였던 인력현황과 법정 인력현황을 비교해보면, 간호조무사 인력은 모든 참여 기관에서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간호사 인력은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3개소 확인되었다. 이는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의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했던 기관이 1개소인 것에 비해 비교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이를 통하여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은 3차례에 걸친 1~3차 컨설팅을 받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1일 방문 컨설팅을 신청하여 참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 1일 방문 컨설팅의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영역은 '12.1 부모교육(46회)',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45회)'로 이 영역들의 컨설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2.1 부모교육(46회)'의 경우, 부모교육의 계획, 지침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부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산모 및 아버지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모교육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서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다음으로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45회)' 영역에서는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한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이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계획이 부재했으며 질 관리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컨설턴트는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관 측에서 만족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고민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객소리함 등을 통한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컨설팅하였다.

V

2022년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사후 관리

01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02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사후간담회

03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수기공모

04 요약 및 시사점

Ⅴ. 2022년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및 사후 관리

1. 컨설팅 사업 효과성 분석

가. 2022년 사전(1차 컨설팅) - 사후(3차 컨설팅) 효과 분석 결과

1~3차 컨설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시범평가 결과와 3차 시범평가의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시범평가와 비교했을 때 3차 시범평가 지표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 중 인력 적정성, 시설 적정성, 리더십 및 조직문화,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와 같은 4개의 소영역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평가지표의 점수가 1차에 비해 3차 때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컨설팅 전과 비교해서 컨설팅 이후에 4개 소영역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 내용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Ⅴ-1-1 참조). 2019년도에는 2개의 소영역 지표(인력 적정성, 시설 적정성), 2020년도에는 1개의 소영역 지표(인력 적정성), 2021년도에는 3개의 소영역 지표(인력 적정성, 시설 적정성, 리더십 및 조직문화)를 제외하고는 컨설팅 이후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할 때, 2022년도에는 인력 적정성, 시설 적정성, 리더십 및 조직문화 외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영역의 지표 개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에서 4가지 소영역 지표의 점수 변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인력 적정성의 경우에는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 6.1점, 3차에서 6.4점으로 다른 지표의 점수 증가 크기와 비교해 증가 폭이 미비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인력 적정성 지표의 증가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지표가 가지는 특성 때문으로 이해된다. 개별 산후조리원의 경우 규모 및 운영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필수 고용 인력의 수가 정해지며 인력규모의 변화는 산후조리원의 예산규모와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설 적정성은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 8.7점, 3차에서 8.8점으로 다른 지표의 점수 증가 크기와 비교해 증가 폭이 작아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설 적정성은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산모)실, 영유아(신생아)실 운영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한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주로 신생아실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 적정성 지표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도 8.7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가 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 산후조리원이 신생아실 운영에 따른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리더십 및 조직문화는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 4.5점, 3차에서 5.0점으로 다른 지표의 점수 증가 크기와 비교해 증가 폭이 작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과 조직문화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의 개선과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원장이 리더십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는 지를 평가하며, 2022년 기준으로 시범평가 항목에 해당한다. 실제 2020년 초반 이후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개별 산후조리원이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이나 자체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의 조직문화 개선 활동이나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고 활성화 시키는 것은 인력중심의 조직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으로 비록 1차와 3차 평가점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소폭 증가하였기에 일부 기관에서 변화가 관찰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의 경우에는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 2.7점, 3차에서 5.1점으로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자동실, 모유수유를 통해 개별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모유수유와 애착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 및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계획에는 모자동실 운영, 모자동실 촉진 활동(교육), 모유수유 촉진 활동(교육) 등을 포함한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기간 동안 쉼을 통해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쌓였던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모자동실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낮은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은 1차 시범평가에서 2.7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통해 모자동실, 모유수유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다면, 3차 평가결과에서 5.1점이라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어 비록 통계적 유의미함은 획득하지 못했을지라도 컨설팅을 통해 의미 있는 개선효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Ⅴ-1-1〉 2022년 1~3차 컨설팅 전·후 차이 검증 결과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균(표준편차)		*t*
			1차	3차	(3차-1차)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3.2(2.4)	7.6(2.3)	5.0***
	1. 인력 적정성		6.1(3.5)	6.4(4.1)	0.3
		1.1 인력 적정성	6.1(3.5)	6.4(4.1)	0.3
	2. 인력 전문성		2.9(2.5)	7.8(2.2)	5.5***
		2.1 종사자 채용·유지	2.4(3.0)	7.5(2.6)	4.9***
		2.2 종사자 교육·계발	3.5(2.7)	7.1(2.5)	3.8***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3.0(3.1)	9.3(2.1)	6.2***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5.8(2.0)	8.5(1.3)	4.2***
	3. 시설 적정성		8.7(2.0)	8.8(2.0)	0.1
		3.1 시설 적정성	8.7(2.0)	8.8(2.0)	0.1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균(표준편차)		t
			1차	3차	(3차-1차)
	4. 시설 안전성		4.8(2.7)	8.4(1.8)	4.3***
		4.1 설비관리	5.9(3.2)	9.1(1.7)	3.4**
		4.2 소방안전관리	4.4(2.6)	7.8(2.4)	3.6**
		4.3 낙상예방관리	2.9(3.5)	8.0(2.6)	4.4***
Ⅲ. 운영과 질 관리			3.8(2.1)	6.9(1.9)	4.1***
	5. 운영관리		4.7(2.7)	8.7(1.9)	4.5***
		5.1 입·퇴실 관리	6.5(2.4)	8.9(1.8)	3.1**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4.8(3.2)	9.5(1.5)	5.0***
		5.3 문서관리	3.0(3.5)	8.6(3.1)	4.5***
		5.4 방문객관리	3.0(3.5)	7.7(2.7)	4.0***
	6. 질 관리		1.3(0.9)	3.6(2.5)	3.2**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3(0.9)	3.6(2.5)	3.2**
	7. 경영 관리		4.5(3.4)	5.0(3.4)	0.4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4.5(3.4)	5.0(3.4)	0.4
Ⅳ. 감염예방관리			2.9(2.3)	7.8(2.0)	6.1***
	8. 감염예방		2.8(2.2)	7.6(2.1)	6.0***
		8.1 손 위생	3.8(2.5)	7.4(2.4)	3.9***
		8.2 개인보호구 착용	2.1(2.6)	7.7(2.3)	6.0***
		8.3 세탁물 관리	2.1(2.8)	7.5(3.1)	4.8***
		8.4 물품 소독·관리	2.9(2.0)	7.6(2.4)	5.7***
		8.5 환경관리	3.9(3.9)	9.1(2.3)	4.3***
		8.6 급식관리	3.1(3.7)	8.0(3.3)	3.6**
		8.7 종사자관리	2.3(3.0)	7.7(3.3)	4.6***
	9. 감염관리		3.6(3.5)	9.3(1.8)	5.4***
		9.1 감염관리	3.6(3.5)	9.3(1.8)	5.4***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2.2(2.9)	5.0(3.3)	2.4*
	10. 산모건강평가		3.9(3.5)	7.0(3.7)	2.2*
		10.1 산모건강평가	3.9(3.5)	7.0(3.7)	2.2*
	11. 모아애착		2.7(3.3)	5.1(3.1)	2.0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2.7(3.3)	5.1(3.1)	2.0
	12. 부모교육		1.4(2.9)	4.4(3.8)	2.3*
		12.1 부모교육	1.4(2.9)	4.4(3.8)	2.3*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4.7(2.5)	8.4(2.0)	4.3***
	13. 신생아확인		3.8(3.2)	8.0(2.7)	3.7***
		13.1 신생아 확인	3.8(3.2)	8.0(2.7)	3.7***
	14. 신생아건강평가		4.9(3.2)	8.6(3.6)	2.9**
		14.1 신생아건강평가	4.9(3.2)	8.6(3.6)	2.9**
	15. 신생아관리		4.9(2.4)	8.5(1.6)	4.6***
		15.1 위생관리	5.2(3.2)	9.1(2.3)	3.7**
		15.2 신생아수유	6.2(2.5)	9.1(1.2)	4.0***
		15.3 안전관리	2.6(2.8)	6.9(2.6)	4.2***

$^{*}p < .05$, $^{**}p < .01$, $^{***}p < .001$.

나. 2019년~2022년 사전(1차 컨설팅) - 사후(3차 컨설팅) 시범평가 점수 추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차 컨설팅 시범평가 대영역별 평균 점수 추이를 확인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차 컨설팅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시범평가 점수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가장 컨설팅의 효과가 컸던 영역은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감염예방관리로 컨설팅 1차 시범평가 결과에서는 평균 4점이 되지 않았으나 컨설팅 이후에는 거의 8점까지

상승하였다. 가장 개선이 어려웠던 영역은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과 운영과 질 관리였다.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의 경우에는 2022년 1차 컨설팅에서는 2.2점, 2021년에서는 2.8점으로 점수가 매우 낮았었다.

[그림 Ⅴ-1-1] 2019~2022년 1~3차 컨설팅 시범평가 대영역별 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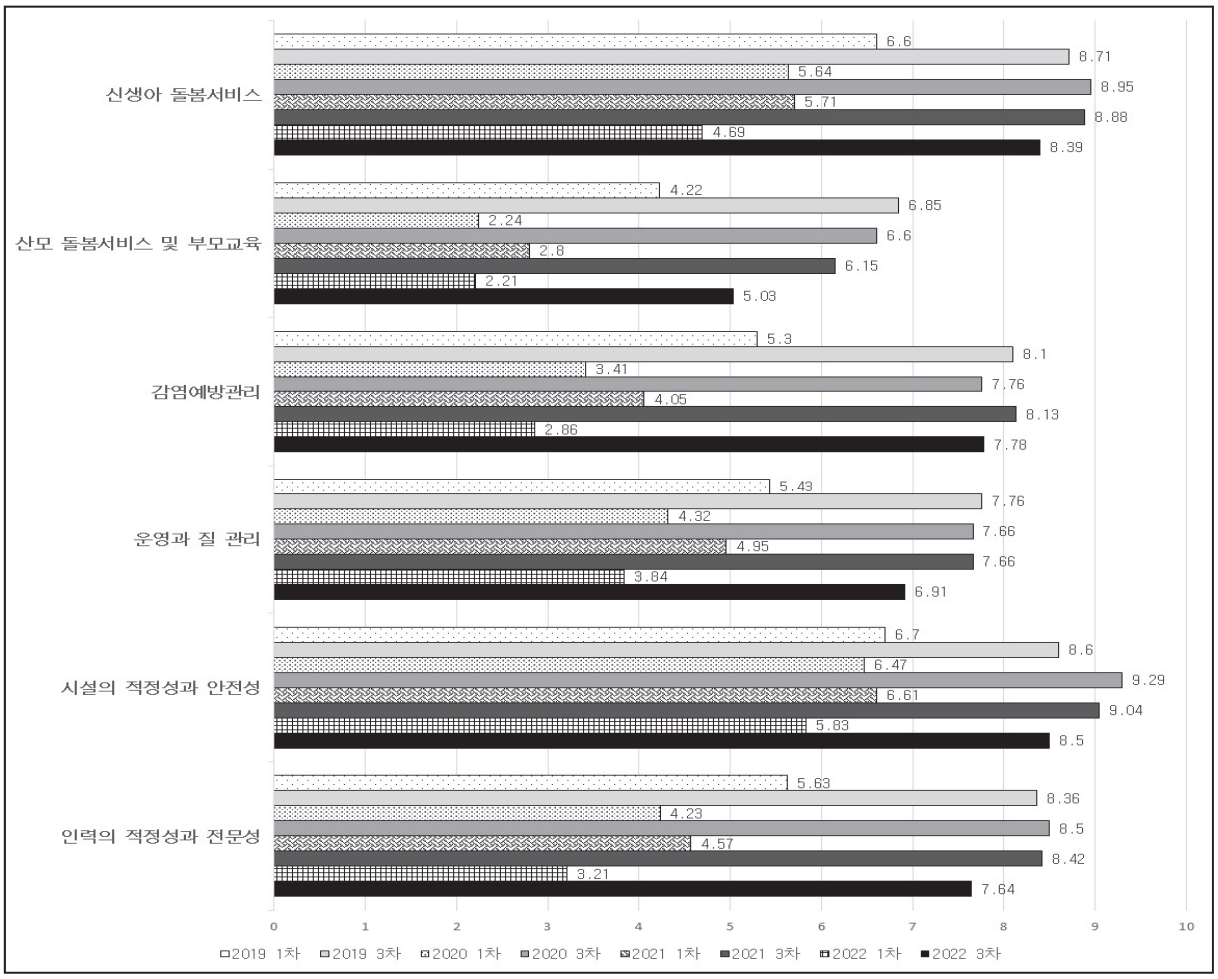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1~3차 컨설팅 시범평가의 모든 98개 항목 지표에 대해서 컨설팅 사전 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항목 지표는 총 9개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9개 지표는 다음 6개 소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인력 적정성 영역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라는 1개 지표였다. 둘째, 시설 적정성 영역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3개 지표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설비관리 영역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라는 1개 지표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소방 안전관리 영역의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라는 1개 지표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리더십 및 조직문화 영역에서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

한다',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라는 2개 지표가 유의하지 않았다. 여섯째, 신생아 수유 영역의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라는 1개 지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2019~2022년 1~3차 컨설팅 사전·사후 차이 검증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표준편차)		*t*
				1차	3차	(3차-1차)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8.46(2.95)	9.11(2.50)	1.6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3.24(4.11)	8.42(3.16)	9.3***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3.79(4.85)	8.61(3.48)	7.5***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4.01(4.16)	7.22(3.56)	5.4***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2.86(4.54)	8.61(3.48)	9.3***
	2.2	종사자 교육·계발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2.80(3.82)	6.71(3.83)	6.6***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3.13(3.70)	6.33(3.82)	5.5***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8.13(3.92)	9.37(2.45)	2.5*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3.63(4.66)	8.92(2.96)	9.0***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6.15(3.81)	9.56(1.43)	7.9***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1	시설 적정성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8.85(2.59)	9.18(2.32)	0.9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7.91(4.09)	9.37(2.45)	2.9**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7.97(4.01)	8.48(3.52)	0.9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9.78(1.47)	9.87(1.13)	0.5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3.57(4.43)	8.35(3.37)	8.0***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7.75(4.03)	9.43(2.12)	3.5***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8.02(4.01)	9.58(2.01)	3.2**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7.69(3.82)	9.62(1.56)	4.4***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6.15(4.86)	9.36(2.47)	0.6
	4.2	소방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4.40(4.64)	9.05(2.54)	8.2***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6.59(3.79)	8.46(2.71)	3.7***
			3.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4.89(4.28)	7.78(3.65)	4.8***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7.53(4.31)	8.48(3.61)	1.6
	4.3	낙상 예방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3.52(4.50)	8.35(3.46)	7.9***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2.69(4.04)	7.78(3.56)	8.7***
Ⅲ. 운영과 질 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4.01(4.49)	8.80(3.02)	8.3***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9.56(2.06)	10.00(0.00)	2.0*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 기준을 게시한다.	8.35(3.73)	10.00(0.00)	4.2***
			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4.45(3.91)	7.78(3.28)	6.1***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6.48(4.12)	9.11(2.63)	5.0***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4.07(4.53)	8.61(3.29)	7.5***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7.50(3.84)	9.68(1.46)	5.0***
	5.3	문서관리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3.46(4.51)	8.10(3.78)	7.3***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5.77(4.34)	8.73(2.71)	5.4***
			3.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4.62(4.49)	8.35(3.27)	6.3***
	5.4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4.07(4.59)	8.54(3.32)	7.4***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5.99(4.16)	8.29(3.19)	4.1***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6.31(4.12)	8.96(2.61)	5.0***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표준편차)		t
				1차	3차	(3차-1차)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0.93(2.57)	4.11(4.44)	5.6***
			2.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0.93(2.57)	2.28(3.65)	2.7**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35(3.73)	5.89(3.98)	4.3***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1.87(3.92)	6.20(4.88)	6.3***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1.32(3.40)	4.68(5.02)	5.0***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8.01(3.98)	8.73(3.35)	1.3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5.49(5.00)	7.47(4.38)	2.7**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3.19(4.69)	4.43(5.00)	1.7
Ⅳ. 감염예방 관리	8.1	손 위생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3.74(4.57)	8.54(3.41)	7.8***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5.42(4.05)	8.06(3.20)	4.5***
			3. 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3.06(4.32)	5.42(4.85)	2.9**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4.40(4.21)	7.85(3.55)	5.8***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7.14(3.51)	9.24(2.13)	4.8***
	8.2	개인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3.24(4.24)	8.67(3.07)	9.6***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2.91(4.09)	7.28(3.82)	7.2***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75(4.17)	8.10(3.61)	9.0***
			2. 세탁물을 관리한다.	3.41(3.94)	7.22(3.73)	6.5***
	8.4	물품 소독·관리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3.19(4.32)	8.16(3.51)	8.3***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3.68(3.86)	7.47(3.38)	6.8***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5.77(4.01)	8.16(3.01)	4.4***
	8.5	환경관리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3.02(4.34)	8.42(3.35)	9.1***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5.11(4.15)	8.73(2.59)	6.9***
	8.6	급식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2.64(4.23)	8.00(3.77)	8.5***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5.16(4.08)	6.93(3.87)	2.5*
			3. 식재료를 관리한다.	3.28(3.91)	5.61(4.34)	3.1**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3.36(4.09)	5.79(4.31)	3.2**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4.76(4.35)	7.72(3.54)	4.1***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4.38(5.04)	8.20(3.79)	3.3**
	8.7	종사자 관리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2.97(4.34)	8.35(3.46)	9.0***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4.62(5.01)	7.97(4.04)	4.8***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4.83(5.03)	8.21(3.86)	4.9***
	9.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2.69(4.17)	8.54(3.41)	10.1***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7.10(3.84)	9.68(1.46)	5.8***
Ⅴ.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0.1	산모 건강평가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5.71(4.12)	8.65(2.98)	5.4***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3.08(4.20)	7.28(3.99)	6.7***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3.02(4.34)	7.15(4.06)	6.4***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2.47(3.68)	4.05(4.09)	2.6**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3.74(4.19)	5.70(3.73)	3.2**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2.03(3.57)	6.33(4.21)	7.1***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2.97(4.01)	6.39(4.16)	5.5***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3.30(4.03)	7.34(3.74)	6.8***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2.58(3.83)	6.33(4.21)	6.0***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2.53(3.90)	6.33(4.21)	6.1***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1.83(3.85)	4.17(4.93)	3.4***
Ⅵ. 신생아 돌봄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2.86(4.16)	8.16(3.60)	8.9***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6.37(4.15)	8.92(2.62)	4.9***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4.61(4.41)	8.16(3.51)	5.8***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균(표준편차)		t
				1차	3차	(3차-1차)
서비스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7.14(4.16)	9.49(2.06)	4.8***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7.14(4.09)	9.37(2.32)	4.4***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5.44(4.81)	9.36(2.33)	6.9***
	15.1	위생관리	1.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3.19(4.44)	8.29(3.57)	8.3***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8.72(2.96)	9.62(1.75)	2.4*
	15.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3.24(4.50)	8.04(3.79)	7.6***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8.39(3.07)	9.43(1.96)	2.7**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6.98(3.32)	9.49(1.72)	6.3***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6.81(3.69)	8.10(3.03)	2.5*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9.45(2.29)	9.56(1.99)	0.3
	15.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2.80(4.23)	8.29(3.57)	9.2***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4.78(4.17)	7.22(3.28)	4.3***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5.73(4.30)	8.54(3.01)	5.0***

*p 〈 .05, **p 〈 .01, ***p 〈 .001.

나. 2019년~2022년 산후조리원 통합평가 점수 및 등급별 분포

2019년~2022년 컨설팅에 참여하였던 산후조리원 전체 시범평가 점수를 분석하였다. 2019년~2022년의 경우에는 1~3차 컨설팅에 참여하였던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점수가 분석 대상이었으며, 2021년~2022년에는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하였던 산후조리원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1차와 3차를 개별 산후조리원으로 간주하여 총 267개 시범평가 점수를 측정하였다. 먼저, 2019년~2022년 시범평가 통합점수 자료를 통하여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전체 항목 및 필수, 정규, 시범평가 항목별로 평균 점수 및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후조리원 98개 지표 전체에 대한 평균은 5.71점이었다. 분포를 살펴보면 8~10점 23.2%, 6~8점 미만 22.5%, 4~6점 미만이 22.1%, 4점 미만이 32.2%였다. 둘째, 필수 40개 지표의 평균은 5.75점이었다. 필수 지표의 분포를 살펴보면, 8~10점 23.2%, 6~8점 미만 26.6%, 4~6점 미만 18.7%, 4점 미만 31.5%였다. 셋째, 정규 52개 지표의 평균은 5.90점이었다. 정규 지표의 분포를 살펴보면 8~10점 27.0%, 6~8점 미만 21.0%, 4~6점 미만 23.6%, 4점 미만이 28.5%였다. 넷째, 시범 6개 지표의 평균은 3.91점이었다. 시범 지표의 분포를 살펴보면 8~10점 7.5%, 6~8점 미만 9.7%, 4~6점 미만 29.2%, 4점 미만이 53.6%였다.

〈표 V-1-3〉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점수

단위: %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4점 미만	4~6점 미만	6~8점 미만	8~10점
전체	267	5.71(2.46)	32.2	22.1	22.5	23.2
필수	267	5.75(2.48)	31.5	18.7	26.6	23.2
정규	267	5.90(2.60)	28.5	23.6	21.0	27.0
시범	267	3.91(2.50)	53.6	29.2	9.7	7.5

다음으로, 2020년 산후조리원 컨설팅에서 제안한 시범평가 점수변환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개별 산후조리원 필수, 정규, 시범 지표의 평균에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통합 평가점수를 산출하였고[30](이정림·이재희·구자연·엄지원·손인숙·최병민·김다은·김한솔, 2020: 11) 등급별(5등급: S, A, B, C, D) 기준 점수[31]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상위 점수에서 하위 점수 간 간격을 10점으로 설정하여 구분하였다(이정림 외, 2020:11). 또한 평가인증 방식을 선택할 시 기준점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등급별 최소 기준 점수별 탈락률을 산출하였다(이정림 외, 2020:11).

1~3차와 1일 방문 결과를 통합한 평균 평가점수는 57.7점이었고 최소값은 9.4, 최대값은 100.0점이었다. 1차 컨설팅 결과만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48.9점이었으며 최소값은 9.4점 최대값은 97.4점이었다. 3차 컨설팅을 받은 기관으로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80.6점이었으며 최소값은 32.0점, 최대값은 100.0점이었다. 1일 방문 컨설팅을 받은 기관으로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47.3점이었으며 최소값은 12.0점, 최대값은 95.5점이었다. 1차 컨설팅 결과만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48.9)와 1일 방문 컨설팅 평균 평가점수(47.3)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컨설팅 이전에는 100점 기준에서 절반 정도의 점수를 받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V-1-4〉 차수 별 평균 평가점수(가중치 적용)

구분	사례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3차+1일 방문	267	9.4	100.0	57.7	24.8
1차	91	9.4	97.4	48.9	21.9
3차	79	32.0	100.0	80.6	15.0
1일 방문	97	12.0	95.5	47.3	21.2

마지막으로 통합 평가점수별 등급별 분포를 확인하였다. 1차와 3차 컨설팅을 합산한 통합평가점수의 분포를 확인하면 267개 평가점수 중 90점 이상인 비율은 13.1%, 80~90점 미만 11.2%, 70~80점 미만 12.7%, 60~70점 미만 12.0%, 60점 미만은 50.9%였다. 1차 컨설팅과 1일 방문 컨설팅 기준으로는 90점 이상이 4.3%, 80~90점 미만 6.9%, 70~80점 미만 7.4%, 60~70점 미만 12.8%, 60점 미만 68.6%였다. 3차 컨설팅 기준으로는 90점 이상 34.2%, 80~90점 미만 21.5%, 70~80점 미만 25.3%, 60~70점 미만 10.1%, 60점 미만이 8.9%였다.

산후조리원 평가인증을 가정하여 통합 평가점수별 탈락률을 산출하였다. 전체 평가점수 267개를 대상으로 탈락률을 살펴보았다.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탈락률은 86.9%였으며 80~90점 미만일 경우는 75.7%, 70~80점 미만일 경우는 63.0%, 60~70점 미만일 경우는 51.0%였다.

30) 통합 평가점수 산출시 가중치는 각각 필수 지표 6, 정규 지표 3.8, 시범 지표 0.2을 적용하였다.

31) 산후조리원 평가가 평가인증 방식인지, 또는 등급제 방식으로 진행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90점 이상~100점 미만은 S, 80점 이상~90점 미만은 A, 70점 이상~80점 미만은 B, 60점 이상~70점 미만은 C, 60점 미만은 D로 구분하였다.(참고자료: 이정림 외, 2020:11)

컨설팅 3차를 받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만 탈락률을 산출하면 90점 이상일 경우는 65.8%, 80~90점 미만일 경우는 44.3%, 70~80점 미만일 경우는 19.0%, 60~70점 미만일 경우는 8.9%였다.

〈표 V-1-5〉 컨설팅 통합 평가 점수 등급별 분포

평가 점수	등급	컨설팅 평가								
		합계			1차+1일 방문			3차		
		빈도	비율	점수별 탈락률	빈도	비율	점수별 탈락률	빈도	비율	점수별 탈락률
합계										
90점 이상	S	35	13.1	86.9	8	4.3	95.7	27	34.2	65.8
80점~90점 미만	A	30	11.2	75.7	13	6.9	88.8	17	21.5	44.3
70점~80점 미만	B	34	12.7	63.0	14	7.4	81.4	20	25.3	19.0
60점~70점 미만	C	32	12.0	51.0	24	12.8	68.6	8	10.1	8.9
60점 미만	D	136	50.9	-	129	68.6	-	7	8.9	-

주: 본 분석 결과는 2019~2022년 시범평가 결과를 통해 모의 분석한 결과로 구체적인 평가인증 통과 점수는 추후 정책연구를 통해 선정할 필요가 있음.

2.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사후간담회

가. 컨설팅 사후만족도 분석 결과

1) 1~3차 컨설팅 사후만족도 분석 결과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14개소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조사 문항은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컨설팅 세부내용(컨설팅 내용, 컨설턴트 역량/전문성, 컨설팅 소요시간, 컨설팅 주기, 컨설팅 횟수, 규정 및 서식사례집, 컨설팅 방역지침 만족도)을 포함하였다. 14개소의 산후조리원 중 12개소(85.7%) 산후조리원이 사후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8점(4점 만점)으로 100점으로 환산하면 95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020년, 2021년도 컨설팅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각각 3.4점, 3.5점, 3.8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올해의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의 만족도가 작년과 유사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현장에서의 만족도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 컨설팅 세부내용에 대한 만족도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3.8점,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3.8점, 규정 및 서식사례집에 대한 만족도는 3.6점, 컨설팅 소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3.7점, 한 달 간격으로 진행된 컨설팅 주기에 대한 만족도는 3.7점, 그리고 3회로 진행된 컨설팅 횟수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이었다. 모든 컨설팅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으로 환산하면 87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만족도 조사 문항과 같이 컨설팅 세부 내용에 있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컨설팅 방역지침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3.8점이었다.

〈표 Ⅴ-2-1〉 2019~2022년도 1~3차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컨설팅 세부내용		평균 점수			
		2019	2020	2021	2022
컨설팅 전반적인 만족도	1) 컨설팅 전반적인 만족도	3.4	3.5	3.8	3.8
컨설팅 세부내용	2) 컨설팅 내용	3.5	3.5	4.0	3.8
	3)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	3.7	3.8	3.9	3.8
	4) 규정 및 서식사례집	3.7	3.8	3.6	3.6
	5) 컨설팅 소요 시간	3.4	3.4	3.9	3.7
	6) 컨설팅 주기(한 달 간격)	3.4	3.5	3.9	3.7
	7) 컨설팅 횟수(3회)	3.6	3.6	3.8	3.5
	8) 컨설팅 방역지침 만족도	-	-	3.7	3.8

주: 4점 만점

다) 컨설팅 영역 만족도

컨설팅 영역 중 만족도가 높았던 컨설팅 영역과 개선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을 조사하였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컨설팅 영역은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으로 33.3%의 산후조리원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25.0%), 감염예방 관리(16.7%)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가장 필요한 영역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영역 또한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으로 33.3%의 산후조리원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운영과 질 관리(25.0%),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1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2-2〉 2022년도 1~3차 컨설팅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

단위: %

문항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운영과 질 관리	감염예방 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컨설팅 영역	8.3	25.0	8.3	16.7	33.3	8.3
개선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	16.7	8.3	25.0	8.3	33.3	8.3

2) 1일 방문 컨설팅 사후만족도 분석 결과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한 46개소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1~3차 컨설팅과 동일하게 만족도 조사 문항은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컨설팅 세부내용(컨설팅 내용, 컨설턴트 역량/전문성, 컨설팅 소요시간, 컨설팅 횟수, 규정 및 서식사례집, 컨설팅 방역지침 만족도)을 포함하였다. 46개소의 산후조리원 중 33개소(71.7%)의 산후조리원이 사후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였다.

가)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5점(4점 만점)으로 100점 환산 87.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나) 컨설팅 세부내용에 대한 만족도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3.6점,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3.7점, 규정 및 서식사례집에 대한 만족도는 3.6점, 컨설팅 소요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3.5점, 컨설팅 횟수에 대한 만족도는 3.3점이었다. 컨설팅 횟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만족도가 100점 환산 점수가 모두 85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일 방문 컨설팅의 경우 1회 방문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21년과 동일하게 만족도 조사 문항의 컨설팅 세부 내용에 추가된 컨설팅 방역지침 만족도는 3.7점으로 나타났다.

〈표 V-2-3〉 2022년도 1일 방문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

컨설팅 세부내용		평균 점수			
		2019	2020	2021	2022
컨설팅 전반적인 만족도	1) 컨설팅 전반적인 만족도	-	-	3.8	3.5
컨설팅 세부내용	2) 컨설팅 내용	-	-	3.7	3.6
	3)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	-	-	3.9	3.7
	4) 규정 및 서식사례집	-	-	3.7	3.6
	5) 컨설팅 소요 시간	-	-	3.7	3.5
	6) 컨설팅 횟수	-	-	3.3	3.3
	7) 컨설팅 방역지침 만족도	-	-	3.8	3.7

주: 4점 만점

다) 컨설팅 영역 만족도

컨설팅 영역 중 만족도가 높았던 컨설팅 영역과 개선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을 조사하였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컨설팅 영역은 감염예방 관리 영역으로 33.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영의 질 관리(27.3%),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18.2%)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으로

는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24.2%), 운영과 질 관리(2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Ⅴ-2-4〉 2022년도 1일 방문 컨설팅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

단위: %

문항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운영과 질 관리	감염예방 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컨설팅 영역	18.2	9.1	27.3	33.3	9.1	3.0
개선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	24.2	12.1	21.2	6.1	33.3	3.0

나. 컨설팅 사업 참여 기관 사후간담회 결과

2022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 종료된 후 1~3차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사후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사후간담회에서는 컨설팅 경험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논하였다. 사후간담회에는 1~3차 컨설팅에 참여하여 3차례의 컨설팅을 모두 완료한 14개소 산후조리원 중에서 수도권 2개소, 지방 3개소 총 5개소 산후조리원의 담당자가 참여하였다.

사후간담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산후조리원 담당자들은 전반적으로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만족해하며, 컨설팅 과정을 통해 미비했던 문서 작업을 보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서류구비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체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향상된 기관 운영의 개선 현황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산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모자보건법상 제시하고 있는 필수적인 서류를 제외하고는 실무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서류 작업이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평가기준 중 하나인 모자동실 시간과 모유수유 횟수의 경우 현실적으로 산후조리원에 오는 많은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휴식을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산모에게 이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모자동실 권유로 인해 휴식을 원하는 산모들의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하였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향후 컨설팅 및 평가에 대한 개선사항 의견으로는 먼저,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한 앱 개발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전산화 작업을 해주는 민간 업체가 있지만, 산후조리원 내부 서식과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에서는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이 둘째 자녀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는 산후조리원에서의 산모의 휴식 욕구가 우선시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모자동실, 모유수유에 대한 적극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모자동실, 모유수유 교육을 제안하

였다. 부모교육과 관련해서는 향후 부모교육을 지속할 경우, 산후조리원에 다양한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직접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시설적인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할 신생아 이동 시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책, 중복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표 V-2-5〉 컨설팅 참여 기관 사후간담회

일시	2022. 12. 16(금), 14:00-16:00
참석자	2022년 1~3차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실무자 5명
안건	컨설팅 수행경험 공유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논의된 내용	○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경험 공유 - 전반적으로 향상된 기관 운영 및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만족했음. 또한, 업무 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음. - 컨설팅 과정을 통해 미비했던 서류 작업을 보완할 수 있었음. 서류구비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체계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음. 한 예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입실 안내 교육에서 교육을 진행했다는 서명과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었음. - 특히,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한 규정 및 서식사례집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이후에 보건소 감사를 받을 때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산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에 서류작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모자보건법상 제시하고 있는 필수적인 서류를 제외하고는 실무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서류작업이 간소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함. - 1~3차 컨설팅을 받고나서, 인센티브로 부모교육 강사가 직접 산후조리원에 방문하여 부모교육을 진행해 주셨음. 산모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고, 모유수유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대상 앱 개발을 제안함.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전산화 작업을 해주는 업체가 있음. 그러나 개별 산후조리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산후조리원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산후조리원 서류 작업을 위한 앱 개발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산후조리원에 다자녀 정책 적용이 필요함. 산후조리원은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이 적용됨. 산모들의 계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도에서 조례를 고치려고 시도했지만,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다문화 자녀 또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혜택에 비해 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음. - 산모와 아기가 산후조리원에 입실한 후에 산모가 응급상황이 생겨서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가 있음. 산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기만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정부 차원에서 모자동실, 모유수유에 대한 적극 홍보와 지원이 필요함. 산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제안함. 또한, 향후 부모교육을 진행할 때는 산후조리원에 다양한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감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이후에도 산후조리원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함.

다. 컨설턴트 사후간담회 결과

2022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경험 공유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컨설턴트 대상 사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22년도 컨설턴트 사후간담회에 참석한 컨설턴트는 총 16명이었으며, 컨설턴트 사후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력의 적정성 부분에서 여전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후조리원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산후조리원에서의 경력이 간호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한편, 시설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화재 대피에 대한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신생아를 구조할 수 있는 물리적 장비들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산모와 산후조리원 직원을 대상으로 보다 철저한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실제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장비들의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낙상예방관리 부분에서는 층마다 산모실과 신생아실이 다른 경우 여전히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신생아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드시 낙상예방을 위해서 카트를 이용해 신생아를 이동시키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감염예방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목욕 공간, 조유공간이 잘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목욕 싱크에서 신생아 의류를 세탁하는 경우들이 있어 감염예방을 위해 위생개념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다음 〈표 Ⅴ-2-6〉과 같다.

〈표 Ⅴ-2-6〉 컨설팅 참여 컨설턴트 사후간담회

일시	2022. 11. 12(토). 12:00~15:00
참석자	2022년 컨설턴트 16명
안건	컨설팅 수행경험 공유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논의된 내용	○ 영역별 컨설팅 경험 공유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Ⅰ-1. 인력의 적정성] - 인력부족의 어려움이 있음. 검표상으로는 1일 3회 근무조별로 인력배치가 되어있었지만 실제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고, 한 달 내내 간호사 둘이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음. - 산후조리원에서의 경력이 간호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인력충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Ⅱ-3-1. 시설적정성] - 사전관찰실이 있지만 여러 명의 신생아들이 사전관찰실에 들어오는 시간대가 비슷한 경우들이 있음. 감염관리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어 보임. 따라서 사전관찰실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격리실의 개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어 보임. [Ⅱ-4-2. 시설 안정성: 소방안전관리] - 화재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실제 불이 났을 때의 대피 시나리오라던가 신생아를 이동시킬 수 있는 물리적 장비들조차 충분하지 않음. 따라서 산모 및 산후조리원 직원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이 더욱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 [Ⅱ-4-3. 시설 안정성: 낙상예방관리]

	- 카트를 이용해서 신생아를 이동시키지 않고 직접 신생아를 안은 채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음. 층마다 산모실과 신생아실이 다른 산후조리원의 경우 더욱 심각함. 반드시 카트를 이용해서 신생아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모자동실 사용을 권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Ⅲ-5-3. 문서관리] - 문서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견이 있음 - 보건소와의 서류 일원화가 안 되는 곳이 있기에 서류 중복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임. [Ⅳ-8-1. 감염예방: 손 위생] - 손소독제 사용 기간에 있어서 개봉 후 1년으로 알고 있는 곳도 있음. 감염관리학회에서 손소독제 알코올 함유 60%이상인 경우 가능한 6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기에 이 기준으로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Ⅳ-8-3. 세탁물 관리 및 Ⅳ-8-4. 물품 소독·관리] - 싱크대에서 신생아 대변을 닦거나, 세탁을 하는 경우가 있음. 목욕대야가 있더라도 의미가 없음. 감염예방 측면에서 위생개념을 더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 [Ⅳ-8-5. 감염예방: 환경관리] - 신생아실 공간이 1.7m^2 이상이지만 한 공간 안에 조유준비, 목욕준비 등 공간 구분이 잘 되어있지 않음. 위생, 감염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 [Ⅳ-8-6. 감염예방: 급식관리] - 산후조리원 식당의 경우 위탁계약서를 썼기에 평가는 받지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 식당 내부를 살펴본 결과 상당히 비위생적이었음. 따라서 위탁계약서를 쓴 산후조리원 식당이라 하더라도 산부인과 병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이기에 식당 내 위생 상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Ⅵ-13-1. 신생아 확인] - 신생아 인식표의 경우 아예 신생아 인식표가 부착되어있지 않거나 신생아 옷에 이름표를 부착해서 식별하는 경우가 많음. 산모 역시 인식표가 없으며, 산모에게 구두로 신생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산모 슬리퍼에 적혀있는 호실 번호를 보고 신생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음. 신생아 확인 절차가 매우 취약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기타의견] - 여러 차례 같은 기관에 컨설팅을 나가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한 번도 컨설팅을 받아보지 않은 기관 위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해보임. - 보다 거시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의 필요성, 목적 등에 대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제공 및 수기공모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제공은 2018년 시범평가 사업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 수행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컨설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2018년도에 수행되었던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사업에서는 모유수유 및 모아애착 부분 평가항목을 우수하게 시행한 곳에 포상 등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산후조리원 인

증평가를 받는 산후조리원에 정부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진행되면서 컨설팅 대상 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었고, 그 종류와 세부 내용은 〈표 V-3-1〉과 같다.

〈표 V-3-1〉 2019년~2021년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년도	인센티브 종류	세부 내용
2019	1) 낙상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2) 손 씻기 포스터 배포 3) 부모교육 제공 (전문 강사 파견)	• 낙상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으로서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지만, 산후조리원이 사용할 수 있는 낙상예방 안내문 또는 스티커가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음. 1차 컨설팅 이후 몇몇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낙상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나, 많은 기관이 낙상예방 포스터를 배포하기를 요청함. 낙상예방 포스터 내용 구성은 수석컨설턴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연구진 회의를 통해 구성하였음. • 손 씻기 포스터 배포 - 2017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올바른 손 씻기' 포스터를 제작하여 산후조리원에 배포하였음. 그러나 실제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으로서 세면대 옆 손 위생 방법을 비치하거나 게시판에 손 위생 포스터를 부착한 경우는 많지 않았음. 이에 해당 포스터를 인쇄하여 컨설팅 대상 기관을 포함하여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하였음. • 부모교육 제공(전문 강사 파견) - 총 6명의 부모교육 강사를 선정하여, 1~3차 컨설팅을 받은 기관에 1회의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음. 부모교육 강의자료 제작 및 사전 논의된 진행방법을 바탕으로 1~3차 컨설팅이 종료된 후 12월 한 달 동안 부모교육을 희망한 16개소의 컨설팅 참여기관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음.
2020	1) 부모교육 소책자 제작 및 배포	• 부모교육 소책자 제작 및 배포 - 2019년도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에서 인센티브로 제공한 현장 방문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참고하여 2020년도에는 부모교육 소책자를 제작하여 인센티브로 제공하였음. - 소책자의 집필진으로는 2019년 현장에 제공된 부모교육 자료 원고 작성에 참여한 컨설턴트 4인과 아동학과 교수 1인, 산부인과 교수 1인이 참여하였음. 또한, 일러스트 작가도 참여하여 독자들의 흥미 유발과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삽화 및 표지 삽화를 제작하였음. - 부모교육 소책자는 산후조리원마다 산모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산모실 정원수만큼 1~3차 컨설팅과 1일 방문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음.
2021	1) 방문객 출입제한 포스터 제작 및 배포 2) 부모교육 소책자 배포	• 방문객 출입제한 포스터 제작 및 배포 - 방문객 출입제한 포스터는 2019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제작하였음. - 해당 포스터는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 후 산후조리원 컨설턴트 및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음. 해당 포스터의 경우,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 확산 시 산후조리원 출입을 제한하는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산후조리원 평가항목 내 '5.4 방문객 관리' 중 방문객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방문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 • 부모교육 소책자 배포 - 2020년도에 산후조리원 컨설팅 대상 기관에 부모교육 소책자를 배포하였을 때 호응도가 매우 높았음. 당시 산후조리원 산모실 수에 맞춰 책자를 배포하였는데 산후조리원 측에서 추가로 배포해줄 것을 사무국에 지속해서 요청하였음. 이에 2021년도에는 1~3차 컨설팅 및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에 부모교육 소책자를 배포하였음.

2022년도에는 1~3차 컨설팅과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낙상예방 포스터를 배포하였으며, 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산후조리원에 파견하여 양질의 부모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2019년도부터 매년 배포되었던 부모교육 소책자(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컨설팅 대상 기관 인센티브 제공

1) 낙상예방 포스터 배포

2022년도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낙상예방 포스터(산모용·신생아용)'를 배포 하였다. 낙상예방 포스터는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 내 '4.3 낙상예방관리' 중 낙상예방 안전점검표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낙상예방 교육 자료 및 환경 및 시설 점검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가 낙상을 주의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포스터에 포함하였고 시각적 효과를 통하여 낙상예방에 관한 주의 내용이 산모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해당 포스터는 산모용의 경우, '바닥에 물기가 없는지 확인하기', '수면 전에 화장실 다녀오기', '야간조명 사용하기',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발에 맞는 신발 착용하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생아용의 경우, '아기 이동 시에는 이동형 아기 침대로 이동하기', '아기를 안은 채 다른 일 하지 않기', '낙상 위험이 있는 곳에 아기를 혼자 두지 않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상예방 포스터는 2019년에 평가항목 내 낙상예방관리 규정을 토대로 산후조리원 컨설턴트 및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제작한 것으로 2022년도에 추가 인쇄하였다. 또한, 2021년도에는 B4 크기로 인쇄하여 배포하였으나 더 작은 크기의 포스터가 유용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에는 A4 크기로 인쇄하여 컨설팅 대상 기관에 배포하였다. 구체적인 포스터 내용은 아래 〈그림 V-3-1〉에 제시하였다. 또한, 낙상예방 포스터는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Ⅴ-3-1] 낙상예방 포스터(산모용, 신생아용)

2) 부모교육 제공 및 소책자 배포

컨설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연속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완료했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부모교육 강사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산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제공하였던 것에 만족도가 높았다. 2020년도에는 이를 참조하여 더 많은 산모와 가족들에게 부모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소책자를 제작하여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다. 소책자는 2019년도에 부모교육 자료 제작 및 현장에서 직접 부모교육을 수행했던 컨설턴트 4인과 아동학과 교수 1인, 산부인과 교수 1인이 집필하였다. 관련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작성한 책자였기 때문에 2020년도에 산후조리원 컨설팅 참여 기관에 배포하였을 때 호응이 매우 높았다. 소책자의 제목은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였다. 소책자의 내용은 크게 2개로 구분하여 신생아 관련 내용과 산모 관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와 동일하게 부모교육 소책자를 추가 인쇄하여 컨설팅 사업을 완료한 기관에 배포하였다.

2022년에는 2019년도에 전문 강사가 산후조리원에 파견되어 부모교육을 진행했던 것과 2020년, 2021년도에 부모교육 소책자를 배포했던 것의 현장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현장에 파견하여 양질의 부모교육을 제공하였고, 이와 함께 부모교육 소책자를 현장에 배포하였다. 특히, 2022년도 부모교육의 내용은 신생아기 부모됨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부모됨에 대한 이해는 '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 소책자를

기초로 진행되었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한 '긍정양육 129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에 한정하여 부모교육 강사를 파견하였고, 부모교육 소책자는 산모실 수와 비치용을 고려하여 배포하였다. 다. 또한,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기관에는 부모교육 소책자를 5부씩 배포하였다. 향후 컨설팅의 주요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현 사업 단계에서는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산후조리원에 한하여 1회기의 부모교육을 제공하였다. 단, 교육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산후조리원 업무 담당자의 동참을 독려하였다.

[그림 V-3-2] 부모교육 소책자 표지 및 목차

나. 컨설팅 대상 기관 수기공모

컨설팅 대상 기관 수기공모전은 컨설팅 사업이 시행된 2019년부터 진행되어 2021년을 제외하고 2022년도까지 매년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수기공모전 대상과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은 〈표 V-3-2〉와 같다.

〈표 Ⅴ-3-2〉 컨설팅 대상 기관 수기공모

년도	대상	응모 및 시상
2019	-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 컨설턴트	• 산후조리원 부문 - (응모)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종사자 12명 - (시상) 산후조리원 부문 6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 컨설턴트 부문 - (응모) 컨설턴트 14명 - (시상) 컨설턴트 부문 11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
2020	-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 컨설턴트	• 산후조리원 부문 - (응모)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종사자 10명 - (시상) 산후조리원 부문 6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 컨설턴트 부문 - (응모) 컨설턴트 11명 - (시상) 컨설턴트 부문 11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
2021	-	-
2022	-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	• 산후조리원 부문 - (응모)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종사자 6명 - (시상) 산후조리원 부문 6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1) 대상 및 목적

2022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1~3차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기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수기공모전은 2019년도부터 1~3차 컨설팅 종료 이후 실시된 것으로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2022년에는 1~3차 컨설팅 참여 기관만을 대상으로 수기공모전을 진행하였다. 수기공모 주제는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경험이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원장, 건강관리책임자 등으로 참여하면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 전반적인 소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이는 컨설팅 경험 공유와 함께 향후 컨설팅 사업에 대한 참여 및 관심 독려를 목적으로 하였다. 수기공모 주관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의 컨설팅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 및 어려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산후조리원은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질 관리와 유지를 하고자 하는 동인이 되었다.

2) 수기공모 진행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들에 수기공모전 안내문을 배포하여 수기공모전 참여를 독려하였다. 산후조리원 원장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등으로서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이나 전반적인 소감을 A4용지 기준 2매 내외로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응모자들에게는 ① 수기공모 양식,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 2차 저작물활용 동의서를 받았다. 접수 기간은 11월 14일(월)부터 11월 26일(토)까지였고,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14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수기공모전에 참여하였다.

3) 수기공모 결과

수기공모전 결과, 1~3차 컨설팅 참여기관의 14기관 중 운영자와 종사자 6명이 수기공모전에 응모하였다. 수기공모전 심사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 8명이 참여하였다. 평가 기준은 주제 적합성, 완성도, 활용성 3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였다. 주제 적합성은 경험을 생생하게 담은 내용, 컨설팅 사업 수행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완성도에서는 내용의 충실성과 구성의 완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활용성에서는 향후 사업 홍보 효과 및 전달 적합성, 향후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긍정적 인식 확산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심사 기준으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하였고, 12월 16일에 컨설팅 대상 기관 사후간담회를 진행하며 수기공모전 시상식도 개최하여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였다.

컨설팅 대상 기관에서 작성한 수기공모의 내용은 대부분 처음에는 부담이나 거부감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컨설팅 참여에 대한 만족감과 자체적인 산후조리원 질 개선에 따른 자부심을 표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현재는 규정도 마무리되고 그 규정에 맞춰서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후조리원 직원들 모두 컨설팅 과정 및 결과에 만족합니다. 그동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고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산모와 신생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전남 A산후조리원)

> “10일 이상을 야간근무를 하면서 규정집을 완성하였고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보내준 스티커를 방마다 부착하고 낙상방지 스티커를 축소 제작하여 베지넷까지 부착하며 정문 출입구에도 감염관리, 면회제한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손 소독 순서를 외우기 쉽게 정리하여 부착하면서 직원들과 산모분들, 보호자분들의 교육도 병행하였다. 3차 교육을 마치면서 해냈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하였고 우리 조리원을 최고의 조리원으로 만들고자하는 마음이 무척 커졌다.”(제주도 B산후조리원)

> “처음 컨설팅을 해보기 전에는 아기 돌보는 일에 굳이 아기 돌보기를 제대로 못하게 서류 준비가 왜 이리 많은지 불평도 많았지만 잘못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교정을 하고 아기와 산모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게 되어 보람되고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끼고... ”(서울 C산후조리원)

이는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 양적인 지표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컨설팅 사업의 질적인 효과로 여겨진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후조리원 현장의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요약 및 시사점

우선 컨설팅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22년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1차와 3차의 시범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력 적정성, 시설 적정성,

리더십 및 조직문화,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의 4개 소영역 지표를 제외한 모든 평가지표의 점수가 1차 평가 점수에 비해 3차 평가 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차 컨설팅 시범평가 대영역별 평균 점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3차 컨설팅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시범평가 점수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98개 지표 중 89개 지표에서 1차시 평가 점수에 비해 3차 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컨설팅 사전-사후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드러나지 않은 지표는 총 9개로 인력 적정성 영역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의 1개 지표, 시설 적정성 영역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의 3개 지표, 설비관리 영역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의 1개 지표, 소방 안전관리 영역의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의 1개 지표, 리더십 및 조직문화 영역의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의 2개 지표, 신생아 수유 영역의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의 1개 지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컨설팅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영역 중 인력과 시설 영역의 경우 평가 기간의 단시간동안 개선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리더십 및 조직문화 영역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의 지표적용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평가지표로서 지속적으로 포함할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자동실 및 모유수유 영역은 산후조리의 핵심기능으로 강조되는 영역이므로 컨설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019년~2022년 컨설팅에 참여했던 산후조리원 전체(1~3차 평가의 경우 1차와 3차 평가를 개별 평가로 간주하여 분석)의 시범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산후조리원 98개 지표 전체의 평균은 5.7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수, 정규, 시범평가 항목별로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결과 필수 40개 지표의 평균은 5.75점, 정규 52개 지표의 평균은 5.90점, 시범 6개 지표의 평균은 3.91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필수, 정규, 시범지표의 평균에 각각 필수 지표 6, 정규 지표 3.8, 시범 지표 0.2의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통합 평가점수를 산출한 결과, 1~3차 결과를 통합한 평균 평가점수는 57.7점으로 나타났으며, 1차 컨설팅 결과만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48.9점, 3차 컨설팅 결과만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80.6점이었다. 1일 방문 컨설팅을 받은 기관으로 산출한 평균 평가점수는 47.3점으로 1~3차 컨설팅의 1차 컨설팅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범평가 점수의 범주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차와 3차 컨설팅을 합산한 통합평가 점수의 경우 90점 이상 13.1%, 80~90점 미만 11.2%, 70~80점 미만 12.7%, 60~70점 미만 12.0%, 60점 미만은 50.9%로 나타났다. 1차 컨설팅과 1일 방문 컨설팅 점수의 경우 90점 이상이 4.3%, 80~90점 미만 6.9%, 70~80점 미만 7.4%, 60~70점 미만 12.8%, 60점 미만 68.6%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 컨설팅 점수만 포함한 경우는 90점 이상 34.2%, 80~90점 미만

21.5%, 70~80점 미만 25.3%, 60~70점 미만 10.1%, 60점 미만이 8.9%의 비중을 보였다. 본 평가 시에는 이상에서 산출된 시범평가의 점수와 범주별 비중을 참고하여 평가인증의 단계 및 기준점수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컨설팅 사업의 사후관리로서 만족도 조사 및 사후간담회 개최, 수기 공모 등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22년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14개소 중 12개소가 참여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4점 만점 중 평균 3.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컨설팅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3.8점,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 3.8점, '규정 및 서식 사례집' 3.6점, '컨설팅 소요 시간' 3.7점, '컨설팅 주기(한달 간격)' 3.7점, '컨설팅 횟수(3회)' 3.5점, '컨설팅 방역지침' 3.8점으로 전 영역에서 대체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영역별 만족도의 경우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이 33.3%로 가장 높고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25.0%, '감염예방 관리' 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 33.3%, '운영과 질 관리' 25.0%,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6.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은 컨설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나 이 영역이 산후조리원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며 현장의 요구가 큰 분야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본 사업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컨설팅 참여기관과 컨설턴트 대상 사후간담회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2022년 1~3차 컨설팅에 참여한 수도권 2개소, 비수도권 3개소의 총 5개소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컨설팅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해졌고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제안사항으로는 컨설팅 서류작업의 간소화, 모자동실과 모유수유 등 부모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2022년도 사업에 참여한 16명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사후간담회에서는 인력의 적정성과 관련,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후조리원이 많으며 산후조리원의 경력이 간호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시설과 안전 관련하여 산후조리원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낙상관리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으며 감염예방과 관련해서는 목욕공간과 조유공간의 분리와 세탁물 관리 강화 등이 제기되었다.

이외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2022년도 1~3차 컨설팅 및 1일 방문 컨설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포스터를 배포하였으며, 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산후조리원에 파견해 부모교육을 시행하고 부모교육 소책자(우리 아이와 함께 자라는 첫걸음 육아-신생아 부모교육 길라잡이)를 제공하였다. 또한, 1~3차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기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6개 기관이 수기공모전에 참여하여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에 선발되었다.

VI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 개선 방안

01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변경(평가지표 수 개선)

02 향후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 방안

03 기타 산후조리원 관련 정책제언

Ⅵ.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 개선 방안

2015년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 평가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2019년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의 당초 목적은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 전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의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소방·시설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7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의 초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매년 시범평가를 통해 이를 개선해 왔으며 2019년 컨설팅이 도입된 이후에도 매년 산후조리원협회, 원장, 컨설턴트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산후조리원 평가지표를 수정해 오고 있다.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와 감염, 낙상사고 이슈로 인해 산후조리원의 감염·소방·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조항도 발의되어 산후조리원 평가의 전면 도입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방안과 제언을 구성하였다.

1.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변경(평가지표 수 개선)

산후조리원 평가지표가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산후조리원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산후조리원에서는 평가지표에 따른 서류작업 과다, 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산후조리원 현장으로부터 제안 받은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산후조리원 의견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영역에서는 인력 기준의 법적 기준을 정원기준은 물론 상시 근무기준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타인력도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종사자 채용·유지 부분에 직원 자격요건과 직무기술서도 불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삭제를 권고하였으며, 개인정보 보안각서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종사자 교육·개발 부분에서는 법정의무교육 중 소방안전 교육은 시설안정성: 소방안전관리 영역에 포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교육관련 예산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영역에서는 사전관찰실, 시설관련 점검서류 부분을 수정·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전관찰실의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제시되어 있는 공간 분리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출입문 기준 등 모자보건법에 없는 사항을 추가하여 평가기준에 넣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는 도시 지역 사업자가 검침원을 통해 가정집과 같이 도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안전 점검을 받았음으로 간략하게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공기질 측정의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측정 및 기준 준수 정도로만 평가기준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Ⅲ. 운영과 질 관리’ 영역에서는 의료기관 연계, 문서관리, 방문객 관리, 질 관리 평가영역에서 지표 간소화 또는 삭제 등을 제안하였다. 의료기관 연계 이송과 관련해서는 연계 의료기관 항목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서관리 부분에서는 대출/열람 업무가 없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방문객 관리에서 보호자 출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보호자도 출입을 못하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평가 내용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질 관리, 직원 의사소통 등은 실제 산후조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Ⅳ.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서는 손 위생 물품관리 기준, 환경 위생관리 점검표, 조리장 환경 위생관리,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여부 등을 산후조리원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환경 위생관리 점검표의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감염·질병예방조치에서 소독 등 환경관리 점검 양식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급식관리에서는 조리장 환경을 위생구역, 오염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여부 역시 온도기록지 작성까지는 서류작업 부담으로 산후조리원에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Ⅴ. 산모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부모교육 체크리스트와 아버지 교육 시행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모교육 집합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육 자체를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제안하였으며, 아버지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은 물리적으로 교육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다.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신생아 확인, 신생아 위생관리와 안전관리 내용을 일부 삭제·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생아 확인에서 2가지 이상의 신생아 식별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인식표를 착용하고 일관된 식별방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생관리에서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재원 중 1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은 항목별로 관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안전관리에서 신생아 이동 시 요람의 경우에는 신생아 침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Ⅵ-1-1〉 2022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산후조리원 현장 의견

대영역	소영역	의견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1 인력 적정성	○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 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추었으나 상시 근무 간호사 충족 못함 → 법정 정원 기준 충족 ※ 법적 기준은 정원 기준과 상시 근무 기준을 병행하여 포함하는 것임. 평가 기준에 건강관리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 하고 있는데 인력기준에 기타 인력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2.1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 평가항목: 직원 자격요건과 직무기술서 → 삭제: 모자보건법상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기술서는 평가를 위한 서류 작업임 ○ 개인정보 보안각서 확인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 보안각서는 개인정보 취급자로 한정할 필요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개인정보 보안각서는 내용상 연관이 없으며 굳이 법적 연관성을 붙이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가 맞음 ○ 면허 갱신 → 간호사 면허 및 간호조무사 자격 신고 면허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되며 갱신이 아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해 3년 주기로 면허 또는 자격 신고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 법정의무 교육 안내 내용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안내 잘못 되었음. 소방시설법 제20조의2 소방안전관리자가 연1회 이상 자위 소방대를 구성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은 특정소방대상물이지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님.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사자 대상 소방 교육 실시 의무 없음 ○ 상 평가 내용에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야 함” 부분 → 산후조리원 연간 교육 계획에 예산 지원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은 부당함. 직원예산이 필수 교육 시 예산을 소요하여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예산 없이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또는 공익기관을 통한 무료교육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음. 종사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 각종 면허 및 자격 관련 보수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음.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산후조리업자가 모자보건법 및 관련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일부 또는 전체 미이수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3.1 시설 적정성	○ 출입문과 투명한 벽체 등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음 ○ 사전관찰실이 있으나 칸막이로 일부만 막혀있어 공간이 분리되지 않음 → 공간 분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함. 출입문 기준은 모자보건법에 없는 사항임. 칸막이, 벽체로 분리한 것도 공간 분리 개념이며 보건소 점검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
	4.1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	○ 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산후조리원 단위 사업장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지역 사업자가 검침원을 통해 가정집과 같이 도시가스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별도 점검 서류 발급을 하고 있지는 않음.“가스 안전 점검”을 받았음으로 변경 ○ 공기질 측정 근거서류가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측정 및 기준 준수
	4.2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	4. 시설 안정성: 소방안전관리 (52P) ○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 소방훈련 또는 소방 교육 실시
Ⅲ. 운영과 질관리	5.2 운영관리:	○ 평가 항목 및 내용: 연계

대영역	소영역	의견
	의료기관 연계·이송	→ 삭제, 연계 의료기관 항목이 삭제되어 연계의 의미가 없음 연계 의료기관 설정 어려워 병원 산후조리원에만 유리한 내용임 ○ 평가 방법 확인 내용: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삭제, 감염관리 항목에서 관리 ○ 평가 방법 확인 내용: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 삭제, 임산부, 영유아관리 항목에서 관리
	5.3 운영관리: 문서 관리	○ 문서 보관방법: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 → 문서별 보존 기간 (건강기록부 1년,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기준법 관련 서류 3년, 회계 관련 5년, 공기질 측정결과 10년) ○ 평가 항목: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 삭제, 문서 대출/열람 업무 거의 없음
	5.4 운영관리: 방문객관리	○ 판정기준 1) - 보호자(주출입자)는 산모가 지정한 1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삭제, 코로나19로 보호자 출입을 일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호자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적용될 수 있음. 상시 출입 보호자는 방문객과 구분되어야 함
	6.1 질 관리: 만족도 관리	○ 판정기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에 대한 확인 → 삭제, 핵심지표 및 이에 대한 평가 관리 툴 이해와 적용이 어려움 ○ 판정기준 2)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 삭제, 핵심지표 수행률 계산과 적용이 어려움, 실질적인 개선이 아닌 평가를 위한 페이퍼 작업임
	7.1 경영 관리: 리더십 및 조직 문화	○ 평가 항목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 삭제, 평가 목적과 평가 항목이 부합되지 않으며 객관적 평가 항목으로도 맞지 않음. 시범평가 항목으로도 굳이 두어야 할 필요 없음
Ⅳ. 감염예방관리	8.1 감염예방: 손 위생	○ 판정기준 4) 손 위생 물품 구비 여부 확인: 개봉 후 6개월 이내 일 것 → 삭제, 개봉 일자 확인 어려우며, 손 위생 물품 대해 개봉 후 6개월이란 사용 제한 기준 없음
	8.5 감염예방: 환경관리	○ 판정기준 2) 환경 위생관리 점검표 → 삭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감염, 질병예방조치 에서의 소독 등 환경관리 점검 양식과 중복. 평가를 위한 불필요한 서식 작업.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 서류를 통해 활동 수행 여부 판단 또는 직접 현장 확인으로 판단
	8.6 감염예방: 급식관리	○ 판정기준 2) 조리장 환경 위생 관리: 위생구역 / 오염구역 구분 → 삭제, 산후조리원별 현장 상황이 달라 위생구역과 오염구역 구분에 대한 판정자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음. 단순 구분 표시라면 평가 의미 없음 ○ 판정기준 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온도기록지 작성 → 온도 점검으로 수정, 온도기록지 작성은 서류작업의 부담이 됨.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매뉴얼에도 온도계 설치는 있으나 위생 관리 점검 시 온도 기록지 작성을 점검하지 않고 적정 온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만 판단함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 확인내용: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 → 삭제, 해당 서식은 종사자 자체 교육 보고 서식임. 부모 교유에 대해서 집합 교육으로 시행은 코로나19 상황과도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 교육 자체를 강제 할 수 없는 사항임. 퇴소 전 개별 교육, 자료 제공 등이 현실 사항임 ○ 판정기준 6) 아버지의 교육 시행 확인: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함 → 수정, 아버지 교육 또는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 제공, 물리적으로 아버지 교육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대영역	소영역	의견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1 신생아 확인	○ 판정기준 3)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확인: 2가지 이상의 신생아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확인함 → 수정, 최소 2가지 이상의 식별정보와 인식표를 착용하고 일관된 식별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신생아 전달시 2가지 식별정보를 복합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음
	15.1 신생아관리: 위생관리	○ 평가항목의 이해: 신생아 위생관리는 건강한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재원 중 1일 1회 이상 실시 → 삭제, 신생아 위생관리는 항목별로 관리 기준이 다름.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15.3 신생아관리: 안전관리	○ 판정기준: 2) 신생아 안전관리 준수 _ 신생아의 이동 시 신생아 요람이나 신생아 침대를 이용하여 이동, 신생아의 출생 정보(산모이름, 성별, 출생날짜)를 확인 후 산모에게 인계함. → 삭제, 신생아 이동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음. 신생아 출생 정보 확인에 대한 사항은 신생아 확인에서 이미 평가 하고 있는 내용임

나.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개선 방안

산후조리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현장에 수정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면, 손 위생 세정제의 경우 개봉 후 6개월 기준을 완화해 줄 것에 대한 현장 요구가 있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권고 기준이 6개월이기 때문에 완화할 수 없었으며, 신생아 이동시 요람 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근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로 인해 완화할 수 없었다.

우선, 평가지표 일부 삭제 안은 〈표 Ⅵ-1-2〉에 제시하였다. ‘Ⅲ. 운영과 질 관리’ 영역에서 문서관리 1개 지표, 질관리 및 만족도 평가 관련 3개 지표, 리더십 및 조직문화 2개 지표,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서 부모교육 지표 중 아버지 교육과 관련된 1개 지표였다. 이중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와 아버지 교육은 가점으로 전화하여 지표 손실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이처럼 총 7개 지표를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Ⅵ-1-2〉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일부 삭제 안

대영역	소영역	지표
Ⅲ. 운영과 질 관리	5.3 문서관리	5.3.3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6.1 질관리 및 만족도 평가	6.1.1 질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6.1.2 선정한 질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6.1.3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가점으로 전환)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7.1.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7.1.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2.1.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가점으로 전환)

다음으로,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중 변경이 필요한 지표는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영역에서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Ⅲ. 운영과 질관리' 영역에서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이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연간 직원 교육계획 수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산 등을 포함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 상 직무교육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할하여 법정교육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원장의 리더십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내용이 평가기준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자동실, 감염관리 등을 강조하는 산후조리원 경영철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Ⅵ-1-3〉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변경이 필요한 지표

대영역	소영역	변경 전	변경 후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2.2.2 연간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법정 교육을 시행한다.
Ⅲ. 운영과 질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7.1.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산후조리업자(또는 원장)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경영철학이 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수정 및 통합이 필요한 지표는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이다.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구분이 어렵고, 특히 소방과 관련된 지표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정이 향후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Ⅵ-1-4〉 산후조리원 평가지표 수정 및 통합이 필요한 지표

대영역	소영역		변경 후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2.2.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에 소방교육이 있어 지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4.2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	4.2.3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2. 향후 산후조리원 컨설팅 및 평가 방안

2019년 산후조리원 컨설팅이 착수된 이후로 매년 목표로 설정된 컨설팅 개소 수는 달성되었지만, 컨설팅 기관 모집은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사업에서는 이전까지 컨설팅에 참여하였던 모든 산후조리원에 직접적으로 전화 섭외를 통해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막바지인 10월에 컨설팅 목표 기관수 모집을 달성할 수 있었다. 산후조리원 현장에서는 아직 산후조리원 평가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고, 산후조리원 인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산후조리원 평가의 구체적인 도입시기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컨설팅

기관 모집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컨설팅의 평가제 전환은 빠른 시기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컨설팅 평가제 전환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2019년도 이후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결과 1~3차 컨설팅을 수료한 기관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평가지표가 개선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1~3차 컨설팅 결과 법정 인력 기준 준수와 시설과 관련된 점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일 방문 컨설팅 결과와 해당 산후조리원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일 방문 컨설팅을 수료한 산후조리원의 시범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00점 만점 기준 50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받지 않은 산후조리원 대부분의 경우 곧바로 산후조리원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와 유사한 점수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에 곧바로 산후조리원 평가를 도입할 경우 1~3차 컨설팅을 수료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바로 평가를 도입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1~3차 컨설팅과 혼합된 준평가제도(최소 1주기 이상)를 운영 한 이후에 본 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가. 산후조리원 준평가제도 안(단기 방안)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준평가제도는 컨설팅과 평가를 혼합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안은 1차적으로 조사위원 2명이 산후조리원 평가를 실시하고 충족여부에 따라 바로 인증서를 수여할지 혹은 컨설팅으로 이어질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1차 평가 시 미충족 기관은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고 컨설팅 이후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컨설팅 후 재평가 결과에 따라 준평가제도 인증서와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두 번째 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차 컨설팅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산후조리원 평가를 실시하되 점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컨설팅을 수료하면 컨설팅 수료 기관으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표 Ⅵ-2-1〉 산후조리원 준평가제도 안

<table>
<tr><th></th><th colspan="3">1차</th><th colspan="2">2차</th><th colspan="2">3차</th><th>명단 공개</th></tr>
<tr><td rowspan="2">1안</td><td rowspan="2">○ 조사위원 2명 평가실시
○ 기준: 전체지표 점수와 필수지표 점수</td><td>미충족</td><td>⇨</td><td>○ 컨설턴트 1인 심층컨설팅 실시
※ 1차 평가 시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컨설턴트로 구성</td><td>⇨</td><td>○ 조사위원 2명
○ 기준 충족 시 인증</td><td>⇨</td><td rowspan="2">○ 준평가제도 인증서 수여 및 공개(기한 3년)</td></tr>
<tr><td>충족</td><td colspan="6">⇨</td></tr>
<tr><td>2안</td><td colspan="7">○ 기존의 1~3차 컨설팅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
○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1~3차 컨설팅 수료 기관 명단공개</td><td>○ 컨설팅 수료 기관 명패 수요 및 공개(기한 3년)</td></tr>
</table>

주1: 준인증기관 또는 컨설팅 수료기관 명단은 산모가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공개함
2: 준평가제도 실시 중에는 등급을 공개하지 않음

나. 산후조리원 본 평가제도(장기 방안)

장기적으로는 산후조리원 평가제도가 안착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정점식 발의안과 같이 3년 주기의 평가제도로 시행하고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을 평가 대상으로 해야 한다. 평가 방법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평가제도와 유사하게 일정 자격을 갖춘 조사위원이 현장 평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평가등급은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은 평가주기를 4년으로 C등급은 평가주기를 2년으로 조정하여, 평가의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간 자체평가, 수시조사 등 평가 사후 관리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산후조리원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산후조리원 컨설팅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표 Ⅵ-2-2〉 산후조리원 본평가제도 안

구분	내용
평가주기	• 3년
평가방법	• 조사위원의 현장 방문(1~2일)을 통한 평가인증
평가(조사)위원	• 신생아 또는 모성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의료인
조사위원 수	• 한 기관 당 2~3명,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평가등급	• 3등급제: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결과 활용	• A등급 기관은 평가주기 4년, C등급은 평가주기 2년으로 조정
평가결과 활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각 지자체 보건소에 공시 •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해당 가구에게 등급결과 공개
이의신청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하며 추가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최종 등급 판정
평가 사후관리	• 중간자체평가(매년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수시조사(인증 받은 산후조리원의 주요 서비스 영역이나 인력, 시설 등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 실시)
컨설팅	• 등급이 낮은 기관 중 신청 기관에 한해 별도의 컨설팅 실시

산후조리원 평가 등급 설정을 위한 평가 점수 산출 방식도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전체 산후조리원 지표 점수와 필수 지표 점수를 구분하여 산출한 뒤 두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대적으로 필수지표의 경우 반드시 산후조리원에서 지켜야하는 감염·시설·소방 안전과 관련된 지표가 많기 때문에 필수 지표 점수의 가중치를 높이고 별도의 기준점수도 만들어 산후조리원이 필수지표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Ⅵ-2-3〉 산후조리원 지표점수 산출방법 및 등급별 점수 표

구분	내용
전체지표 점수	$\frac{\text{필수지표점수총합}}{\text{필수지표수}} \times 60 + \frac{\text{정규및시범지표점수총합}}{\text{정규지표수} - \text{시범지표수}} \times 40$
필수지표 점수	$\frac{\text{필수지표점수총합}}{\text{필수지표수}} \times 100$
A등급	필수지표 점수 90점 이상 & 전체 지표점수 90점 이상
B등급	필수지표 점수 80점 이상 & 전체 지표점수 80점 이상
C등급	필수지표 점수 80점 미만 or 전체 지표점수 80점 미만

주: 각 지표의 개별 점수는 '상', '중', '하'의 경우는 0점, 5점, 10점이며 '유', '무'의 경우에는 각각 0점, 10점을 부여함

3. 기타 산후조리원 관련 정책제언

가.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홍보 강화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많은 기관이 모자동실의 운영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초기에 비해 모자동실의 중요성이 확산되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모유수유 증진, 모아애착, 감염예방 등을 위해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의하면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에 의하면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이정림·조미라·신손문·이신호·이현정, 2020: 78).

이정림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의 시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은 모자동실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산모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을 휴식을 위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동실 이용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출산 직후부터 아기를 산모 곁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아이의 관점에서는 엄마 곁에서 지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임산부 교육, 모자동실 필요성에 대한 홍보 강화, 모자동실 우수 산후조리원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 이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나. 사전관찰실 기능 재검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는 신규로 입원하는 신생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사전관찰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에 사전관찰실에 대한 정의가 다소

애매한 형태(투명한 벽체·칸막이 등)로 되어 있어 시설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 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사전관찰실에 여러 명의 신생아가 같은 공간에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컨설턴트와 다수의 전문가는 입소 시점에 사전관찰실보다는 모자 동실을 유도하는 것이 감염예방은 물론 모아애착을 위해 더 적합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전관찰실은 감염 등 증세가 보이는 신생아를 위한 격리실 기능으로 전환하고 시설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 부모교육

2022년도 컨설팅 사업에서는 1~3차 컨설팅 참여기관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목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우선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모교육으로 1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많은 산후조리원이 자체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문제 등으로 외부 강사가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산후조리원 자체 인력이 부모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본 연구의 컨설팅 사후만족도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산후조리원이 원내에서 교육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부모교육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강의안 배포, 영상자료 개발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라.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방향

최근 임신·출산 인프라 취약지역의 증가로 인해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산할 수 있는 법안과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입법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첫만남이용권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등 산후조리에 대한 보편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민간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다면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소규모로 난립하여 설치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문제로 운영의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역단위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의 규모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위치에 대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방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리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배경미·조혜숙·이인선(2009). 문화별 산후조리의 전통과 실재에 대한 고찰. 대한방산부인과학회지, 22(1), 231-242.

보건복지부(2013).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보건복지부(2018).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9).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2021).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1.12 기준).

보건복지위원회(20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11.

보건복지위원회(20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4.

보건복지위원회(20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10. 28). 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대폭 강화키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 25).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송주은(2007). 산모의 산욕전기와 산욕후기 피로 예측요인 -삼칠일을 기준으로-. 여성간호학회지, 13(4), 299-309.

이소영·이상림·조성호·최인선(2015). 산후조리원 적정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최인선(2021).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희·이정림·엄지원·김희선(2020).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김동훈·김종근·엄지원·윤소정(2022).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방안(Ⅰ): 임신·출산 관련 인프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손인숙·최병민·엄지원·조미라·김희선(2018).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방안: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김희선·이재희·구자연·엄지원·박규희·서보림·송채원(2019a).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이재희·구자연·엄지원·손인숙·최병민·서보림·송채원(2019b).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이재희·구자연·엄지원·손인숙·최병민·서보림·송채원(2019c).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

설팅 사업: [별책 3] 산후조리원 컨설턴트용 교육 매뉴얼.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이재희·구자연·엄지원·손인숙·최병민·김다은·김한솔(2020).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조미라·신손문·이신호·이현정(2020). 산후조리원 모자동실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이재희·구자연·조미라·엄지원·강규돈·김다영(2021).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정연이·이운규·이경림(2017).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인숙·조동숙·이주현·김지윤·송영호·이종호·이은주(2016). 산후조리원 평가 및 산후조리 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온라인자료】

강원도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https://www.ksmc.or.kr/page/guide/page_06.php (2022. 4. 28. 인출)
강진군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gangjin.go.kr/hospital/health_service/mother_child/expenses_support/jn_postpartum (2022. 4. 28. 인출)
경기도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http://www.gypc.or.kr/?WS=420 (2022. 4. 28. 인출)
모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2022. 12. 16. 인출)
밀양시청 블로그(2022. 3. 15). 밀양공공산후조리원 5월 개원 예정. https://blog.naver.com/miryangsi/222673279784 (2022. 4. 7. 인출)
법률쟁점서비스. 모자보건법 제15차 개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97호, 2015. 12. 22 일부개정]제정·개정법률요약·입법경과. http://lawpro.nanet.go.kr/law/summary/lawSummary.do?summarySid=7755&proNum=13597&searchCon=&searchKey=&searchAscCode=&searchOrgCode=&searchGubun=pro&fromDate=&toDate=&keyGubun=standing&searchIn1=&printYn=&selSummary=7755%2C13597 (2022. 9. 1. 인출)
빛가람종합병원 홈페이지. http://bitgaramhospital.co.kr/bbs/board.php?bo_table=table65&wr_id=8 (2022. 4. 28. 인출)
서귀포의료원 홈페이지. http://www.jjsmc.or.kr/board/gcontent/contentview.php?content_id=gonggongsanhu (2022. 4. 28. 인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http://mom.songpa.go.kr/careCenter/guide.asp (2022. 4. 28. 인출)

양주군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yg-ppc.org/theme/yanggu/sub/info2.php (2022. 4. 28. 인출)

완도군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https://www.wando.go.kr/health/support/childbirth/carecenter (2022. 4. 28. 인출)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https://www.bukgu.ulsan.kr/lay2/S1T1372C1384/contents.do (2022. 3. 16. 인출).

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 http://www.울산북구공공산후조리원.com (2022. 4. 28.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022. 12. 15.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S2O0A8H2T6T0K9J1Y9E4S2Y9L0O3 (2022. 12. 15.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G2E0S6Z2R7N1H4N5R3O4U6T8X2N2 (2022. 12. 15.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7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O0E0N9D0Z8S0Z9K2J3L2I1A3C0E4 (2022. 12. 15.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D1B0D3Y1T2T1E1V0H1B4V7P6F4G9 (2022. 12. 15.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8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E2W0F6U2O8L1I6U4A0D3C5W9I8E6 (2022. 12. 15.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5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K2S0O6P2Y2S1G3M0J5E0V8K7A8V6 (2022. 12. 15.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X2W0T9E2Y1N1E4A2U1H3N4D4E8W4 (2022. 12. 15.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4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W1U0W3L1V1M1P1U3X6X4X4D2Y1Y1,

전라남도 사회복지포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

o?menuId=welfare0705000000 (2022. 3. 16. 인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www.chw-mom.org/sub10.html (2022. 4. 28. 인출)

【참고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 2] 〈개정 2022. 6. 14〉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삼척시조례안 제2890, 2016. 12. 23. 공포]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466호, 2021. 12. 29. 제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468호, 2021. 6. 2 일부개정]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203호, 2021. 11. 3. 제정]
홍성군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2. 30 제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2022. 4. 7. 인출)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572호, 2021. 5. 31 제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2022. 4. 7. 인출)

【신문 기사】

강원일보(2021. 10. 5). 화천 산모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100400079 (2022. 4. 7. 인출).
경북도민일보(2022. 2. 6).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순항'.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5649 (2022. 8. 11. 인출)
경상일보(2021. 7. 22). 울산 북구에 영남권 첫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739 (2022. 4. 28. 인출)
경향신문(2022. 3. 16). 공공산후조리원 시대…서울 특실 수천만원, 이곳에선 2주에 46만원.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3161548001#c2b (2022. 4. 28. 인출)
경향신문(2022. 9. 2). "도시로 원정출산 안 가도 돼요"···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세운다. https://m.khan.co.kr/local/Gangwon/article/202209021055001#c2b (2022. 10. 5. 인출)

공감언론뉴시스(2022. 9. 16). 논산시, 지방소멸대응기금 190억원 확보...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탄력.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16_0002015660 (2022. 10. 5. 인출)

국민일보(2020. 1.8). 세종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은폐한 산후조리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06202&code=61121111&cp=nv (2022. 12. 8. 인출)

굿모닝충청(2019.11. 7). 천안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낙상사고...머리뼈 골절.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228 (2022. 12. 8. 인출)

굿모닝충청(2022. 9. 13). "원정출산 해소"…충남도, 논산에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민간에 비해 저렴하고 취약계층 할인 혜택 제공…"희망 시·군 대상 추가 검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000 (2022. 10. 5. 인출)

내외경제tv(2022 .9. 15). [국정감사] 2022년 상반기에만 산후조리원 내 감염 780명..전년 比 3배.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805 (2022. 12. 8. 인출)

뉴스핌(2020. 11. 25).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개원…나주혁신도시 빛가람종합병원 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125000739 (2022. 4. 28. 인출)

뉴시스(2022. 7. 18). 속초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짓는다...2023년 완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311918?sid=102 (2022. 8. 3. 인출)

동아일보(2020. 7. 15).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첫 손님 맞았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14/101970055/1 (2022. 4. 28. 인출)

매일경제(2021. 5. 19). 경기도 2호 공공산후조리원 2022년 포천에 개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82134/ (2022. 4. 27. 인출)

매일경제(2022.11.15.). 산후조리원에 맡긴 아기에 바이러스가...신생아 11명 집단 감염. https://www.mk.co.kr/news/society/10531950 (2022. 12. 8. 인출)

메디컬투데이(2019. 10.1). 분당 A산후조리원서 생후7일 된 신생아 낙상 사고로 두개골 골절…사고 발생 후 은폐 정황.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174 (2022. 12. 8. 인출)

서울경제(2022. 7. 25).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 김천의료원에서 위탁운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79837?sid=102 (2022. 8. 3. 인출)

아시아경제(2021.9. 17). 산후조리원 들어간 지 6일 만에 숨져…"가슴 통증 호소에 타이레놀만". https://cm.asiae.co.kr/article/society-all/2021091716103255067 (2022.12. 8. 인출)

아시아경제(2022. 8. 27). 부산 산후조리원 화재, 신생아·산모 110명 긴급대피 … 반신욕기 전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2712030155434 (2022. 12. 8. 인출)

연합뉴스(2021. 2. 11). [사건사고] 한밤중 산후조리원 건물서 불…산모들 긴급 대피. https://www.yna.co.kr/view/MYH20160221003800038 (2022. 12. 8. 인출)

연합뉴스(2022.1. 28.). 산후조리원 생후 16일 신생아 뇌출혈…학대 의심 신고.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8021300004 (2022. 12. 8. 인출)

연합뉴스(2022. 3. 14). 밀양시에 공공산후조리원 5월 개원…시-제일병원 위탁운영 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4135500052?input=1195m (2022. 4. 7. 인출)

연합뉴스(2022. 3. 15).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순천서 임시 개원.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5137300054?input=1195m (2022. 4. 28. 인출)

연합뉴스(2022. 4. 1). 서대문구,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연내 개원 목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3086465 (2022. 4. 7. 인출)

오마이뉴스(2020. 8. 27). 충남도 첫 공공산후조리원, 홍성군민 차등지원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0533 (2022. 4. 27. 인출)

오마이뉴스(2022. 1. 27).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결에 도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580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2. 4. 7. 인출)

울산신문(2021. 10. 5).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이 호응 얻는 이유.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665 (2022. 4. 28. 인출)

울산 MBC(2021. 9. 28).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https://www.usmbc.co.kr/article/fmyRFnIVlsx_ZlKj (2022. 3. 16. 인출).

인천일보(2020.11.17.). '신생아 학대 논란' 수원 산후조리원 간호사 검찰행.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487 (2022. 12. 8. 인출)

중부일보(2022. 8. 15). 경기소방,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4081 (2022. 12. 8. 인출)

중앙일보(2022. 1. 24). "원정 산후조리 그만"…2주 18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문 열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078#home (2022. 4. 28. 인출)

중앙일보(2022. 6. 3). 생후 50일 아기에 뇌출혈과 골절이…의사가 학대 의심 신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606#home (2022. 12. 8. 인출)

중앙일보(2022. 12.1). 낙상사고로 신생아 뇌에 출혈…조리원은 부모에 곧장 안알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2199 (2022. 12. 8. 인출)

파이낸셜뉴스(2022. 8. 5). 인천 산후조리원 화재…산모·신생아 등 30여명 대피. https://www.fnnews.com/news/202208050631405508 (2022. 12. 8. 인출)

포천소식(2022. 1. 12.). 포천시,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 http://news.pocheon.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earchlist&mkey2=35&aid=25474&bpage=1&stext=조리원 (2022. 4. 27. 인출)

프레시안(2020. 10. 26). 경상북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울진의료원에서 11월 2일 개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25170414644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22. 4. 28. 인출)

프레시안(2022. 4. 18).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사업 공모 선정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815422033241 (2022. 8. 11. 인출)

한강타임즈(2021.11.26.). 대전 산후조리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신생아 2명 확진'.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497 (2022. 12. 8. 인출)

한겨레(2021. 12. 8). 분당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9명 중 4명 집단감염.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22533.html (2022. 12. 8. 인출)

한국경제tv(2021.11.15.). 강동구 상일동 산후조리원 화재…산모 등 70명 대피.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1150249&t=NN (2022. 12. 8. 인출)

한국일보(2022. 7. 4).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10월에 개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4229?sid=102 (2022. 8. 3. 인출)

MBC 뉴스(2020. 11.17). 산후조리원 집단 잠복결핵…신생아 잇단 '양성'.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77022_32531.html (2022. 12. 8. 인출)

TV조선(2021. 6. 29). 산후조리원 화재에 40여명 대피…스프링클러 '무용지물'.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6/29/2021062990135.html (2022. 12. 8. 인출)

YTN(2021. 5.11). 송파구 산후조리원 신생아 18명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부모들 "분통".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111806045401 (2022. 12. 8. 인출)

YTN(2022.3.14.). 대정 유성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등 7명 RSV 감염. https://www.ytn.co.kr/_ln/0115_202203141034413247 (2022. 12. 8. 인출)

부록

부록 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부록 2. 산후조리원 컨설팅 안내문 및 컨설팅 신청서(기관용 신청서)

부록 3.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조사표(기관용)

부록 4. 자체평가지(기관용)

부록 5.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컨설턴트용)

부록 6.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부록 7. 산후조리원 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부록 8. 설문지(컨설팅 참여기관 만족도조사)

부록 9. 2021~2022년 평가기준집 비교

부록 1.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

I

평가 개요

01 평가항목의 기본 틀

02 평가항목의 이해

03 평가방법

04 산후조리원 시범평가기준의 구성(안)

1. 평가항목의 기본 틀

▪ 평가항목은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과 질 관리, 감염예방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상호교류하면서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질 관리 문화형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평가항목의 이해

○ 평가대상

▪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평가항목의 분류

- 산후조리원 평가항목에서 항목 분류는 다음과 같다.
  - ▪ [정규] : 평가결과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
  - ▪ [필수] : 평가결과 결정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하는 평가항목
  - ▪ [시범] : 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규문항에 포함될 예정인 항목

○ 평가영역 구분

▪ 평가영역 구분별 설명

평가영역(S,P,O)		설명
S	System	구조: 규정(내규, 지침 등), 절차, 계획의 수립
P	Process	과정: 계획 수립 및 시행, 개별교육, 숙지, 인지, 수행정도 확인
O	Outcome	결과(성과): 지표를 선정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

▪ 미해당 항목

- 사전 제출한 자료 검토를 통해 '미해당' 항목으로 확인된 경우, 본 평가 시 평가위원이 진위를 확인하여 '미해당'으로 판단한다.
- '미해당'으로 판정된 평가항목은 결과판정을 위한 집계대상에서 제외한다.

○ 규정, 지침, 내규 및 절차

▪ 개념 정의

- 산후조리원 내부에서 정한 업무표준을 총칭하며,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원칙, 서비스제

공에 대한 원칙, 업무지침 등을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정의한 내부준칙을 말한다.
- 규정은 관련 법규나 국제표준 또는 공인된 지식체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 절차는 업무 혹은 서비스 과정(프로세스)을 정의한 것으로 해당 프로세스의 변경에 따라 수정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 모자보건법 상 산모의 법적용어는 임산부이며, 신생아의 법적용어는 영유아이다.

▪ 해당 규정(지침, 내규 등) 및 절차, 계획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하 평가항목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결과는 '무' 또는 '하'로 판정한다.

3. 평가방법

○ 평가장소

▪ 평가항목에서 제시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산후조리원 내 관련 장소에서 평가한다.

○ 평가대상

▪ 평가항목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직원, 산후조리업자, 산모에게 질문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관련 용어설명

평가방법	용어설명
DR(Document Review)	규정(내규, 지침 등) 및 절차 검토
Tracer - IT(Individual Tracer) - ST(System Tracer)	- 직원, 산모 면담조사 - 기록 검토 - 관찰 - 근거서류 및 관련자료 검토

4. 산후조리원 시범평가기준의 구성(안)

○ 6개 대영역, 15개 중영역, 30개 소영역, 98개 평가항목(시범적용: 5개 평가항목)

* ME: Measure Element, 평가항목
* 괄호(): 시범항목 개수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 (ME)	분류		
					필수	정규	시범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2	4		10	3	7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1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4	1	3	
		2.2	종사자 교육·계발	3	1	2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2		2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평가항목 (ME)	분류		
					필수	정규	시범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2	4		15	6	9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4	1	3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5		5	
		4.2	소방안전관리	4	3	1	
		4.3	낙상예방관리	2	2		
Ⅲ. 운영과 질 관리	3	6		21	5	11	5
	5. 운영관리	5.1	입·퇴실관리	5	2	3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2	2		
		5.3	문서관리	3		3	
		5.4	방문객관리	3	1	2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5		3	2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3			3
Ⅳ. 감염예방관리	2	8		25	10	15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5	5		
		8.2	개인보호구 착용	2		2	
		8.3	세탁물관리	2		2	
		8.4	물품 소독·관리	3		3	
		8.5	환경관리	2		2	
		8.6	급식관리	6		6	
		8.7	종사자 관리	3	3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2	2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3	3		11	9	2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2		2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3	3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6	6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3	5		16	7	9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3	3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3		3	
	15. 신생아관리	15.1	위생관리	2		2	
		15.2	신생아 수유	5	1	4	
		15.3	안전관리	3	3		
6	15	30		98	40	53	5

Ⅱ

평가항목 충족기준의 이해

01 기본원칙

02 평가항목 충족기준

1. 기본원칙

○ 산후조리원 평가에서는 평가항목 충족수준과 결과판정 수준을 산후조리원 간, 평가항목 간 평가결과의 변별이 가능하도록 점수화 체계를 구성하였다.

- 평가항목의 객관적인 변별을 위해 항목별 평가방법 및 결과판정 기준을 제시함
- 평가결과 등급판정 기준에는 전체 평가항목(Measure Element, ME), 각 영역별 평가항목(ME)에 대한 충족여부를 위한 기준을 포함함

2.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점수	평가결과	점수
유	10점	상	10점
		중	5점
무	0점	하	0점

(*가점항목이 있을 경우 기준 충족시 해당 평가항목 5점 가산)

Ⅲ

평가항목의 이해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Ⅲ 운영과 질 관리

Ⅳ 감염예방관리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2. 인력 전문성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중영역	평가기준
1. 인력 적정성	1.1 법적인력기준을 준수한다.
2. 인력 전문성	2.1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2.2 직원의 직무능력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2.3 산모,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1. 인력 적정성]

기준 1.1

법적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수 또는 구성에 대해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평가 영역	분류	평가결과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DR	S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건강관리 인력(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구분	내용	비고
간호사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함.
간호 조무사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함.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음(간호조무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체 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에 해당하는 전체 수는 반드시 충족해야 함).	
건강 관리 책임자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두어야하며, 이 경우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음.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지침(고시)」[별지 제1호 서식]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작성·비치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됨. (산후조리원 근무시간에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행위 불가)

○ 그 밖의 인력
- 취사부(조리원) 및 영양사
  • 임산부(산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조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산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함.
- 청소 및 세탁담당자
  • 규모에 따라 임산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음.

※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 면허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이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음.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보건소 실태 조사서 결과 확인
  1) 종사자 근무표, 종사자 관리 대장*
  2)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신생아 입실자료 - 신생아 재원 관리 대장

○ 판정기준
1) 법적 인력기준 준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춤 - 1명 이상의 상시근무 간호사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	-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추었으나 상시근무 간호사 충족 못함	- 법적인력을 충족하지 못함

[2.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기준 2.1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DR	P	필수	□유	□무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DR	P	정규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인사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직원 채용절차
- 자격조건(근무경력 등)
- 건강검진확인(근무예정자의 건강진단, 예방접종, 잠복결핵검사)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

○ 인사정보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정보(예: 면허, 교육 등) 갱신 및 관리
- 직무 관련 보수교육 및 훈련 사항

○ 직무기술서 작성 및 관리
- 직무 내용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 자격요건 등
  ※ 설비/소방담당, 산모교육 담당, 감염관리 담당, 급식관리 담당, 문서관리 담당, 자체점검 담당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필수] 직원 채용절차에 따라 적정한 인력을 모집/배치한다.

3)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정보(면허, 교육, 훈련정보 등)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별로 보관한다.

4) 직무기술서는 직무내용 및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직무기술서는 산후조리원의 규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수정, 보완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갱신 서류
- 종사자의 건강검진진단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종사자 보안 각서(개인정보 취급자 보안 서약서)
- 직무기술서
- 신규 채용 직원 결격 사유 조회 신청서 (산후조리원용)
  (※ 병의원 부설인 경우 병의원 종사자 인사정보도 같이 확인함)

○ 판정기준

1)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인사관리 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직원 채용 절차에 따른 적정인력 모집/배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법정 건강검진(잠복결핵 검사 등),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 관련 여부 진단 및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일해)을 받은 근거서류가 있음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채용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확인 - 개인정보 보안각서 확인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중 1개라도 실시하지 않음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없음 - 개인정보 보안각서를 받지 않음 위의 1개 이상의 경우에 해당

3) 인사정보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사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직원별로 인사정보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음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 - 종사자 관리대장이 누락없이 작성되고 연도별로 관리함	- 종사자 관리대장이 일부 누락되고 연도별로 관리하지 않음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음 · 2개중 1개 이상 해당	- 다수의 직원의 인사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음

4) 직무기술서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직무 기술서가 있고, 자격 요건에 따른 담당직무가 명시되어 있음	- 직무기술서가 없거나, 자격 요건에 따른 담당직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기준 2.2

직원의 직무능력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자격유지 및 업무 전문성 개발을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DR	P	필수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연간 직원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예산 등

2)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에게 시행해야하는 교육은 산후조리원 필수교육, 법정의무교육, 신규직원 교육 및 기타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 산후조리원 필수교육
-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시행규칙 제17조
- 교육내용: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및 방법:

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산후조리업자*	- 연1회 이상. 연8시간 이상	-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건강관리인력	- 연1회 이상. 연4시간 이상	-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기타 인력	- 연1회 이상. 연1시간 이상	-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산후조리업자는 교육보고서를 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함

※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 산후조리원 필수교육의 교육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7호)

○ 법정의무교육

교 육	근거 법령	대상	주기	세부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연 1회	- 사업주 및 근로자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연 1회	- 사업주 및 근로자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의무 고용 미 이행 시 고용부담금 징수 대상,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시
위생 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	조리사 및 영양사	2년에 1회	- 집단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 조리사 교육
소방 안전 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산후조리업자 및 관리급 종사자	2년에 1회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대상임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종사자	매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산후조리원 대상 포함)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산후조리업자 또는 관리책임자	신규: 1년에 1회 보수: 3년에 1회	-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각 교육 당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신규 직원	신규 입사 시	신규채용 시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긴 하지만 신규자 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담당자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함.

○ 신규직원 교육

- 교육개요: 건강관리책임자 또는 간호사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입사 후 1주 이내 실시
- 교육내용: 산후조리원 조직 및 운영목표, 시설현황, 업무내용 및 업무절차

○ 기타 직무교육

- 산모신생아 안전관리, 서비스 질 개선 교육 등

3) 모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다.

4) 모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교육을 시행(지원)한다.

5) 신규직원 채용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6) 산후조리원별 방침에 따라 기타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연간 교육 계획서
- 교육이수 근거서류: 교육일지, 또는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20. 1. 16.〉
- 종사자 교육 대장(자체 교육 확인용)
-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근거 서류

○ 판정기준

1) 연간 직원교육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연간 교육계획에 필수교육과 법정의무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연간 직원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계획에는 예산(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연간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됨	-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2)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산후조리원 종사자 필수교육을 시행함 - 산후조리원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중 80% 이상 수행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신규 직원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종사자 교육관리대장의 교육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관되어 있음	- 필수 교육을 시행하고 추가로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	- 필수 교육을 시행하지 않음 -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중 50% 미만 수행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직무교육 또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신규자 교육 제외)을 계획하고 실제 실시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5점 가산

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회 8시간 이상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함 - 교육이수 수료증 있음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2. 인력 전문성: 종사자간 의사소통]

기준 2.3

산모,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근무교대 시 정확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산모, 신생아의 정보를 공유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DR/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근무교대 시 종사자 간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정보공유 방법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근무교대일지
○ 정보공유 내용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기본정보
- 인계시점에서의 임산부(산모), 신생아 상태
- 필요 시 제공되어야하는 처치 등

2) 직원은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 절차를 알고 있으며, 건강기록부와 근무교대일지를 이용하여 산모, 신생아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근무 교대 규정
- 근무 교대 일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료)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료)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 판정기준

1)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근무교대 시 종사자 간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건강기록부, 근무교대일지에 정보공유 내용이 충실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2개 모두 충족	- 건강기록부, 근무교대일지에 정보공유 내용이 일부 미흡하게 기록됨 -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 숙지 60%이상	- 근무교대일지 작성하지 않고 건강기록부에 정보공유 내용이 매우 미흡하게 기록됨 -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 숙지 60%미만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4. 시설 안전성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중영역	평가기준
3. 시설 적정성	3.1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4. 시설 안전성	4.1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4.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4.3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위해 낙상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3. 시설 적정성]

기준 3.1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평가목적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산모)실, 영유아(신생아)실의 시설기준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한 시설을 갖춘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IT	S	필수	□상 □중 □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IT	P	정규	□유 □무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IT	S	정규	□상 □중 □하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IT	P	정규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세면대 또는 손 소독기(소독제) 등 손 씻기 시설을 갖춘다.
- 손 씻기 시설: 세면대, 손소독제 등
- 세면대(싱크대): 영유아(신생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신생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2) 영유아(신생아)실 내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다.

3) 신규로 입실하는 신생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사전관찰실을 둔다.
- 사전관찰실: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커튼은 제외)으로 분리하여야 함
(※ 2017. 7. 1.부터 시행)

4) 영유아(신생아)실은 언제든지 산모가 관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 산후조리원 법적 설치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임산부(산모)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따름)

- 임산부(산모)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 임산부(산모)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산부(산모)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 영유아(신생아)실

-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함)을 제외한 영유아(신생아)실의 면적: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

  ※ 공용면적 제외는 2017. 7. 1.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일반기준

- 임산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참고: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임산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은 1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 제 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2018.1.1. 이후 신고를 하는 산후조리원 적용).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산모)와 영유아(신생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산후조리원 도면
- 임산부(산모)실, 영유아(신생아)실 적정성 확인(관찰)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 모자보건법 일반서식,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갈음함)

○ 판정기준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 손 씻기 시설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산후조리원 입구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 또는 손소독제)을 갖추고 있음 -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추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	- 신생아실에만 손 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추고 있음	- 2개 모두 없음 - 산후조리원 입구에만 손소독제가 있음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 간격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하다.	-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하지 않다.

※ 모자보건법 일반서식,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갈음함

3) 사전관찰실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사전 관찰실이 있으며, 출입문과 투명한 벽체 등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음	- 사전관찰실이 있으나 칸막이로 일부만 막혀있어 공간이 분리되지 않음	- 사전 관찰실이 없음 - 투명한 벽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4) 외부에서 신생아실 관찰 가능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신생아실은 언제든지 산모가 관찰이 가능함	- 신생아실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음

[4.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

기준 4.1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전기 및 물 공급, 수질감시, 가스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유	□무	□미해당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계획
- 시행시기 및 예산을 포함한 시설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 계획 등
○ 전기·가스 설비 감시 및 관리
- 자체점검 및 정기검사 등
○ 급수설비 및 수질 감시 및 관리
- 급수설비 위생 점검
- 저수조 청결상태 점검, 수질검사
- 하수도 관리

- 정수기 관리 등

○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참조

- 실내공기질 측정의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임

2)~5) 계획에 따라 시설 및 환경의 안전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계획
- 전기, 가스, 급수설비 안전점검 근거서류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근거서류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 판정기준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되어 있어야하고 관리 계획서 구비)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안전관리담당자 지정되어 있지 않고, 관리 계획 없음)

2) 전기설비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 근거서류 있음 - 법적 점검서류 있음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 근거서류 있음 - 법적 점검서류 있음 - 점검표 3개 항목 충족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미충족

3) 가스설비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미해당
정규	- 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 있음 - 주기적인 가스점검 실시 - 점검표 3개 모두 충족	- 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 없음 - 주기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점검표 2개 이하 충족 - 3개 중 1개 이상 해당	-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조리장을 운영하지 않음

4) 급수설비 및 수질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2개 항목 모두 충족	- 점검표 1개 항목 충족	- 미충족

5)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공기질 측정 근거서류가 있음 - 에어컨 청소 필터교체, 환기시설 관리 점검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 - 점검표 3개 항목 모두 충족	- 실내 공기질 측정은 했으나 점검표 3개중 2개 이상 충족(근거서류 포함)	-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점검표 3개 중 1개 이하만 충족

※ 연면적 500㎡미만 산후조리원은 실내 공기질 측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표 내의 항목 충족 여부와 점검 근거서류만 확인하고 판정함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점검항목	중점점검사항	이상 유무 확인	
		충족여부	조치결과
전기	1.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사용 유무 및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전기시설 사용 적정여부(문어발식 사용금지)		
	3. 전선의 피복상태		
	4. 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손상여부		
가스 시설	1. 가스시설 사용 적정 여부		
	2. 가스사용 구역 가스 누설 유무		
	3. 가스누설 경보 자동 차단장치 상태		
급수	1. 정수기 오염상태 확인		
	2. 정수기 기록 유지관리 확인		
실내 공기	1.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 관리기준 준수		
	2. 에어컨 오염상태 확인		
	3. 환기시설 오염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혹은 주기적인 환기 (일 최소 2회, 한 회 당 20분 이상)		

※ 공기청정기가 있을 경우는 점검사항에 추가함.
※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오염 상태 점검 및 조치는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4.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

기준 4.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 직원, 방문객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DR/IT	P	필수	□상	□중	□하
3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DR/IT	P	필수	□상	□중	□하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IT	P	정규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 예방점검 계획
- 소방시설,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소화설비(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경보설비(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
  - 피난설비(완강기 혹은 구조대),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 소화용수설비(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등)
- 피난경로(대피로) 점검(피난경로 장애물 비치 여부 확인)
- 비상구 점검(개방여부, 장애물 비치 여부 확인)

○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
- 신고체계(비상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편성
- 피난층 위치, 안전구획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 설정
- 직원의 역할분담, 산모 및 신생아, 직원의 대피 장소에 대한 배치

- 유형별(산모, 신생아) 대피 계획 및 후송 계획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계획
- 소방안전 교육(최소 연 1회 이상) (※ I-2 인력적정성: 종사자 교육 계발과 중복)
  • 교육대상, 교육일정
  • 교육내용(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 소방훈련(최소 연1회 이상)
  • 대상: 산후조리원 종사자(직원)
  • 훈련내용: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 비상대응훈련

2) [필수] 화재예방을 위해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한다.

3) [필수] 계획에 따라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알고 있다.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설치되어 있다.
- 연락체계: 응급벨, 인터폰(핸드폰은 제외함)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소방안전 관련 규정
- 소방서에서 시행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확인(연 1회)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화재예방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확인
- 소방훈련 근거서류(종사자 교육 대장으로 대체 가능)

○ 판정기준

1)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소방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고, 내용을 모두 포함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 현장 점검시 이상 없음	- 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 현장 점검시 3개 항목 이하 미흡	- 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 현장 점검시 4개 항목 이상 미흡

■ (소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소방)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 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 · 변형 · 손상 · 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 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 · 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화재 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 · 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 · 목재 방염성능확보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⑬ 방염 소파 · 의자 사용 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3) 소방훈련 수행 여부 확인 및 직원 숙지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	-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이상	-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하지 않음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60% 미만

4)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응급벨, 인터폰, 유선전화기(단축키 지정) 등)가 있음 (※ 연락체계로 핸드폰은 제외)	-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없거나, 연락체계로 핸드폰을 사용함

[4. 시설 안전성: 낙상예방관리]

기준 4.3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위해 낙상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평가목적

낙상으로 인한 산모와 신생아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DR/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낙상예방활동
- 낙상예방교육(수면 전 화장실 다녀오기, 잘 맞는 신발 착용 교육 등의 안내문 부착 등)
- 환경 및 시설점검(바닥 미끄럼방지, 문턱관리, 조명관리, 낙상예방 안내문 부착 등)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낙상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 내용
-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
- 낙상예방 활동 근거 서류

○ 판정기준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규정이 없음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예방교육, 점검서류 등)	- 점검표 3개 항목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예방교육, 점검서류 등)	- 미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없음

■ 낙상예방 안전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실, 산모실 실내바닥 미끄러움 상태			
2	산모, 신생아실 직원의 신발 바닥 확인 (산모와 직원의 신발바닥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거나 신었을 때 미끄럽지 않음)			
3	낙상예방 안내문(스티커) 부착 (산모실, 신생아실 모두 안내문 또는 스티커 부착)			
4	조명관리(야간 조명관리 등)			

Ⅲ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6. 질 관리
7. 경영 관리

Ⅲ. 운영과 질 관리

중영역	평가기준
5. 운영관리	5.1 입·퇴실을 관리한다.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갖추고 있다.
	5.3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5.4 산모·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을 관리한다.
6. 질 관리	6.1 질 관리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7. 경영관리	7.1 리더쉽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 관리 활동을 시행한다.

[5. 운영관리: 입·퇴실관리]

기준 5.1

입·퇴실을 관리한다.

평가목적

입·퇴실 수속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DR	S	필수	□유	□무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IT	P	필수	□유	□무	
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DR/IT	P	정규	□상	□중	□하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입·퇴실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산모 및 신생아 입·퇴실 관리
- 입·퇴실 수속 절차(방법), 입·퇴실 지연 시 관리방법 등
○ 입실 시 제공하는 정보
- 입실생활 안내, 요금체계, 서비스 내용 등
○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소지품 분실 및 도난, 신생아 유괴, 산모와 신생아의 외부 출입 등)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 계획
- 감염예방 관리 계획
- 감염 또는 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계획(이송여부 결정기준, 이송절차 등)
- 낙상예방 계획
○ 퇴실 시 산모 교육: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2)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3)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입실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 해약 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 협력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마사지, 사진촬영 등의 부가서비스도 이를 준수해야하며, 산후조리원과 협력업체와의 책임관계를 포함하여 게시하여야 함)

4)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하거나 자료를 제공한다.

5) 입·퇴실 수속 절차를 준수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입·퇴실 관련 규정
- 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가입증명서
- 입소생활안내문: 입실 시 산모 교육 근거 자료
- 서비스 내용, 이용 요금 등의 게시(비치 확인)
-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고객용)

○ 판정기준
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됨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비치)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입실 시점에 약관,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산모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하고 있음	- 입실 시점에 약관,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게시(비치)하고 있지 않음

4) 입실, 퇴실 시 산모교육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계획 - 감염예방 관리계획 - 의료기관 이송계획 - 낙상예방 계획 :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위의 내용을 모두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퇴실 시 산모 교육 : 퇴실 시 산모교육을 시행하고 산모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일부내용(4개 이상)에 대해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퇴실 시 산모교육을 시행하고 산모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입실, 퇴실 시점에 산모에게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5)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8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미만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음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운영관리: 의료기관 연계·이송]

기준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갖추고 있다.

평가목적

산모·신생아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DR/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이송여부 결정기준
○ 이송절차
○ 보건소 보고 지침

2)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산모 및 신생아를 이송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이송하고, 이송된 산모 및 신생아가 있는 경우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절차)
-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 최근 1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판정기준

1)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고, 지침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이송 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는 지침(보고해야하는 사항, 보고 담당자, 보고시점 등 포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규정 내용이 2개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침이 없음 (규정 내용이 1개 이하)

2)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산모 및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이송절차(이송방법, 이송수단) ○ 이송보고(보고방법, 보고사항) - 위의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80% 이상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근거서류 확인)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에 대한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의 숙지 60% 이상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에 대한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미만 - 이송된 산모, 신생아가 있는 경우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시기가 지연됨

[5. 운영관리: 문서관리]

기준 5.3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평가목적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문서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3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문서목록(산후조리원 자체 목록 지정)
○ 문서 기록방법
- 문서 기록, 수정 방법 및 기재내용
○ 문서의 대출, 열람(사본발급포함) 절차
※ 건강기록부: 임산부(산모) 또는 영유아(신생아)의 법적대리인이 임산부(산모)/영유아(신생아)기록부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4항)
○ 문서 보관방법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 문서 접근권한 관리
- 문서 보관, 유지 및 파기방법 등

2) 건강기록부를 규정에 따라 기록, 수정한다. 수정 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수정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문서의 대출, 열람 및 반납 절차를 준수하여 문서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보누출을 방지한다.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실)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 문서 보관 장소 확인
- 문서 대출, 열람 및 반납 내역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 판정기준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보관중인 문서에 대한 관리규정(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함	- 규정이 없음 - 건강기록부 1년간 보존하지 않음

2)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최소 5건) - 건강기록부는 매일 기재되어 있고, 항목별 사항도 누락 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건강기록부에서 수정한 내용이 모두 규정의 내용을 준수함	- 5개 건강기록부 중에서 2개 항목 이하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하게 작성됨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수정펜 사용)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3개 항목이상 누락되어 있거나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문서 대출, 열람 및 반납 절차 준수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문서 대출, 열람, 반납 절차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80% 이상 - 대출, 열람절차에 따른 근거서류 확인 가능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문서 보관	- 문서 대출, 열람, 반납 절차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이상 - 대출, 열람절차에 따른 근서서류 없음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문서 보관	- 문서 대출, 열람, 반납 절차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60% 미만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문서 보관하지 않음

[5. 운영관리: 방문객관리]

기준 5.4

산모·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을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을 위한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보호자 및 상시출입자 관리

(※ 상시출입자 예: 사진사, 마사지사, 식재료납품업자 등)

○ 방문객 관리

- 출입절차 및 출입이 금지되는 사항
  - 위장관감염, 호흡기감염, 결막염, 기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산후조리원내 감염질환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등
- 방문객 명부 작성
- 방문 허용 시간대(면회시간)
- 방문객이 지켜야 할 감염예방 수칙
  - 감염예방 교육(예: 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등)
- 외부물품 반입금지 사항 등

○ 손 씻기 시설 관리(세면대, 손소독제 등)

○ 보안사고 발생 예방 및 관리

2) [필수] 방문객의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을 입구에 게시하고, 산후조리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산모 및 신생아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문객에 대한 출입관리 및 감염예방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방문객을 위하여 산후조리원 입구에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방문객은 출입 시 손 위생을 실시하도록 교육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방문객 관리 규정
- 방문객 명부 또는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확인(세면대, 손 소독제 등)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확인(포스터 부착 등)

○ 판정기준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보호자(주출입자)는 산모가 지정한 1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방문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있고, 인적사항, 방문일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음 -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으로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감염이 있는 자 • 화농성 질환 등 감염성 피부질환이 있는 자 • 유행성 각결막염 등 안과질환이 있는 자 •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자 • 최근에 예방접종(MMR, 수두, 폴리오)한 아동과 접촉한 자 • 산후조리원 내 감염질환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등	-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있고, 인적사항, 방문일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됨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음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없음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지 않음

3) 방문객 감염관리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감염관리활동을 모두 수행함 • 방문객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안내문, 포스터, 리플렛 제공) • 방문객용 세면대에 손 위생 물품 비치(손소독제 유효기간 표기) • 손 위생 홍보활동(근거자료 확인) - 평가일에 방문객 손 위생 수행 관찰(최소 5인): 100%실시	- 감염관리 활동 중 2개 수행 - 방문객 손 위생 실시 60% 이상	- 감염관리 활동 중 1개 이하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방문객 손 위생 실시 60% 미만

[6. 질 관리: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기준 6.1

질 관리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목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질 향상을 위하여 질 관리 활동과 만족도 조사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산모, 방문객의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시범	□상	□중	□하
2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	P	시범	□상	□중	□하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DR	O	정규	□상	□중	□하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DR	P	정규	□유	□무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DR	P	정규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주제별 질 관리 활동 계획
- 핵심지표 선정
  • 모자동실시간, 모유수유율, 손 위생 수행률, 감염발생양상, 안전사고발생 양상 등
- 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선활동 관리

○ 만족도 조사 계획
- 대상, 횟수(연 1회 이상), 시기, 조사 형식(설문지) 등
- 조사결과 관리(조사결과 분석, 개선활동,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등)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안내, 접수(구두, 문서 등), 처리, 피드백 등)

2) 산후조리원에서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개선활동 성과를 관리한다.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4)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5) 산모 및 방문객에게 불만 및 고충을 절차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처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질 관리 활동 및 만족도 조사 계획
- 질 관리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 판정기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에 대한 확인

구분	상	중	하
시범	-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질 관리는 최소 1개 이상 실시	-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질 관리, 만족도 평가 계획이 없음

2)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시범	○ 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 이상(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이상)의 관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핵심지표〉 - 모자동실시간 - 신생아실 이용시간 - 모유수유율 - 감염발생 양상 - 안전사고발생 양상	○ 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모니터링은 시행했으나 개선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 계획은 있으나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 질 관리 활동 계획이 없음

3)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만족도 평가도구 있음 - 모두 만족도평가 실시함 - 만족도 분석결과를 업무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 ⇒ 모두 충족	- '상'의 기준 중 2개 충족함	- '상'의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

4) 불만 및 고충사항 안내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고충처리함, 안내문 등)	- 안내 없음

5)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접수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피드백 관련 서류 있음	- 피드백 관련 서류 없음

[7. 경영 관리: 리더십 및 조직문화]

기준 7.1

리더십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 관리 활동을 시행한다.

평가목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의 개선과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원장의 리더십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계획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IT	S	시범	□유	□무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IT	P	시범	□유	□무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DR/IT	O	시범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
○ 모자동실
○ 신생아 및 방문객 감염 관리

2) 직원과의 의사소통
○ 직원과 원장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여부 확인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안내, 접수(구두, 문서 등), 처리, 피드백 등)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회나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원장 인터뷰(모자동실, 신생아감염관리에 대한 질의)
- 직원 인터뷰

○ 판정기준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원장 인터뷰)

구분	유	무
시범	-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있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음	-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없음(모자동실을 시행하지 않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없음

2) 직원과의 의사소통(직원 면담)

구분	유	무
시범	-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있음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고 있음(처리결가 근거서류 확인)	-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없음을 확인함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지 않음을 확인함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원장 인터뷰)

구분	유	무
시범	-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근거서류 확인)	-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음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9. 감염관리

Ⅳ. 감염예방관리

중영역	평가기준
8. 감염예방	8.1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위생을 수행한다.
	8.2 개인보호구를 구비하고 있다.
	8.3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8.4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및 물품관련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8.5 개인 및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8.6 조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한다.
	8.7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9. 감염관리	9.1 감염병으로부터 산모 및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8. 감염예방: 손 위생]

기준 8.1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위생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종사자 및 산모는 손 위생 수행을 준수하여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을 최소화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3	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IT	P	필수	□상	□중	□하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질병관리본부(KCDC),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및 공인된 감염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한다.

○ 산후조리원 입구와 신생아실 입구에서 손 위생을 수행한다.

○ 손 위생 수행 대상: 직원 및 산모

○ 손 위생 수행 시점(예시)

구분	손 위생이 필요한 상황
일상적인 활동	- 근무 시작 전·후, 음식 먹기 전·후 -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고 난 후 - 오염물품을 만지거나 접촉 후(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오염세탁물 등)
신생아, 산모 간호	- 신생아 접촉 전·후 - 모유/분유 준비 전, 수유 전 - 기저귀 교환 전·후 - 상처 만지기 전·후, 혈액/체액에 노출된 후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손 위생] 참고

○ 손 위생 수행 방법
- 손 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액상 비누 및 손소독제 종류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예: 세면대 옆 홍보자료 비치, 게시판 등에 손 위생 관련 자료 부착 등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일상적인 활동 전·후, 산모와 신생아 간호 전·후 올바르게 손 위생을 수행한다.

3) 산모는 신생아와 접촉 전·후, 수유 전 등 올바르게 손 위생을 수행한다.

4) 손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공급하여 적절한 곳에 비치한다.

5)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및 보호자, 방문객, 직원 등을 대상으로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손 위생 규정(감염관리 지침 등으로 대체 가능)
- 손 위생 물품 비치현황(비치장소, 사용기한 표기 등), 구매(입고)내역
- 손 위생 수행 여부 관찰(직원, 산모)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 판정기준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직원 손 위생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80% 이상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 80% 미만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직원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미만

3) 산모 손 위생 수행 여부 확인
(※ 최소 3항목 이상은 점검. 미해당은 수행 항목에서 제외한다.)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80% 이상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 80% 미만	- 손 위생 수행 시점에 따른 산모의 항목의 수행률의 60% 미만

4) 손 위생 물품 구비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이 모두 표기 되어 있으며 개봉후 6개월 이내 일 것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이용함(인증서 확인) - 신생아실 손 위생 건조는 종이타월(1회용 타월)을 이용함 -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 근거서류 있음	-'상'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함	- '상' 기준 중 2개 이하 충족

5)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실시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있음 • 세면대 옆 손 위생 방법 비치(부착) • 게시판에 손 위생 포스터 부착	- 홍보활동 2개 중 1개 실시함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없음

■ 손 위생이 필요한 활동 사례-산모 대상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음식 먹기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신생아 접촉 전·후				
4	모유/분유 수유 준비 전, 수유 전				
5	기저귀 교환 전·후				

■ 손 위생 활동 점검표(직원)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근무 시작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음식 먹기 전·후				
4	신생아 접촉 전·후				
5	모유/분유 준비 전, 수유 전				
6	기저귀 교환 전·후				

[8. 감염예방: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8.2

개인보호구를 구비하고 있다.

평가목적

감염예방을 위해 종사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개인보호구착용 지침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 업무 중 감염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산모,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염소계 소독제 등) 등
- 기구, 물품 세척 시(젖병 포함)
○ 개인보호구 목록관리

2)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일회용 가운 등)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보호구를 착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 내용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 판정기준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장갑, 마스크, 가운을 착용해야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음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75%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은 보호구(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고 있음 ※ 확인 불가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등에 대한 직원 숙지 75%이상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50%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의 보호구 착용이 미흡함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50% 이상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50% 미만) - 보호구가 없음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50% 미만

※ 직원 3명의 평균으로 충족률 산출

[8. 감염예방: 세탁물 관리]

기준 8.3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목적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관리 및 감염발생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세탁물을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세탁물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세탁물관리(※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세탁물의 수집, 운반, 세탁, 보관은 *오염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을 분리하여, 다른 시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오염세탁물: 피, 고름이 묻었거나 분비물에 의해 젖어 있는 세탁물

  *일반세탁물: 오염세탁물 외의 세탁물

- 세탁물
  - 침구류: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 의류: 산모복, 신생아복, 유니폼, 가운 등
  - 린넨류: 마스크,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린넨류
  - 기타: 커텐, 씌우개류, 수집용기(햄퍼) 등
- 세탁물 보관 및 운반
  - 세탁물 수집: 수집장소의 별도 구획, 수집용기(햄퍼), 수집장소 관리(소독, 세탁물 분류 등)
  - 세탁물 운반: 수집용기(햄퍼) 또는 운반용기에 넣어 밀봉하여 운반, 운반용기 관리(소독)
- 세탁물 처리(자체 또는 외부 위탁처리)
  - 자체처리: 세탁실 관리, 세탁방법(오염/일반세탁물 분리세탁, 세제선택 등)
  - 위탁처리: 위탁계약서 비치

- 세탁된 세탁물 보관
  •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전용 보관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2) 규정에 따라 오염된 세탁물을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세탁물 수집 장소
- 세탁 후 세탁물 보관 장소(전용 보관실)
- 세탁물 처리 근거자료

○ 판정기준

1) 세탁물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세탁물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5개 항목 이상 충족	- 점검표 4개 항목 충족	- 점검표 3개 이하 충족

■ 세탁물 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세탁물 수집용기 유무			
2	세탁물 수집장소의 별도 구획 여부			
3	세탁물 수집장소 관리상태(청소일지, 청결상태 확인)			
4	세탁물 분리 수집 여부(오염/일반세탁물 분리보관)			
5	세탁물 처리 상태(자체세탁, 외부위탁 확인)			
6	세탁 후 세탁물 보관장소 관리상태			

[8. 감염예방: 물품 소독·관리]

기준 8.4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및 물품관련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기구 및 물품의 감염예방 활동을 통하여 기구 및 물품 사용으로 인한 감염발생 위험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구 및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 수유물품(젖꼭지, 모유/분유병, 뚜껑 등)
- 기타(신생아실 및 산모개인실 요람, 목욕대야, 유축기, 좌욕기 등)
○ 세척/소독된 물품 보관 관리
○ 소독제 사용기준(국내외 인증 받은 물품소독제 사용)
○ 세척직원의 보호구 착용: 세척 시 보호 장구 착용(방수가운, 마스크, 장갑 등)

2-3) 규정에 따라 기구 및 물품을 세척, 소독, 보관하고, 직원은 세척 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기구 및 물품관리 관련 규정
-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보관장소
- 신생아실 소독 점검표

- 세척직원 복장 확인
- 사용 중인 물품소독제 사용설명서와 인증서

○ 판정기준

1) 기구 및 물품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수유물품(젖병, 젖꼭지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는 경우(자불: 열탕) 소독 또는 국내외 승인된 전용 소독제 사용) - 소독일지(신생아요람 관련사항 포함)를 작성하고 신생아요람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경우 - 목욕대야 소독은 중간수준 이상이며, 제품설명서에서 제시한 소독시간, 농도 등 준수함(직원 1인 이상 관찰) - 세척 시 필요한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있고, 세척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세척하여야 함 ⇒ 4개 모두 충족	- 4개 중 3개 충족 (※ 필수: 수유물품 소독여부는 충족해야함)	- 미충족

3) 세척/소독된 물품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수유물품(젖병, 젖꼭지 등)을 건조 후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신생아용품(기저귀, 물티슈, 비누, 목욕대야, 로션)은 신생아마다 개별보관, 사용하는 경우(단, 펌프용 비누, 펌프용 로션은 제외) - 목욕대야는 포개져 있지 않음(개별 포장 제외) - 유축깔때기, 좌욕대야는 산모마다 개별 보관, 사용하는 경우(단, 열탕소독을 하거나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는 경우 제외) ⇒ 4개 모두 충족	- 4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8. 감염예방: 환경관리]

기준 8.5

개인 및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환경위생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위생관리
- 청소 및 소독을 포함
- 개인위생관리: 산모/신생아복, 직원유니폼 관리 등
- 환경위생관리: 침상(린넨)관리, 청소, 소독 등 공용시설 등의 환경관리 등
○ 환경소독제 사용기준(국내외 인증 받은 환경소독제 사용)
○ 쓰레기통은 손으로 열지 않는 것(예, 발로 여는 쓰레기통 등)을 사용
○ 폐기물관리
- 자체처리: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 위탁처리: 위탁계약서 비치

2) 개인 및 환경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환경위생관리 규정

- 침구 및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 공용시설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 사용 중인 환경소독제 사용설명서, 인증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판정기준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점검표 항목 80% 이상 충족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	- 점검표 항목 60%이상~80%미만 충족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 미충족

■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미해당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2	신생아실, 산모실 내 꽃, 화분 비치 여부				
3	신생아실, 산모실 바닥 청결				
4	수유준비 구역(장소) 관리				
5	신생아 목욕 싱크대 관리				
6	화장실 관리(산모실, 공용화장실)				
7	좌욕실 관리				
8	청소용품 관리(환경소독제 승인여부, 청소도구 관리 등)				
9	손 씻기 시설의 청결도				
10	기구 세척 구역(장소) 관리				
11	청결물품 보관실 관리				
12	페달을 밟아 뚜껑을 열 수 있는 폐기물통 사용				
13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사본 및 위탁계약서 확인 (위탁관리인 경우만)				

[8. 감염예방: 급식관리]

기준 8.6

조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한다.

평가목적

산모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리장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식재료, 식기, 조리기구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미해당
3	식재료를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미해당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미해당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미해당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DR	P	정규	□유 □무 □미해당

평가항목의 이해

■ 조리장을 자체 운영하는 기관: 평가항목 6, '미해당'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조리장 위생 상태 관리
- 청소, 구역관리(오염/비오염)
- 식기 및 조리기구 관리(소독 및 보관방법)
- 음식물 쓰레기 관리

○ 식재료 검수 및 보관
-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 보관 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등

○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 온도관리, 식재료 종류별 분리보관, 청소 등

○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 복장준수(위생모자,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 등) 및 손 위생
- 유증상(설사, 고열 등) 직원 관리 등

○ 외부 위탁 시 관리
- 위탁업체 선정(위탁기관과의 계약서)
- 위생관리 계획 확인(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및 운영계획, 급식사고 발생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 위탁기관의 안정성 확인(위탁기관 인증서,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 현황 등)
- 급식 절차 등

2) 조리장의 위생상태(식기 및 조리기구 관리, 오염구역/비오염구역 구분, 음식물 쓰레기 관리 등)를 관리한다.

3) 식재료의 보관상태, 유통기한 등을 관리한다.

4) 조리장 냉장고 및 냉동고의 온도를 매일 점검(확인)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식재료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냉장고 및 냉동고 내·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5) 조리장 직원은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6) 조리장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
- 위탁계약서, 인증서, 위탁 운영에 따른 급·퇴식 관리 규정
- 식재료 유통기한, 보관상태 점검
-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 표시 및 점검 유무 확인
- 조리장 종사자 복장(위생모,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 착용 및 위생상태 점검
-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판정기준

1)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단, 위탁하는 경우 위탁 시 관리내용을 포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조리장의 식기,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건조된 상태로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조리장이 위생구역/오염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 당일 처리함	- '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

3) 식재료 관리상태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우 - 보관식품(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 - 식재료 개봉일자를 라벨링하여 관리하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	- '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

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냉장고와 냉동고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기록지 작성하고 있는 경우 - 식재료를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냉장고/냉동고 내외부가 청결한 경우(성에, 물기 없어야 함)	- '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

5)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조리원이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 손 위생을 수행함(80% 이상) -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80% 이상	- 일부 조리원이 복장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손 위생을 수행함(60% 이상) -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60% 이상	- 조리원이 복장을 착용하지 않거나, 조리원 복장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 - 손 위생을 수행함(60% 미만) -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60% 미만

■ **조리원 손 위생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충족	미충족	미해당
1	조리실에서 작업 시작 전·후			
2	세척 안 된 식자재 및 오물 취급 후			
3	각기 다른 종류의 식재료 취급 및 조리 전			
4	생선, 날고기 등 취급 후			
5	음식을 만지기 전			
6	기구나 설비 사용 전			
7	화장실 출입 후			
8	쓰레기 취급 후			
9	신체 부위나 몸을 만진 후			
10	작업 중에 전화를 받은 후			
11	소독제나 세척제를 만진 후			
12	코를 풀거나 기침, 재치기 한 후			

6) 외부위탁 시 관리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정규	- 위탁기관의 안정성 확인(인증서,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등)이 이루어진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짐 - 급식절차대로 수행되고 있음	- 위탁업체 계약서가 없거나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8. 감염예방: 종사자 관리]

기준 8.7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직원의 건강 유지와 업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직원 건강유지 및 감염성 질환 전파를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직원 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IT	P	필수	□유	□무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있다.	IT	P	필수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직원 안전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건강관리 활동
(※ 모자보건법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 직원 대상 예방접종 관리(인플루엔자, 백일해)
- 직원 건강검진(장티푸스, 폐결핵, 감염성 피부질환, 잠복결핵검진 등)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은 년 1회 정기적으로 관리(백일해는 미포함)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관리 지침
- 감염예방을 위한 점검활동(근무 시작 전 특정질병의 노출 경험 또는 보균상태 확인 등)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발생 시 절차, 직원의 근무 제한, 제한기간 등)

2)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해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3) [필수]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알고 있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관리 지침
-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제16조 제2항 관련) 〈신설 2020. 1. 16.〉

○ 판정기준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있고 교육을 실시함 - 종사자 위생관리점검표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종사자 위생관리가 되었는지 확인함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없음 - 종사자 위생관리점검표를 확인하였으나 종사자 위생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3)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대처방안, 근무 제한에 대해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100%)	- 대처방안, 근무 제한에 대한 직원의 숙지가 미흡함

[9. 감염관리]

기준 9.1

감염병으로부터 산모 및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평가목적

감염병 발생(의심) 시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산후조리원 내에 감염병 질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모 및 신생아, 직원을 보호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산모 또는 신생아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의 조치 및 관리 지침)
※ 참고: 보건복지부 감염관리지침을 따른다. 2019년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 관리 매뉴얼 참조
○ 감염병 환자군의 정의(예: 인플루엔자,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
- 격리방법
- 직원대상 격리 관련 교육 및 보호구 착용
- 의료기관 이송계획 및 보건소 신고
- 격리물품 구비
- 신생아 추가 감염 확인 등

2) 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의료기관 이송 전까지 별도의 격리실에 격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 판정기준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구체적인 조치 및 관리계획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8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함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점검 서류가 있음	-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6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함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작성함 위에 제시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중'에 제시된 3개 기준 중 1개 이하만 충족되는 경우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1. 모아애착
12. 부모교육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중영역	평가기준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11. 모아애착	11.1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위해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12. 부모교육	12.1 산모의 건강관리방안 및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10. 산모 건강평가]

기준 10.1

산모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평가목적

산모에게 적정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퇴실, 재원 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2) 산모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다.
(※ 기록 및 보관방법 등은 [5.운영관리: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 산모 건강평가
- 입·퇴실 시, 재원 시 : 활력징후, 하혈유무, 유방사정, 부종, 대소변, 정서 상태(산후 우울) 등
- 산후우울증 평가 시 점수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권고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산후우울증 설문지

○ 판정기준

1) 입·퇴실 시, 재원 중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80% 이상 기록 충족)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 일부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 (60%이상~80% 미만 기록 충족)	-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2) 재원 중 산모의 산후우울증 평가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를 시행함(설문지 작성) - 우울증 고위험군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 및 이송에 대한 근거 있음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함. (설문지 작성) - 우울증 고위험군이 있으나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가 없음	-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하지 않았음.

[11. 모아애착: 모자동실, 모유수유]

기준 11.1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위해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평가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모유수유와 애착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자동실 운영
- 사용기준, 시설과 환경관리, 주의사항, 사용설명과 동의 등
○ 모자동실 촉진 활동(교육)
○ 모유수유 촉진 활동(교육) 등

2) 계획에 따라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교육)을 수행한다.

3) 계획에 따라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교육)을 수행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신생아실/산모실 이용시간, 모유수유 실시 확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모아애착 증진 서식

○ 판정기준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모자동실 운영, 모유수유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모아애착 증진 서식을 작성하고 있음	-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계획이 없음

2) 모자동실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80%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5인을 선정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자동실이 어려운 대상자는 제외)	-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60% ~ 80% 미만	-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산모실 이용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60% 미만

※ 모자동실 이용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신생아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5점 가산

3) 모유수유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80%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 5인을 선정하여 신생아 건강기록지를 이용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유수유가 금기인 경우, 산모가 거부한 경우는 제외)	-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60% ~ 80% 미만	-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으나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없음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 실시하는 산모의 비율이 60% 미만

※ 모유수유 촉진 활동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5점 가산

* 모유수유 촉진활동: 1) 개별교육, 2) 집단교육, 3) 부부교육, 4) 개별상담, 5) 부부상담, 6) 신생아 돌보기 시범, 7) 직접간호 제공, 8) 기타(_____)

[12. 부모교육]

기준 12.1

산모의 건강관리방안 및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목적

출산 후 산모의 적절한 건강관리 및 안전하게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DR	P	필수	□상	□중	□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DR	P	필수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부모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교육계획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예산 등

○ 교육내용
- 산모 건강관리방안
  - 산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법
  - 산욕기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회음부 감염, 수술부위 감염, 자궁내막염, 복막염, 혈전성 정맥염 등의 예방방법 등)
  - 회음패드 교환 방법과 좌욕 방법
  - 유선염의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영양섭취 기준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응급상황(구토, 설사, 발열, 황달, 무호흡 등)과 대처방법
•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과 모유수유방법
• 모유수유의 어려움과 해결방법
• 분유수유 하는 방법, 주의사항
• 수유자세, 트림방법 등
• 신생아 목욕방법
•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배꼽관리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 방법
  (예)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

○ 교육방법
- 1:1 교육, 책자교육, 사이버교육 등
-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 활용

2~5) 계획에 따라 산모별, 교육별로 교육을 시행하고 관리하며 교육 참여를 촉진한다.

6) 아버지가 산후교육(산모의 산욕기 교육),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교육계획 또는 교육지침
- 교육자료
- 교육이수 기록지: 교육일지 또는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강의료 지불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 판정기준
1) 부모교육 계획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부모교육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부모별, 교육별 계획 스케줄 • 이수자 관리 -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가 작성됨	- 계획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 계획이 없음

2)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산모건강관리방안'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산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안 • 산욕기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패드교환 방법 및 좌욕방법 • 유선염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영양섭취 기준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산모건강관리방안' 교육 영역 중 4개 이상의 영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음(근거자료 있음) - 교육 이수자료가 있으나 일부 누락됨	- '산모건강관리방안'의 교육내용 중 3개 이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돌봄'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신생아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 신생아 수유자세 • 신생아 목욕방법 •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 신생아 배꼽관리 방법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 (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신생아 돌봄' 교육 영역 중 5개 이상의 영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 이수자료가 있으나 일부 누락됨	- '신생아 돌봄'의 교육 영역 중 4개 이하의 영역에서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자료: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교육자료 없음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일정이 없음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5) 영아돌연사 예방방법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교육 자료가 없음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6) 아버지의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함 (교육 자료 근거서류)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14. 신생아 건강평가
15. 신생아관리

Ⅵ. 신생아 돌봄 서비스

중영역	평가기준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식별한다.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15. 신생아 관리	15.1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15.2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5.3 신생아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13. 신생아 확인]

기준 13.1

신생아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식별한다.

평가목적

신생아 식별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신생아 식별방법
- 식별정보와 인식표 활용
  - 식별정보: 이름, 성별, 출생 시 몸무게, 출생일자 등
  - 인식표: 팔찌, 발찌, 네임스티커 등
-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신생아 식별방법 적용
- 동명 2인의 산모가 재실하는 경우 구분을 위하여 (산모명) 아기, (성별), (출생일자), (출생시 몸무게) 순으로 이용하여 구분한다.

○ 신생아 식별이 필요한 시점
- 입·퇴실 시
- 신생아아실 면회, 모자동실 이용, 수유 전, 목욕 시, 약품 투여 전,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등

2) [필수]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3) [필수]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산모로부터 전달받는 경우 간호(조무)사 1인과 산모가 동시에 확인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출입기록지(신생아 건강기록부 대치 가능)

○ 판정기준

1)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신생아 인식표 사용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반드시 발찌 혹은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를 사용하고, 추가로 1개 이상의 인식표를 사용해야 함	- 발찌 또는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만 사용 - 발찌, 팔찌 이외의 인식표만 2개 사용	- 발찌, 팔찌 이외의 인식표 1개 사용

3)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전달 시 간호(조무)사와 산모가 확인함(관찰건수 100% 충족) - 2가지 이상의 신생아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확인함	- 관찰건수 60% 이상 - 신생아 식별 시 산모이름만 확인함	- 관찰건수 60% 미만

[14. 신생아 건강평가]

기준 14.1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평가목적

신생아의 입·퇴실, 재원 시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3)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한다.
(※ 기록 및 보관방법 등은 [5.운영관리: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 신생아 건강평가
- 입·퇴실 시, 재원 시 : 구토, 설사, 호흡수, 호흡양상, 체온, 피부발진, 배꼽상태, 눈 분비물, 황달, 예방접종여부 등

평가방법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판정기준

1) 입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100%)	- 일부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 (60% 이상 기록 충족)	- 신생아에 대해 입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2) 재원 중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에 위의 내용에 대해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1회 이상)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80% 이상 충족)	- 일부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60% 이상 충족)	- 신생아에 대해 재원 중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3) 퇴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혹은 퇴원교육 체크리스트의 건강사정 5건 확인, 80%이상 충족)	- 일부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60% 이상 충족)	- 신생아에 대해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15. 신생아 관리: 위생관리]

기준 15.1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평가목적

출생 후 면역체계가 성숙하지 못한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감염발생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신생아 위생관리
- 목욕관리
- 배꼽관리
- 눈 분비물 관리
- 피부상태 관리(기저귀 발진 등)
- 물품관리(수유물품, 목욕대야, 기저귀, 물티슈 등)
- 배설물 처리 등

○ 신생아 위생관리는 건강한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재원 중 1일 1회 이상 실시

2) 신생아에게 감염성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수행하고, 신생아 용품은 개별 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위생관리지침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판정기준

1)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신생아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지침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지침이 없음

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모든 신생아에 대해 1일 6회 이상 기저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기록이 있음 - 모든 신생아의 배꼽상태가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기저귀가 배꼽을 덮지 않음 - 모든 신생아의 눈이 분비물이나 감염증상 없이 깨끗하거나, 감염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의료기관 진료 후 처방받은 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짐 (※ 재원중인 신생아 3인 선정하여 신생아기록지 확인) ⇒ 3개 모두 충족	- 3개 중 2개 충족함 - 3개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관찰되나 기록이 누락됨	- 미충족

[15. 신생아 관리: 신생아 수유]

기준 15.2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평가목적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신생아에게 적절한 수유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수유물품관리, 수유준비, 보관된 모유나 분유 사용과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생아의 위장관감염 위험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IT	P	필수	□유	□무	

평가항목의 이해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모유의 보관 및 관리
- 냉장·냉동 보관기한, 보관상태 점검 등
○ 분유의 보관 및 관리(분유 선택기준)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분유
- 온전한 분유통에 담겨져 있는 분유
- 시원한 실내에 보관된 분유 등
○ 수유준비과정 및 수유방법
- 수유물품 사용방법, 모유(분유) 준비, 모유(분유)데우기 등
- 모유(분유) 수유 방법
- 수유 중 신생아 상태 관찰
- 수유 후 처리방법

○ 수유준비실 관리
○ 냉장·냉동고 관리

2)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모유는 산모별로 분리하여 모유에 라벨링하여 보관하고, 보관기한을 준수한다.

3) 분유 선택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분유를 선택하고 관리한다.

4) 수유를 준비하는 곳은 신생아를 목욕시키는 곳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이 전파되지 않도록(목욕물이 튀지 않을 정도)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수유준비 전용 싱크대에서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5) [필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하고, 수유 시 신생아 혼자서 젖병을 물지 않게 한다. 모유수유 시에는 신생아실과 구분된 수유실 또는 산모실에서 실시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후 실시한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수유관리규정(지침)
- 수유준비과정 및 수유 관찰

○ 판정기준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규정이 없음

2)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모유는 산모별로 분리, 라벨링하여 보관하고 있음 - 보관기한을 준수함 • 냉장 보관한 모유는 72시간 이내에 사용함(유축시간 기록되어 있고, 72시간 이내임) ⇒ 2개 모두 충족	- '상'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 보관 중인 모유가 산모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 보관기한이 경과된 모유가 있음

3) 분유 관리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분유를 사용함 - 온전한 분유통에 담겨져 있는 분유를 사용함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청결한 곳에 보관되어 있음 - 분유의 개봉일자가 라벨링되어 있음(분말분유는 3주, 액상분유는 제품 권장기간 이내 사용) ⇒ 4개 모두 충족	- 4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4) 수유준비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수유준비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음 - 수유 준비 전용 싱크대가 있음 - 모유를 데울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음 - 분유를 탈 물은 100℃이상 완전히 끓임 - 분유는 수유 직전에 준비하여 보관하지 않고 바로 수유함 (관찰 불가 시 직원 숙지 확인) ⇒ 5개 모두 충족	- 5개 중 3개 충족	- 미충족

5) 수유 실시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모유수유 시 수유실 또는 산모실에서 실시함 - 젖병을 문 채로 혼자 있는 신생아가 없음 - 수유 후 남은 분유(모유)는 버림	- 젖병을 문 채로 혼자 있는 신생아가 있음 - 수유 후 남은 분유(모유)를 보관함

[15. 신생아 관리: 안전관리]

기준 15.3

신생아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목적

신생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체적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한다.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필수	□상	□중	□하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IT	P	필수	□상	□중	□하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IT	P	필수	□상	□중	□하

평가항목의 이해

1)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신생아 이동 시 안전관리 및 산모에게 인계 시 출생 정보 확인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
○ 신생아 수면자세 관찰(앙와위, 측위자세)
○ 요람 관찰(시트가 단단하며, 푹신한 베개나 인형이 없어야함)
○ 산모실에서 신생아 수면 시 교육(산모침대 사용하지 않기)
○ 신생아 호흡상태, 피부색 변화 관찰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신생아 안전관리 교육(대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2) [필수] 직원은 규정에 따라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3) [필수] 직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평가방법

○ 확인내용
- 신생아 안전관리규정(지침)

○ 판정기준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	- 안전관리 규정이 없음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안전관리 교육 근거자료 확인) - 다음의 신생아 안전관리 준수 • 신생아의 이동 시 신생아 요람이나 신생아 침대를 이용하여 이동, 신생아의 출생 정보(산모이름, 성별, 출생날짜)를 확인 후 산모에게 인계함. • 재원 중인 모든 신생아가 앙와위 또는 측위 자세임 • 모든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며, 푹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없음 • 모든 산모가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재원 중인 산모 3인 선정)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 80% 미만(안전관리 교육자료 확인) - 신생아의 안전관리 준수 내용 중 1개 항목 미흡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 신생아 안전관리 준수 내용 중 2개 이상 미흡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 80% 미만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부록.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2022최종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필수**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정규
			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정규
	2.2	종사자 교육·계발	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규
			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필수**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1.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정규
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정규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정규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4.2	소방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필수**
			3.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필수**
			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정규
	4.3	낙상예방관리	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필수**
Ⅲ.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5.1	입·퇴실 관리	1.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필수**
			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필수**
			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정규
			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정규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필수**
			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필수**
	5.3	문서관리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정규
			3.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정규
	5.4	방문객 관리	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필수**
			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시범
			2.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정규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정규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정규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시범
			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시범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존 분류
			3. 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8.2	개인보호구 착용	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이 있다.	정규
			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정규
	8.3	세탁물 관리	1.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세탁물을 관리한다.	정규
	8.4	물품 소독·관리	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정규
			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정규
	8.5	환경관리	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정규
	8.6	급식관리	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정규
			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3. 식재료를 관리한다.	정규
			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정규
			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정규
			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정규
	8.7	종사자 관리	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	**필수**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필수**
			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필수**
Ⅴ.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5. 영아돌연사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Ⅵ.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확인	13.1	신생아 확인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정규
15. 신생아관리	15.1	위생관리	1.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정규
			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정규
	15.2	신생아 수유	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규
			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정규
			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정규
			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필수**
	15.3	안전관리	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필수**
15	30		98(필수 40, 시범 5)	

부록 2. 산후조리원 컨설팅 안내문 및 컨설팅 신청서(기관용 신청서)

2022년 산후조리원 컨설팅 안내문

1 산후조리원 컨설팅이란?

- 산후조리원 컨설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 돌봄, 모아애착, 부모교육 및 감염예방 영역에서의 적정성과 건강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향후 실시될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산후조리원 현장의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된 준비를 돕고자 실시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산후조리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음

2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의 3년간 1~3차 컨설팅 78개소(중도 취소 포함), 1일 방문 컨설팅 110개소로 총 188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컨설팅을 수료했습니다.

구분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
1~3차 컨설팅 사업	32개소	30개소	16개소	78개소
1일 방문 컨설팅 사업	20개소	36개소	54개소	110개소
계	52개소	66개소	70개소	188개소

3 산후조리원 컨설팅의 종류

- 컨설팅은 1~3차 3번의 개별산후조리원 방문을 통해 진행되는 **'1~3차 컨설팅'**과 하루방문(6~8시간)의 **'1일 방문 컨설팅'**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이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3차 컨설팅]** **1~3차 컨설팅은 컨설팅의 전체 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 달 간격 총 3차의 컨설팅으로 구성됩니다. 1차에는 컨설턴트가 개별산후조리원을 방문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며, 2차 컨설팅에서는 중간 점검 성격의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3차 컨설팅은 컨설팅 이행과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1일 방문 컨설팅]** 1일 방문 컨설팅은 일정상 전체 컨설팅을 받기가 어려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향후 평가 준비를 위한 방향 설정, 해당 산후조리원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대안 제시 등**으로 진행됩니다.

컨설팅은 2022년 6월부터 11월 중에 실시되며, 컨설팅에 신청해주신 산후조리원에는 컨설팅 진행에 대한 개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컨설팅은 컨설턴트의 직접 방문으로 실시되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하에 규정된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1~3차 컨설팅 운영절차 |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설명회	• 컨설팅 사업설명회 개최 -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교육 - 컨설팅 진행방법 안내	원하는 산후조리원 모두 참여 가능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참여 신청 접수 • 컨설팅 참여 산후조리원 선정 및 통보 • 컨설팅 운영체계 안내	설명회에 참석한 산후조리원 중 컨설팅 신청을 받은 후 컨설팅 기관 선정
1차 컨설팅	• 시범평가 시행과 컨설팅 병행 • 현장에서 원하는 부분과 전문가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파악한 부분 점검	컨설턴트 2명이 컨설팅 수행
2차 컨설팅	• 중간점검 및 피드백	컨설턴트 1명이 컨설팅 수행
3차 컨설팅	• 컨설팅 내용 이행여부 점검	컨설턴트 1명이 컨설팅 수행
부모교육	• 부모교육 강사 파견	부모교육 전문가 강사 파견
사후관리	• 컨설팅 만족도 조사 • 컨설팅 참여기관(1~3차 컨설팅 참여 기관만) 사후간담회 • 수기공모전(신청시 소정의 사은품 지급함)	향후 사업에 활용

| 1일 방문 컨설팅 운영절차 |

단계	주요 내용	비고
설명회	• 컨설팅 사업설명회 개최 -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교육 - 컨설팅 진행방법 안내	원하는 산후조리원 모두 참여 가능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신청 및 접수	신청 기관 중 선정
1일 방문 컨설팅	• 평가영역에 대한 평가 준비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안내	컨설턴트 1명이 컨설팅 수행
사후관리	• 컨설팅 만족도 조사	향후 사업에 활용

◉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2022년도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 산후조리원 컨설팅 신청서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수요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컨설팅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신청을 원하시는 산후조리원은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화	02-398-7718(산후조리원 컨설팅 사무국)	팩 스	02-398-7798
이메일	consulting@kicce.re.kr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 육아정책연구소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무국		

1 산후조리원 컨설팅 참여 신청

- 2022년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하는 컨설팅 종류에 표시해 주십시오. 이전에 컨설팅에 참여했었던 조리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해당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1~3차 컨설팅 참여	(　　)
1일 방문 컨설팅 참여	(　　)

- **1일 방문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실 경우, 해당하는 곳에 O 표시를 해주십시오.**

구분	컨설팅이 가능한 월에 V표시를 해주십시오.
6월	(　　)
7월	(　　)
8월	(　　)
9월	(　　)
10월	(　　)
11월	(　　)

※ 컨설팅 시작일은 담당 컨설턴트와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 산후조리원 온라인 컨설팅 설명회 참여 신청

- 컨설팅 설명회는 컨설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로 컨설팅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산후조리원이 온라인 컨설팅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1~3차 컨설팅 및 1일 방문 컨설팅에 신청한 산후조리원은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2022년 온라인 컨설팅 설명회 참여를 원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기입해 주십시오.

참석여부	참석 (　　)
온라인 설명회 내용 (2시간)	1. 산후조리원 컨설팅 소개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
	2.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에 대한 이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김희선 교수)
	3. 산후조리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공단 임진석 차장)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현장 문의가 많아 온라인 설명회 내용으로 구성함

3 산후조리원 기본정보

산후조리원명			
주 소			
대표자명			
운영형태		□ 단독 □ 체인 □ 병의원 직영(부설) □ 지자체 운영(공공) □ 기타(　　)	
산 모 실		일반실 (　　)개	특실 (　　)개
연락처 (담당자)	성 함		
	전 화		
	휴대폰		
	e-mail		
과거 컨설팅 참여경험		□ 없음 □ 있음 (　　) ※ 경험이 있는 경우 연도와 받으신 컨설팅 종류(1-3차 방문 / 1일 방문)를 써 주십시오.	

- **문의처**
  육아정책연구소 컨설팅 사무국: 02-398-7718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백록담 주무관: 044-202-3398

부록 3.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조사표(기관용)

산후조리원 운영현황

Ⅰ. 기본정보

<table>
<tr><td rowspan="3">기본정보</td><td>산후조리원명</td><td colspan="3"></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대표자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개설일</td><td>최초</td><td>년 월 일</td><td>현업자</td><td>년 월 일</td></tr>
<tr><td>산후조리업자</td><td colspan="4">☐ 개인(명), 의사(명), 한의사(명), 조산사(명), 간호사(명), 간호조무사(명)
☐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 법인명( )</td></tr>
<tr><td>운영형태</td><td colspan="2">☐ 단독
☐ 체인
☐ 병의원 직영(부설)
☐ 지자체 운영(공공)
☐ 기타( )</td><td>이용요금
(기본요금)</td><td>☐ 일반실(만원)
☐ 특 실(만원)
☐ 기 타(만원)</td></tr>
</table>

〈작성방법〉
1. 개설일(신고증에 기재된 날)
   : 최초 산후조리원 개설일과 지위승계 등으로 산후조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현업자 개설일 모두 기재
2. 이용요금: 일반요금은 단태아, 2주, 카드결제 기준으로 작성하고, 특실요금은 일반요금과 동일기준이되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비싼 방의 요금을 기재. 일반, 특실외의 요금체계가 있는 기관의 경우 기타란에도 기재

Ⅱ. 시설 및 이용현황

<table>
<tr><th colspan="10">1. 시설현황</th></tr>
<tr><td>위치</td><td>산모실</td><td colspan="3">(　　) 층</td><td>신생아실</td><td colspan="4">(　　) 층</td></tr>
<tr><td rowspan="2">산모실</td><td>정원</td><td>1인실</td><td>2인실</td><td>3인실</td><td rowspan="2">신생아실</td><td>정원</td><td>A실</td><td>B실</td><td>C실</td></tr>
<tr><td>명</td><td>명</td><td>명</td><td>명</td><td>(　　)명
(　　)㎡</td><td>(　　)명
(　　)㎡</td><td>(　　)명
(　　)㎡</td><td>(　　)명
(　　)㎡</td></tr>
<tr><th colspan="10">2. 이용현황</th></tr>
<tr><td colspan="10">※평가 직전 월 1개월 간 기준으로 작성</td></tr>
<tr><td>산모실에 신생아가 머무는 하루 평균 시간</td><td colspan="9">※전체 신생아 수:　　명
☐ 4시간 미만(　　%)　☐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
☐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 12시간 이상~16시간 미만(　　%)
☐ 16시간 이상(　　%)</td></tr>
<tr><td>모유수유 비율</td><td colspan="9">☐ 완전모유(　　%)　☐ 모유+인공(　　%)　☐ 인공수유(　　%)</td></tr>
<tr><td colspan="10">※평가 직전 년도 12개월 간 기준으로 작성</td></tr>
<tr><td>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 수</td><td colspan="3">(　　) 명</td><td colspan="2">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수</td><td colspan="4">(　　) 명</td></tr>
</table>

〈작성방법〉

1. 산모실에 신생아가 머무는 하루 평균 시간
   : 평가 직전 월 1개월 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전체 신생아의 1일 평균 산모실에서 머무는 시간, 비율을 계산하여 기재
2. 모유수유 비율
   : 평가 직전 월 1개월 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전체 신생아의 수유형태 비율을 계산하여 기재
3.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 수
   : 평가월 전월까지 12개월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를 기재
   [예시] 2018년 평가기관의 경우 2017년 12개월간 매일 입실 중인 영유아(신생아)수를 합산한 후 12개월의 총 날짜 수(예: 365일)로 나누어 계산함
   - 12개월간 총 입실 영유아(신생아)수가 5,000명인 경우: 5,000명 ÷ 365일 = 13.7명(14명)
     ※ 소수점자리 올림: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4.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수
   : 평가일 직전 년도 12개월간 실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수를 기재하되, 입실일수와 상관없이 1일이라도 산후조리원을 이용(입실)했다면 해당 산모를 포함하여 기재

Ⅲ. 인력현황

작성기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종사자 수(평가 직전 년도 12개월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기준)				
구분	**계**	**인원수(명)**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총계				

2. 간호(조무사) 근무현황(평가 직전 년도 12개월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기준)				
근무교대		**1조**	**2조**	**3조**
근무시간		~	~	~
근무인원 (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성방법〉
1. 종사자 수
- 계약직: 일정기간(1년 단위)이상 산후조리원과 신분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받는 직원임
- 임시직: 단기간(6개월 미만)동안 고용한 직원임
-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 대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 기재 (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정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

[예시 1]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가 20명인 경우 : 11명
- 간호사: 20명 ÷ 7명 = 2.9명(3명)
- 간호조무사: 20명 ÷ 2.5명 = 8명

※ 소수점자리 올림: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예시 2] 간호사 정원의 30%범위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경우
- 간호사 정원이 4명인 경우부터 1명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 간호사 정원이 3명인 경우 대체 불가(3명 중 1명이면 33.3%이므로 범위 초과)

[예시 3]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이 2명으로 계산된 경우
- 간호사는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3교대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2명으로 계산된다 하더라도 3명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해야 함
- 영양사: 평가일 직전 년도 12개월간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기재 (1일 평균 입실 임산부(산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1명 두어야 함)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 계산방식과 동일함
- 취사부(조리원):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조리원)를 두어야 함
- 미화원: 규모에 따라 임산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음

부록 4. 자체평가지(기관용)

자체평가지

_____산후조리원

(주소) _____

1. 시설 적정성

	평가항목	분류	평가결과		
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필수	□상	□중	□하
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정규	□유	□무	
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정규	□상	□중	□하
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정규	□유	□무	

2. 손 위생

	평가항목	분류	평가결과		
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필수	□상	□중	□하
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상	□중	□하
3	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필수	□상	□중	□하
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필수	□상	□중	□하
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필수	□상	□중	□하

3. 신생아 확인

	평가항목	분류	평가결과		
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필수	□상	□중	□하
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필수	□상	□중	□하
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필수	□상	□중	□하

4. 모자동실, 모유수유

평가항목		분류	평가결과		
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필수	□상	□중	□하
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상	□중	□하
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필수	□상	□중	□하

5. 부모교육

평가항목		분류	평가결과		
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필수	□상	□중	□하
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필수	□상	□중	□하
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상	□중	□하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상	□중	□하
5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필수	□상	□중	□하
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필수	□유	□무	

부록 5.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컨설턴트용)

산후조리원 현장평가표

평가대상 산후조리원 명칭	
현장 평가자 성명	(서명)
현장 평가일자	년 월 일

[현장평가표 Ⅰ. 1.1] 인력 적정성 (보건소 실태조사서)

○ 확인내용

- 보건소 실태 조사서 결과 확인
  1) 종사자 근무표, 종사자 관리 대장*
  2)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신생아 입실자료 - 신생아 재원 관리 대장
- 실제 건강관리인력 운영현황 조사

※ 평가점수와 무관한 실태조사 용도임

I.1.1-1) 법적 인력기준 준수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법적 인력기준 준수			

번호	구분	평가결과 (실태조사)		비고	
		충족	미충족	시정조치 받음	시정조치 해결
1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				
	년 분기				

☞ 실제 건강관리인력 운영현황 조사

분류	평가항목	간호사	간호조무사	계
실태조사	실제 건강관리인력 운영현황	명	명	명

[현장평가표 Ⅰ.2.1] 종사자 채용/유지 (종사자 인사정보)

○ 확인내용
-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갱신 서류
- 종사자의 건강검진진단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종사자 보안 각서(개인정보 취급자 보안 서약서)
- 직무기술서
- 신규 채용 직원 결격 사유 조회 신청서(산후조리원용)
  (※ 병의원 부설인 경우 병의원 종사자 인사정보도 같이 확인함)

I.2.1-1)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인사관리의 규정 확인			

I.2.1-2 직원 채용 절차에 따른 적정 인력 모집 / 배치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직원 채용 절차 준수		

I.2.1-3 인사 정보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인사정보 관리 여부 확인			

I.2.1-4 직무기술서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정규	직무기술서 여부		

[현장평가표 Ⅰ.2.2] 종사자 교육/계발(년도별)

○ 확인내용
- 연간 교육 계획서
- 교육이수 근거서류: 교육일지, 또는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20. 1. 16.〉
- 종사자 교육 대장(자체 교육 확인용)
-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근거서류

Ⅰ.2.2-1) 연간 직원교육 계획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연간 직원 교육계획 (예산(지원)이 포함)			

Ⅰ.2.2-2)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1) 산후조리원 필수 교육
2) 법정의무교육
3) 신규직원 교육
4) 기타 직무교육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 기타 직무교육 또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신규자 교육 제외)을 계획하고 실제 실시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5점 가산

Ⅰ.2.2-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현장평가표 Ⅰ.2.3] 종사자간 의사소통

○ 확인내용

- 근무 교대 규정
- 근무 교대 일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료)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료)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Ⅰ.2.3-1)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 확인			

Ⅰ.2.3-2)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 여부 확인

1) 건강기록부, 교대근무일지 확인
2) 직원 인터뷰: 근무 교대 시 정보 공유 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근무 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 확인			

[현장평가표 Ⅱ.3.1] 시설 적정성

○ 확인내용
- 산후조리원 도면
- 임산부(산모)실, 영유아(신생아)실 적정성 확인(관찰)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 모자보건법 일반서식,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갈음함)

Ⅱ.3.1-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 손 씻기 시설 확인

(※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세면대 또는 손 소독기(제) 등의 손 씻기 시설)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의 손 씻기 시설			

Ⅱ.3.1-2) 신생아 요람과 요람 사이 간격 확인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한지 확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 영유아실(신생아실)
-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함)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 영유아(신생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
  ※ 공용면적 제외는 2017. 7. 1.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정규	신생아 요람사이 간격		

※ 모자보건법 일반서식, 보건소 실태조사서의 결과 확인으로 갈음함

Ⅱ.3.1-3) 사전관찰실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사전관찰실 여부			

Ⅱ.3.1-4) 외부에서 신생아실 관찰 가능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정규	외부에서 신생아실 관찰 가능여부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산후조리원명		개 설 일	최 초 현업자
주 소 지		전화번호	( )

Ⅰ. 일 반 사 항

산후조리업자	☐ 개인(명), 의사(명), 한의사(명), 조산사(명), 간호사(명), 간호조무사(명), 일반인(명), 기타(명) ☐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 법인명 ( )		
운 영 형 태	☐ 단독 ☐ 체인 ☐ 병의원 직영(부설) ☐ 기타( )	건 물 형 태	☐ 단독건물 ☐ 병의원건물 ☐ 복합건물
		건 물 규 모	입주 구역 (층 수) _____층 (면 적) _____㎡ 전체 건물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면적) _____㎡
협력의료기관 의료기관명		급 실 시 설	☐ 직영 ☐ 위탁
협력의료기관 종 별	☐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협력의료기관 동일건물 소재	☐ 유 ☐ 무	세 탁 실	☐ 직영 ☐ 위탁
협력의료기관 거 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 일반실(만원) ☐ 특 실(만원)	이용요금 공개방법	☐ 접수창구·안내실 등 게시 ☐ 책자 등 비치 ☐ 홈페이지 공개 (주소 : www.)
산모실에 신생아가 머무는 하루 평균 시간	☐ 4시간 미만 ☐ 8-11시간 ☐ 4-7시간 ☐ 12-23시간 ☐ 24시간	가 입 보 험	☐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보험사명 :) ☐ 화재보험 ☐ 기타( )

임 산 부 실	정원	1인실	2인실	3인실
	명	실	실	실

영 유 아 실	정원	A실	B실	C실
	명	명 (㎡)	명 (㎡)	명 (㎡)

모유수유 비율	완전모유	모유+인공	인공수유
	%	%	%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	명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수(6개월간)	명

종 사 자 수	구 분	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취사부(조리원)	미화원	기타
	정 규 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임 시 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근 무 교 대	1조	2조	3조
근 무 시 간	~	~	~

근무인원				
간 호 사	명	명	명
간호조무사	명	명	명

〈작성 방법〉

1. 개설일(신고증에 기재된 날)
   - ▸ 최초 산후조리원 개설일과 지위승계 등으로 산후조리업자가 변경된 경우 현업자 개설일 모두 기재
2. 산후조리업자
   - ▸ (개인) 해당 자격에 인원 수 기재, 자격 중 간호사와 조산사 둘 다 해당되는 경우는 조산사 란에 기재(간호사와 조산사 중복기재 불가), 열거된 자격 중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기타 란에 해당자격을 기재하고 인원 수 기재
   - ▸ (법인) 해당 법인 종류에 ○표시하고 법인명 기재
3. 건물형태/ 규모
   - ▸ (건물형태) '단독건물'은 산후조리원으로만 구성, '병의원건물'은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으로만 구성, '복합건물'은 타 용도 시설과 산후조리원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 한 건물에 병의원(약국포함)과 산후조리원, 타 용도시설(편의점, 은행 등)이 모두 같이 있는 경우는 복합건물에 해당
   - ▸ (건물규모) 입주구역에는 산후조리원의 층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전체건물은 산후조리원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전체 층수와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에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을 기재
4. 협력의료기관
   - ▸ 협력의료기관은 산모, 신생아 이송 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종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산후조리원 동일건물 소재유무, 산후조리원에서 협력의료기관과의 거리를 기재
5.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 ▸ 일반요금('만원' 단위)은 단태아, 2주, 카드결제 기준으로 작성하고, 특실 요금은 일반요금과 동일기준이되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비싼 방의 요금을 기재
6. 이용요금 공개방법
   - ▸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모두 체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되, 산후조리원의 별도 홈페이지는 없으나 산부인과 홈페이지를 통해 산후조리원이 안내되는 경우 해당 산부인과 홈페이지 주소 기재
     *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 모두 이용요금을 공개해야함
7. 가입보험
   - ▸ 모자보건법에 따른 감염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보험은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란에 체크하고 가입 보험사명을 기재, 화재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화재보험일 경우 화재보험 란에 체크하고, 나머지 가입보험은 기타 란에 모두 기재
8. 영유아(신생아)실
   - ▸ 정원에는 실당 정원을 합하여 기재/ A, B, C실당 정원을 각각 기재하고 해당 면적을 기재
9. 1일 평균 입실 영유아(신생아)수
   - ▸ 점검당시 직전년도(전년도) 12개월분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를 기준
10. 산후조리원 이용산모수 (반기 마지막날인 6월30일, 12월 31일 경과 후 기재)
    - ▸ 6개월 동안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수를 기재하되, 입실일수와 상관없이 1일(중도 퇴실의 경우)이라도 산후조리원을 이용(입실)했다면 해당 산모를 포함하여 기재
      * 예시) 7.2일 1명, 7.6일 2명의 산모가 각각 2주간 이용 후 퇴실, 7.28일 입실 산모 1명이 일주일만 이용 후 중도 퇴실한 경우 7월 중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총 산모수는 4명(입실일수 계산×)
    - ▸ 산후조리원은 월별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수를 기록관리
    - ▸ 신규개설된 산후조리원은 개설시점부터 6.30일 또는 12.31일까지 이용산모수를 기재하고 해당기간도 같이 기재
11. 종사자수
    - ▸ 종사자수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어도 포함하지 않음. 미포함(산후조리업자 제외)

[현장평가표 Ⅱ.4.1] 설비관리

○ 확인내용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계획
- 전기, 가스, 급수설비 안전점검 근거서류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근거서류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Ⅱ.4.1-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규정			

Ⅱ.4.1-2) 전기설비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전기설비 관리			

Ⅱ.4.1-3) 가스설비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미해당
정규	가스설비 관리			

Ⅱ.4.1-4) 급수설비 및 수질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급수설비 및 수질관리			

Ⅱ.4.1-5)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실내공기질 관리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점검항목	중점점검사항	이상 유무 확인	
		충족여부	조치결과
전기	1.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사용 유무 및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전기시설 사용 적정여부(문어발식 사용금지)		
	3. 전선의 피복상태		
	4. 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손상여부		
가스 시설	1. 가스시설 사용 적정 여부		
	2. 가스사용 구역 가스 누설 유무		
	3. 가스누설 경보 자동 차단장치 상태		
급수	1. 정수기 오염상태 확인		
	2. 정수기 기록 유지관리 확인		
실내 공기	1.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 관리기준 준수		
	2. 에어컨 오염상태 확인		
	3. 환기시설 오염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혹은 주기적인 환기 (일 최소 2회, 한회 당 20분 이상)		

※ 공기청정기가 있을 경우는 점검사항에 추가함.
※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오염 상태 점검 및 조치는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현장평가표 Ⅱ.4.2] 소방안전관리

○ 확인내용
- 소방안전 관련 규정
- 소방서에서 시행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확인(연 1회)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화재예방점검 계획
-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확인
- 소방훈련 근거서류(종사자 교육 대장으로 대체 가능)

Ⅱ.4.2-1)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소방안전관리 규정			

Ⅱ.4.2-2) 화재예방 점검 수행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화재 예방 점검 수행			

Ⅱ.4.2-3) 소방훈련 수행 여부 확인 및 직원 숙지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소방훈련 수행 여부 및 화재나 재난발생 시 대처방안 직원숙지 여부			

Ⅱ.4.2-4) 응급상황 시 연락체계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정규	응급상황 연락체계		

■ (소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호 서식)

(소방)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 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 · 변형 · 손상 · 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벨 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 · 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화재 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 · 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 · 목재 방염성능확보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⑬ 방염 소파 · 의자 사용 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현장평가표 Ⅱ.4.3.] 낙상예방관리

○ 확인 내용
-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
- 낙상예방 활동 근거 서류

Ⅱ.4.3.-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낙상예방 규정 확인			

Ⅱ.4.3.-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시행 여부			

■ 낙상예방 안전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실, 산모실 실내바닥 미끄러움 상태			
2	산모, 신생아실 직원의 신발 바닥 확인 (산모와 직원의 신발바닥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거나 신었을 때 미끄럽지 않음)			
3	낙상예방 안내문(스티커) 부착 (산모실, 신생아실 모두 안내문 또는 스티커 부착)			
4	조명관리(야간 조명관리 등)			

	실내바닥 미끄러움		신발바닥 미끄러움		낙상예방 안내문		조명관리 (야간조명)		비고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신생아실 1									
신생아실 2									
신생아실 3									
산모실 1									
산모실 2									
산모실 3									
수유실 1									
수유실 2									
수유실 3									

[현장평가표 Ⅲ.5.1] 입·퇴실관리

○ 확인내용
- 입·퇴실 관련 규정
- 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가입증명서
- 입실생활안내문: 입실 시 산모 교육 근거 자료
- 서비스 내용, 이용 요금 등의 게시(비치 확인)
-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고객용)

Ⅲ.5.1-1)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입·퇴실 관리에 대한 규정			

Ⅲ.5.1-2)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책임보험 가입 여부		

Ⅲ.5.1-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비치)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 게시(비치) 여부		

Ⅲ.5.1-4) 입실, 퇴실 시 산모 교육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1) 입실안내문의 산모 교육 내용 확인
2)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확인
3) 아래의 표와 같이 임의로 산모 3명에게 교육 내용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입실, 퇴실 시 산모 교육 시행 여부			

		평가결과	비고
책임보험가입		□ 예 □ 아니오	
약관, 이용요금표, 환불규정 비치		□ 예 □ 아니오	
산모 1	보안교육	□ 예 □ 아니오	
	소방안전교육	□ 예 □ 아니오	
	방문객관리교육	□ 예 □ 아니오	
	감염예방관리교육	□ 예 □ 아니오	
	의료기관이송교육	□ 예 □ 아니오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 예 □ 아니오	
	낙상예방 교육	□ 예 □ 아니오	
산모 2	보안교육	□ 예 □ 아니오	
	소방안전교육	□ 예 □ 아니오	
	방문객관리교육	□ 예 □ 아니오	
	감염예방관리교육	□ 예 □ 아니오	
	의료기관이송교육	□ 예 □ 아니오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 예 □ 아니오	
	낙상예방 교육	□ 예 □ 아니오	
산모 3	보안교육	□ 예 □ 아니오	
	소방안전교육	□ 예 □ 아니오	
	방문객관리교육	□ 예 □ 아니오	
	감염예방관리교육	□ 예 □ 아니오	
	의료기관이송교육	□ 예 □ 아니오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 예 □ 아니오	
	낙상예방 교육	□ 예 □ 아니오	

Ⅲ.5.5-5)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현장평가표 Ⅲ.5.2] 의료기관 연계/이송

○ 확인내용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절차)
-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 최근 1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19호 서식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결과*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Ⅲ.5.2-1)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Ⅲ.5.2-2)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의료기관 연계·이송 절차(지침) 준수 여부			

번호	세부 항목		평가결과	비고
1	이송여부 결정기준		☐ 있음 ☐ 없음	
	결정기준 준수 (해당되는 경우)	신생아 1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신생아 2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신생아 3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2	이송절차		☐ 있음 ☐ 없음	
3	보건소장 보고지침		☐ 있음 ☐ 없음	
	보고 여부 (해당되는 경우)	신생아 1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신생아 2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신생아 3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4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신생아 1	☐ 있음 ☐ 없음 ☐ 해당없음	
		신생아 2	☐ 있음 ☐ 없음 ☐ 해당없음	
		신생아 3	☐ 있음 ☐ 없음 ☐ 해당없음	

[현장평가표 Ⅲ.5.3] 문서관리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 문서 보관 장소 확인
- 문서 대출, 열람 및 반납 내역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Ⅲ.5.3-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			

Ⅲ.5.3-2)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확인 (확인 건수: 5건)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번호			평가결과	비고
1	신생아 건강기록부	신생아 1	□ 양호 □ 미흡	
		신생아 2	□ 양호 □ 미흡	
		신생아 3	□ 양호 □ 미흡	
		신생아 4	□ 양호 □ 미흡	
		신생아 5	□ 양호 □ 미흡	
2	산모 건강기록부	산모 1	□ 양호 □ 미흡	
		산모 2	□ 양호 □ 미흡	
		산모 3	□ 양호 □ 미흡	
		산모 4	□ 양호 □ 미흡	
		산모 5	□ 양호 □ 미흡	

Ⅲ.5.3-3) 문서 대출, 열람 및 반납 절차 준수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문서 대출, 열람 및 반납 절차 준수 및 안전한 보관 확인			

[현장평가표 Ⅲ.5.4] 방문객관리

○ 확인내용
- 방문객 관리 규정
- 방문객 명부 또는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확인(세면대, 손 소독제 등)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확인(포스터 부착 등)

Ⅲ.5.4-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			

Ⅲ.5.4-2) 방문객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방문객 관리 여부			

번호			평가 결과	비고
1	방문객 관리대장 유무		☐ 있음 ☐ 없음	
	관리대장 내용	방문일시	☐ 있음 ☐ 없음	
		방문자 이름	☐ 있음 ☐ 없음	
		연락처	☐ 있음 ☐ 없음	
2	방문객 출입관련 안내문		☐ 있음 ☐ 없음	

Ⅲ.5.4-3) 방문객 감염 관리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방문객 감염관리 수행 여부			

번호			평가 결과	비고
1	방문객 준수	방문객 1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2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3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4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5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2	방문객 세면대		☐ 있음 ☐ 없음	
	방문객 손 위생	방문객 1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2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3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4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방문객 5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현장평가표 Ⅲ.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 확인내용
- 질 관리 활동 및 만족도 조사 계획
- 질 관리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최근 1년)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Ⅲ.6.1-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에 대한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시범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계획			

Ⅲ.6.1-2)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시범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 질 관리 항목 예시

구분	점검 유무	업무개선 활용	비고
모자동실시간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신생아실 이용시간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모유수유율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감염발생 양상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안전사고발생 양상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평가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실시한 자료만을 인정함.

Ⅲ.6.1-3)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결과	비고
만족도 평가도구		□ 있음 □ 없음	
만족도 평가실시	산모 1	□ 예 □ 아니오	
	산모 2	□ 예 □ 아니오	
	산모 3	□ 예 □ 아니오	
만족도 분석결과 활용사례		□ 있음 □ 없음	

Ⅲ.6.1-4) 불만 및 고충사항 안내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정규	불만 및 고충사항 안내 여부		

Ⅲ.6.1-5)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정규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여부		

[현장평가표 Ⅲ.7.1] 경영관리: 리더십 및 조직 문화: 시범항목

○ 확인내용
- 원장 인터뷰(모자동실, 신생아감염관리에 대한 질의)
- 직원 인터뷰

Ⅲ.7.1-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원장 인터뷰)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시범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		

Ⅲ.7.1-2) 직원과의 의사소통(직원 면담)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시범	직원과의 의사소통		

Ⅲ.7.1-3) 직원의 전문성 향상(원장 인터뷰)

분류	평가항목	유	무
시범	직원의 전문성 향상		

[현장평가표 Ⅳ.8.1] 손 위생

○ 확인내용
- 손 위생 규정(감염관리 지침 등으로 대체 가능)
- 손 위생 물품 비치현황(비치장소, 사용기한 표기 등), 구매(입고)내역
- 손 위생 수행 여부 관찰(직원, 산모)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Ⅳ.8.1-1) 손 위생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손 위생에 대한 규정			

Ⅳ.8.1-2) 직원 손 위생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직원 손 위생 수행 여부			

■ 손 위생 활동 점검표(직원)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근무 시작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음식 먹기 전·후				
4	신생아 접촉 전·후				
5	모유/분유 수유 준비 전, 수유 전				
6	기저귀 교환 전·후				

Ⅳ.8.1-3) 산모 손 위생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산모 손 위생 수행 여부			

■ 손 위생이 필요한 활동 사례-산모 대상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미해당	
1	음식 먹기 전·후				
2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				
3	신생아 접촉 전·후				
4	모유/분유 수유 준비 전, 수유 전				
5	기저귀 교환 전·후				

Ⅳ.8.1-4) 손 위생 물품 구비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손 위생 물품 구비 여부			

Ⅳ.8.1-5)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실시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실시 여부			

[현장평가표 Ⅳ.8.2] 개인보호구 착용

○ 확인 내용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Ⅳ.8.2-1)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Ⅳ.8.2-2)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No.	점검사항 (관찰)	점검결과 *		비고
		충족	미충족	
1	업무 중 감염물질이 노출될 수 있는 경우			
2	호흡기 감염이 의심되는 산모, 신생아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3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염소계 소독제 등) 등			
4	기구, 물품 세척 시(젖병세척 포함)			

* 관찰로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여부 확인, 직원 3명의 평균으로 충족률 산출

[현장평가표 Ⅳ.8.3] 세탁물 관리

○ 확인내용
- 세탁물 수집 장소
- 세탁 후 세탁물 보관 장소(전용 보관실)
- 세탁물 처리 근거자료

Ⅳ.8.3-1) 세탁물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세탁물에 대한 규정			

Ⅳ.8.3-2) 세탁물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세탁물 관리 여부			

■ 세탁물 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세탁물 수집용기 유무			
2	세탁물 수집장소의 별도 구획 여부			
3	세탁물 수집장소 관리상태(청소일지, 청결상태 확인)			
4	세탁물 분리 수집 여부(오염/일반세탁물 분리보관)			
5	세탁물 처리 상태(자체세탁, 외부위탁 확인)			
6	세탁 후 세탁물 보관장소 관리상태			

[현장평가표 Ⅳ.8.4] 물품 소독/관리

○ 확인내용
- 기구 및 물품관리 관련 규정
-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보관장소
- 신생아 소독 점검표
- 세척직원 복장 확인
- 사용 중인 물품소독제 사용설명서와 인증서

Ⅳ.8.4-1) 기구 및 물품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기구 및 물품관리에 대한 규정			

Ⅳ.8.4-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 수행 여부			

Ⅳ.8.4-3) 세척/소독된 물품 관리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세척/소독된 물품 관리			

구분		평가결과	비고
신생아용품 개별보관	기저귀	□ 예 □ 아니오	
	물티슈	□ 예 □ 아니오	
	비누	□ 예 □ 아니오	
	로션	□ 예 □ 아니오	
	목욕대야	□ 예 □ 아니오	
신생아요람 소독	소독일지(관련내용포함)	□ 있음 □ 없음	
	소독	□ 예 □ 아니오	
목욕대야 소독	소독지침	□ 있음 □ 없음	
	지침 준수	□ 예 □ 아니오	
수유물품 소독	소독전 세척	□ 예 □ 아니오	
	소독	□ 예 □ 아니오	
	건조 후 보관	□ 예 □ 아니오	
산모용품 개별사용	유축깔때기	□ 예 □ 아니오	
	좌욕대야	□ 예 □ 아니오	
물품소독제 인증서 유무		□ 있음 □ 없음	

[현장평가표 Ⅳ.8.5] 환경관리

○ 확인내용
- 환경위생관리 규정
- 침구 및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 공용시설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 사용 중인 환경소독제 사용설명서, 인증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Ⅳ.8.5-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Ⅳ.8.5-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미해당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2	신생아실, 산모실 내 꽃, 화분 비치 여부				
3	신생아실, 산모실 바닥 청결				
4	수유준비 구역(장소) 관리				
5	신생아 목욕 싱크대 관리				
6	화장실 관리(산모실, 공용화장실)				
7	좌욕실 관리				
8	청소용품 관리(환경소독제 승인여부, 청소도구 관리 등)				
9	손 씻기 시설의 청결도				
10	기구 세척 구역(장소) 관리				
11	청결물품 보관실 관리				
12	페달을 밟아 뚜껑을 열 수 있는 폐기물통 사용				
13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사본 및 위탁계약서 확인 (위탁관리인 경우만)				

[현장평가표 Ⅳ.8.6] 급식관리

○ 확인내용
-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
- 위탁계약서, 인증서, 위탁 운영에 따른 급·퇴식 관리 규정
- 식재료 유통기한, 보관상태 점검
- 냉장고 및 냉동고 온도 표시 및 점검 유무 확인
- 조리장 종사자 복장(위생모, 앞치마, 작업화, 마스크) 착용 및 위생상태 점검
-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신설 2020. 1. 16.〉

Ⅳ.8.6-1)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조리장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			

Ⅳ.8.6-2)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미해당
정규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Ⅳ.8.6-3) 식재료 관리상태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미해당
정규	식재료 관리상태				

Ⅳ.8.6-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미해당
정규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Ⅳ.8.6-5)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미해당
정규	조리원 개인위생 관리 여부				

■ 조리원 손 위생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충족	미충족	미해당
1	조리실에서 작업 시작 전·후			
2	세척 안 된 식자재 및 오물 취급 후			
3	각기 다른 종류의 식재료 취급 및 조리 전			
4	생선, 날고기 등 취급 후			
5	음식을 만지기 전			
6	기구나 설비 사용 전			
7	화장실 출입 후			
8	쓰레기 취급 후			
9	신체 부위나 몸을 만진 후			
10	작업 중에 전화를 받은 후			
11	소독제나 세척제를 만진 후			
12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한 후			

Ⅳ.8.6-6) 외부 위탁시 관리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미해당
정규	외부 위탁시 관리 여부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1	식품위생 법정기준 준수 (점검결과)		□ 예 □ 아니오	
2	유통기한 준수	식품 1	□ 예 □ 아니오	
		식품 2	□ 예 □ 아니오	
		식품 3	□ 예 □ 아니오	
3	정수기 점검(점검일지)		□ 예 □ 아니오	
4	조리도구·행주	소독방법	□ 준수 □ 미준수	
		건조상태	□ 예 □ 아니오	
5	냉장·냉동 온도확인	온도계 비치	□ 예 □ 아니오	
		적정온도 유지	□ 예 □ 아니오	
6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유무	□ 있음 □ 없음	
		청결상태	□ 예 □ 아니오	
7	취사자 복장 및 청결		□ 예 □ 아니오	

[현장평가표 Ⅳ.8.7] 종사자 관리(최근 1년간)

○ 확인내용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관리 지침
-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4] 감염·질병 예방 조치, (제16조 제2항 관련) 〈신설 2020. 1. 16.〉

Ⅳ.8.7-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1	건강검진	장티푸스 외	□ 예 □ 아니오	
		잠복결핵검진	□ 예 □ 아니오	
2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 예 □ 아니오	
		백일해	□ 예 □ 아니오	
3	종사자 감염성 질환 관리 지침		□ 있음 □ 없음	
4	지침 내용	근무 제한	□ 예 □ 아니오	
		제한 기간	□ 예 □ 아니오	
		조치	□ 예 □ 아니오	

Ⅳ.8.7-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 여부		

Ⅳ.8.7-3)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근무제한에 대한 숙지 여부		

[현장평가표 Ⅳ.9.1] 감염관리

○ 확인내용

-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Ⅳ.9.1-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			

Ⅳ.9.1-2)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현장평가표 Ⅴ.10.1] 산모 건강평가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산후우울증 설문지

Ⅴ.10.1-1) 입·퇴실 시, 재원 중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입·퇴실 시, 재원 중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Ⅴ.10.1-2) 재원 중 산모의 산후우울증 평가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재원 중 산모 산후우울증 평가 및 기록 여부			

[현장평가표 Ⅴ.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 확인내용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신생아실/산모실 이용시간, 모유수유 실시 확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모아애착 증진 서식

Ⅴ.11.1-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모아애착 증진 서식			

Ⅴ.11.1-2) 모자동실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모자동실 촉진활동 시행 여부			

※ 모자동실 이용 시간이 8시간 이상인 신생아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5점 가산

구분		평가결과	비고
모자동실 촉진 교육이나 활동		□ 있음 □ 없음	
모자동실 이용시간	신생아 1	( ) 시간	
	신생아 2	( ) 시간	
	신생아 3	( ) 시간	
	신생아 4	( ) 시간	
	신생아 5	( ) 시간	
	6시간 이상	( ) %	80% 이상이면 '상'

Ⅴ.11.1-3) 모유수유 촉진활동 시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모유수유 촉진활동 시행 여부			

※ 모유수유 촉진 활동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5점 가산
* 모유수유 촉진활동: 1) 개별교육, 2) 집단교육, 3) 부부교육, 4) 개별상담, 5) 부부상담, 6) 신생아 돌보기 시범, 7) 직접간호 제공, 8) 기타(_____)

구분	모유수유 횟수					모유수유 촉진활동	비고 (*에 해당하는 번호 기입)
신생아 1						☐ 있음 ☐ 없음	
신생아 2						☐ 있음 ☐ 없음	
신생아 3						☐ 있음 ☐ 없음	
신생아 4						☐ 있음 ☐ 없음	
신생아 5						☐ 있음 ☐ 없음	
모유수유 1일 8회 이상				( )%		80% 이상이면 '상'	

* 모유수유 촉진활동: 1) 개별교육, 2) 집단교육, 3) 부부교육, 4) 개별상담, 5) 부부상담, 6) 신생아 돌보기 시범, 7) 직접간호 제공, 8) 기타

[현장평가표 Ⅴ.12.1] 부모교육

○ 확인내용
- 교육계획 또는 교육지침
- 교육자료
- 교육이수 기록지: 교육일지 또는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강의료 지불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Ⅴ.12.1-1) 부모교육 계획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부모교육 계획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 확인			

Ⅴ.12.1-2)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Ⅴ.12.1-3)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Ⅴ.12.1-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 교육자료: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

Ⅴ.12.1-5) 영아돌연사 예방방법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영아돌연사 예방방법 교육			

Ⅴ.12.1-6) 아버지의 교육 시행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아버지의 교육 시행		

■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

교육내용			교육방법		
			설명	시범	기타
산모 건강 관리	산모 위험 상황의 증상과 대처방안 *위험상황: 감염, 출혈, 우울				
	산욕기 감염성 질환과 예방 관리				
	회음 패드 교환 방법과 좌욕 방법				
	유선염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영양 섭취				
신생아 돌봄	신생아 응급 상황 대처 방법	구토			
		설사			
		발열			
		황달			
		무호흡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모유수유의 어려움과 해결 방법				
	분유수유 하는 방법, 주의사항				
	신생아 수유 자세, 트림 방법				
	신생아 목욕 방법				
	신생아 기저귀 교환 방법				
	신생아 배꼽 관리 방법				
	신생아 상호촉진방법				
	영아돌연사 예방 방법				
부	산후 돌봄 및 신생아 돌봄 방법				

날짜	교육자 서명	부모 서명	

[현장평가표 Ⅵ.13.1] 신생아 확인

○ 확인내용

- 신생아 출입기록지(신생아 건강기록부 대치 가능)

Ⅵ.13.1-1)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			

Ⅵ.13.1-2) 신생아 인식표 사용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인식표(팔찌 혹은 발찌) 여부			

Ⅵ.13.1-3)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전달 시 식별 정보 확인 여부			

번호	구분		평가결과	비고
1	인식표	식별정보(2가지)	□ 예 □ 아니오	반드시 발찌 혹은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를 사용하고, 추가로 1개 이상의 인식표를 사용해야 함.
		항상 착용	□ 예 □ 아니오	
2	신생아 전달 시 확인 여부	신생아 1	□ 적합 □ 부적합	
		신생아 2	□ 적합 □ 부적합	
		신생아 3	□ 적합 □ 부적합	
		신생아 4	□ 적합 □ 부적합	
		신생아 5	□ 적합 □ 부적합	

[현장평가표 Ⅵ.14.1] 신생아 건강평가

○ 확인내용

- 문서관리 규정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Ⅵ.14.1-1) 입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입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Ⅵ.14.1-2) 재원 중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재원 중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Ⅵ.14.1-3) 퇴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확인 건수: 5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퇴실 시 신생아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현장평가표 Ⅵ.15.1] 위생 관리

○ 확인내용
- 신생아 위생관리지침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Ⅵ.15.1-1)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여부			

Ⅵ.15.1-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확인 건수: 3건)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구분		평가결과	비고
위생지침	지침 보유	□ 예 □ 아니오	
신생아 1	기저귀 교환 (6회 이상)	□ 예 □ 아니오	
	기저귀 발진	□ 정상 □ 비정상	
	배꼽 상태	□ 정상 □ 비정상	
	눈 상태	□ 정상 □ 비정상	
신생아 2	기저귀 교환 (6회 이상)	□ 예 □ 아니오	
	기저귀 발진	□ 정상 □ 비정상	
	배꼽 상태	□ 정상 □ 비정상	
	눈 상태	□ 정상 □ 비정상	
신생아 3	기저귀 교환 (6회 이상)	□ 예 □ 아니오	
	기저귀 발진	□ 정상 □ 비정상	
	배꼽 상태	□ 정상 □ 비정상	
	눈 상태	□ 정상 □ 비정상	

[현장평가표 Ⅵ.15.2] 신생아 수유

○ 확인내용
- 수유관리규정(지침)
- 수유준비과정 및 수유 관찰

Ⅵ.15.2-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			

Ⅵ.15.2-2)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Ⅵ.15.2-3) 분유 관리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분유 관리			

Ⅵ.15.2-4) 수유준비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정규	수유준비			

Ⅵ.15.2-5) 수유 실시 확인

분류	평가항목	유	무
필수	수유 실시		

구분		평가결과	비고
산모별 모유 냉동 보관		□ 예 □ 아니오	
모유보관기간 (72시간 미만)	모유 1 ( )시간	□ 적합 □ 부적합	
	모유 2 ( )시간	□ 적합 □ 부적합	
	모유 3 ( )시간	□ 적합 □ 부적합	
냉동모유 가열 방법		□ 정상 □ 비정상	
분유 물의 가열 방법		□ 정상 □ 비정상	
셀프 수유 여부		□ 없음 □ 있음	

[현장평가표 Ⅵ.15.3] 안전관리

○ 확인내용

- 신생아 안전관리규정(지침)

Ⅵ.15.3-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Ⅵ.15.3-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Ⅵ.15.3-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Cf. [현장평가표 Ⅵ.13.1] 신생아 확인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전달 시 간호(조무)사와 산모가 확인함' 항목에서 점검

Ⅵ.15.3-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분류	평가항목	상	중	하
필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구분		평가결과	비고
예방방안 숙지 (종사자 1인)		□예 □ 아니오	
신생아 수면자세		□ 앙와위 또는 측위 자세 □ 엎드린 자세	
신생아 요람내 시트		□ 정상 □ 비정상	
신생아 수면장소	산모 1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	
	산모 2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	
	산모 3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	

부록 6.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보고서

대상기관명	산후조리원명 (지역)		
조사기간	2022-00-00	보고일자	2022-00-00

구분	조사위원명	소속기관	서명 또는 인
조사위원 1			
조사위원 2			

상기 조사위원은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 1. 총평보고서

2. 팀별 항목별보고서

첨부 1. 총평보고서

총평 보고서

대상기관명	산후조리원명
조사기간	2022년 00월 00일 0AM ~ 0PM

1. 총평

2. 중영역별 조사위원 평가
* 조사결과가 무, 중, 하인 평가항목에 대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중영역	평가항목	내용
(1) 인력 적정성		
1.1	법적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2) 인력 전문성		
2.1.1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2.1.2	직원 채용절차를 준수한다.	
2.1.3	인사정보를 관리한다.	
2.1.4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2.2.1	연간 직원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2.2.2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2.2.3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2.3.1	근무교대 시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2.3.2	근무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3) 시설 적정성		
3.1.1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3.1.2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3.1.3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3.1.4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4) 시설 안정성		
4.1.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4.1.2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4.1.3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4.1.4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4.1.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4.2.1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4.2.2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4.2.3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4.2.4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4.3.1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4.3.2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5) 운영관리		
5.1.1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5.1.2	산후조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5.1.3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5.1.4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5.1.5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5.2.1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5.2.2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5.3.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5.3.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5.3.3	문서의 대출, 열람 및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5.4.1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5.4.2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5.4.3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6) 질 관리		
6.1.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6.1.2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6.1.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6.1.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6.1.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7) 경영관리		
7.1.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7.1.2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7.1.3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8) 감염예방		
8.1.1	손 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8.1.2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8.1.3	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8.1.4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8.1.5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8.2.1	개인보호구착용 지침이 있다.	
8.2.2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8.3.1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8.3.2	세탁물을 관리한다.	
8.4.1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8.4.2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8.4.3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8.5.1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8.5.2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8.6.1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8.6.2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8.6.3	식재료를 관리한다.	
8.6.4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8.6.5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8.6.6	외부 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8.7.1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8.7.2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8.7.3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있다.	
(9) 감염관리		
9.1.1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9.1.2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10) 산모 건강평가		
10.1.1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10.1.2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11) 모아애착		
11.1.1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11.1.2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11.1.3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12) 부모교육		
12.1.1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12.1.2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12.1.3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12.1.4	신생아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12.1.5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12.1.6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13) 신생아확인		
13.1.1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13.1.2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13.1.3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1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14.1.2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14.1.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15) 신생아 관리		
15.1.1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15.1.2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15.2.1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15.2.2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15.2.3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15.2.4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15.2.5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15.3.1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15.3.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15.3.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첨부2. 항목별보고서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Ⅰ.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 적정성																						
인력 적정성	1.1	필수	법적 인력 기준을 준수한다.	DR	S	O				- 보건소 실태조사서 결과 확인 1)종사자근무표,종사자관리대장* 2)건강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 3)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4)신생아입실자료-신생아재원 관리 대장		-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춤 - 1명 이상의 상시 근무간호사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 상										
2.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2.1.1	정규	인사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인사관리규정		- 인사관리 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내용이 모두 포함됨										
	2.1.2	필수	직원 채용 절차를 준수한다.	DR	P	O				-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 갱신 서류 - 종사자의 건강검진진단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종사자 보안 각서(개인정보 취급자 보안 서약서) - 신규 채용 직원 결격 사유 조회 신청서 (산후조리원용)		- 해당 근거서류가 있음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채용함										
	2.1.3	정규	인사 정보를 관리한다.	DR	P	O				- 종사자 임용 서류 및 자격/면허 갱신 서류 - 면허갱신 근거서류		- 2가지 모두 충족: 상										
	2.1.4	정규	직원의 자격요건과 직무에 따른 직무기술서가 있다.	DR	P	O				- 직무기술서		- 직무기술서가 있고, 자격요건에 따른 담당직무가 명시되어 있음										
종사자 교육·계발	2.2.1	정규	연간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DR	S	O				- 연간 직원 교육 계획서		- 연간 교육 계획에 필수교육과 법정의무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연간 직원 교육 계획이 수립 되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 (계획에는 예산(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2.2	정규	직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DR	P	O				-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 산후조리원 필수교육, 법정의무교육, 신규직원교육, 기타 직무교육		- 산후조리원 종사자 필수교육을 시행함 - 산후조리원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중 80% 이상 수행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신규 직원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종사자 교육관리대장의 교육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음										
	2.2.3	필수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이수한다.	DR	P	O				- 교육이수 근거서류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1년에 1회 8시간 이상 필수교육(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함 - 교육이수 수료증 있음										
종사자간 의사소통	2.3.1	정규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 근무 교대 규정												
	2.3.2	정규	근무 교대 시 산모·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DR/IT	P	O		O		- 근무교대 일지,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 건강기록부, 근무교대일지에 정보공유 내용이 충실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방법,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2개 모두 충족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 시설 적정성																						
	3.1.1	필수	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	IT	S		O			-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 입구에 세면대 설치 확인		- 산후조리원 입구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 또는 손소독제)을 갖추고 있음 -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세면대)을 갖추고 있음 ⇒ 2개 모두 충족										
	3.1.2	정규	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IT	P		O			- 보건소 신고 인원(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에적절한지 확인		- 신생아실에 놓인 요람의 개수가 법적 기준에 따른 신생아실 수용 인원(보건소 신고 인원)에 적합함										
	3.1.3	정규	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	IT	S	O	O			- 산후조리원 도면 - 사전관찰실		- 사전관찰실이 있으며, 출입문과 투명한 벽체 등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음										
	3.1.4	정규	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IT	P		O			- 신생아실 외부		- 신생아실은 언제든지 산모가 관찰이 가능함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 서류 (기록)	관찰	원장/ 직원 면담	산모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4. 시설 안전성																						
설비 관리	4.1.1	정규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규정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되어 있어야하고 관리 계획서 구비)										
	4.1.2	정규	전기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O	O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및 근거서류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 근거서류 있음 - 법적 점검서류 있음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4.1.3	정규	가스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O	O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및 근거서류		- 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 있음 - 주기적인 가스점검 실시 - 점검표 3개 모두 충족										
	4.1.4	정규	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IT	P	O	O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및 근거서류		- 점검표 2개 항목 모두 충족										
	4.1.5	정규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DR	P	O	O			-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및 근거서류		- 공기질 측정 근거서류가 있음 - 에어컨 청소 필터교체, 환기시설 관리 점검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 - 점검표 3개 항목 모두 충족										
소방 안전 관리	4.2.1	필수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소방안전관리 규정												
	4.2.2	필수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	DR/IT	P	O	O			- 소방서 또는 대행업체에서 시행한 소방안전점검 또는 자체 점검 결과 확인: 화재 예방 안전 관리 및 안전시절 등의 세부 점검		- 1년에 4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이상 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 현장 점검 시 이상 없음										
	4.2.3	필수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 및 재난 발생시 대처 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DR/IT	P	O		O		- 소방훈련 근거서류 -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확인		- 최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										
	4.2.4	정규	산모실에는 응급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가 있다.	IT	P		O			- 산모에게 응급상황 연락 체계 설명	3건	- 응급상황 시 직원과 산모 간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응급벨, 인터폰, 유선전화기(단축키 지정) 등)가 있음(※ 연락체계로 핸드폰은 제외										
낙상 예방 관리	4.3.1	필수	낙상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 낙상예방 규정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 면담	산모 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4.3.2	필수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IDR/T	P		O			- 낙상예방 안전점검표 - 낙상예방 활동 근거 서류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 - 낙상예방 활동 근거서류 있음 (예방교육, 점검서류 등)										
Ⅲ. 운영과 질 관리																						
5. 운영관리																						
입·퇴실 관리	5.1.1	정규	입·퇴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DR	S					- 입·퇴실 관련 규정												
	5.1.2	필수	산후조리업자는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DR	S	O				- 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 책임가입증명서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유										
	5.1.3	필수	입실 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게시한다.	IT	P		O			- 서비스내용, 이용요금 등의 게시(비치) 확인		- 입실 시점에 약관,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산모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하고 있음 : 유										
	5.1.4	정규	입·퇴실 시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DR/IT	P	O				○ 입실 시 산모 교육: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아래의 내용을 모두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보안계획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계획 - 감염예방 관리계획 - 의료기관 이송계획 - 낙상예방 계획 ○ 퇴실시산모교육:퇴실시산모교육을 시행하고 산모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확인	3건	- 교육내용 모두 교육하거나 근거 자료 제공함: 상										
	5.1.5	정규	입·퇴실 절차를 준수한다.	IT	P	O		O		- 입·퇴실관련 근거자료 -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고객용)	5건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내용 숙지 8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음.										
의료기관 연계·이송	5.2.1	필수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에 대한 지침이 있다.	DR	S	O				- 의료기관 연계 이송 지침												
	5.2.2	필수	산모 및 신생아의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준수한다.	DR/IT	P	O				-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결과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80% 이상 숙지하고 있으며, 이송된 경우 모두 보건소장에게 보고됨: 상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문서관리	5.3.1	정규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문서관리 규정												
	5.3.2	정규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DR	P	O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	5건	- 건강기록부는 매일 기재되어 있고, 항목별 사항도 누락 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건강기록부에 서수정한 내용이 모두 규정의 내용을 준수함										
	5.3.3	정규	문서의 대출, 열람 및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IT	P			O		- 문서 보관 장소 확인 - 문서 대출, 열람 및 반납 내역		- 문서 대출, 열람, 반납 절차에 대해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숙지 80% 이상 - 대출, 열람절차에 따른 근거서류 확인 가능 -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문서 보관										
방문객관리	5.4.1	정규	방문객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방문객 관리 규정												
	5.4.2	필수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IT	P	O	O			- 방문객명부(대장) 또는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 산후조리원 입구 게시내용 확인		- 방문객 관리대장(명부)이 있고, 인적사항, 방문일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음 - 방문객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 출입절차, 면회시간이 입구에 게시되어 있음 -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으로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5.4.3	정규	방문객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O	O			- 방문객용 손 씻기 시설 확인 - 방문객감염예방교육근거자료 - 손 위생 홍보활동자료	5건	- 감염관리활동을 모두 수행함 - 평가일에 방문객 손 위생 수행관찰(최소5인): 100% 실시										
6. 질 관리																						
질관리 및 만족도 평가	6.1.1	시범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O				- 질 관리 활동 및 만족도 조사 계획												
	6.1.2	시범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	P	O				- 질 관리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 (최근 1년)		- 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 이상(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이상)의 관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상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 면담	산모 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6.1.3	정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DR	O	O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 (최근 1년) - 퇴실한 산모 자료 확인	3건	- 만족도 평가도구 있음 - 모두 만족도평가 실시함 - 만족도 분석결과를 업무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 ⇒ 모두 충족										
	6.1.4	정규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DR	P	O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 근거 서류		- 불만 및 고충처리에 대해 안내에 대한 근거 서류가 있음: 유										
	6.1.5	정규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DR	P	O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 접수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 피드백 등 관련서류 있음: 유										
7. 경영 관리																						
리더십 및 조직 문화	7.1.1	시범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IT	S			O		- 원장 인터뷰		-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있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음										
	7.1.2	시범	직원과의 의사소통 통로가 있다.	IT	P			O		- 직원 인터뷰		-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있음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고 있음(처리결과 근거서류 확인)										
	7.1.3	시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DR/IT	O	O				- 원장 인터뷰		-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근거서류 확인)										
Ⅳ. 감염예방관리																						
8. 감염예방																						
손 위생	8.1.1	필수	손위생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손 위생 대한 규정												
	8.1.2	필수	직원은 손 위생을 수행한다.	IT	P		O	O		- 손 위생 수행 여부 관찰	5건	- 80% 이상 수행: 상										
	8.1.3	필수	산모는 손 위생을 수행한다.	IT	P		O		O	- 손 위생 수행여부 관찰	5건	- 80% 이상 수행: 상, 최소 3항목 이상은 점검. 미해당은 수행 항목에서 제외										
	8.1.4	필수	손 위생을 위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IT	P	O	O			- 손 위생 물품 비치현황 - 구매(입고)내역		- 손 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이 모두 표기 되어 있으며 개봉 후 6개월 이내일 것 - 손 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이용함(인증서 확인)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 면담	산모 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 신생아실 손 위생 건조는 종이타월(1회용 타월)을 이용함 -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 근거서류 있음 ⇒ 4가지 모두 충족: 상										
	8.1.5	필수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IT	P		O			-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있음 • 세면대 옆 손 위생 방법 비치(부착) • 게시판에 손 위생 포스터 부착 ⇒ 2가지 모두 충족: 상										
개인 보호구 착용	8.2.1	정규	개인보호구착용 지침이 있다.	DR	S	O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8.2.2	정규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IT	P		O	O		- 보호구 착용 시점에 보호구 착용 - 기구 물품 세척 시 보호구 착용	3건	-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75% 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은 보호구(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고 있음 ※ 확인 불가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등에 대한 직원 숙지 75% 이상										
세탁물 관리	8.3.1	정규	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												
	8.3.2	정규	세탁물을 관리한다.	IT	P	O	O			- 세탁물 관리 점검표		- 5개 이상 충족: 상										
물품 소독 ·관리	8.4.1	정규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기구 및 물품 관리에 대한 규정												
	8.4.2	정규	사용한 기구 및 물품의 세척/소독을 수행한다.	IT	P		O			- 수유물품 소독 - 소독일지(신생아요람사항 포함)작성 및 신생아요람 정기 소독 - 목욕대야소독(직원1인 이상) - 세척직원 보호장구 착용여부		- 4가지 모두 충족: 상										
	8.4.3	정규	세척/소독된 물품을 관리한다.	IT	P		O			- 수유물품 보관상태 - 신생아용품 개별보관, 사용 - 목욕대야 보관상태 - 산모 유축 깔때기, 좌욕대야 개별 보관, 사용		- 4가지 모두 충족: 상										
환경 관리	8.5.1	정규	환경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 환경관리에 대한 규정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 서류 (기록)	관찰	원장/ 직원 면담	산모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8.5.2	정규	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IT	P	O	O			-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 침구 및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 공용시설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 사용 중인 환경소독제 사용 설명서, 인증서		- 점검표 항목 80% 이상 충족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2가지 모두 충족: 상										
급식 관리	8.6.1	정규	조리장에 대한 위생관리 규정이 있다.	DR	S	O				- 조리장에 대한 위생 관리 규정												
	8.6.2	정규	조리장 환경위생을 관리한다.	IT	P		O			- 식기, 조리기구 보관상태 - 위생/오염구역구분 - 음식물쓰레기관리		- 3가지 모두 충족: 상										
	8.6.3	정규	식재료를 관리한다.	IT	P	O	O			- 식재료 검수일지 - 유통기한준수여부 - 식재료 개봉일자 라벨링		- 3가지 모두 충족: 상										
	8.6.4	정규	냉장고 및 냉동고를 관리한다.	IT	P		O			- 냉장/냉동고 온도관리 - 식재료보관상태 - 냉장/냉동고청결상태		- 3가지 모두 충족: 상										
	8.6.5	정규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IT	P		O			- 취사자 복장상태 - 취사자 손 위생여부 - 유증상 직원 관리방법 숙지여부		- 모든 조리원이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 손 위생을 수행함(80% 이상) - 유증상 직원에 대한 관리방법이 있고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 80% 이상										
	8.6.6	정규	외부위탁 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DR	P	O				- 위탁기관: 위탁계약서, 인증서, 위탁 운영에 따른 급퇴식 관리 규정												
종사자 관리	8.7.1	필수	직원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직원 안전에 대한 규정												
	8.7.2	필수	직원 건강유지와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IT	P	O				- 건강검진, 예방접종확인서 - 감염노출사고,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교육 - 종사자 위생관리 조치 및 점검표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지침이 있고 교육을 실시함 - 종사자 위생관리 조치 및 점검표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종사자 위생관리가 되었는지 확인함.										
	8.7.3	필수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고 있다.	IT	P			O		- 대처방안, 근무 제한에 대한 직원 숙지	3건	- 직원 숙지정도 100%: 유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9. 감염관리																						
감염관리	9.1.1	필수	감염병 발생 시 관리 지침이 있다.	DR	S	O				- 감염성 질환 발생시 관리 지침												
감염관리	9.1.2	필수	감염병 발생 시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IT	P	O		O		-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 자료 - 신생아 건강기록부 - 임산부(산모)·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조치 및 점검표	3건	- 직원 숙지정도80% 이상 -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 격리함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점검 서류가 있음.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0. 산모 건강평가																						
산모 건강 평가	10.1.1	정규	산모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 산모 건강기록부 - 활력징후, 하혈유무, 유방사정, 부종, 대소변, 정서상태(산후우울) 등.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확인)	5건	- 80% 이상: 상										
산모 건강 평가	10.1.2	정규	산후우울증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 산모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확인) - 산후우울증 설문지	3건	- 모든 산모1회 이상: 상										
11. 모아애착																						
모자동실, 모유수유	11.1.1	필수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O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 - 모아애착 증진 서식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모두 포함 되어야 함 - 모아애착증신 서식을 작성하고 있음										
모자동실, 모유수유	11.1.2	필수	산모의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O				- 신생아 건강기록부(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중 선정. 신생아실/산모실 이용시간, 모유수유 실시 확인)	5건	- 모자동실을 촉진하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근거자료 확인) - 산모실 이용 시간이 하루 6시간 이상인 신생아의 비율이 80%이상(※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 5인 선정하여 평가함. 단,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태로 모자동실이 어려운 대상자는 제외)										
모자동실, 모유수유	11.1.3	필수	산모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DR	P	O				- 모유수유 촉진 교육 근거 자료, 신생아 건강기록부 모유수유 실시 시간 확인	5건	- 1일 8회 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함 - (산모의 80% 이상): 상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12. 부모교육																						
부모교육	12.1.1	필수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DR	S	O				- 교육계획 및 교육 지침 - 교육 이수자 관리 -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		- 부모교육을 위한 계획이 있고,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부모별, 교육별 계획 스케줄 • 이수자 관리 -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가 작성됨										
	12.1.2	필수	산모의 건강관리방안을 교육한다.	DR	P	O				- 건강관리방안내용 교육 여부 - 교육이수기록지 - 교육일정제공	3건	- 교육 내용 5개 + 교육 이수 확인 근거 서류 모두 충족: 상										
	12.1.3	필수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한다.	DR	P	O				- 신생아 돌봄 방법 내용 교육 여부 - 교육이수확인 - 교육일정제공	3건	- 교육 내용 7개 + 교육이수 근거 서류 모두 충족: 상										
	12.1.4	필수	신생아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DR	P	O				- 신생아 상호작용 촉진 교육 여부 - 교육이수확인 - 교육일정제공	3건	- 교육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확인 근거 서류 모두 충족: 상										
	12.1.5	필수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DR	P	O				- 영아돌연사예방 교육 여부 - 교육이수확인 - 교육일정제공	3건	- 교육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모두 충족: 상										
	12.1.6	필수	아버지가 산후 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에 참여한다.	DR	P	O				- 아버지의 교육 참여가 산모 대비 50% - 교육근거 자료	3건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함: 유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13. 신생아 확인																						
신생아 확인	13.1.1	필수	정확한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신생아 식별 규정		- 신생아 식별을 위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상										
	13.1.2	필수	신생아를 정확하게 식별한다.	IT	P		O			- 식별정보와 인식표 착용 여부 - 신생아 건강기록부		- 반드시 발찌 혹은 팔찌 중 하나의 인식표를 사용하고, 추가로 1개 이상의 인식표를 사용 함: 상										
	13.1.3	필수	신생아를 산모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경우 확인한다.	IT	P		O			- 신생아 전달 시 간호(조무)사와 산모 확인 여부	5건	-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전달 시 간호(조무)사와 산모가 확인함(관찰건수 100% 충족) - 2가지 이상의 신생아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확인함 - 2가지 충족: 상										
14. 신생아 건강평가																						
신생아 건강	14.1.1	정규	입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DR	P	O				- 신생아 건강기록부(구토, 설사, 호흡수, 호흡양상, 체온, 피부발진,	5건	- 100% : 상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 서류 (기록)	관찰	원장/ 직원 면담	산모 면담	확인내용	확인 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평가하고 기록한다.							배꼽상태, 눈 분비물, 황달,예방접종여부 등)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확인)												
평가	14.1.2	정규	재원 중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 신생아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확인)	5건	- 80%이상 : 상										
	14.1.3	정규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	DR	P	O				- 신생아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이내 퇴실한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확인)	5건	- 80%이상 : 상										
15. 신생아 관리																						
위생 관리	15.1.1	정규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침이 있다.	DR	S	O				- 신생아 위생 관리 지침												
	15.1.2	정규	신생아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IT	P	O	O			- 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 - 기저귀교환(1일6회 이상) - 배꼽상태 - 눈 분비물, 청결 상태 - 눈 위생 실시	3건	- 3가지 모두 충족: 상										
신생아 수유	15.2.1	정규	신생아 수유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신생아 수유관리 규정												
	15.2.2	정규	냉장·냉동 중인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O			- 냉장/냉동 중인 모유 보관상태 - 보관기한준수		- 2가지 모두 충족: 상										
	15.2.3	정규	분유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IT	P		O			- 분유 유효기간 관리 - 분유통 관리상태 - 분유 보관장소 - 분유 개봉일자 라벨링		- 4가지 모두 충족: 상										
	15.2.4	정규	안전하고 청결하게 수유를 준비한다.	IT	P		O	O		- 수유준비실(별도 공간 분리) - 수유 준비 전용 싱크대 여부 - 모유 데우는 방법 - 분유 조제 방법 - 수유직전 분유준비		- 5가지 모두 충족: 상 (관찰 불가 시 직원 숙지 확인)										
	15.2.5	필수	안전하게 수유를 실시한다.	IT	P		O			- 모유수유 실시(수유실, 산모실) - 신생아self수유확인 - 수유 후 남은분유(모유)처리												
안전 관리	15.3.1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O				- 신생아 안전 관리 규정												
	15.3.2	필수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IT	P		O	O	O	- 신생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 • 신생아 이동 시 안전관리 및 산	3건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영역	번호	분류	내용	평가방법	구분	세부 평가방법							1차 컨설팅					3차 컨설팅				
						규정서류(기록)	관찰	원장/직원면담	산모면담	확인내용	확인건수	충족기준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평가결과(해당시'V')				조사위원 판단 근거 및 의견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상/유	중	하/무	미해당	1.평가결과 '무', '중', '하' 에 대한 판단근거를 기재바랍니다. 2.작성요령:'언제','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재바랍니다.
										모에게 인계시 출생 정보 확인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 • 신생아 수면자세 관찰 • 요람관찰 • 산모실에서신생아 수면 시 교육 • 신생아 호흡상태, 피부색 변화 관찰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신생아 안전관리 교육		80% 이상 (안전 관리 교육 근거자료 확인) - 신생아 안전관리 준수(재원 중인 산모 3인 선정) ⇒ 상										
	15.3.3	필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직원이 알고 있다.	IT	P			O				- 직원 숙지정도 80% 이상: 상										

부록 7. 산후조리원 컨설팅 결과보고서(컨설턴트용)

7-1. 1~3차 컨설팅

컨설팅 결과보고서(시범평가 결과보고서에서 '하' 또는 '무'인 영역 중심으로)

대상기관명	○○산후조리원(서울)		
조사기간	2022. 09. 03	보고일자	2022. 09. 10

〈1차 컨설팅〉

중영역	구분	미비점	개선과제/합의사항
(예시) 1. 인력의 적정성	규정	1. 2.	1. 2.
	관찰 사항	1. 2.	1. 2.
5. 운영관리	규정	1. 2. 3.	1. 2. 3.
	관찰 사항	1. 2. 3.	1. 2. 3.

2차 컨설팅 일자		방문 컨설턴트명 (분야)	

〈2차 컨설팅: 중간점검〉

중영역	구분	개선사항	추가 개선과제/보완사항
	규정	1. 2.	1. 2.
	관찰 사항	1. 2.	1. 2.
	규정	1. 2.	1. 2.
	관찰 사항	1. 2.	1. 2.

3차 컨설팅 일자		방문 컨설턴트명 (분야)	

〈3차 컨설팅: 최종점검〉

중영역	구분	개선사항	종합의견(추후 관리계획 포함)
	규정	1. 2.	1. 2.
	관찰 사항	1. 2.	1. 2.
	규정	1. 2.	1. 2.
	관찰 사항	1. 2.	1. 2.

7-2. 1일 방문 컨설팅

1일 방문컨설팅 결과보고서

중영역	컨설팅 내용	현장 의견
1. 인력 적정성		
2. 인력 전문성		
3. 시설 적정성		
4. 시설 안정성		
5. 운영관리		
6. 질 관리		
7. 경영관리		
8. 감염예방		
9. 감염관리		
10. 산모 건강평가		
11. 모아애착		
12. 부모교육		
13. 신생아 확인		
14. 신생아 건강평가		
15. 신생아 관리		
제안사항		

1일 방문컨설팅을 진행한 산후조리원은 내년 컨설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컨설팅에 참여하실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부록 8. 설문지(컨설팅 참여기관 만족도조사)

가. 「1~3차 컨설팅」 참여기관용

2022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만족도 조사

Ⅰ. 응답자 일반 정보

1.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하거나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지역	□ ① 서울 □ ② 경기 □ ③ 인천 □ ④ 충청권 □ ⑤ 강원권 □ ⑥ 전라권 □ ⑦ 경상권 □ ⑧ 제주
1) 직책	□ ① 원장 □ ② 건강관리책임자 □ ③ 간호사 □ ④ 기타( )

2. 산후조리원 근무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경력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

_____ 산후조리원 / _____ 직책 / ___년 ___개월

Ⅱ. 컨설팅 운영평가 설문조사

1. 컨설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대체로 만족 □ ④ 매우 만족

2. 컨설팅의 세부내용에 대한 만족도 정도에 ∨표 하거나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컨설팅 세부내용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별로 만족하지 않음	3 대체로 만족함	4 매우 만족함
1) 컨설팅 내용				
2)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				
3) 규정 및 서식사례집				
4) 컨설팅 소요 시간				
5) 컨설팅 방역지침				
6) 컨설팅 주기				
6-1) 금년에는 한 달(또는 한달 미만) 간격으로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컨설팅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달 □ ② 2달 □ ③ 3달 □ ④ 기타( )			
7) 컨설팅 횟수				
7-1) 금년에는 총 3차의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컨설팅 횟수는 어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기타 (___회)			

3. 다음은 컨설팅 운영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주십시오.

컨설팅 운영 개선	1	2	3	4	5	6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운영과 질 관리	감염예방 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1)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컨설팅 영역은 무엇입니까?						
2) 개선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5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나. 「1일 방문 컨설팅」 참여기관용

2022년도 산후조리원 컨설팅 만족도 조사

Ⅰ. 응답자 일반 정보

1. 다음은 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V표 하거나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지역	□ ① 서울 □ ② 경기 □ ③ 인천 □ ④ 충청권 □ ⑤ 강원권 □ ⑥ 전라권 □ ⑦ 경상권 □ ⑧ 제주
1) 직책	□ ① 원장 □ ② 건강관리책임자 □ ③ 간호사 □ ④ 기타( )

2. 산후조리원 근무 경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빈 칸에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경력이 없는 경우 '0'으로 표시)

_____ 산후조리원 / _____ 직책 / ___년 ___개월

Ⅱ. 컨설팅 운영평가 설문조사

1. 컨설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 ② 약간 불만족 □ ③ 대체로 만족 □ ④ 매우 만족

2. 컨설팅의 세부내용에 대한 만족도 정도에 V표 하거나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컨설팅 세부내용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2 별로 만족하지 않음	3 대체로 만족함	4 매우 만족함
1) 컨설팅 내용				
2) 컨설턴트의 역량/전문성				
3) 규정 및 서식사례집				
4) 컨설팅 소요 시간				
5) 컨설팅 방역지침				
6) 컨설팅 횟수				
6-1) 1일 방문 컨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컨설팅 횟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몇 회가 적절한지 응답 바랍니다.	□ ① 적절 □ ② 부족 (___회)			

3. 다음은 컨설팅 운영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표 해주십시오.

컨설팅 운영 개선	1	2	3	4	5	6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	운영과 질 관리	감염예방 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신생아 돌봄서비스
1)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컨설팅 영역은 무엇입니까?						
2) 개선이 필요한 컨설팅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5 컨설팅과 관련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9. 2021~2022년 평가기준집 비교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
<td>II.평가항목 충족기준의 이해</td>
<td>2. 평가항목 배점</td>
<td>
2. 평가항목 충족기준
○ 유/무
▪ 유: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100%로 10점
▪ 무: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100% 미만으로 0점
○ 상/중/하
▪ 상: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80% 이상 ~ 100%로 10점
▪ 중: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60% 이상 ~ 80% 미만으로 5점
▪ 하: 평가항목(ME)의 충족률이 60% 미만으로 0점
<table>
<tr><th>평가결과</th><th>점수</th><th>충족기준</th><th>평가결과</th><th>점수</th><th>충족기준*</th></tr>
<tr><td>유</td><td>10점</td><td>100%</td><td>상</td><td>10점</td><td>80%이상</td></tr>
<tr><td></td><td></td><td></td><td>중</td><td>5점</td><td>60%이상~80%미만</td></tr>
<tr><td>무</td><td>0점</td><td>100%미만</td><td>하</td><td>0점</td><td>60%미만</td></tr>
</table>
(*경우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 ‘상’에 대한 충족기준을 100%로 할 수 있음)
</td>
<td>
2. 평가항목 배점
<table>
<tr><th>평가결과</th><th>점수</th><th>평가결과</th><th>점수</th></tr>
<tr><td>유</td><td>10점</td><td>상</td><td>10점</td></tr>
<tr><td></td><td></td><td>중</td><td>5점</td></tr>
<tr><td>무</td><td>0점</td><td>하</td><td>0점</td></tr>
</table>
(*가점항목이 있을 경우 기준 충족시 해당 평가항목 5점 가산)
</td>
</tr>
<tr>
<td>1. 인력 적정성</td>
<td>평가방법</td>
<td>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춤
- 1명 이상의 상시근무 간호사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td><td>-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추었으나 상시근무 간호사 충족 못함
- 또는, 보건소에서 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분기별로 4회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로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해결한 경우</td><td>- 보건소에서 평가일 기준 최근 1년간 분기별로 4회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로 시정 조치를 받음</td></tr>
</table>
</td>
<td>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춤
- 1명 이상의 상시근무 간호사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td><td>- 건강관리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관리책임자)의 법적기준의 내용을 모두 갖추었으나 상시근무 간호사 충족 못함</td><td>- <u>법적인력을 충족하지 못함</u></td></tr>
</table>
</td>
</tr>
<tr>
<td>2.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td>
<td>평가방법</td>
<td>
○ 판정기준
1)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인사관리 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내용이 모두 포함됨</td><td>-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td><td>- 규정이 없음</td></tr>
</table>
</td>
<td>
○ 판정기준
1) 인사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인사관리 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내용이 모두 포함됨</td><td>- 규정은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td><td>- 규정이 없음</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td></td><td></td><td>
2) 직원 채용 절차에 따른 적정인력 모집/배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필수</td><td>- 법정 건강검진(잠복결핵검사 포함) 및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일해)을 받은 근거서류가 있음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채용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확인
- 개인정보 보안각서 확인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td><td>-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중 1개라도 실시하지 않음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없음
- 개인정보 보안각서를 받지 않음
위의 1개 이상의 경우에 해당</td></tr>
</table>
3) 인사정보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모든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사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직원별로 인사정보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음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
- 종사자 관리대장이 누락없이 작성되고 연도별로 관리함</td><td>- 일부 직원의 인사정보 관리가 미흡함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대부분 있음
- 종사자 관리대장이 일부 누락되고 연도별로 관리하지 않음</td><td>- 다수의 직원의 인사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음</td></tr>
</table>
</td><td>
2) 직원 채용 절차에 따른 적정인력 모집/배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필수</td><td>- 법정 건강검진<u>(잠복결핵 검사등),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 관련 여부 진단 및</u>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일해)을 받은 근거서류가 있음
-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채용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확인
- 개인정보 보안각서 확인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td><td>-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중 1개라도 실시하지 않음
-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없음
- 개인정보 보안각서를 받지 않음
위의 1개 이상의 경우에 해당</td></tr>
</table>
3) 인사정보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모든 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사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직원별로 인사정보 관련 서류를 관리하고 있음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
- 종사자 관리대장이 누락없이 작성되고 연도별로 관리함</td><td>- 종사자 관리대장이 일부 누락되고 연도별로 관리하지 않음
<u>-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음</u>
<u>- 2개중 1개 이상 해당</u></td><td>- 다수의 직원의 인사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는 경우
- 면허 갱신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음</td></tr>
</table>
</td></tr>
<tr><td>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td><td>평가항목의 이해</td><td>
1) 연간 직원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연간 교육 계획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예산 등
○ 교육 종류 및 내용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교육(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 대상: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는 경우에만 건강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td><td>
1) 연간 직원 교육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강사, 교육예산 등

<u>2)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에게 시행해야하는 교육은 산후조리원 필수교육, 법정의무교육, 신규직원 교육 및 기타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u>

<u>○ 산후조리원 필수교육</u>
<u>-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시행규칙 제17조</u>
<u>- 교육내용: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u>
</td></tr>
</table>

소분류	항목	2021년	2022년 변경사항

2021년

• 시기: 1년마다 1회, 8시간 이상
• 내용: 감염예방, 감염·안전관리 등 임산부(산모) 및 영유아(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교육(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대상: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시기: 2년마다 1회

③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 및 기타 직무 교육

-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직원 교육)(건강관리인력 및 그 밖의 인력)

① 필수 교육: 감염관리교육, 소방안전교육
• 교육 주체: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교육 대상: 산후조리원 종사자
• 교육 일정: 최소 연 1회, 건강관리인력 4시간 이상, 그 밖의 인력 1시간 이상

② 소방안전 교육
• 교육 주체: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교육 대상: 산후조리업 종사자
• 교육 일정: 최소 연 1회, 매년 2시간 이상
• 교육 내용(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③ 기타 직무 교육

④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 2020년 2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 진행(추후 근거자료 삽입)

2)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자체 또는 외부교육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지원)한다.

3) [필수]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필수 교육을 이수한다.

※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

교 육	근거 법령	주기	기타 세부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1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

2022년 변경사항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및 방법:

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산후조리업자*	- 연1회 이상. 연8시간 이상	-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건강관리인력	- 연1회 이상. 연4시간 이상	-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기타 인력	- 연1회 이상. 연1시간 이상	-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산후조리업자는 교육보고서를 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함

※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 산후조리원 필수교육의 교육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7호)

○ 법정의무교육

교 육	근거 법령	대상	주기	세부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연 1회	-사업주 및 근로자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연 1회	-사업주 및 근로자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의무 고용 미 이행시 고용부담금 징수 대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시
위생 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	조리사 및 영양사	2년에 1회	-집단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 조리사 교육
소방 안전	다중이용업소의	산후조리업자 및	2년에 1회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

소분류	항목	2021년	2022년 변경사항

2021년

교 육	근거 법령	주기	기타 세부사항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연 1회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의무 고용 미 이행시 고용부담금 징수 대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시
소방 안전 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년에 1회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대상임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연 1회	
위생 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	2년에 1회(조리사, 영양사)	집단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 조리사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신규: 1년에 1회 보수: 3년에 1회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각 교육 당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이므로 교육을 권장한다.

4) 기타 직무 교육은 산후조리원별로 방침에 맞게 실시한다.
기타 직무 교육: 산모신생아 안전관리, 개인정보보호교육, 서비스 질 개선 교육 등

2022년 변경사항

교 육	근거 법령	대상	주기	세부사항
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관리급 종사자		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대상임
	소방시설법 제20조의2	종사자	매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산후조리원 대상 포함)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소집하여 편성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산후조리업자 또는 관리책임자	신규: 1년에 1회 보수: 3년에 1회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각 교육 당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신규 직원	신규 입사 시	신규채용 시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이긴 하지만 신규자 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담당자	연 1회 이상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연 1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함.

○ 신규직원 교육
- 교육개요: 건강관리책임자 또는 간호사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입사 후 1주 이내 실시
- 교육내용: 산후조리원 조직 및 운영목표, 시설현황, 업무내용 및 업무절차

○ 기타 직무교육
- 산모신생아 안전관리, 서비스 질 개선 교육 등

3) 모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다.

4) 모자보건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교육을 시행(지원)한다.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td></td><td></td><td></td><td><u>5) 신규직원 채용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u>

<u>6) 산후조리원별 방침에 따라 기타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u></td></tr>
<tr><td>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td><td>평가방법</td><td>○ 판정기준
1) 연간 직원교육 계획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연간 교육계획에 필수교육과 직무교육이 모두 포함하며 연간 직원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계획에는 예산(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td><td>- 연간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됨</td><td>-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td></tr>
</table>
2)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매년 자체 또는 외부교육을 실시(지원)하고, 종사자 모두 계획에 따라 교육을 이수함
- 기타 직무교육 시행(50% 이상)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종사자 교육관리대장의 교육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관되어 있음</td><td>- 필수 교육의 일부만 시행함
※ 필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
- 교육 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음</td><td>- 자체 또는 외부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음
- 필수 교육을 시행하지 않음</td></tr>
</table></td><td>1) 연간 직원교육 계획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연간 교육계획에 필수교육과 <u>법정의무교육 등을</u> 모두 포함하며 연간 직원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용이 모두 포함됨(계획에는 예산(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td><td>- 연간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됨</td><td>- 연간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td></tr>
</table>
2)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시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u>산후조리원 종사자 필수교육을 시행함</u>
- <u>산후조리원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중 80% 이상 수행</u>
- 신규 직원에게 업무 시작 1주 이내 <u>신규 직원</u> 교육(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종사자 교육관리대장의 교육이수 정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관되어 있음</td><td>- <u>필수 교육을 시행하고 추가로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u></td><td>- 필수 교육을 시행하지 않음
- <u>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중 50% 미만 수행</u>
· <u>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u></td></tr>
</table>
<u>※ 기타 직무교육 또는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신규자 교육 제외)을 계획하고 실제 실시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5점 가산</u></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td></td><td></td><td>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필수</td><td>-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회 8시간 이상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함.
- 교육이수 수료증 있음</td><td>-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음
-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관계 법령에 필수교육 이수하지 않음</td></tr>
</table></td><td>3) 산후조리업자 교육 이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필수</td><td>-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에 1회 8시간 이상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함
- <u>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함</u>
- 교육이수 수료증 있음</td><td>-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 <u>산후조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음</u></td></tr>
</table></td></tr>
<tr><td>3. 시설 적정성</td><td>평가항목</td><td>
<table>
<tr><th></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td><td>IT</td><td>S</td><td>필수</td><td>□ 상 □ 중 □ 하</td></tr>
<tr><td>2</td><td>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유 □ 무</td></tr>
<tr><td>3</td><td>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td><td>IT</td><td>S</td><td>정규</td><td>□ 유 □ 무</td></tr>
<tr><td>4</td><td>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유 □ 무</td></tr>
</table></td><td>
<table>
<tr><th></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산후조리원 입구 및 신생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다.</td><td>IT</td><td>S</td><td>필수</td><td>□ 상 □ 중 □ 하</td></tr>
<tr><td>2</td><td>신생아 요람과 요람사이가 적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유 □ 무</td></tr>
<tr><td>3</td><td>신생아실에 사전관찰실이 있다.</td><td>IT</td><td>S</td><td>정규</td><td><u>□ 상 □ 중 □ 하</u></td></tr>
<tr><td>4</td><td>신생아실은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유 □ 무</td></tr>
</table></td></tr>
<tr><td>3. 시설 적정성</td><td>평가방법</td><td>3) 사전관찰실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정규</td><td>- 사전 관찰실이 있으며,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음</td><td>- 사전 관찰실이 없음
- 투명한 벽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td></tr>
</table></td><td>3) 사전관찰실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u>상</u></th><th><u>중</u></th><th><u>하</u></th></tr>
<tr><td>정규</td><td>- 사전 관찰실이 있으며, <u>출입문과 투명한 벽체</u> 등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음</td><td>- <u>사전관찰실이 있으나 칸막이로 일부만 막혀있어 공간이 분리되지 않음</u></td><td>- 사전 관찰실이 없음
- 투명한 벽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td>4. 시설 안정성: 설비관리</td><td>평가항목</td><td>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 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td><td>DR</td><td>S</td><td>정규</td><td>□ 상 □ 중 □ 하</td></tr>
<tr><td>2</td><td>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상 □ 중 □ 하</td></tr>
<tr><td>3</td><td>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유 □ 무</td></tr>
<tr><td>4</td><td>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상 □ 중 □ 하</td></tr>
<tr><td>5</td><td>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td><td>DR</td><td>P</td><td>정규</td><td>□ 유 □ 무</td></tr>
</table>
</td><td>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 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td><td>DR</td><td>S</td><td>정규</td><td>□ 상 □ 중 □ 하</td></tr>
<tr><td>2</td><td>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상 □ 중 □ 하</td></tr>
<tr><td>3</td><td>가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유 □ 무 <u>□ 미해당</u></td></tr>
<tr><td>4</td><td>급수설비 및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상 □ 중 □ 하</td></tr>
<tr><td>5</td><td>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td><td>DR</td><td>P</td><td>정규</td><td><u>□ 상 □ 중 □ 하</u></td></tr>
</table>
</td></tr>
<tr><td>4. 시설 안정성: 설비관리</td><td>평가방법</td><td>
2) 전기설비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td><td>- 점검표 3개 항목 충족</td><td>- 미충족</td></tr>
</table>
3) 가스설비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정규</td><td>- 주기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함
- 점검표 3개 모두 충족</td><td>- 주기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점검표 2개 이하 충족</td></tr>
</table>
</td><td>
2) 전기설비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u>설비시스템 관리 점검 근거서류 있음</u>
- <u>법적 점검서류 있음</u>
- 점검표 4개 항목 모두 충족</td><td>- <u>설비시스템 관리 점검 근거서류 있음</u>
- <u>법적 점검서류 있음</u>
- 점검표 3개 항목 충족</td><td>- 미충족</td></tr>
</table>
3) 가스설비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h><u>미해당</u></th></tr>
<tr><td>정규</td><td>- <u>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 있음</u>
- 주기적인 가스점검 실시
- 점검표 3개 모두 충족</td><td>- <u>가스안전공사 점검서류 없음</u>
- 주기적으로 가스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점검표 2개 이하 충족
- <u>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u></td><td>- <u>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조리장을 운영하지 않음</u></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
<td>4. 시설 안정성: 설비관리</td>
<td>평가방법</td>
<td>5)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정규</td><td>-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관리 기준을 준수
- 에어컨, 환기시설 오염상태 확인 및 조치</td><td>-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에어컨, 환기시설 오염상태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음</td></tr>
</table></td>
<td>5) 실내공기질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u>공기질 측정 근거서류가 있음</u>
- <u>에어컨 청소 필터교체, 환기시설 관리 점검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음</u>
- <u>점검표 3개 항목 모두 충족</u></td><td>- <u>실내 공기질 측정은 했으나 점검표 3개중 2개 이상 충족(근거서류 포함)</u></td><td>- <u>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u>
- <u>점검표 3개 중 1개 이하만 충족</u></td></tr>
</table>
<u>※ 연면적 500㎡미만 산후조리원은 실내 공기질 측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표 내의 항목 충족 여부와 점검 근거서류만 확인하고 판정함</u></td>
</tr>
<tr>
<td>4. 시설 안정성: 설비관리</td>
<td>평가방법</td>
<td>■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table>
<tr><th rowspan="2">점검항목</th><th rowspan="2">중점점검사항</th><th colspan="2">이상 유무 확인</th></tr>
<tr><th>충족여부</th><th>조치결과</th></tr>
<tr><td rowspan="4">전기</td><td>1.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사용 유무 및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td><td></td><td></td></tr>
<tr><td>2. 전기시설 사용 적정여부 (문어발식 사용금지)</td><td></td><td></td></tr>
<tr><td>3. 전선의 피복상태</td><td></td><td></td></tr>
<tr><td>4. 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손상여부</td><td></td><td></td></tr>
<tr><td rowspan="3">가스 시설</td><td>1. 가스시설 사용 적정 여부</td><td></td><td></td></tr>
<tr><td>2. 가스사용 구역 가스 누설 유무</td><td></td><td></td></tr>
<tr><td>3. 가스누설 경보 자동 차단장치 상태</td><td></td><td></td></tr>
<tr><td rowspan="2">급수</td><td>1. 정수기 오염상태 확인</td><td></td><td></td></tr>
<tr><td>2. 정수기 기록 유지관리 확인</td><td></td><td></td></tr>
<tr><td rowspan="3">실내 공기</td><td>1.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 관리기준 준수</td><td></td><td></td></tr>
<tr><td>2. 에어컨 오염상태 확인</td><td></td><td></td></tr>
<tr><td>3. 환기시설 오염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td><td></td><td></td></tr>
</table>
※ 공기청정기가 있을 경우는 점검사항에 추가함.
※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오염 상태 점검 및 조치는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 중대재해처벌법(법률 제17907호),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6606호) 등의 수정 여부 확인 및 안내.</td>
<td>■ 설비시스템 관리 점검표
<table>
<tr><th rowspan="2">점검항목</th><th rowspan="2">중점점검사항</th><th colspan="2">이상 유무 확인</th></tr>
<tr><th>충족여부</th><th>조치결과</th></tr>
<tr><td rowspan="4">전기</td><td>1.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사용 유무 및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td><td></td><td></td></tr>
<tr><td>2. 전기시설 사용 적정여부(문어발식 사용금지)</td><td></td><td></td></tr>
<tr><td>3. 전선의 피복상태</td><td></td><td></td></tr>
<tr><td>4. 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손상여부</td><td></td><td></td></tr>
<tr><td rowspan="3">가스 시설</td><td>1. 가스시설 사용 적정 여부</td><td></td><td></td></tr>
<tr><td>2. 가스사용 구역 가스 누설 유무</td><td></td><td></td></tr>
<tr><td>3. 가스누설 경보 자동 차단장치 상태</td><td></td><td></td></tr>
<tr><td rowspan="2">급수</td><td>1. 정수기 오염상태 확인</td><td></td><td></td></tr>
<tr><td>2. 정수기 기록 유지관리 확인</td><td></td><td></td></tr>
<tr><td rowspan="3">실내 공기</td><td>1.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 관리기준 준수</td><td></td><td></td></tr>
<tr><td>2. 에어컨 오염상태 확인</td><td></td><td></td></tr>
<tr><td>3. 환기시설 오염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u>혹은 주기적인 환기(일 최소 2회, 한 회 당 20분 이상)</u></td><td></td><td></td></tr>
</table>
※ 공기청정기가 있을 경우는 점검사항에 추가함.
※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오염 상태 점검 및 조치는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을 따른다.</td>
</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td>III 운영과 질 관리</td><td>평가기준</td><td>

Ⅲ. 운영과 질 관리

<table>
<tr><th>중영역</th><th>평가기준</th></tr>
<tr><td rowspan="4">5. 운영관리</td><td>5.1 입·퇴실을 관리한다.</td></tr>
<tr><td>5.2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갖추고 있다.</td></tr>
<tr><td>5.3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td></tr>
<tr><td>5.4 산모 및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을 관리한다.</td></tr>
<tr><td>6. 질 관리</td><td>6.1 질 관리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td></tr>
<tr><td>7. 경영관리</td><td>7.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점검한다.</td></tr>
</table>

</td><td>

Ⅲ. 운영과 질 관리

<table>
<tr><th>중영역</th><th>평가기준</th></tr>
<tr><td rowspan="4">5. 운영관리</td><td>5.1 입·퇴실을 관리한다.</td></tr>
<tr><td>5.2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절차를 갖추고 있다.</td></tr>
<tr><td>5.3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td></tr>
<tr><td>5.4 산모·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을 관리한다.</td></tr>
<tr><td>6. 질 관리</td><td>6.1 질 관리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td></tr>
<tr><td>7. 경영관리</td><td><u>**7.1 리더쉽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 관리 활동을 시행한다.**</u></td></tr>
</table>

</td></tr>
<tr><td>5. 운영관리: 입·퇴실관리</td><td>평가방법</td><td>

4) 입실, 퇴실 시 산모교육 시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계획
- 감염예방 관리계획
- 의료기관 이송계획
- 낙상예방 계획
: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위의 내용을 모두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퇴실 시 산모 교육
: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확인</td><td>-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일부내용(3개 이상)에 대해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퇴실 시 산모교육을 시행하고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함</td><td>- 입실, 퇴실 시점에 산모에게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td></tr>
</table>

</td><td>

4) 입실, 퇴실 시 산모교육 시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입실 시 산모 교육
- 보안계획
- 소방안전 및 대피계획
- 방문객 관리계획
- 감염예방 관리계획
- 의료기관 이송계획
- 낙상예방 계획
: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위의 내용을 모두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퇴실 시 산모 교육
: 퇴실 시 산모교육을 시행하고 산모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함</td><td>-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일부내용(4개 이상)에 대해 교육하거나 자료를 제공함
- 퇴실 시 산모교육을 시행하고 산모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u>**·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u></td><td>- 입실, 퇴실 시점에 산모에게 교육을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td></tr>
</table>

</td></tr>
</table>

소분류	항목	2021년	2022년 변경사항
		5)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5) 입·퇴실 수속 절차 준수 여부 확인

2021년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8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미만

2022년 변경사항

구분	상	중	하
정규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8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이상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음	- 입·퇴실 수속절차 및 입·퇴실 지연시의 관리방법에 대한 담당 직원 숙지 60% 미만 - **고객용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음**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운영관리: 문서관리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3	문서의 대출, 열람 및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문서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3	문서의 대출, **열람, 반납** 관리 및 안전한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IT	P	정규	□상 □중 □하

5. 운영관리: 문서관리 — 평가방법

2)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최소 5건) - 건강기록부는 매일 기재되어 있고, 항목별 사항도 누락 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건강기록부에서 수정한 내용이 모두 규정의 내용을 준수함	- 일부 건강기록부의 내용이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3건 이상은 모두 기록되어 있음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 건강기록부의 내용이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3건 이상이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2) 건강기록부 기록(수정)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확인(최소 5건) - 건강기록부는 매일 기재되어 있고, 항목별 사항도 누락 없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 건강기록부에서 수정한 내용이 모두 규정의 내용을 준수함	- **5개 건강기록부 중에서 2개 항목 이하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미흡하게 작성됨**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수정펜 사용)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3개 항목이상 누락되어 있거나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 수정한 내용이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 **위에 제시된 2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분류	항목	2021년	2022년 변경사항
6. 질 관리: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평가항목		

2021년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정규	□상 □중 □하
2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	P	정규	□상 □중 □하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DR	O	정규	□상 □중 □하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DR	P	정규	□유 □무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DR	P	정규	□유 □무

2022년 변경사항

	평가항목	평가방법	구분	분류	평가결과
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계획이 있다.	DR	S	**시범**	□상 □중 □하
2	선정한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DR	P	**시범**	□상 □중 □하
3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DR	O	정규	□상 □중 □하
4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에 대한 안내가 있다.	DR	P	정규	□유 □무
5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을 처리한다.	DR	P	정규	□유 □무

6. 질 관리: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 평가방법

2)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 이상(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이상)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핵심지표〉 - 모자동실시간 - 신생아실 이용시간 - 모유수유율 - 감염발생 양상 - 안전사고발생 양상	○ 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모니터링은 시행했으나 개선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필수: 손 위생 수행률 포함	- 계획은 있으나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 질 관리 활동 계획이 없음

2) 질 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정규	○ 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 이상(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이상) 의 **관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핵심지표〉 - 모자동실시간 - 신생아실 이용시간 - 모유수유율 - 감염발생 양상 - 안전사고발생 양상	○ 손 위생 수행률을 포함한 2개(손 위생 수행률+핵심지표 1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1년에 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모니터링은 시행했으나 개선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 계획은 있으나 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음 - 질 관리 활동 계획이 없음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td></td><td></td><td>3)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만족도 평가도구 있음
- 모두 만족도평가 실시함
- 만족도 분석결과를 업무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
⇒ 4개 중 3개 이상 모두 충족</td><td>- 4개 중 2개 충족함
- 만족도 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 분석 및 업무개선에 활용하지 않고 있음</td><td>- 4개 중 1개 충족
- 만족도 평가를 일부 시행하고 있거나 실시하지 않음</td></tr>
</table></td><td>3)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만족도 평가도구 있음
- 모두 만족도평가 실시함
- 만족도 분석결과를 업무개선에 활용한 사례가 있음
⇒ 모두 충족</td><td>- <u>'상'의 기준 중 2개 충족함</u></td><td>- <u>'상'의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u></td></tr>
</table></td></tr>
<tr><td>7. 경영 관리: 리더십 및 조직문화</td><td>평가방법</td><td>○ 판정기준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원장 인터뷰)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시범</td><td>-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있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음</td><td>-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없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없음</td></tr>
</table>
2) 직원과의 의사소통(직원 면담)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시범</td><td>-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있는지 확인함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함</td><td>-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없음을 확인함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지 않음을 확인함</td></tr>
</table></td><td>○ 판정기준
1)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개선(원장 인터뷰)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시범</td><td>-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있음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음</td><td>- 모자동실에 대한 철학이 없음<u>(모자동실을 시행하지 않음)</u>
- 신생아 감염관리에 대한 철학이 없음</td></tr>
</table>
2) 직원과의 의사소통(직원 면담)
<table>
<tr><th>구분</th><th>유</th><th>무</th></tr>
<tr><td>시범</td><td>-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있음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고 있음<u>(처리결가 근거서류 확인)</u></td><td>- 직원들의 불만이나 근무 중 고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없음을 확인함
- 불만이나 고충이 잘 처리되지 않음을 확인함</td></tr>
</table></td></tr>
</table>

소분류	항목	2021년	2022년 변경사항
Ⅳ 감염예방관리	평가기준	Ⅳ. 감염예방관리	Ⅳ. 감염예방관리

2021년

중영역	평가기준
8. 감염예방	8.1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위생을 수행한다.
	8.2 개인보호구를 구비하고 있다.
	8.3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8.4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및 물품관련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8.5 개인 및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8.6 조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한다.
	8.7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9. 감염관리	9.1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산모 및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2022년 변경사항

중영역	평가기준
8. 감염예방	8.1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 위생을 수행한다.
	8.2 개인보호구를 구비하고 있다.
	8.3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8.4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 및 물품관련 감염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8.5 개인 및 환경위생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8.6 조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한다.
	8.7 직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한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9. 감염관리	9.1 **감염병으로부터** 산모 및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8. 감염예방: 손 위생

평가방법

4) 손 위생 물품 구비 여부 확인

2021년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이 모두 표기 되어 있음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이용함 - 신생아실 손 위생 건조는 종이타월(1회용 타월)을 이용함 -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 내역 근거서류 있음	- 4개 중 3개 이상 충족함 - 손 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나 사용기한 표기가 일부 되어 있지 않음	- 손 위생 물품이 소량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이 아님 -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 근거서류가 없음

2022년 변경사항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 물품이 비치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사용기한이 모두 표기 되어 있으며 **개봉후 6개월 이내 일 것** - 손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이용함 **(인증서 확인)** - 신생아실 손 위생 건조는 종이타월(1회용 타월)을 이용함 -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 근거서류 있음	- **'상'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함**	- **'상' 기준 중 2개 이하 충족**

5)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실시 여부 확인

2021년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있음 • 세면대 옆 손 위생 방법 비치(부착) • 게시판에 손 위생 포스터 부착	- 2개 중 1개 실시함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없음

2022년 변경사항

구분	상	중	하
필수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있음 • 세면대 옆 손 위생 방법 비치(부착) • 게시판에 손 위생 포스터 부착	- **홍보활동 2개 중 1개 실시함**	- 손 위생을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없음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td></td><td></td><td>■ 손 위생 활동 점검표(산모)
<table>
<tr><th rowspan="2">No.</th><th rowspan="2">점검사항</th><th colspan="3">점검결과</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적합</th><th>부적합</th><th>미해당</th></tr>
<tr><td>1</td><td>음식 먹기 전·후</td><td></td><td></td><td></td><td></td></tr>
<tr><td>2</td><td>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td><td></td><td></td><td></td><td></td></tr>
<tr><td>3</td><td>신생아 접촉 전·후</td><td></td><td></td><td></td><td></td></tr>
<tr><td>4</td><td>모유/분유 수유 준비 전, 수유 전</td><td></td><td></td><td></td><td></td></tr>
<tr><td>5</td><td>기저귀 교환 전·후</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 손 위생이 필요한 활동 사례-산모 대상
<table>
<tr><th rowspan="2">No.</th><th rowspan="2">점검사항</th><th colspan="3">점검결과</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적합</th><th>부적합</th><th>미해당</th></tr>
<tr><td>1</td><td>음식 먹기 전·후</td><td></td><td></td><td></td><td></td></tr>
<tr><td>2</td><td>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td><td></td><td></td><td></td><td></td></tr>
<tr><td>3</td><td>신생아 접촉 전·후</td><td></td><td></td><td></td><td></td></tr>
<tr><td>4</td><td>모유/분유 수유 준비 전, 수유 전</td><td></td><td></td><td></td><td></td></tr>
<tr><td>5</td><td>기저귀 교환 전·후</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 rowspan="2">8. 감염예방: 개인보호구 착용</td><td>평가목적</td><td>평가목적
감염예방을 위해 종사자는 필요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td><td>평가목적
감염예방을 위해 종사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td></tr>
<tr><td>평가방법</td><td>2)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은 보호구(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고 있음
※ 확인 불가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등에 대한 직원 숙지 80% 이상</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60% 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의 보호구 착용이 미흡함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60% 이상</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60% 미만)
- 보호구가 없음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60% 미만</td></tr>
</table></td><td>2)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u>75%</u> 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은 보호구(장갑, 마스크, 가운 등)를 착용하고 있음
※ 확인 불가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등에 대한 직원 숙지 <u>75%</u> 이상</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u>50%</u> 이상 충족)
- 기구·물품 세척 시 직원의 보호구 착용이 미흡함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u>50%</u> 이상</td><td>-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상황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음(<u>50%</u> 미만)
- 보호구가 없음
※ 확인 불가한 경우: 직원 숙지 <u>50%</u> 미만</td></tr>
</table>
<u>※ 직원 3명의 평균으로 충족률 산출</u></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td>8. 감염예방: 세탁물 관리</td><td>기준
평가목적
평가항목</td><td>
기준 8.3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목적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관리 및 감염발생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td><td>DR</td><td>S</td><td>정규</td><td>□ 상 □ 중 □ 하</td></tr>
<tr><td>2</td><td>세탁물을 관리한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상 □ 중 □ 하</td></tr>
</table>
</td><td>
기준 8.3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평가목적
세탁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관리 및 감염발생을 예방한다.
평가항목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구분</th><th>분류</th><th>평가결과</th></tr>
<tr><td>1</td><td>세탁물에 대한 규정이 있다.</td><td>DR</td><td>S</td><td>정규</td><td>□ 상 □ 중 □ 하</td></tr>
<tr><td>2</td><td>세탁물을 관리한다.</td><td>IT</td><td>P</td><td>정규</td><td>□ 상 □ 중 □ 하</td></tr>
</table>
</td></tr>
<tr><td>8. 감염예방: 세탁물 관리</td><td>평가항목의 이해</td><td>
- 세탁된 세탁물 보관
•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 전용 보관 장소(신생아실, 산모실, 식당, 휴게실 등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 떨어져 있음)
○ 폐기물관리
• 자체처리: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 위탁처리: 위탁계약서 비치
</td><td>
- 세탁된 세탁물 보관
•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 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전용 보관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한다.
</td></tr>
<tr><td>8. 감염예방: 세탁물 관리</td><td>평가방법</td><td>
○ 확인내용
- 세탁물 수집 장소
- 세탁 후 세탁물 보관 장소(전용 보관실)
- 세탁물 처리 근거자료/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사본, 위탁계약서

○ 판정기준
1)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 확인
</td><td>
○ 확인내용
- 세탁물 수집 장소
- 세탁 후 세탁물 보관 장소(전용 보관실)
- 세탁물 처리 근거자료

○ 판정기준
1) 세탁물에 대한 규정 확인
</td></tr>
</table>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td></td><td></td><td>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오염된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td><td>-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td><td>- 규정이 없음</td></tr>
</table>
2) 세탁물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점검표 5개 항목 이상 충족</td><td>- 점검표 4개 항목 충족</td><td>- 미충족</td></tr>
</table>
</td><td>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세탁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규정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td><td>- 규정이 있으나 내용이 일부 누락됨</td><td>- 규정이 없음</td></tr>
</table>
2) 세탁물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점검표 5개 항목 이상 충족</td><td>- 점검표 4개 항목 충족</td><td>- <u>점검표 3개 이하</u> 충족</td></tr>
</table>
</td></tr>
<tr><td>8. 감염예방: 물품 소독·관리</td><td>평가항목의 이해</td><td>1)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구 및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 수유물품(젖꼭지, 모유/분유병, 뚜껑 등)
- 기타(요람, 목욕대야, 유축기, 좌욕기 등)
○ 세척/소독된 물품 보관 관리
○ 소독제 사용기준(국내외 인증 받은 물품소독제 사용)
○ 세척직원의 보호구 착용: 세척 시 보호 장구 착용(방수가운, 마스크, 장갑 등)

2-3) 규정에 따라 기구 및 물품을 세척, 소독, 보관하고, 직원은 세척 시 보호구를 착용한다.</td><td>1)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기구 및 물품 세척 및 소독방법
- 수유물품(젖꼭지, 모유/분유병, 뚜껑 등)
- 기타(<u>신생아실 및 산모개인실 요람</u>, 목욕대야, 유축기, 좌욕기 등)
○ 세척/소독된 물품 보관 관리
○ 소독제 사용기준(국내외 인증 받은 물품소독제 사용)
○ 세척직원의 보호구 착용: 세척 시 보호 장구 착용(방수가운, 마스크, 장갑 등)

2-3) 규정에 따라 기구 및 물품을 세척, 소독, 보관하고, 직원은 세척 시 보호구를 착용한다.</td></tr>
<tr><td>8. 감염예방: 환경관리</td><td>평가항목의 이해</td><td>신규내용 추가</td><td><u>○ 폐기물관리</u>
- <u>자체처리: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u>
- <u>위탁처리: 위탁계약서 비치</u></td></tr>
<tr><td>8. 감염예방: 환경관리</td><td>평가방법</td><td>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점검표 10개 항목 이상 충족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td><td>- 점검표 7~9개 항목 충족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2개중 1개 이상 충족</td><td>- 미충족</td></tr>
</table>
</td><td>2) 위생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u>점검표 항목 80% 이상 충족</u>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2개 모두 충족</td><td>- <u>점검표 항목 60% 이상~80% 미만 충족</u>
- 소독 등의 환경관리 점검표가 있음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td><td>- 미충족</td></tr>
</table>
</td></tr>
</table>

소분류	항목	2021년	2022년 변경사항
8. 감염예방: 환경관리	평가방법	■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 환경위생관리 점검표

2021년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2	신생아실, 산모실 내 꽃, 화분 비치 여부			
3	신생아실, 산모실 바닥 청결			
4	신생아 요람 관리			
5	수유준비실 관리			
6	신생아 목욕 싱크대 관리			
7	화장실 관리(산모실, 공용화장실)			
8	좌욕실 관리			
9	청소용품 관리(환경소독제 승인여부, 청소도구 관리 등)			
10	손 씻기 시설			
11	기구 세척실 관리			
12	청결물품 보관실 관리			

2022년 변경사항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미해당	비고
		충족	미충족		
1	신생아/산모복, 직원 유니폼 관리				
2	신생아실, 산모실 내 꽃, 화분 비치 여부				
3	신생아실, 산모실 바닥 청결				
4	수유준비 **구역(장소)** 관리				
5	신생아 목욕 싱크대 관리				
6	화장실 관리(산모실, 공용화장실)				
7	좌욕실 관리				
8	청소용품 관리(환경소독제 승인여부, 청소도구 관리 등)				
9	**손 씻기 시설의 청결도**				
10	기구 세척 **구역(장소)** 관리				
11	청결물품 보관실 관리				
12	**폐달을 밟아 뚜껑을 열 수 있는 폐기물통 사용**				
13	**폐기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사본 및 위탁계약서 확인 (위탁관리인 경우만)**				

소분류	항목	2021년	2022년 변경사항
8. 감염예방: 급식관리	평가방법	2)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확인	2) 조리장 환경위생 관리 여부 확인

2021년

구분	상	중	하
정규	- 조리장의 식기,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건조된 상태로 전용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조리장이 위생구역/오염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 당일 처리함	- 3개 중 2개 이상 충족	- 미충족

2022년 변경사항

구분	상	중	하
정규	- 조리장의 식기,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건조된 상태로 전용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조리장이 위생구역/오염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통에 담아 당일 처리함	- **'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	- **'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td></td><td></td><td>
3) 식재료 관리상태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우
- 보관식품(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
- 식재료 개봉일자를 라벨링하여 관리하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td><td>- 3개 중 2개 이상 충족</td><td>- 미충족</td></tr>
</table>
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냉장고와 냉동고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기록지 작성하고 있는 경우
- 식재료를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냉장고/냉동고 내외부가 청결한 경우(성에, 물기 없어야 함)</td><td>- 3개 중 2개 이상 충족</td><td>- 미충족</td></tr>
</table>
</td><td>
3) 식재료 관리상태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우
- 보관식품(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
- 식재료 개봉일자를 라벨링하여 관리하며, 검수일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제품 3개 선정해서 확인)</td><td>- <u>'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u></td><td>- <u>'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u></td></tr>
</table>
4)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정규</td><td>- 냉장고와 냉동고 온도계를 비치하거나, 온도기록지 작성하고 있는 경우
- 식재료를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냉장고/냉동고 내외부가 청결한 경우(성에, 물기 없어야 함)</td><td>- <u>'상'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u></td><td>- <u>'상' 기준 중 1개 이하 충족</u></td></tr>
</table>
</td></tr>
<tr><td>9. 감염관리</td><td>평가방법</td><td>
2)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8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함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점검 서류가 있음</td><td>-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6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하지 않음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작성하지 않음</td><td>-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60% 미만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하지 않음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작성하지 않음</td></tr>
</table>
</td><td>
2)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여부 확인
<table>
<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
<tr><td>필수</td><td>-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8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격리함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점검 서류가 있음</td><td>- 감염병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직원의 내용 숙지 60% 이상
- 의료기관 이송 전 산모실 또는 격리실에 <u>격리함</u>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u>작성함</u>
·<u>위에 제시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u></td><td>- <u>'중'에 제시된 3개 기준 중 1개 이하만 충족되는 경우</u></td></tr>
</table>
</td></tr>
</table>

소분류	항목	2021년	2022년 변경사항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평가기준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중영역 / 평가기준 10. 산모 건강평가 / 10.1 산모의 건강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11. 모아애착 / 11.1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위해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12. 부모교육 / 12.1 산모의 건강관리방안 및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중영역 / 평가기준 10. 산모 건강평가 / 10.1 산모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11. 모아애착 / 11.1 산모와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위해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모자동실을 운영한다. 12. 부모교육 / 12.1 산모의 건강관리방안 및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10. 산모 건강평가	평가방법	1) 입·퇴실 시, 재원 중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 상 / 중 / 하 정규 / - 모든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3건 확인) / - 일부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 (60% 이상~80% 미만 기록 충족) / -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60% 미만) 2) 재원 중 산모의 산후우울증 평가 구분 / 상 / 중 / 하 정규 /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를 시행함(설문지 작성) - 우울증 고위험군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 및 이송에 대한 근거 있음 /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하지 않거나 일부 산모에 대해 시행함. (설문지 작성) - 우울증 고위험군이 있으나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가 없음 - 2개중 1개이상 해당 / -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하지 않았음.	1) 입·퇴실 시, 재원 중 산모 건강상태 평가 및 기록 여부 확인 구분 / 상 / 중 / 하 정규 / - 모든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위의 내용에 대한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함 **(80% 이상 기록 충족)** (※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의 건강기록부 **5건** 확인) / - 일부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이상증상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 (60%이상**~80% 미만** 기록 충족) / - 산모에 대해 입실, 재원, 퇴실 시점에 건강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기록되어 있음 (60% 미만) 2) 재원 중 산모의 산후우울증 평가 구분 / 상 / 중 / 하 정규 /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를 시행함(설문지 작성) - 우울증 고위험군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 및 이송에 대한 근거 있음 / - **모든 산모에 대해 재원 중에 1회의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함. (설문지 작성) - 우울증 고위험군이 있으나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가 없음 / - 산후우울증 평가 시행하지 않았음.

소분류	항목	2021년	2022년 변경사항
12. 부모교육	평가방법	2)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확인 구분: 필수 상: - '산모건강관리방안'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산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안 • 산욕기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패드교환 방법 및 좌욕방법 • 유선염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영양섭취 기준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중: - 교육내용이 4개 이상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는 있으나 교육 자료가 없음 하: - 교육일정이 없음 - 교육내용이 4개 미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2) 산모 건강관리방안 교육 시행 확인 구분: 필수 상: - '산모건강관리방안'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산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안 • 산욕기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패드교환 방법 및 좌욕방법 • 유선염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영양섭취 기준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중: - **'산모건강관리방안' 교육 영역 중 4개 이상의 영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음(근거자료 있음)** - 교육 이수자료가 있으나 일부 누락됨 하: - **'산모건강관리방안'의 교육내용 중 3개 이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시행 확인 구분: 필수 상: - '신생아 돌봄'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신생아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 신생아 수유자세 • 신생아 목욕방법 •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 신생아 배꼽관리 방법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 (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중: - 교육내용이 5개 이상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는 있으나 교육 자료가 없음 하: - 교육일정이 없음 - 교육내용이 5개 미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3) 신생아 돌봄 방법 교육 시행 확인 구분: 필수 상: - '신생아 돌봄'의 아래 모든 영역이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을 제공함 • 신생아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 신생아 수유자세 • 신생아 목욕방법 •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 신생아 배꼽관리 방법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 (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중: - **'신생아 돌봄' 교육 영역 중 5개 이상의 영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하: - **'신생아 돌봄'의 교육 영역 중 4개 이하의 영역에서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

소분류	항목	2021년	2022년 변경사항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자료: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일정이 없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5) 영아돌연사 예방방법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 일정이 없음 -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6) 아버지의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자료 근거서류)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4)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자료: 신생아 울음 이해하기, 눈 마주치기, 성장발달 이해하기 등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촉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교육자료 없음**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일정이 없음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5) 영아돌연사 예방방법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 자료가 있고, 교육을 제공함 -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함(교육이수확인 근거서류)	-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교육 자료가 없음** - 교육이수자 중 일부 누락된 경우가 있음	-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이수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6) 아버지의 교육 시행 확인

구분	유	무
필수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함**. (교육 자료 근거서류)	- 아버지의 산후교육 및 신생아 돌봄 교육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table>
<tr><th>소분류</th><th>항목</th><th>2021년</th><th>2022년 변경사항</th></tr>
<tr><td>VI 신생아 돌봄서비스</td><td>평가기준</td><td>VI. 신생아 돌봄 서비스
<table><tr><th>중영역</th><th>평가기준</th></tr><tr><td>13. 신생아 확인</td><td>13.1 신생아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확인한다.</td></tr><tr><td>14. 신생아 건강평가</td><td>14.1 신생아의 건강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td></tr><tr><td rowspan="3">15. 신생아 관리</td><td>15.1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td></tr><tr><td>15.2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td></tr><tr><td>15.3 신생아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td></tr></table></td><td>VI. 신생아 돌봄 서비스
<table><tr><th>중영역</th><th>평가기준</th></tr><tr><td>13. 신생아 확인</td><td>13.1 신생아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u>식별한다.</u></td></tr><tr><td>14. 신생아 건강평가</td><td>14.1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td></tr><tr><td rowspan="3">15. 신생아 관리</td><td>15.1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td></tr><tr><td>15.2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td></tr><tr><td>15.3 신생아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td></tr></table></td></tr>
<tr><td>15. 신생아 관리: 신생아 수유</td><td>평가방법</td><td>2)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확인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정규</td><td>-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모유는 산모별로 분리, 라벨링하여 보관하고 있음
- 보관기한을 준수함
• 냉장 보관한 모유는 72시간 이내에 사용함(유축시간 기록되어 있고, 72시간 이내임)
⇒ 2개 모두 충족</td><td>- 2개 중 1개 이상 충족</td><td>- 보관 중인 모유가 산모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 보관기한이 경과된 모유가 있음</td></tr></table></td><td>2) 냉장·냉동 중인 모유 관리 확인
<table><tr><th>구분</th><th>상</th><th>중</th><th>하</th></tr><tr><td>정규</td><td>- 냉장·냉동고에 보관 중인 모유는 산모별로 분리, 라벨링하여 보관하고 있음
- 보관기한을 준수함
• 냉장 보관한 모유는 72시간 이내에 사용함(유축시간 기록되어 있고, 72시간 이내임)
⇒ 2개 모두 충족</td><td>- <u>'상'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u></td><td>- 보관 중인 모유가 산모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 보관기한이 경과된 모유가 있음</td></tr></table></td></tr>
</table>

소분류	항목	2021년	2022년 변경사항
15. 신생아 관리: 안전관리	평가방법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안전관리 교육 근거자료 확인) - 신생아의 이동 시 신생아 요람이나 신생아 침대를 이용하여 이동, 신생아의 출생 정보(산모이름, 성별, 출생 날짜)를 확인 후 산모에게 인계함. - 재원 중인 모든 신생아가 앙와위 또는 측위 자세임 - 모든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며, 푹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없음 - 모든 산모가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재원 중인 산모 3인 선정)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 80% 미만 - 신생아의 이동 시 안전관리가 일부만 시행됨 - 신생아 중 일부(20%)가 엎드린 자세임(고개를 옆으로 돌려도 엎드린 자세인 경우는 모두 해당됨) -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지 않거나, 폭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있음(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3인 중 2 이상인) - 5개 중 1개 이상 해당 -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 신생아의 이동 시 안전관리가 시행되지 않음 - 대다수의 신생아가 엎드려져 있음 (80% 이상) -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지 않거나, 폭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있음(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운다고 답함(3인중 2인 이상) - 5개 중 1개 이상 해당

2)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수행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안전관리 교육 근거자료 확인) - **다음의 신생아 안전관리 준수** • 신생아의 이동 시 신생아 요람이나 신생아 침대를 이용하여 이동, 신생아의 출생 정보(산모이름, 성별, 출생 날짜)를 확인 후 산모에게 인계함. • 재원 중인 모든 신생아가 앙와위 또는 측위 자세임 • 모든 신생아의 요람 내 시트가 단단하며, 푹신한 베개, 양가죽, 봉제인형 등이 없음 • 모든 산모가 신생아는 산모의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고 답함 (재원 중인 산모 3인 선정)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 80% 미만**(안전관리 교육 자료 확인)** - **신생아의 안전관리 준수 내용 중 1개 항목 미흡**	- 신생아 안전관리 활동 내용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 **신생아 안전관리 준수 내용 중 2개 이상 미흡** • **위에 제시된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3)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숙지 여부 확인

구분	상	중	하
필수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80% 이상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이상 **~80% 미만**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직원의 숙지 60% 미만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